소방계획서 작성매뉴얼

[집회용도]

소방청
National Fire Agency

한국소방안전원
KOREA FIRE SAFETY INSTITUTE

차 례

Ⅰ. [집회용도] 일반사항 ····· 5

Ⅱ. 소방계획서 작성방법 ····· 11

Ⅲ. 소방계획서 작성예시 ····· 153

Ⅳ. 소방계획서 부록 ····· 239

Ⅰ. [집회용도] 일반사항

[집회용도] 일반사항

1. 용도별 맞춤형 표준 소방계획서 도입배경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그 종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특정소방대상물		
1. 공동주택	11. 운동시설	21. 교정 및 군사시설
2. 근린생활시설	12. 업무시설	22. 방송통신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13. 숙박시설	23. 발전시설
4. 종교시설	14. 위락시설	24. 묘지 관련 시설
5. 판매시설	15. 공장	25. 관광 휴게시설
6. 운수시설	16. 창고시설	26. 장례시설
7. 의료시설	17.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27. 지하가
8. 교육연구시설	18.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28. 지하구
9. 노유자시설	19.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9. 문화재
10. 수련시설	20. 자원순환 관련 시설	30. 복합건축물

지금까지의 표준 소방계획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대형, 소형)로만 나누어져 있어 실제 화재 시 현장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활용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또한 최근 화재사례를 보면 특정시설에서의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대형화재사고로 확대되는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건축물 용도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소방계획서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이에 소방안전관리자의 화재예방 및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용도별 소방계획서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용도별 소방계획수립을 통해 화재특성별 현장대응능력이 향상 될 것이라 예상된다. 또한, 용도별 소방계획서를 작성함으로써 화재 시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화재피해가 최소화할 것으로도 기대된다. 표준 소방계획서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쉽게 작성이 가능하도록 서식과 작성매뉴얼을 분리하였고 자위소방대 운영계획과 피난계획을 통합하는 등 내용의 활용성을 극대화하여 현장에 유연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집회용도] 소방계획서의 특징

본 **[집회용도]** 소방계획서 작성매뉴얼에서 언급하는 “집회용도”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 중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문화재를 말하며, 특정소방대상물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특정소방대상물 종류	정의
문화 및 집회시설	① 공연장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② 집회장 :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③ 관람장 :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 ④ 전시장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견본주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⑤ 동·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종교시설	① 종교집회장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② 가목의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
운수시설	① 여객자동차터미널 ②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정비창(整備廠) 등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③ 공항시설(항공관제탑을 포함한다) ④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운동시설	①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②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미만인 것 ③ 운동장 : 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미만인 것
묘지 관련 시설	① 화장시설 ② 봉안당(제4호나목의 봉안당은 제외한다) ③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④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관광 휴게시설	① 야외음악당 ② 야외극장 ③ 어린이회관 ④ 관망탑 ⑤ 휴게소 ⑥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특정소방대상물 종류	정의
장례시설	①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②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문화재	「문화재보호법」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중 건축물

3. 소방계획서의 목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화재로 인한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대비하고 화재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복구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4. 적용근거

①「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②「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5. 책임과 권한

명 칭	주요 책임과 권한
[대표·소유자]	■ [소방계획을 수립.실행하는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관리책임자]	■ [소방계획을 수립.실행하기 위한 관리적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안전관리자]	■ [소방계획을 수립.실행에 대한 실무적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근무·거주자]	■ [소방계획의 수립.실행에 참여하고 실천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6. 소방계획서 작성 시 주의사항

① 소방계획서에 작성된 내용은 반드시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구성해야 한다.

② 소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및 재실자(상시근무자, 거주자) 등 전원이 참여하도록 한다.

③ 계획 수립 후 시행 중 계획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는 경우(인원 및 관리 현황, 소방시설 현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현황 등) 즉시 반영하도록 한다.

④ 차기년도 소방계획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 유효성 및 타당성을 검토한 뒤 최종 승인을 받는다.

⑤ 소방계획은 반드시 문서[종이, 전자문서, 데이터베이스 등]로 작성하고 2년간 보관해야 한다.

⑥ 해당 서식은 권장서식으로 대상물의 특성에 따라 서식을 수정, 추가하거나 자체서식을 첨부할 수 있다. 다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항들이 포함 되어야 한다.

⑦ 복합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표시된 주용도에 해당하는 소방계획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다만, 건축물 특성에 맞춰 주용도 이외의 대상물 용도에 맞는 서식을 선택하여 작성할 수 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연면적(「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 현황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 방화시설, 전기시설, 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3.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대응대책
4. 소방시설·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정비계획
5.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6. 방화구획, 제연구획(除煙區劃),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및 방염대상물품의 사용 현황과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관리계획
7.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소방훈련·교육에 관한 계획
9. 법 제37조를 적용받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 보조 임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0. 화기 취급 작업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 및 감독 등 공사 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소화에 관한 사항과 연소 방지에 관한 사항
12.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13.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14. 화재발생 시 화재경보, 초기소화 및 피난유도 등 초기대응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Ⅱ. 소방계획서 작성방법

Ⅱ. 소방계획서 작성방법

제1장 소방안전관리계획 작성방법

1.1 건축물 일반현황 ····· 15
1.2 건축물 세부현황 ····· 19
1.3 건축물 위치·운영현황 및 소방차 세부진입 계획 ····· 23
1.4 소방시설 현황 ····· 26
1.5 피난·방화시설 및 제연, 방염 관련 현황 ····· 27
1.6 기타시설 현황 ····· 30
1.7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등 일반현황 ····· 37
1.8 업무대행 현황 ····· 42
1.9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 구성현황 ····· 44
1.10 소방안전관리자 자체점검 및 업무 수행 ····· 51
1.11 소방훈련 및 교육 ····· 59
1.12 화기취급감독 ····· 72
1.13 소방시설 공사/정비 기록 ····· 77
1.14 화재예방 및 홍보 ····· 78
1.15 피해 복구 ····· 81

제2장 자위소방대 운영계획 작성방법

2.1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일반현황 ····· 83
2.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편성표 ····· 93
2.3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조직도 및 임무 ····· 102

2.4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개별임무카드 ····· 111
2.5 지휘통제팀 ····· 114
2.6 비상연락팀(지휘반) ····· 118
2.7 외부기관 비상연락체계 ····· 120
2.8 비상상황별 연락방법 및 안내문구 ····· 121
2.9 초기소화팀(진압반) ····· 123
2.10 피난유도팀(대피유도반) ····· 125
2.11 응급구조팀(구조구급반) ····· 127
2.12 방호안전팀 ····· 129
2.13 초기대응체계 ····· 131
2.14 자위소방대 교육·훈련 실시 결과 기록부 ····· 133

제3장 피난계획 작성방법

3.1 피난시설 및 기타시설 일반현황 ····· 136
3.2 피난시설 및 기타시설 세부현황 ····· 138
3.3 피난인원현황 ····· 139
3.4 피난유도 절차 및 피난경로(집결지) 설정 ····· 141
3.5 피난약자 현황 및 피난계획 ····· 144
3.6 피난약자 유형별 피난방법 ····· 147
3.7 피난관련 기구 및 피난유도장비 등 세부현황 ····· 149
3.8 피난보조자 비상연락망 ····· 151

제1장 소방안전관리계획 작성방법

1.1 건축물 일반현황 [서식 1.1]

1. 작성 전 준비사항

① 건축물대장

- [인터넷발급]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방문 신청] 시. 군. 구 접수

정부24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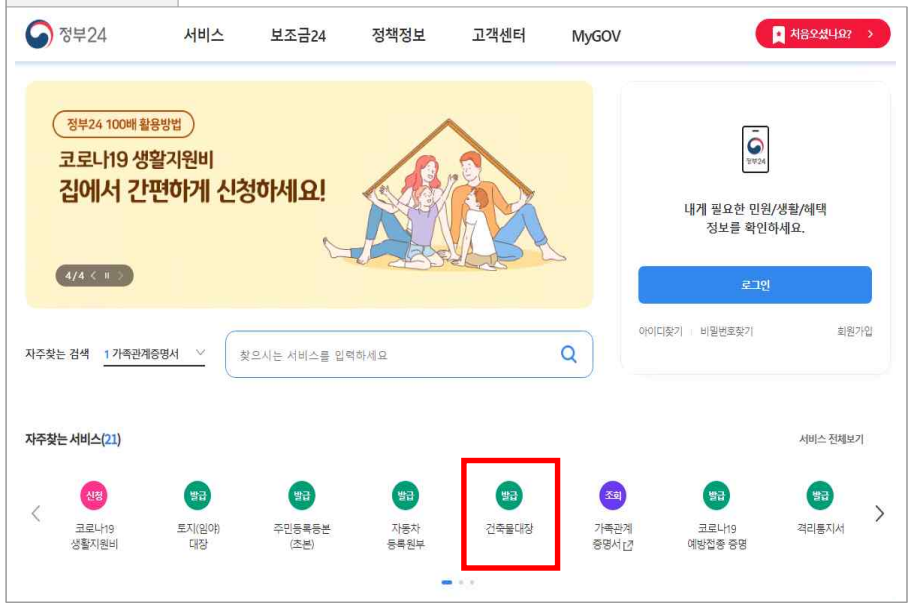

② 건축물 내 근무자, 거주자 및 입주사 등의 현황

③ 화재보험 계약서(보험증권)

④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신고서(사본)

⑤ [부록 1.1]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부록 1.4] 피난·방화시설 및 방염
[부록 1.7]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
[부록 3.2] 인원현황

2. 작성방법

① **[명칭~연락처]** 건축물의 명칭과 도로명 주소를 기재하고 건축물을 관리하는 책임자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작성한다.

- 대표자(책임자)는 회사의 대표, 부서의 최고 책임자, 건물주 등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의 최고 결정권자를 작성한다.
- 건물군을 관리할 경우 해당 서식을 동별로 작성한다.

작성 예시

명 칭	○○경기장			
도 로 명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170			
연 락 처	대표자(책임자)	김○혁	소방안전관리자	심○보
	연락처	0000-0000	연락처	0000-0000

② **[시설현황]** 건축물대장 참고 및 실제 현황을 파악하여 작성한다.

- 수신기 위치 : 수신기가 설치된 위치를 작성한다.
- 규모/구조 : 건축물의 규모와 구조를 건축물대장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후면의 건축물대장 확인 방법을 참고한다.)
- 승강기 : 건축물에 설치된 승강기를 구분하여 체크표시(√) 한다.
- 주차장 : 건축물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을 구분하여 체크표시(√) 하고, 전기차충전소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서식 1.6.3]을 작성한다.
- 계단 : 건축물에 설치된 계단을 구분하여 체크표시(√) 한다. (계단 및 승강기의 구분은 [부록 1.4]를 참고한다.)

작성 예시

시설현황	수신기위치	지하 1층 방재실					
	규모/구조	대상물 급수	1급	주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사용승인일	2007.10.20.
		연면적	40,000㎡	건축면적	9,000㎡	층수	지하 2층 지상 5층
		높이	29m	구조	철골철근 콘크리트	지붕	콘크리트
	승 강 기	☑ 승용		☐ 비상용		☐ 피난용	
	주 차 장	☐ 옥내		☑ 옥외		☑ 전기차충전소 [서식1.6.3] 작성	
		☐ 자주식	☐ 기계식	☑ 자주식	☐ 기계식		
	계 단	☑ 특별피난계단			☐ 직통계단		
		☐ 피난계단			☐ 옥외계단		

※ 건축물대장 확인 방법

<건축물대장>

고유번호	1112350214-1-00214584	민원24접수번호	20161122 - 10215465	명칭	정연빌딩		특이사항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지번	123-4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3		
대지면적	3,825.41	③ 연면적	33,839.81㎡	지역	준주거지역	지구	구역
④ 건축면적	1,616.04㎡	용적률산정용연면적	24,174.8	⑦ 주구조	철근콘크리트	① 주용도	업무시 ⑤ 층수 지하4층, 지상15층
건폐율	42.24%	용적률	631.9	⑥ 높이	56.	⑧ 지붕	스라브 부속건축물
조경면적	㎡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	㎡	건축선 후퇴면적	㎡	건축선 후퇴거리	
지하수위	G.L m	기초형식		설계지내력	t/㎡	구조설계 해석법	

건 축 물 현 황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주1	지4	철근콘크리트조	주차장	2,399.80
주1	…	…	…	…
주1	지1	철근콘크리트조	주차장	2,399.80
주1	1층	철근콘크리트조	업무시설	1,299.38
주1	1층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316.66
주1	2층	철근콘크리트조	사무실	1,616.04
주1	…	…	…	…
주1	15층	철근콘크리트조	사무실	1,616.04

소 유 자 현 황

성명(명칭)	주소	소유권 지분	변동일 / 변동원인
주민(법인)등록번호			
(주)한국개발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23	/	1983.11.29
111111-******			소유권 보존

이 등(초)본은 건축물 대장의 원본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발급일자 : 2017년 12월 5일
담 당 자 : 부동산정보과
전 화 : 02-1234-5678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고유번호	1112350214-1-00214584	민원24접수번호	20161122 - 10215465

구 분	성명 또는 명칭	면허(등록)번호
건축주	(주)한국개발	
설계자	고은건축사사무소	
공사감리자	고은건축사사무소	
공사시공자	홍길동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128대 ㎡	56대 176㎡	대 ㎡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승강기		허가일	1991.03.07
승용 10대	비상용 1대	착공일	1991.05.17
② 오수정화시설		사용승인일	1993.03.07
형식 부패탱크방법		관련주소	
용량 3,250인용		지 번	

<[서식 1.1] 건축물 일반현황>

규모/구조	대상물 급수	1급 ①	주용도	업무시설 ②	사용승인일	1993.03.07.
	③ 연면적	33,839.81㎡ ④	건축면적	1,616.04㎡ ⑤	층수	지하 4층 지상 15층
	⑥ 높이	56.7m ⑦	구조	철근콘크리트 ⑧	지붕	스라브
승 강 기	☑ 승용		☑ 비상용		☐ 피난용	
주 차 장	☑ 옥내		☑ 옥외		☑ 전기차충전소	
	☑ 자주식	☐ 기계식	☑ 자주식	☐ 기계식	[서식1.6.3] 작성	

① 대상물급수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사본) 또는 [부록 1.1]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② 사용승인일 : 점검기한 등 자체점검 시기를 결정하므로 정확히 작성한다. 건축물의 대수선, 증축, 개축 또는 재축의 행위가 있는 경우 최초 사용승인일이 아닌 가장 최신의 사용승인일을 기입한다.

③ 승강기/주차장 : 건축물대장을 참고하되, 실제 건축물에 설치된 승강기, 운영 중인 주차장 현황을 파악하여 작성한다.

③ [운영현황~화재보험]

- 운영시간 : 주용도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간을 작성한다.
  (주간/야간에 대한 기준은 자체적으로 정하여 작성하되, 근무자들이 잠시 근무하거나 주용도의 업무 외 당직근무 등으로 이용되는 시간은 운영시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 인원현황 : 상시인원(거주자, 근무자) 및 최대수용인원을 작성한다.
  (인원현황에 대한 참고사항은 [부록 3.2]를 참고한다.)
- 공공기관 :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해당 여부를 체크표시(√) 한다.
  (해당할 경우 [서식 1.11.5]를 작성하지 않는다.)
- 업무대행 : 소방시설관리업자와 계약 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지 해당 여부를 체크표시(√) 한다. (해당할 경우 [서식 1.8]을 작성한다.)
- 권원분리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해당하는지 해당 여부를 체크표시(√) 한다. (해당할 경우 [서식 1.9]를 작성하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대한 사항은 [부록 1.7]을 참고한다.)
- 화재보험 : 화재보험 계약서(보험증권)를 참고하여 내용을 작성한다.

작성 예시

운영현황	운 영 시 간	☑ 평일	☑ 주간	08시~17시	☑ 휴일	☑ 주간	08시~17시
			☑ 야간	17시~23시		☑ 야간	17시~23시
	인 원 현 황	☑ 근무인원	200명	☐ 거주인원	명	☑최대수용인원	3,000명
	공 공 기 관	☐ 해당 [서식1.11.5] 작성 생략			☑ 해당없음		
	업 무 대 행	☑ 해당 [서식1.8] 작성			☐ 해당없음		
	권 원 분 리	☑ 해당 [서식1.9] 작성			☐ 해당없음		
화 재 보 험		☑ 가입			☐ 미가입		
		보험사	가입기간		가입금액		
		○○보험	2023.01.01.~2023.12.31.		대인	000,000,000원	
					대물	0,000,000,000원	

1.2 건축물 세부현황
1.2.1 구역별 세부현황 (서식 1.2)

1. 작성 전 준비사항

① 건축물대장

② 건축물도면

- 도면 분실 시 [건축물현황도] 세움터 홈페이지(www.eais.go.kr) 열람

세움터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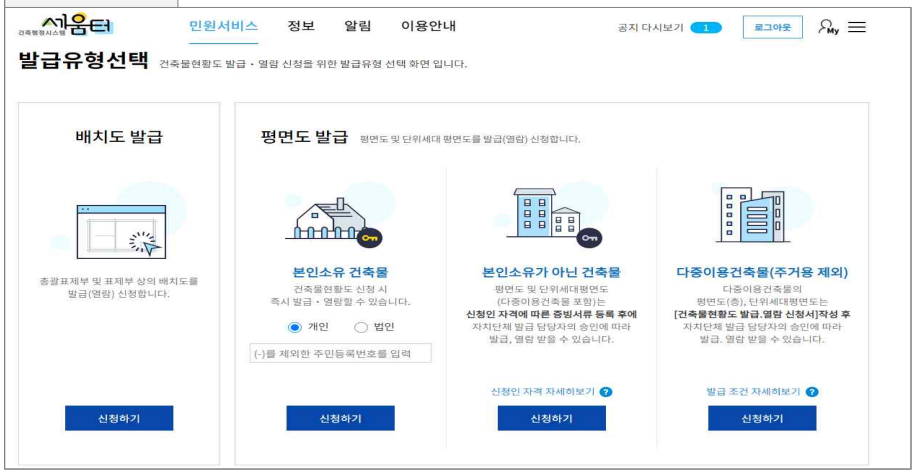

③ 근무자, 거주자 및 입주사 등 현황

2. 작성방법

① **[구역별~(바닥)면적]** 각 구역별(동, 층) 명칭, 용도, 면적을 작성한다.

- 구역별 : 같은 층에 여러 용도가 있을 경우 용도별로 작성하는 것을 권장한다.
- 바닥면적 : 구역별 바닥면적은 건축물대장, 건축물도면 등을 확인하여 작성한다.

② **[근무자 및 거주자]** 각 구역별(동, 층) 상시 근무자 및 거주자의 인원 현황을 파악하여 작성하다.

- 소방안전관리자는 주기적으로 인원현황을 확인하고 변동사항 발생 시 소방계획서에 반영해야 한다.

③ **[관리주체, 담당자(연락처)]** 각 구역별(동, 층) 관리주체, 해당 구역 관리 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작성한다.

작성 예시

구역별		명칭/용도	(바닥)면적	근무자 및 거주자				관리주체 (입주사)	담당자 (연락처)
				평일		휴일			
동	층			주간	야간	주간	야간		
본관	지하 2층	기계실	800㎡	7	2	2	2	○○관리공단	심○보 0000-0000
		전기실	1,000㎡	-	-	-	-	○○관리공단	심○보 0000-0000
	지하 1층	사무실	1,000㎡	25	-	-	-	○○관리공단	심○보 0000-0000
		방재실	100㎡	3	1	1	1	○○관리공단	심○보 0000-0000
	1층	경기장	8,400㎡	-	-	-	-	○○관리공단	심○보 0000-0000
		○○카페	100㎡	2	-	-	-	○○카페	정○창 0000-0000
		○○편의점	50㎡	1	1	1	1	○○편의점	김○현 0000-0000
	~								
	5층	창고	500㎡	-	-	-	-	○○관리공단	심○보 0000-0000
	PH	E/V실 물탱크실	50㎡	-	-	-	-	○○관리공단	심○보 0000-0000

※ 건축물대장에서 구역별 바닥면적 확인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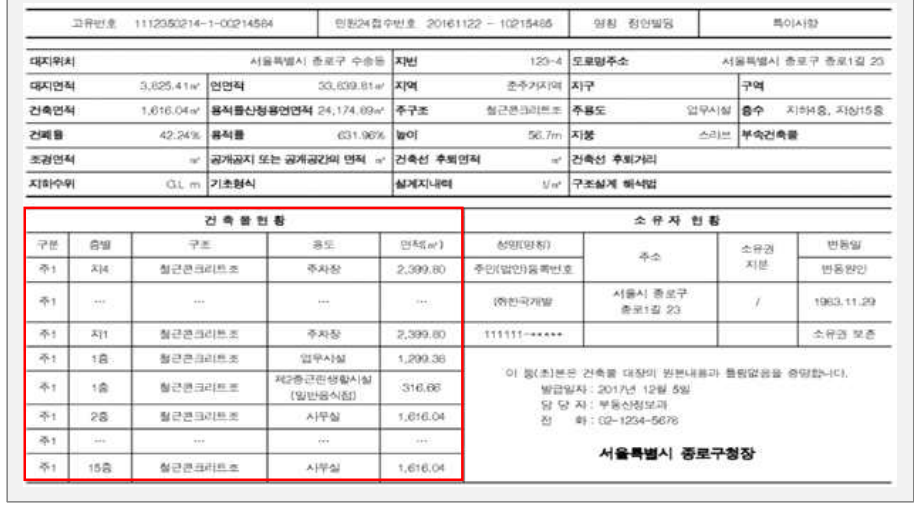

1.2 건축물 세부현황
1.2.2 화재취약장소/인명피해 우려장소 현황 [서식 1.2]

1. 작성 전 준비사항

① 건축물도면

- 도면 분실 시 [건축물현황도] 세움터 홈페이지(www.eais.go.kr) 열람

세움터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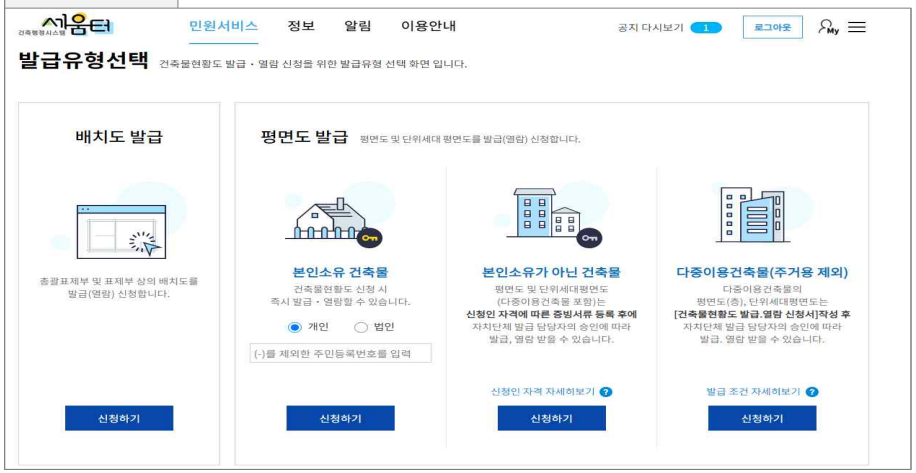

② 근무자, 거주자 및 입주사 등 현황

③ 화재발생 및 인명피해 우려요소에 대한 현황

2. 작성방법

① **[화재취약장소~화재위험요소]** 구역별(동별, 층별) 화재취약장소의 위치를 작성하고 화재위험요소를 체크표시(√) 한다.

- 화재취약장소 : 구역별(동별, 층별)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로서 주로 대상물에서 가연성 물질을 저장·취급하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를 작성한다.
- 위치 : 해당 장소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 화재위험요소 : 해당 장소의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요소를 체크표시(√) 한다.

② **[인명피해 우려장소~시건장치]** 구역별(동별, 층별) 인명피해 우려장소의 위치를 작성하고 예상되는 피해요소를 체크표시(√) 한다.

- 인명피해 우려장소 : 화재발생 시 사람이 생명을 잃거나 다치는 피해가 예상되는 장소로서 주로 피난 시 병목현상 우려가 있거나 피난약자가 다수 있는 장소를 작성한다.
- 위치 : 해당 장소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 시건장치 : 해당 장소의 시건장치 설치 유무에 대해 체크하고 설치 되어있을 경우 비상 시 개폐 방법 등을 작성한다.

작성 예시

화재취약장소	위치	화재위험요소	
흡연장	경기장 동문 앞	☐ 전기적 요인 ☐ 기계적 요인 ☐ 화학적 요인 ☐ 가스누출(폭발)	☐ 자연재해 ☑ 부주의 ☐ 기타( )
(추가 가능)		☐ 전기적 요인 ☐ 기계적 요인 ☐ 화학적 요인 ☐ 가스누출(폭발)	☐ 자연재해 ☐ 부주의 ☐ 기타( )
인명피해우려장소	위치	시건장치	
관중석과 출구 사이의 통로	1~2층 경기장	설치유무	☑ 유 ☐ 무
		개폐방법 (열쇠위치, 암호 등)	방재실 출입구 우측 마스터키 비치
(추가 가능)		설치유무	☐ 유 ☐ 무
		개폐방법 (열쇠위치, 암호 등)	

1.3 건축물 위치 · 운영현황 및 소방차 세부진입 계획 [서식 1.3]

1. 작성 전 준비사항

① 건축물의 위치현황(인터넷 지도 등 대상물 주변 약도)

② 구역별(동, 층) 용도 및 입주사 현황

③ 소방차 진입경로(대상물의 배치도면)

④ 건축물 주변 옥외소화전 및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등 소방시설 현황

⑤ [부록 1.2] 소방차 세부진입계획

2. 작성방법

① **[건축물 위치~건축물현황]** 건축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주변 약도, 건축물 전경 등을 첨부하고, 건축물의 운영 현황을 도식화하여 첨부한다.

작성 예시

건축물 위치

건축물 운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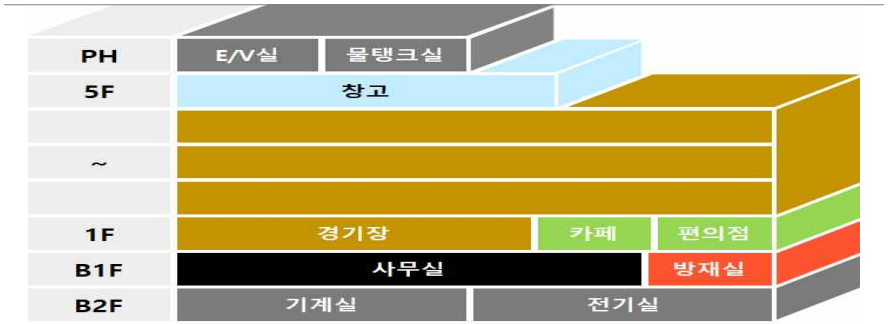

② **[소방차 진입경로]** 배치도면을 확인하여, 대지(혹은 부지) 내에 소방차가 진입 가능한 건축물까지의 경로를 파악하여 첨부한다.

③ **[소방차 진입장소]** 소방차 출동 시 소방차의 진입장소 및 소방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수신기, 옥외소화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등의 위치 및 수신기까지 진입경로 등을 건축물 평면도(또는 위성사진)에 표시하여 첨부한다.

작성 예시

소방차 진입경로

소방차 진입장소 및 주변 소방시설 현황 | 수신기 위치 | 지하 1층 방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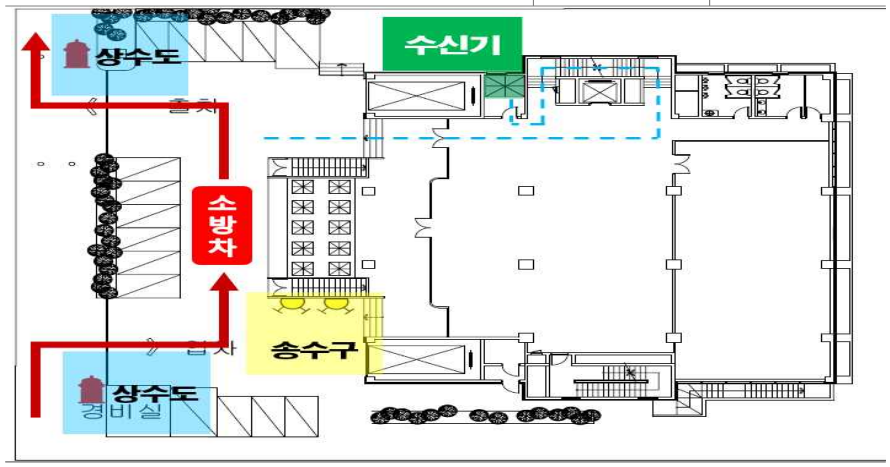

④ [세부사항]

- 인근 소방서 또는 119안전센터와의 거리와 예상 도착시간을 파악한다.
- 소방차 전용구역 : 대지(혹은 부지) 내에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확보한 공간을 말한다.
- 진입 장애요인 : 확보한 진입경로에서 적재물, 공사 등의 장애요인을 말한다. 소방차 진입경로의 장애요인은 현장 상황에 따라 다양한 장애요인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장애요인 등의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개소 이상의 소방차 진입경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 소방차의 주차장 진입 시 소방활동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 소방차 세부진입계획에 관한 사항은 [부록 1.2]를 참고한다.

작성 예시

세부사항	관할소방서 (119안전센터)	영등포소방서	최단거리	2km	예상도착시간	8분
	소방차 전용구역 유무		소방차 진입 장애요인 유무		주차장진입 가능여부	
	무		1층 소방차 주차공간 협소		불가능	

1.4 소방시설 현황 [서식 1.4]

1. 작성 전 준비사항

① 소방시설 설계도면

② 전년도(또는 금년도) 소방시설 자체점검표 또는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③ (별도의) 작성·보관 중인 소방시설 현황 리스트

④ [부록 1.3] 소방시설

2. 작성방법

① [소화설비~소화활동설비] 소방시설 설계도면과 현장 확인을 통해 설치된 소방시설에 체크표시(√) 한다.

- 소방시설의 종류와 정의는 [부록 1.3]을 참고한다.
- 건물군을 관리할 경우 해당 서식을 동별로 작성한다.
- 자진설비는 자체점검 시 점검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정상작동 및 안전을 위해 다른 소방시설과 마찬가지로 소방시설 현황에 체크표시(√) 하고 자체점검 시 누락이 없도록 한다.

작성 예시

■ 대상명 : ○○경기장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소 화 설 비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 옥내소화전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할론소화설비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분말소화설비
	□ 미분무소화설비	□ 강화액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1.5 피난 · 방화시설 및 제연, 방염 관련 현황
1.5.1 피난 · 방화시설 및 제연, 방염 관련 일반현황 〔서식 1.5〕

1. 작성 전 준비사항

① 건축물도면

- 도면 분실 시 [건축물현황도] 세움터 홈페이지(www.eais.go.kr) 열람

세움터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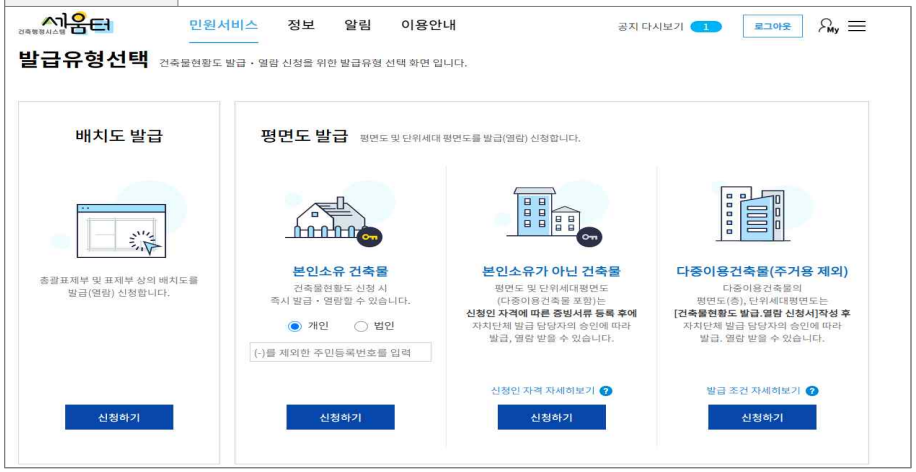

②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또는 방염성능검사확인 표시 등

③ 전년도(또는 금년도) 소방시설 자체점검표 또는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④ 방화구획도 및 소방시설 중 제연설비 설계도면

⑤ [부록 1.4] 피난·방화시설 및 방염

2. 작성방법

① **[피난시설~방화시설]** 소방도면과 현장 확인을 통해 설치된 피난·방화시설에 체크표시(√) 한다.

- 피난·방화시설의 종류와 정의는 [부록 1.4]를 참고한다.
- 피난층의 위치와 지상으로 나갈 수 있는 출입구의 개수를 작성한다. (피난층 : 곧바로 지상으로 나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
- 건물군을 관리할 경우 해당 서식을 건축물 별로 작성한다.

작성 예시

■ 대상명 : ○○경기장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피난시설	계단	□ 직통계단			
		☑ 피난계단			
		□ 특별피난계단			
		□ 옥외계단			
	기타시설	□ 대피공간			
		□ 경량칸막이			
		□ 피난안전구역			
		□ 기타 ( )			
		□ 옥상광장	개폐방법		
	피난층	위치	1층	출입구	8개소
방화구획	해당유무	☑ 면적 별	☑ 층 별	□ 용도 별	
	☑유 □무	☑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유 ☑무)			
		☑ 방화셔터 (출입구 ☑유 □무)			
		□ 방화스크린			

② **[제연구획]** 제연설비의 설치유무를 체크표시(√)하고, 설치되어 있을 경우 제연설비 설계도면을 참고하여 설치된 제연설비 종류와 연기를 제어하는 구역을 확인하여 작성한다.

③ **[방염~내부마감재료]** 방염물품 설치유무를 체크표시(√)하고, 설치되어 있을 경우 방염물품의 명칭, 위치와 방염성적서의 비치장소를 작성하고 건축물도면을 참고하여 해당되는 내부마감재료에 모두 체크표시(√) 한다.

-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및 방염대상물품은 [부록 1.4]를 참고한다.

작성 예시

제연구획	해당유무	구분		구역 위치			
	☑유 □무	☑ 거실 제연 □ 전실 제연		전 층 거실제연			
방염	해당유무	☑ 물품명	벽지, 인테리어필름	위치	전층	성적서 비치장소	지하 1층 방재실
	☑유 □무	☑ 물품명	합판, 장	위치	전층	성적서 비치장소	지하 1층 방재실
		□ 물품명		위치		성적서 비치장소	
내부마감재료		☑ 불연재료	□ 준불연재료	□ 난연재료	□ 기타 ( )		

1.5 피난 · 방화시설 및 제연, 방염 관련 현황
1.5.2 방화 · 제연구획 현황도 〔서식 1.5〕

1. 작성 전 준비사항

① 방화구획도

② 소방시설 중 제연설비 설계도면

③ [부록 1.4] 피난·방화시설 및 방염

2. 작성방법

① 방화구획도 및 제연설비 설계도면을 참고하여 방화·제연구획 현황도를 구역별(동, 층)로 첨부한다.

② 방화구획 등에 관한 사항은 [부록 1.4]를 참고한다.

작성 예시

■ 대상명 : ○○경기장

방화·제연구획 현황	구역	지하 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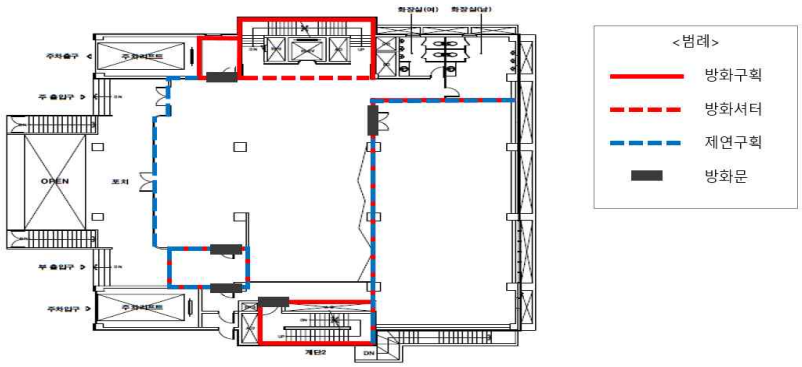

1.6 기타시설 현황
1.6.1 기타시설 일반현황 〔서식 1.6〕

1. 작성 전 준비사항

① 건축물도면

- 도면 분실 시 [건축물현황도] 세움터 홈페이지(www.eais.go.kr) 열람

세움터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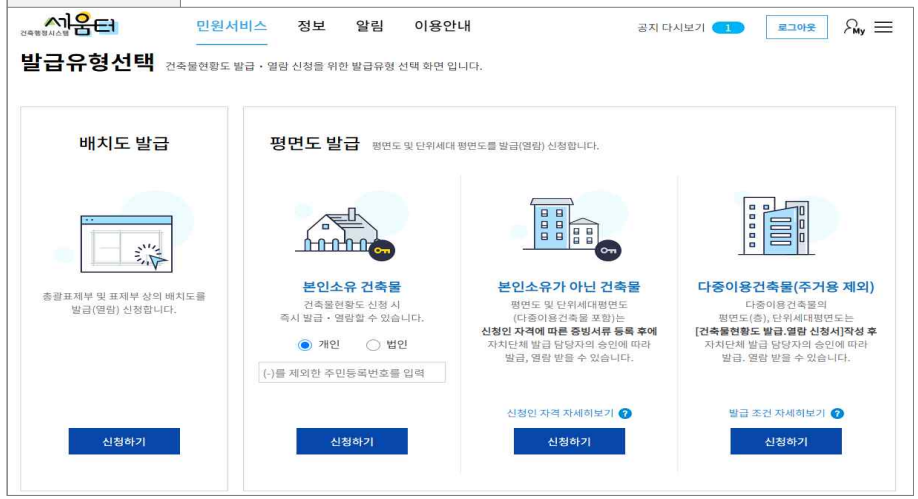

②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시 전기설비 점검결과 기록표

③ 가스안전관리자 선임 시 안전검검표

④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시 취급일지 또는 일반점검표

⑤ [부록 1.5] 기타시설 관리

2. 작성방법

① **[전기시설~위험물시설]** 설치된 시설의 현황을 작성하고 전기·가스·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관련법에 따른 유지·관리 및 점검 등을 수행한다.

② **[흡연장]** 흡연장 운영 현황 및 기타 화재취약장소에 대한 현황을 작성한다.

- 위험물의 구분, 특징, 혼재기준 및 전기·가스·위험물에 따른 화재예방요령 등의 참고사항은 [부록 1.5]를 참고한다.

작성 예시

전 기 시 설	수전용량	9,000kW		-		
	변압기용량	4,500kVA	설치위치	지하 2층 전기실	수량	2대
	비상발전기	2,000kW	설치위치	지하 2층 전기실	수량	2대
	비고					
가 스 시 설	가스종류	사용위치	용도	정압기 위치	차단기구	차단기 위치
	LPG	지하 2층 기계실	보일러 연료	1층 외부 북동편	☑유 □무	지하 2층 기계실
	LNG	2층 식당	취사	1층 외부 북동편	☑유 □무	식당 주방 내부
	(추가가능)				□유 □무	
	□ 해당없음					
	비고					
위 험 물 시 설	구분	설치위치	유별	품명	보유량(ℓ,kg)	지정수량의 배수
	옥내탱크 저장소	지하 2층 발전기실	제4류	제2석유류 (경유)	1,200	1.2
	(추가가능)					
	□ 해당없음					
	비고					
흡 연 장	설치여부	☑ 유 □ 무	위치	1층 서편 출입구 인근	소화기 비치	☑ 유 □ 무

1.6 기타시설 현황
1.6.2 기타시설 현황도

[서식 1.6]

1. 작성 전 준비사항

① 작성된 [서식 1.6.1] 기타시설 일반현황

② 건축물도면

- 도면 분실 시 [건축물현황도] 세움터 홈페이지(www.eais.go.kr) 열람

세움터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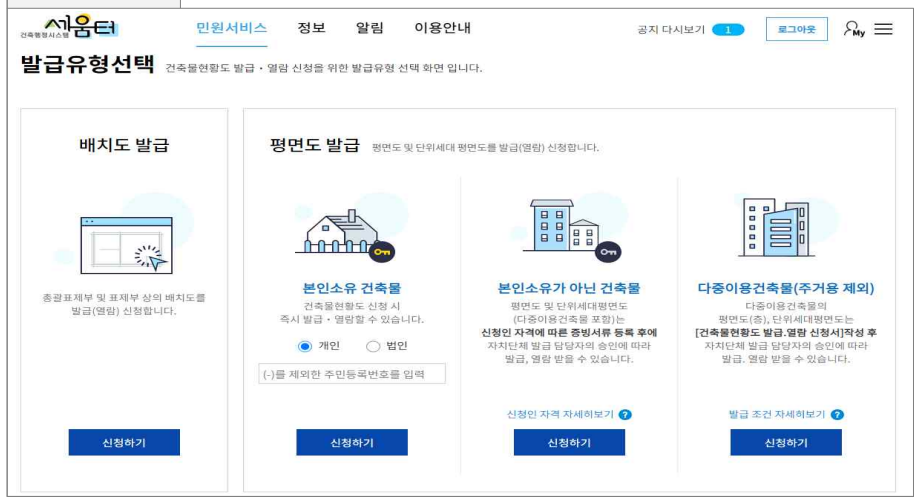

2. 작성방법

① [서식 1.6.1] 참고 및 현장 확인을 통해 건축물에 설치된 전기, 가스, 위험물 및 기타시설의 현황도를 구역별(동, 층)로 첨부한다.

- 전기시설 : 각 구역별(층별) 변압기, 배전반, 배선용 차단기 등 전기시설의 위치 현황도를 첨부한다.
- 가스시설 : 각 구역별(층별) 고압가스용기 저장실, 가스 차단밸브, 정압기 등 가스시설의 위치 현황도를 첨부한다.
- 위험물시설 : 옥내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옥외저장소 등 저장, 취급하는 위험물시설의 위치 현황도를 첨부한다.

작성 예시

■ 대상명 : ○○경기장

전기시설 현황도	구역	지하 2층 전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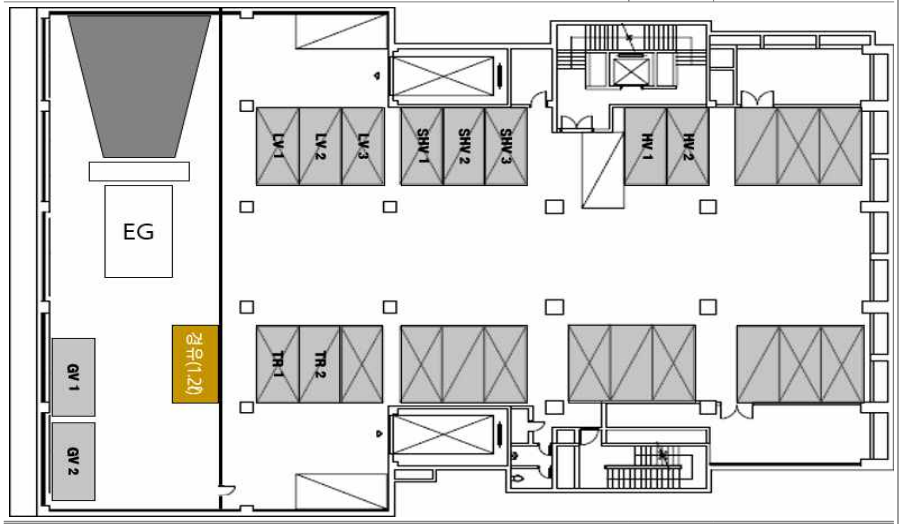

가스시설 현황도	구역	1층 외부 북동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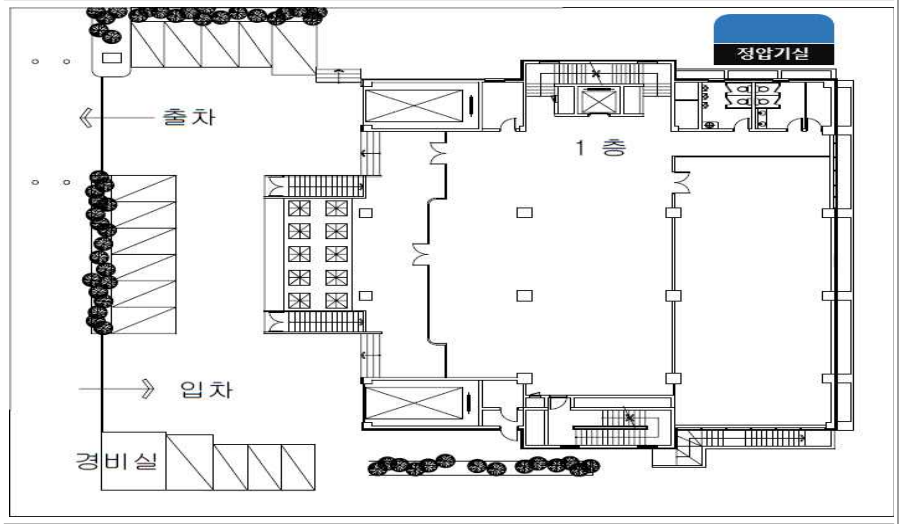

작성 예시

위험물시설 현황도	구역	지하 2층 발전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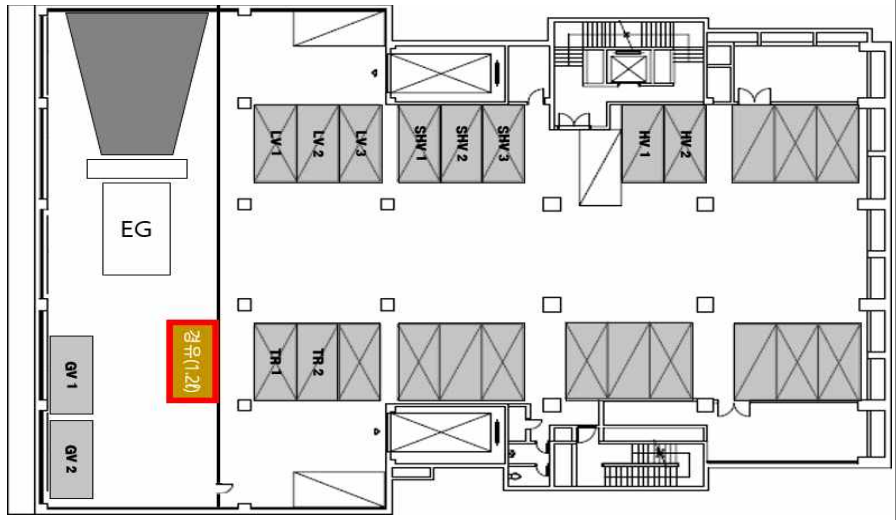

흡연실 현황도	구역	1층 외부 남동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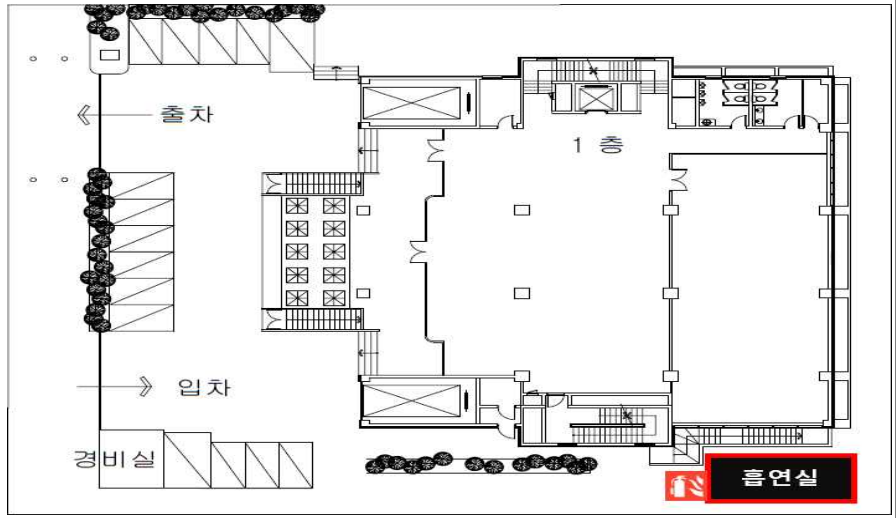

1.6 기타시설 현황
1.6.3 전기차충전소 현황 〔서식 1.6〕

1. 작성 전 준비사항

① 전기차충전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 도면

② 전기차 화재 대응장비의 현황

③ 전기차충전기의 제원

2. 작성방법

① 전기차충전소 위치 : 전기차충전소 설치 시 충전소의 위치 현황도를 첨부하고 전기차충전소의 충전방식, 위치 및 수용대수를 작성한다.

작성 예시

전기차충전소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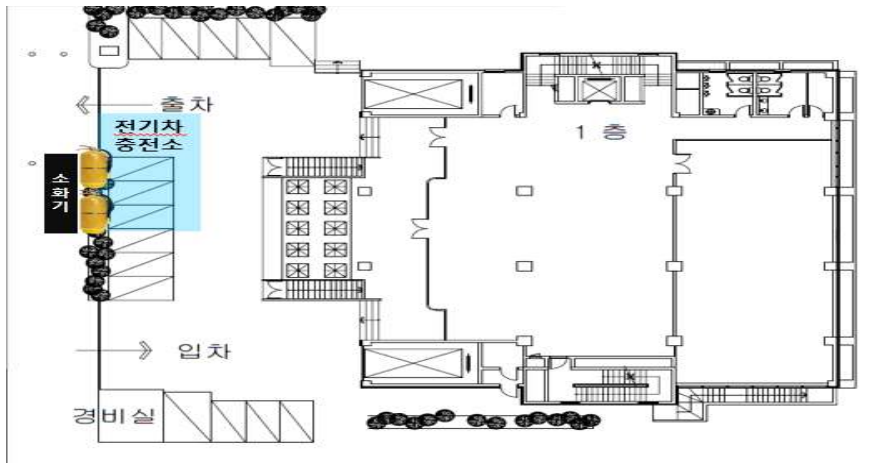

충전방식	☑급속 ☐완속	설치위치	지하 1층 주차장	수용대수	3대

② 화재 시 대응장비 현황 : 보유중인 전기차 화재 대응장비에 체크표시(√) 하고 장비의 명칭, 보관장소를 작성하고 장비사진을 첨부한다.

작성 예시

화재 시 대응장비 현황

장비명칭	D급 소화기	장비명칭	질식소화덮개
보관장소	전기차충전소 뒤편	보관장소	지하 1층 방재실
화재 시 대응장비	☑ 소화기 ☑ 질식소화덮개	☑ 옥내소화전 ☐ 기타( )	☑ 스프링클러설비

1.7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등 일반현황
1.7.1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등 선임현황 (서식 1.7)

1. 작성 전 준비사항

①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등 선임 신고된 자격증 또는 선임 신고서(사본)

② [부록 1.1]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2. 작성방법

① **[구분~성명]** 선임자격 및 안전관리자의 소속, 성명을 작성한다.

- 소방안전관리(보조)자와 위험물, 전기, 가스, 승강기 등 각각의 안전관리자 현황을 관리하며, 안전관리자 변경 시 수정하여 소방계획서에 반영한다.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부록 1.1]을 참고한다,

② **[선임일자]** 소방서 등에 신고하여 선임된 날짜를 작성한다.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양수, 경매 등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거나 해임, 퇴직 등으로 업무가 종료된 경우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한다.

③ **[실무교육 수료일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수료일자를 작성한다.

- 실무교육 수료일자는 후면의 '실무교육 수료일자 확인 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④ **[담당업무]** 안전관리자의 업무범위를 작성한다.

-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업무범위는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범위 내에서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자체적으로 협의하여 정한다.

작성 예시

구분	소속	선임자 성명	선임일자	실무교육 수료일자	담당업무
소방안전관리자	○○관리공단	심○보	2019.03.06	2021.08.07.	·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관리공단	임○우	2019.09.08.	2021.10.07.	·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관리공단	성○운	2021.05.02.	2021.10.22.	·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위험물안전관리자	○○관리공단	김○찬	2022.01.01.	2022.04.22.	· 위험물안전관리자 업무
전기안전관리자	○○관리공단	문○희	2021.12.01.	-	· 전기설비 유지·관리
가스안전관리자	○○관리공단	조○래	2021.07.22.	-	· 가스설비 유지·관리
(추가가능)					

※ 실무교육 수료일자 확인 방법

①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② 우측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한다. (실명확인 로그인 권장)

③ 우측 상단의 나의 강의실 클릭

④ 좌측의 교육이수 현황 클릭하여 교육 받은 이력 확인

1.7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등 일반현황
1.7.2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서식 1.7)

1. 작성 전 준비사항

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된 자격증 또는 선임신고서(사본)

2. 작성방법

① **[현황표]** 대상명, 소방안전관리자 성명 및 선임날짜, 대상물 등급, 소방안전관리자 근무 위치 및 수신반의 위치를 작성한다.

② 현황표의 규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크기, 재질, 글씨체를 정할 수 있다.

가. 크기 : A3 용지(가로 420밀리미터 × 세로 297밀리미터)
나. 재질 : 아트지(스티커) 또는 종이
다. 글씨체
1)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나눔고딕Extra Bold 46포인트(흰색)
2) 대상명: 나눔고딕Extra Bold 35포인트(흰색)
3) 본문 제목 및 내용: 나눔바른고딕 30포인트(검정색)
4) 하단내용: 나눔바른고딕 24포인트(검정색)
5) 연락처: 나눔고딕Extra Bold 30포인트(흰색)
라. 바탕색 : 남색(RGB: 28,61,98), 회색(RGB: 242,242,242)

③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에 소방안전관리자 부재 시 출동한 소방관이 수신기까지 찾아갈 수 있도록 수신기까지 이동경로를 추가하여 작성하는 것을 권장한다.

작성 예시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대상명 : ○○경기장)

이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 심 ○ 보 (선임일자 : 2019년 03월 06일)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 : 1급

□ 소방안전관리자 근무 위치 : 지하 1층 방재실
[수 신 기 위 치] : 지하 1층 방재실
[수신기까지 경로] : 현 출입구 → 중앙계단 → 지하 1층 출입구 좌측 방재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이 표지를 붙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연락처 : 044-000-0000

④ 작성된 현황표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 및 소방대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각 대상물의 여건 및 현황에 맞춰 주 출입구 5m 이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게시 예시

1.7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등 일반현황
1.7.3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대리자 지정현황 (서식 1.7)

1. 작성 전 준비사항

①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내부 문서 등

2. 작성방법

① **[대리자 성명]** 소방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안전관리자의 해임·퇴직과 동시에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대리자로 지정하여 안전관리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없는 건물일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소지하거나 소방안전관리자를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관계인을 대리자로 지정한다.

② **[대리기간]** 30일 이내로 작성한다. 만일 소방안전관리자의 사유로 30일 이상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작성 예시

구분	선임자 성명	대리자 성명	대리기간	지정사유
소방안전관리자	심○보	임○우	2023.01.27.~02.02.	병가
(추가가능)				

1.8 업무대행 현황 (서식 1.8)

1. 작성 전 준비사항

①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계약서

② [부록 1.6]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유의사항

2. 작성방법

① **[대행여부]** 대상물이 소방시설관리업자와 계약을 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지 여부를 체크표시(√) 한다.

- 업무대행을 하고 있지 않을 경우 해당없음에 체크표시(√) 하고 아래 내용은 작성하지 않는다.
-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이 가능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는 [부록 1.6]을 참고한다.

작성 예시

구 분	내 용			
대행여부	☐ 해당없음	(아래 내용 작성 생략)		
	☑ 해당	☑ 1급(11층 이상)	☐ 2급	☐ 3급

② **[업체현황]** 업무대행 업체의 업체명, 업체주소, 등록번호 및 연락처 등을 작성한다.

③ **[계약사항]** 법에서 정한 업무대행 업체의 업무범위 등을 상세히 작성한다.

- 업무대행 소방점검 기술인력은 업무대행 시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점검표'를 작성하고, 소방안전관리자(또는 관계인)에게 점검결과를 설명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 횟수 및 시기를 명확히 해야 한다.

④ **[관리감독]** 소방안전관리자가 수행할 감독사항 등을 작성한다.

-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참고사항은 [부록 1.6]을 참고한다.

작성 예시

업체현황	업 체 명	○○소방
	업체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000
	등록번호	0000-000000
	연락처	00-0000-0000
계약사항	계약기간	2023.01.01.~2023.12.31.
	점검주기	월 1회
	계약범위	1.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3. 기타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관리감독	감독사항	점검 후 점검내용 확인

⑤ 소방점검 기술인력은 대상물 점검 시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점검표'를 작성하고 소방안전관리자(또는 관계인)에게 점검결과를 설명하고 제출해야 한다.

⑥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점검표 보관방법]** 소방안전관리자는 점검표 내용을 확인 후 자체 보관한다.

작성 예시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점검표 보관방법	☐ 소방계획서 내 별첨	☑ 별도 파일철
	☐ 전자문서	☐ 기타(　　)

1.9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 구성현황
1.9.1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 구성 (서식 1.9)

1. 작성 전 준비사항

① 임직원 현황표 및 조직도(관리권원별 별도 취합)

② 기타 소방계획서 작성 시 필요 서류

③ [부록 1.7]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

2. 작성방법

① **[구분~위촉일]**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대상물은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해야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타부서, 입주사 등과 협의가 필요할 경우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구분 : 협의장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대표자 또는 책임자로 지정하고 부협의장은 협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한다. 또한, 간사는 (총괄)소방안전관리자, 협의회의 위원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지정한다.
- 소속 및 직책, 성명 : 위촉된 위원의 회사(팀)명, 직책, 이름 등을 기재한다.
- 위촉일 : 위원으로 위촉된 날짜를 기재한다.

작성 예시

구 분	소속 및 직책	성명	위촉일
협의장	○○관리공단 총무부장	김○혁	2022.12.09.
부협의장	○○관리공단 안전관리과장	김○영	2022.12.09.
간사(소방안전관리자)	○○관리공단 시설팀장	심○보	2022.12.09.
위 원	○○관리공단 시설팀	임○우	2022.12.09.
위 원	○○관리공단 시설팀	김○찬	2022.12.09.

② **[회의록 보관방법]** 원하는 보관방법에 체크표시(√) 한다.

작성 예시

회의록 보관방법	☐ 소방계획서 내 별첨	☑ 별도 파일철
	☐ 전자문서	☐ 기타(　　)

3. [집회용도] 참고사항

① 부서별, 입주사별 등 대표자를 위원으로 구성하여 대상물 전반의 소방안전 관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② 협의회를 개최할 때에는 참석위원들에게 사전에 회의주제와 준비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회의 관련 자료들을 배포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이상) 협의장이 소집하고 개최·운영을 권장한다.

④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 위원 중 상해, 질병, 여행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촉자격을 충족하는 자로 위원을 재위촉하여 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1.9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 구성현황
1.9.2 회의록 (서식 1.9)

1. 작성 전 준비사항

①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 구성현황 및 회의자료

② [부록 1.7]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

2. 작성방법

① **[회의일시~건의사항]**

- 회의일시 및 장소 : 회의를 개최한 날짜, 장소를 작성한다.
- 회의내용, 의결사항, 건의사항 : 구체적인 협의사항을 회의내용에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그 안건에 대하여 의사를 결정하고 의결사항에 기입한다.

② **[회의내용]**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 개최 시 협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총괄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권한에 대한 사항
-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의 소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의 소방훈련 및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 공용 부분의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동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참석위원]** 회의에 참석한 모든 위원들의 이름을 작성하고 참석을 확인하는 본인서명 또는 날인한다.

작성 예시

회의일시	2022.12.23. 13:00~14:00			회의장소	3층 세미나실	
회의내용	2023년 소방계획서 심의					
의결사항	원안에 동의함					
건의사항	해당없음					
참석위원	구분	성명	확인(서명)	구분	성명	확인(서명)
	협의장	김○혁	김○혁	(추가가능)		
	부협의장	김○영	김○영			
	간 사	심○보	심○보			
	위 원	임○우	임○우			
	위 원	김○찬	김○찬			
	위 원	홍○훈	홍○훈			
	위 원	이○범	이○범			

1.9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 구성현황
1.9.3 입주사 현황 (서식 1.9)

1. 작성 전 준비사항

① 구역별(동, 층) 입주사 현황

② 입주사와의 계약 서류 등

2. 작성방법

① **[업체명~구역]** 구역별(동, 층) 입주사의 업체명, 용도, 입주사의 위치를 작성한다.

② **[대표자(책임자), 연락처]** 해당 입주사 대표자(책임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작성한다.

작성 예시

번호	업체명	용도	구역	대표자 (책임자)	연락처
1	㈜○○	업무시설	3~4층	홍○훈	0000-0000
	(추가가능)				

③ **[입주사별 관리현황 보관방법]** 원하는 보관방법에 체크표시(√) 한다.

작성 예시

입주사별 관리현황 보관방법	☐ 소방계획서 내 별첨	☑ 별도 파일철
	☐ 전자문서	☐ 기타( )

1.9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 구성현황
1.9.4 입주사별 관리현황 (서식 1.9)

1. 작성 전 준비사항

① 작성된 [서식 1.9.3] 입주사 현황

② 입주사와의 계약 서류 등

③ [부록 1.5] 기타시설 관리

[부록 제2장] 자위소방대 운영계획

[부록 제3장] 피난계획

2. 작성방법

① 해당 서식은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입주사별 소방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작성한다.

② **[업체명~일반현황]** 입주사의 일반현황을 작성한다.

- 대형 건물이나 피난경로가 제한된 건축물에서는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는 입주사별로 자위소방대를 구성하고 주기적인 교육과 훈련 등을 실시하여 자체 대응능력을 강화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 개별로 보안시설을 설치한 입주사의 경우 화재 시 보안 해제 방법 등을 고려한 피난계획을 수립한다.

작성 예시

업 체 명	㈜○○					
일반현황	관리구역	3~4층				
	용 도	업무시설				
	운영시간	☑ 평일	☑ 주간	09시~18시	☐ 휴일	☐ 주간 -
			☐ 야간	-		☐ 야간 -
	연 락 처	대표자 (책임자)	홍○훈		개인	010-0000-0000
					사무실	0000-0000
	입주기간	2015.03.15.~2025.03.14.				
	개별보안	☐ 예	☑ 아니오	비상연락처	0000-0000	

③ **[인원현황]** 해당 입주사의 상시인원(근무자 및 거주자) 및 방문자 등 인원 현황을 작성한다.

작성 예시

인원현황	상시인원	☑ 근무자	50명	☐ 거주자	명	☐ 방문자	약 명
		☑ 평일	☑ 주간	50명	☐ 휴일	☐ 주간	명
			☐ 야간	명		☐ 야간	명

④ **[위험물 시설 등~기타]** 입주사에서 취급, 보관하는 위험물, 특수가연물 및 발화요인의 화기 및 기타 화재취약장소에 대한 현황을 작성한다.

- 위험물의 구분, 특징 및 혼재기준은 [부록 1.5]를 참고한다.

작성 예시

위험물 시설 등	시설현황	☐ 위험물 ☐ 특수가연물			
		품명	수량	위치	특이사항
		해당없음			
		비고.			
	화기취급	☐ 조리(취사)시설		☑ 개인전열기 사용	
		☐ 개별 난방		☐ 기타 열원시설( )	
기 타	※ 회의실 우측 공실을 사무용품 저장창고로 이용 중 (종이, 의자, 책상 등 다수의 가연물 보관)				

⑤ **[자위소방대 현황~자위소방대 편성표]** 자위소방대를 입주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지 여부를 체크표시(√) 하고, 자위소방대 운영 현황 및 자위소방대 편성표를 작성한다.

- 자위소방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록 제2장]을 참고한다.

⑥ **[피난약자 피난계획]** 해당 입주사 상시인원(근무자 및 거주자) 중 피난약자가 있을 경우 피난약자 유형에 따른 피난계획을 수립한다.

- 피난계획수립 사항은 [부록 제3장]을 참고한다.

작성 예시

자위소방대 현황

운영여부	☑ 운영 ☐ 해당없음 (자위소방대 부분 작성 생략)					
운영현황	편성인원	15명	근무형태	☑ 상근직 ☐ 교대직 (조 교대)		
자위소방대	☑지휘통제팀	1명	☑비상연락팀	4명	☑초기소화팀	6명
	☑피난유도팀	4명	☐ 응급구조팀	명	☐ 방호안전팀	명

자위소방대 편성표

구 분	소 속	성 명	개별임무	비상연락체계	
				사무실	개인
지휘통제팀	㈜○○	홍○훈	관리구역 상황통제	0000-0000	0000-0000
비상연락팀	㈜○○	조○원	119 및 방재실 연락	0000-0000	0000-0000
초기소화팀	㈜○○	박○철	소화기, 소화전 이용 초기소화	0000-0000	0000-0000
~					
(추가가능)					

피난약자 피난계획(상시인원)

피난약자	☐ 노인	☑ 임산부	☐ 영유아	☐ 어린이	☑ 장애인	
성 명	활동 구역	피난약자 유형	연락처 (피난약자)	피난계획	피난보조	
					보조자	연락처
김○아	3층	임산부	0000-0000	피난보조자 이○호의 보조를 받아 피난	이○호	0000-0000
김○성	4층	청각장애인	0000-0000	피난보조자 임○찬의 보조를 받아 피난	임○찬	0000-0000
(추가가능)						

1.10 소방안전관리자 자체점검 및 업무 수행
1.10.1 연간 점검 계획 [서식 1.10]

1. 작성 전 준비사항

① 건축물대장 또는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일반용)

②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에 필요한 서류

③ 전년도(또는 금년도) 소방시설 자체점검표 또는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④ [부록 1.8]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업무 및 업무 수행 기록

[부록 1.12] 자체점검

2. 작성방법

① **[건축물 사용승인일]** 건축물대장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건축물의 대수선, 증축, 개축 또는 재축의 행위가 있는 경우 최초 사용승인일이 아닌 가장 최신의 사용승인일을 기입한다.)

② **[작동점검]**

- 자체점검의 구분, 대상 등 세부내용은 [부록 1.12]를 참고한다.
- 점검시기 :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해야 한다. 다만, 종합점검 대상일 경우에는 종합점검을 받을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
- 결과보고시기 : 소방서에 점검결과를 제출한 날짜로 작성한다.
(날짜는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로 작성한다.)
- 제출처 : 건축물의 주소에 맞는 관할소방서 또는 안전센터를 파악하여 작성한다.
- 점검자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관계인이 자체적으로 실시(자체)할 것인지 소방시설관리업자를 통해 실시(외주)할 것인지 체크표시(√) 한다.

작성 예시

건축물 사용승인일 : 2007년 10월 20일				
☑ 작동점검	점검시기	2023년 4월		
	결과보고시기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	제출처	영등포소방서
	점 검 자	☐ 자체 ☑ 외주		

③ **[종합점검]**

- [부록 1.12]를 확인하여 종합점검 대상인지 확인하고 해당되는 부분에 체크표시(√)를 한다. 다만,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종합점검을 실시하지 않는다.
- 점검시기 :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
- 결과보고시기 : 소방서에 점검결과를 제출한 날짜로 작성한다.
(날짜는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로 작성한다.)
- 제출처 : 건축물의 주소에 맞는 관할소방서 또는 안전센터를 파악하여 작성한다.
- 점검자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관계인이 자체적으로 실시(자체)할 것인지 소방시설관리업자를 통해 실시(외주)할 것인지 체크표시(√) 한다.

작성 예시

☑ 종합점검	점검시기	☐ 최초점검	년 월	
		☑ 종합점검	2023년 10월	
		☐ 종합점검 2차(특급대상물)	년 월	
	결과보고시기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	제출처	영등포소방서
	점 검 자	☐ 자체 ☑ 외주		

④ **[외관점검]**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상태를 맨눈 또는 신체감각을 이용하여 점검하는 것으로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해당되는 공공기관만 작성한다.

- 점검횟수 및 시기 : 매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점검할 일자를 작성한다.
- 점검자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관계인이 자체적으로 실시(자체)할 것인지 소방시설관리업자를 통해 실시(외주)할 것인지 체크표시(√) 한다.

작성 예시

☑ 외관점검 (공공기관)	점검시기	매월 15 일
	점검횟수	매월 1회 이상
	점 검 자	☑ 자체 ☐ 외주

⑤ [일상점검(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

- 수행자 및 수행횟수 : 수행자는 소방안전관리자이며, 수행횟수는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소방안전관리자가 부득이한 경우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소지하거나 소방안전관리자를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한다.)
- 수행주기 :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주기를 작성한다.(최소 월 1회 이상 실시)
-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 기록에 관한 사항은 [부록 1.8]을 참고한다.

작성 예시

☐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			
수 행 자	소방안전관리자	수행주기	☐ 매월 (　　일)
수행횟수	월 1회 이상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⑥ [소방시설~기타사항] 각 시설 별 수행할 업무내용을 작성한다.

- 소방시설 :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확인사항을 작성한다.
- 피난·방화시설 : 방화문, 방화셔터, 비상구, 피난통로 및 기타 피난시설 확인사항을 작성한다.
- 화기취급감독 : 화기작업 시 확인사항 등을 작성한다.
- 기타사항 : 전기기설, 가스시설, 위험물질, 가연물 및 전열기구 관리 등에 대한 확인사항 및 부적합한 공간구획, 연소 확대 위험요소 등에 대한 확인사항을 작성한다.

작성 예시

구 분	업무내용	
소방시설	· 소방시설 외관상 파손 여부 · 소방시설 상태표시등 이상 여부	· 소방시설 전원 공급 상태 · 수신기 및 제어반 스위치 상태 확인
피난·방화 시 설	· 피난 방화시설 파손여부 · 피난경로 상 장애물 적치 여부	· 도어클로저 탈락 여부 · 방화문 잠금 등 행위 여부
화기취급감독	· 불꽃, 스파크 발생할 수 있는 작업 감독 · 기타 화재 발생 요인에 대한 관리	
기타사항	· 가연물 보관 장소 확인 · 흡연장 관리상태 및 소화기 외관 상태 확인	· 기타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 · 분리수거장 관리상태 확인

⑦ [관련서류 보관방법] 원하는 보관방법에 체크표시(√) 한다.

작성 예시

관련서류 보관방법	☐ 소방계획서 내 별첨	☑ 별도 파일철
	☐ 전자문서	☐ 기타(　　)

1.10 소방안전관리자 자체점검 및 업무 수행
1.10.2 업무 수행 기록표 [서식 1.10]

1. 작성 전 준비사항

① 작성된 [서식 1.1] 건축물 일반현황

② 작성된 [서식 1.10.1] 연간 점검 계획

③ 전년도(또는 금년도) 소방시설 자체점검표 또는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④ 기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에 필요한 서류

⑤ [부록 1.8]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업무 및 업무 수행 기록

2. 작성방법

① **[수행일자~수행자]** 수행일자는 업무를 수행한 날짜, 수행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작성한다.

(소방안전관리자가 부득이한 경우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소지하거나 소방안전관리자를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고 수행자란에 서명한다.)

②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서식 1.1]에 명시된 건축물명칭, 도로명주소, 층수, 연면적, 바닥면적, 동수를 기재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규모 등을 확인하여 등급(특·1·2·3급)에 체크표시(√) 한다.

(바닥면적은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관리권원별로 소방안전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 권원별 관리 구역의 바닥면적 합계를 작성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건축물 1층의 바닥면적을 작성한다.)

작성 예시

수행일자	2023.01.07.			수행자	심○보 (서명)
소방안전 관리대상물	상호	○○경기장		등급	[ ]특급 [√]1급 [ ]2급 [ ]3급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170			
	지하층	지상층	연면적(㎡)	바닥면적(㎡)	동수
	2층	5층	40,000	8,550	1

③ **[소방시설~기타사항]**

- 소방시설 :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의 상태를 작성 및 확인결과를 체크표시(√) 하고, 결과가 불량일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 조치하고 그 내용을 작성한다.
- 피난방화시설 : 방화문, 방화셔터, 비상구, 피난통로 등의 상태를 작성 및 확인결과를 체크표시(√) 하고, 결과가 불량일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 조치하고 그 내용을 작성한다.
- 화기취급감독 : 화기작업 시 확인사항을 작성 및 확인결과를 체크표시(√) 하고, 결과가 불량일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 조치하고 그 내용을 작성한다.
- 기타사항 : 전기기설, 가스시설, 위험물질, 가연물 및 전열기구 관리 등에 대한 확인사항 및 부적합한 공간구획, 연소 확대 위험요소 등에 대한 확인하여 확인결과를 체크표시(√) 하고, 결과가 불량일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 조치하고 그 내용을 작성한다.

작성 예시

항 목	확인내용	확인결과	조치사항
소방시설	· 소방시설 외관상 파손 여부 · 소방시설 상태표시등 이상 여부 · 수신기 및 제어반 스위치 상태 확인 · 소방시설 전원 공급 상태	[√] 양호 [ ] 불량	-
피난방화시설	· 피난 방화시설 파손여부 · 피난경로 상 장애물 적치 여부 · 방화문 잠금 등 행위 여부 · 도어클로저 탈락 여부	[ ] 양호 [√] 불량	방화문 고임목 제거
화기취급감독	· 불꽃, 스파크 발생할 수 있는 작업 감독 · 기타 화재 발생 요인에 대한 관리	[√] 양호 [ ] 불량	-
기타사항	· 가연물 보관 장소 확인 · 흡연장 청결 상태 및 소화기 외관 상태 확인 · 분리수거장 관리상태 확인 · 기타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	[√] 양호 [ ] 불량	-

④ [불량사항 개선보고]

- 보고일시 : 불량사항을 개선하고 보고한 날짜를 작성한다.
- 보고방법 : 보고한 방식(대면, 서명, 정보통신)에 체크표시(√) 한다.
- 조치방법 : 조치한 사항(이전, 제거, 수리·교체, 기타)에 체크표시(√) 한다.
- 보고받은 사람 : 불량사항 개선내용을 보고받은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의 성명을 작성한다.

(해당 서식 작성 후 2년간 보관한다.)

작성 예시

	보고일시	보고방법			보고받은 사람
불량사항 개선보고	2023. 01. 08. 14:00	[√]대면	[ ]서면	[ ]정보통신	김○영
	조치방법	[ ]이전	[√]제거	[ ]수리·교체	[ ]기타

※ 작성요령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날을 포함하여 월 1회 이상 작성
2. 당해연도 소방계획서 및 소방시설등(최초점검, 작동점검, 종합점검) 점검표에 따른 점검항목을 참고하여 작성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특성에 따라 기타사항에 추가항목을 작성
4. 경보설비의 수신반, 소화설비의 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펌프 등)는 중점확인하여 작성

1.10 소방안전관리자 자체점검 및 업무 수행
1.10.3 화재/비화재보 이력 (서식 1.10)

1. 작성 전 준비사항

① 기록장치가 설치된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의 화재이력

② [부록 1.9] 종합방재실 운영 및 화재/비화재보 발생 시 대응절차

2. 작성방법

① [구분] 수신기에서 발생한 화재신호가 실제 화재일 경우 화재, 오작동일 경우 비화재보로 작성한다.

② [발생일시~발생장소] 화재신호가 발생한 날짜, 시간 및 발생 장소를 작성한다.

③ [발생원인] 화재신호의 발생 원인을 작성한다.

④ [조치사항] 화재신호 발생에 따른 조치사항을 작성한다.

- 수신기의 화재신호 발생 시 조치사항은 [부록 1.9]를 참고한다.

작성 예시

구분 (화재/비화재보)	발생일시	발생장소	발생원인	조치사항
비화재보	2023.01.05. 14:20	3층 복도	연기감지기 오작동	복구 후 해당구역 주시
비화재보	2023.03.13. 19:38	3층 복도	연기감지기 오작동	감지기 교체
비화재보	2023.04.02. 22:05	지하 2층 기계실	연기감지기 오작동	일시적인 먼지로 인한 오작동으로 추정
화재	2023.05.27. 10:36	4층 ○○실 탕비실	냉장고 누전으로 인한 화재	전력 차단 및 소화기를 이용하여 화재 진압

1.11 소방훈련 및 교육
1.11.1 소방훈련 및 교육 연간계획 〔서식 1.11〕

1. 작성 전 준비사항

① 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 외 기타 교육·훈련 대상자의 인원 현황

② 과거에 작성된 [서식 1.11.4] 소방훈련·교육 결과 기록부

③ 과거에 작성된 [서식 2.14]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교육·훈련 기록부

2. 작성방법

① **[대상자]** 대상물의 교육대상자의 현황을 파악하여 작성한다.

② **[교육~훈련]**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피난교육 및 훈련,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에 대한 소방·피난교육 및 훈련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예정 월에 체크표시(√) 한다.

작성 예시

대 상 자					
	☑ 근무자	30명	☐ 거주자	명	
	☑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170명			

교 육

대상자	구분	연간계획(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근무자 거주자	소방교육	☐	☐	☐	☐	☐	☑	☐	☐	☐	☐	☐	☑
	피난교육	☐	☐	☐	☐	☐	☑	☐	☐	☐	☐	☐	☑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	☐	☑	☐	☐	☑	☐	☐	☑	☐	☐	☑

훈 련

대상자	구분	연간계획(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근무자 거주자	소방훈련	☐	☐	☐	☐	☐	☑	☐	☐	☐	☐	☐	☑
	피난훈련	☐	☐	☐	☐	☐	☑	☐	☐	☐	☐	☐	☑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	☐	☑	☐	☐	☑	☐	☐	☑	☐	☐	☑

1.11 소방훈련 및 교육
1.11.2 소방훈련 및 교육 세부계획 〔서식 1.11〕

1. 작성 전 준비사항

① 소방훈련·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교보재 현황

② 과거에 작성된 [서식 1.11.4] 소방훈련·교육 결과 기록부

③ 과거에 작성된 [서식 2.14]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교육·훈련 기록부

④ [부록 1.10] 소방훈련 및 교육

[부록 1.11] 소방훈련 방법

2. 작성방법

① **[명칭~장소]** 소방훈련 및 교육의 명칭 및 실시할 일시 및 장소를 작성한다.

작성 예시

[2023년 제 1 차] 소방훈련 · 교육 및 자체평가 계획	
명 칭	2023년 제1차 ○○경기장 소방훈련 및 교육
일 시	2023.03.09. 10:00~15:00
장 소	○○경기장 1층(훈련) 및 3층 세미나실(교육)

② **[대상~주관부서]**

- 대상 : 소방훈련 및 교육을 받을 대상이 자위소방대, 근무자 및 거주자인지 구분하여 해당되는 부분에 체크표시(√) 한다.
- 종류 : 실시예정인 실습훈련과 이론교육의 종류에 체크표시(√) 한다. (훈련 및 교육의 종류는 [부록 1.10]을 참고한다.)
- 주관부서 : 소방훈련 및 교육의 실시부서를 기입한다.

작성 예시

대 상	☑ 자위소방대	☑ 근무자	☐ 거주자	
종 류	실습	☐ 기본훈련	☐ 부분(기능)훈련	☑ 종합훈련
	이론	☑ 강의식	☐ 세미나/워크샵	
주 관 부 서	시설팀			

③ [참여대상~교보재]

- 참여대상 : 자위소방대, 근무자 및 거주자 뿐 아니라 훈련에 참여할 방문자 등 예상인원을 작성한다.
- 훈련형태 : 자체훈련 또는 합동훈련(소방서, 병원 등 외부기관이 훈련에 같이 참여)인지 체크표시(√) 하고 참여하는 외부기관을 작성한다.
  단, 참여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기입하지 않는다.
- 시나리오 : 건물 내부 등에서 가상의 화재발생상황을 부여하고 효과적으로 초기대응을 실시하기 위한 각본으로서 각 용도에 적합한 훈련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작성한다. ([서식 1.11.2] 소방훈련시나리오 또는 자체서식 활용)
- 교보재 : 소방훈련 및 교육에 사용할 영상자료, 문건, 도구 등을 기입한다.

작성 예시

참 여 대 상	자위소방대(30명), 근무자(170명), 방문자
훈 련 형 태	☑ 자체훈련 □ 합동훈련 (참여기관 :)
시 나 리 오	본관 1층 경기장에서 원인미상의 화재발생
교 보 재	교육자료(PPT), 경광봉, 호루라기, 안전조끼, 소화기, 훈련용 연막 등

④ [훈련계획~교육계획]

- 훈련계획 : 보관중인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교육·훈련 기록부, 소방훈련·교육 결과 기록부를 참고하여 당시 미비했던 내용을 보완하고 훈련을 재편성하여 기입한다.
- 교육계획 : 훈련계획 작성방법과 동일하게 당시 미비했던 내용을 보완하고 교육을 재편성하여 기입한다.

작성 예시

훈 련 계 획	1.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등을 활용한 초기소화 2. 화재신고 및 자위소방대 등 비상연락 실시 3. 대피유도(피난약자 포함) 및 집결지 안내
교 육 계 획	1. 화재유형 별 소화원리 2. 화재신고 및 비상연락방법 3. 방화문, 방화셔터 등 자동폐쇄가 되지 않았을 경우 수동폐쇄방법

⑤ [평가계획]

- 평가일시, 평가자 : 실제 소방훈련이 시작되는 날짜 및 시간을 기입하고 훈련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상급자를 평가자로 지정하여 기입한다.
- 평가방법 : 소방훈련 평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평가하거나 내부 심사규정에 의한 자체 평가리스트를 활용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평가체크리스트 예시는 [부록 1.11]을 참고한다.)

작성 예시

평 가 계 획	평가일시	2023.03.09. 10:00~11:00	평가자	심○보(서명)
	평가방법	평가 체크리스트 활용		

3. [집회용도] 참고사항

① 부서별, 입주사별로 필히 참석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피난약자에 대한 피난유도를 중점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인원에 대해서는 교육·훈련 자료를 제공하여 숙지시켜야 한다.

② 교육·훈련은 반기별로 실시하는 것을 권장하며, 공공기관의 경우 연 2회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합동훈련 제외 대상은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참고)

③ 기타 교육·훈련에 대한 세부사항은 [부록 1.10], [부록 1.11]을 참고한다.

1.11 소방훈련 및 교육
1.11.3 소방훈련 시나리오 [서식 1.11]

1. 작성 전 준비사항

① 작성된 [서식 1.11.2] 소방훈련 및 교육 세부계획

②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 층별 평면도

2. 작성방법

① **[상황메세지]** 평가관이 평가할 위치에 배치된 후 비상벨이나 사이렌, 연기발생장치 등을 활용하여 임의의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상황을 가정하여 기재한다.

② **[훈련시간]** 훈련시작 후 시간을 초단위 또는 분단위로 나누어 기재한다.

③ **[훈련위치]** 훈련을 평가할 평가관의 위치를 기재한다.

④ **[훈련상황]** 상황메시지와 부합하는 대응절차를 파악하고 기재한다.

⑤ **[훈련내용]**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임무에 따른 기대행동을 해당 훈련 상황에 맞게 기재한다.

작성 예시

상황메세지	훈련시간	훈련위치 (평가관 위치)	훈련상황	훈련내용 (기대행동)
훈련 전 안내방송 송출				
본관 1층 경기장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	훈련시작 +30초이내	발화층	화재경보 및 화재발생인지	1. 본관 1층 경기장에서 연기발생 2. 화재경보 음향장치 작동(자동송출) 3. 초기대응체계 등 실제화재여부 확인
	훈련시작 +1분이내	발화층	화재전파(내부)	화재발생확인 및 방재실 등 연락
		방재실	화재신고 및 초기대응	(비상연락팀) 1. 119에 신속히 신고 2. 자위소방대 소집 및 초기대응지시 3. 초기대응체계에게 초기소화 명령
	훈련시작 +3분이내	발화층	초기소화	(초기대응체계, 초기소화팀) 소화기, 옥내소화전을 이용하여 화재진압
		방재실	화재전파(외부) 및 피난개시명령	(비상연락팀) - 비상방송설비 사용 1. 재실자에게 화재상황 전파 2. 신속한 피난안내 실시

작성 예시

상황메세지	훈련시간	훈련위치	훈련상황	훈련내용
본관 1층 경기장 출입구 앞 방화셔터 미작동 확인	훈련시작 +5분이내	발화층, 직상층, 지하층	피난유도	(피난유도팀) 1. 피난경로(계단) 주변에서 재실자가 양방향피난이 가능하도록 분산유도 실시 2. 피난약자에 대한 피난 실시 3. 집결지 안내
		발화층	방호안전	(방호안전팀) 방화셔터 미 작동구역 확인 및 수동폐쇄
119소방대 도착 및 화재완전진압	훈련시작 +8분이내	발화층	초기소화	(초기대응체계, 초기소화팀) 추가 발화가능성 확인 및 현장대기
		방재실	진압완료전파 및 피난명령	(비상연락팀) - 비상방송설비 사용 1. 재실자에게 화재완전진압 안내 2. 지속적인 피난안내 실시
		1층 출입구	119소방대 도착	(비상연락팀) 119소방대원에게 화재현황(장소 등)을 설명하고 현장지휘권 인계
1층 계단부근 응급환자(골절) 발생	훈련시작 +10분이내	1층 계단부근	응급구조	(응급구조팀) 들것을 사용하여 응급환자(골절) 이송

⑥ 훈련이 종료된 후에는 재실자, 근무자, 관계인, 방문객 등에게 소방훈련이 종료되었음을 안내하고 현장에서 작성한 평가표를 정리하여 현장회의를 개최한다. 이 경우 평가관은 훈련성과 및 문제점, 개선계획 등을 훈련참가자에게 안내·지도하도록 한다.

작성 예시

훈련종료안내	훈련시작 +15분이내	방재실	상황종료 전파	(비상연락팀) - 비상방송설비 사용 1. 훈련종료 안내 2. 소방훈련 대상자 집합 및 평가

1.11 소방훈련 및 교육
1.11.4 소방훈련 · 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 [서식 1.11]

1. 작성 전 준비사항

① 작성된 [서식 1.11.2] 소방훈련 및 교육 세부계획

② [부록 1.10] 소방훈련 및 교육

[부록 1.11] 소방훈련 방법

2. 작성방법

① **[작성일자, 작성자]** 소방훈련 및 교육을 종료한 후 1주일 이내에 일자를 기입하고 소방안전관리자가 최종 작성하여 서명한다.

- 해당 서식은 작성 후 2년간 보관한다.

②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대상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 건물명, 도로명주소, 대표자(또는 책임자) 이름 및 전화번호를 기입한다.
- 등급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규모 등을 확인하여 체크표시(√) 한다.

③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이름, 선임일자, 자격구분, 보유자격, 연락처를 기재한다.

작성 예시

소방안전 관리대상물	대상명	○○경기장		용도	문화 및 집회
	대표자	김○혁 (서명)		전화번호	0000-0000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170			
	등급	[ ] 특급	[√] 1급	[ ] 2급	[ ] 3급
소방안전 관리자	성명	선임일자	보유자격	자격구분	연락처
	심○보	2019.03.06.	1급	[√]주 [ ]보조	010-0000-0000
	임○우	2019.09.08.	2급 강습수료	[ ]주 [√]보조	010-0000-0000
	성○운	2021.05.02.	건축기사	[ ]주 [√]보조	010-0000-0000
				[ ]주 [ ]보조	

④ **[소방훈련 결과]**

- 일시/ 장소 : 훈련을 실시한 년도, 일자, 시간 및 장소를 기입한다.
- 자체훈련 및 합동훈련 : 소방기관과 함께 훈련한 경우에는 합동훈련,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체훈련에 체크표시(√) 한다.
- 참석결과 : 소방훈련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사람(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이름, 훈련참석대상, 실제 참석 및 미참석한 인원을 확인하여 기재한다.
- 훈련보조재료 : 소방훈련에 사용한 자료, 도구 등을 기입한다.
- 훈련내용 : 소화훈련(화재진압 등), 통보훈련(화재신고, 화재발생안내 등), 피난훈련(안전한 장소 대피·유도 등)의 상세내용을 작성한다.
- 훈련성과 : 소방훈련 평가 체크리스트, 설문조사 등을 활용하여 훈련결과 중 양호한 내용, 기대효과 등을 파악하여 작성한다.
- 문제점 : 훈련결과 중 미비사항 또는 불량사항 등을 파악하여 작성한다.
- 개선계획 : 작성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향후 개선해야 할 내용 또는 보완해야 할 내용들을 추가하여 기재한다.

작성 예시

소방훈련 결과				
일시/장소	2023.03.09. 10:00~11:00 / ○○경기장 1층		[√] 자체훈련	[ ] 합동훈련
참석결과	훈련교관	참석대상(명)	참석(명)	미참석(명)
	심○보	200	190	10
훈련보조재료	교육자료(PPT), 경광봉, 호루라기, 안전조끼, 소화기, 훈련용 연막 등			
훈련내용	소화훈련	통보훈련	피난훈련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 등을 활용한 초기소화	화재신고 및 자위소방대 등 비상연락 실시	대피유도(피난약자 포함) 및 집결지 안내	
훈련성과	1.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 등의 사용법 숙지로 초기소화능력 증대 2. 신속하고 정확한 대피방법을 습득 3. 신속하고 정확한 비상연락 및 통보방법을 습득			
문제점	1. 피난약자에 대한 피난보조 미숙으로 피난 지연 2. 피난 시 병목현상 발생			
개선계획	1. 피난약자 유형별 피난보조 방법 재교육 2. 호루라기, 경광봉 등을 활용한 신속한 피난경로 안내 실시			

⑤ **[소방교육결과]**

- 일시/ 장소 : 교육을 실시한 년도, 일자, 시간 및 장소를 기입한다.
- 참석결과 : 소방교육 실시자, 교육 참석대상, 실제 참석 및 미참석 한 인원을 확인하여 작성한다.
- 교육내용 : 소방교육내용(소화·통보·피난방법 등)의 상세내용을 작성한다.
- 교육성과 : 설문조사 등을 활용하여 교육실시결과 중 양호한 내용, 기대효과 등을 파악하여 작성한다.
- 문제점 : 교육실시결과 중 미비사항 또는 불량사항 등을 파악하여 작성한다.
- 개선계획 : 작성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향후 개선해야 할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한다.

작성 예시

소방교육 결과				
일시/장소	2023.03.09. 14:00~15:00 / ○○경기장 3층 세미나실			
참석결과	교육강사	참석대상(명)	참석(명)	미참석(명)
	임○우	200	190	10
교육내용	1. 화재유형 별 소화원리 2. 화재신고 및 비상연락방법 3. 방화문, 방화셔터 등 자동폐쇄가 되지 않았을 경우 수동폐쇄방법			
교육성과	1. 화재유형 별 소화방법 습득 2. 신속하고 정확한 비상연락 및 통보방법을 습득			
문제점	방화문, 방화셔터 등 수동폐쇄 관련 이해도 부족			
개선계획	방화문, 방화셔터 등 수동폐쇄방법을 실제 조작하며 동작원리 이해			

⑥ **[훈련·교육 관련사진]** 실제 소방훈련·교육을 실시했던 사진을 첨부한다.

작성 예시

소방훈련·교육 관련사진	
소방훈련	소방훈련
소방교육	소방교육

1.11 소방훈련 및 교육
1.11.5 소방훈련 · 교육 실시 결과 제출 [서식 1.11]

1. 작성 전 준비사항

① 작성된 [서식 1.11.2] 소방훈련 및 교육 세부계획

② 작성된 [서식 1.11.4]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

2. 작성방법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대상명, 용도,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 대상물의 건물명, 용도, 대표자(또는 책임자) 이름 및 전화번호, 도로명주소를 기입한다.
- 등급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규모(특급, 1급)를 확인하여 체크표시(√) 한다. (2급, 3급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해당 서식을 작성, 제출하지 않는다.)

작성 예시

소방안전 관리대상물	대상명	○○경기장	용도	문화 및 집회
	대표자	김○혁	전화번호	0000-0000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170		
	등급	[ ] 특급 [√] 1급		

②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이름, 선임일자, 자격종류, 자격구분을 기재한다.

작성 예시

	성명	선임일자	자격종류	자격구분
소방안전 관리자	심○보	2019.03.06.	1급 소방안전관리자	[√]주 [ ]보조
	임○우	2019.09.08.	2급 강습교육 수료	[ ]주 [√]보조
	성○운	2021.05.02.	건축기사	[ ]주 [√]보조

③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한 소방훈련 및 소방교육에 체크표시(√) 한다.

- 일시/ 장소 : 소방훈련·교육을 실시한 날짜, 시간 및 장소를 기입한다.
- 참석결과 : 소방훈련·교육 총대상자, 실제 참석 또는 미참석 한 인원을 확인하여 기재한다.
- 주요내용 : 실시한 훈련·교육내용(소화·통보·피난방법 등)을 상세히 작성한다.
- 주요성과 : 소방훈련 평가 체크리스트, 설문조사 등을 활용하여 소방훈련·교육실시결과 중 양호한 내용, 기대효과 등을 파악하여 작성한다.
- 문제점 : 소방훈련·교육실시결과 중 미비사항 또는 불량사항 등을 파악하여 작성한다.
- 조치사항 : 작성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향후 개선해야 할 내용 또는 보완해야 할 부분을 고려하여 추가 조치하고 이를 기재한다.

작성 예시

[√] 소방훈련 [√] 소방교육			
일시/장소	2023.03.09. 10:00~15:00 / ○○경기장 1층(훈련) 및 3층 세미나실(교육)		
참석결과	총대상자(명)	참석(명)	미참석(명)
	200	190	10
주요내용	1.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등을 활용한 초기소화 2. 화재신고 및 자위소방대 등 비상연락 실시 3. 대피유도 및 집결지 안내		
주요성과	1.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 등의 사용법 숙지로 초기소화능력 증대 2. 신속하고 정확한 대피방법을 습득 3. 신속하고 정확한 비상연락 및 통보방법을 습득		
문제점	1. 피난약자에 대한 피난보조 미숙으로 피난 지연 2. 피난 시 병목현상 발생 3. 방화문, 방화셔터 등 수동폐쇄 관련 이해도 부족		
조치사항	1. 피난약자 유형별 피난보조 방법 재교육 2. 호루라기, 경광봉 등을 활용한 신속한 피난경로 안내 실시 3. 방화문, 방화셔터 등 수동폐쇄방법을 실제 조작하며 동작원리 이해		

④ **[제출일자 및 제출자(대표자)]**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제출일자를 작성하고 제출자(대표자)는 대상물 관리자 중 책임자의 이름을 작성하고 서명한다.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해당 서식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30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작성 예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위와 관이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2023년 03월 09일

제출자(대표자) : 김○혁 (직인 또는 서명)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3. [집회용도] 참고사항

①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서식 1.11.5]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근무자, 거주자 및 자위소방대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② [서식 1.11.5]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서를 작성, 제출하지 않더라도 [서식 1.11.4]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는 작성하여 2년간 보관해야 한다.

1.12 화기취급감독
1.12.1 화기취급작업 현황

[서식 1.12]

1. 작성 전 준비사항

① 작성된 [서식 1.12.2] & [서식 1.12.3] 화기취급작업 신청서 및 허가서

2. 작성방법

① **[작업일자 및 시간~연락처]** 해당서식은 화기작업 발생 시 소방안전관리자가 매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장기간의 공사에도 반드시 매일 작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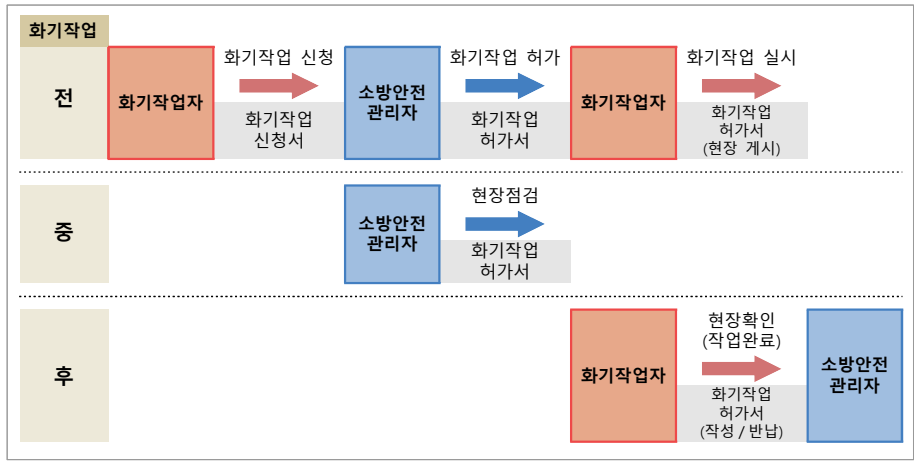

-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의 기간, 장소, 작업내용을 작성하고 해당 작업의 책임자 성명(업체명) 및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작성한다.

② **[관련서류 보관방법]** 화기취급작업 신청서, 허가서의 보관방법을 체크표시(√) 한다.

작성 예시

작업일자 및 시간	작업장소	작업내용	작업책임자 (업체명)	연락처
2023.04.05. 09:30~16:30	4층 ○○실	S/P 배관공사	구○모 (○○산업)	010-0000-0000
(추가가능)				

관련서류 보관방법		
	☐ 소방계획서 내 별첨	☑ 별도 파일철
	☐ 전자문서	☐ 기타( )

1.12 화기취급감독
1.12.2 화기취급작업 신청서 [서식 1.12]

1. 작성 전 준비사항

① 해당 업체의 안전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작업자 명단 및 연락처 등

③ [부록 1.13] 화기취급작업

2. 작성방법

① 화기를 취급하는 공사 등을 실시하고자 할 때, 작업책임자는 화기취급작업 신청서를 작성 후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화기취급작업 시 확인사항은 [부록 1.13]을 참고한다.)

② [허가사항~작업일시]

- 허가사항 : 소방안전관리자로부터 허가를 득한 뒤 허가번호와 날짜를 작성한다.
- 화재감시자 : 소방안전관리자가 지정한 화재감시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작성한다.
- 신청인 : 화기를 취급하는 공사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업체명과 작업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작성한다.
- 작업명~작업일시 : 작업내용과 장소 및 일시 등을 작성한다.

작성 예시

허 가 사 항	허가번호 : 2023-04-01	허가일자 : 2023년 4월 5일
화 재 감 시 자	성명 : 임○우 (서명)	휴대폰번호 : 010-0000-0000
신 청 인	업체명 : ○○산업	작업책임자 : 구○모
	연락처 : 010-0000-0000	
작 업 명	4층 ○○실 S/P 배관 증설 공사	
작 업 구 분	☑ 용접 ☑ 용단 ☐ 땜 ☐ 연마 ☐ 기타 ( )	
작 업 구 역	(신청서 1건 당 작업장소 범위 : ① 층별 신청, ② 해당 층에서 반경 20m 초과마다 신청) 4층 ○○실	
작 업 일 시	(작업기간 중 1일 단위 신청) 2023년 4월 5일 10:00 ~ 16:30	

③ [초기대응체계] 화기취급작업 시 현장에서 실질적인 초기대응 기능을 수행하는 현장 조직을 구성하여 작성한다.

작성 예시

초기대응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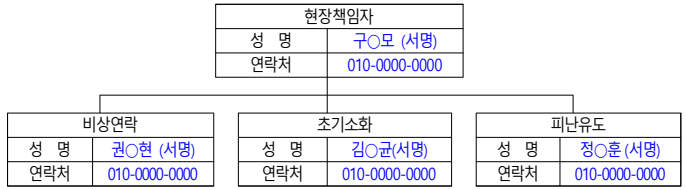

④ [체크리스트~서명]

- 체크리스트 : 각 항목별 점검내용을 확인하고 결과를 작성한다.
- 작업자 : 화기취급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 명단을 작성한다.
- 서명 : 작업책임자가 화기취급작업 신청서를 확인·검토하고 서명한다.

작성 예시

	점검내용		결과 [○, ×]
화 기 작 업 체 크 리 스 트 (작 업 전)	1. 작업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조치 여부		○
	2. 작업에 맞는 보호구 착용 여부		○
	3. 작업구역 내 가스농도 측정 및 잔류물질 확인 여부		○
	4. 작업구역 11m 內 인화성 및 가연성 물질 제거상태		○
	5. 인화성 물질 취급 작업과 동시작업 유무		○
	6. 불티 비산방지조치(불티차단막/방화포 등) 실시 여부		○
	7. 작업지점 5m 이내 소화기 비치 여부		○
	8. 교육 실시 여부(소방시설 사용법, 피난로 위치, 초기대응체계 등)		○
화 기 작 업 자 작 성	밀폐공간 작업 시 (체 크)	9. 밀폐공간 관계자 외 출입제한 여부	/
		10. 밀폐공간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 착용 여부	/
		11. 밀폐공간의 환기 설비 설치 여부	/
		12. 작업자의 개인통신장비 및 휴대용 산소농도측정기 착용 여부	/
		13. 구조장비(구급함/구명줄/삼각대 등) 준비 여부	/
		14. 가스 및 산소농도 측정 여부	/
		15. 전화하면 5분이내 구조할 수 있는 위치에 구조팀 대기	/
		16. 필요한 구조팀 담당자 성명 :	/
작 업 자 명 단	구○모, 권○현, 김○균, 정○훈		
	작업책임자 구○모 (서명)		

1.12 화기취급감독
1.12.3 화기취급작업 허가서 [서식 1.12]

1. 작성 전 준비사항

① 작성된 [서식 1.12.2] 화기취급작업 신청서

② 해당 업체의 안전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작업자 명단 및 연락처 등

④ [부록 1.13] 화기취급작업

2. 작성방법

① **[허가사항]** 작업책임자가 제출한 화기취급작업 신청서를 검토하고,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었을 경우에 화기작업자에게 화기취급작업 허가서를 발부한다. (화기취급작업에 대한 참고사항은 [부록 1.13]을 참고한다.)

1. 기타 공사 및 작업일정을 확인하여 해당 화기작업장과 인화성·가연성 증기를 발생시키는 작업장간의 상호 화재위험성을 판단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예1) 인화성·가연성 증기를 발생시키는 작업의 자재 종류

> 우레탄, 우레탄폼, 시너, 등유, 경유, 윤활유, 유성페인트, 락카, 박리제, 프라이머, 접착제, 에폭시, 부탄가스, LPG, 아세틸렌 등

예2) 화기작업장과 인화성·가연성 증기를 발생시키는 작업장간의 안전거리

> 수직 : 해당 작업장으로부터 직상 3개층(약 12m)
> 수평 : 해당 작업장으로부터 반경 20m 초과

2. 작업책임자가 제출한 화기취급작업 신청서 내용이 이상이 없는 경우

② **[서명]** 작업 내용, 장소 및 일시 등을 확인하고 소방안전관리자가 서명한다.

작성 예시

허 가 사 항	허가번호 : 2023-04-01	허가일자 : 2023년 4월 5일	(소방안전관리자) 심○보 (서명)
화 재 감 시 자	성명 : 임○우 (서명)	휴대폰번호 : 010-0000-0000	
작 업 명	4층 ○○실 S/P배관 증설 공사		
작 업 구 분	☑ 용접 ☑ 용단 ☐ 땜 ☐ 연마 ☐ 기타 ( )		
작 업 구 역	4층 ○○실		
작 업 일 시	2023년 4월 5일 10:00 ~ 16:30		

③ **[화기작업 체크리스트]**

- 작업책임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발부한 화기취급작업 허가서를 현장에 게시하고 화기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 소방안전관리자는 화기작업 허가서를 발부한 현장을 방문하여 허가서 게시 등 현장안전조치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현장점검 시 다음과 같이 화재발생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화기작업책임자는 위험요소를 제거한 후 소방안전관리자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1. 무허가 작업
2. 화기작업과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등의 동시작업
3. 화재감시자 미배치
4. 주변 가연물과 이격거리 미흡
5. 불티비산조치 미흡

④ **[작업종료 후 안전조치~반납확인]**

작업책임자는 당일 작업 종료 후 불티잔존유무, 전원 차단,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품의 정리 및 보관상태 등 안전조치를 완료하고 화기작업 허가서를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작성 예시

	확인사항	작업책임자 확인
작 업 종 료 후 안전조치 (작업종료 후 작성 → 반납)	1. 불티잔존 여부(작업 종료 후 30분 후 확인)	구○모 (서명)
	2. 전원차단 상태	
	3. 인화성·가연성 물품의 보관상태	
반 납 확 인	소방안전관리자	심○보 (서명)

1.13 소방시설 공사/정비 기록 [서식 1.13]

1. 작성 전 준비사항

① 소방공사업체와 계약 시 관련 서류

② 소방시설 정비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작성방법

① **[작업내용~작업책임자]** 작업내용 및 작업기간을 작성하고 해당 작업을 실시한 작업책임자(업체)를 작성한다.

② **[확인일자]** 해당 작업 종료 후 확인한 날짜를 작성한다.

- 작업 내용에 대한 최종확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한다.

③ **[비고]** 작업 종료 후 특이사항을 작성한다.(이상 없을 시 이상없음 기입)

작성 예시

작업내용	작업기간	작업책임자	확인일자	비고
본관 4층 ○○실 S/P 배관 증설	2023.04.05. ~ 04.07.	구○모 (○○산업)	2023.04.07.	공사 종료 후 확인 결과 이상없음
2층 ○○실 연기감지기 교체	2023.04.24.	임○우	2023.04.24.	감지기 교체 후 확인 결과 이상없음
(추가가능)				

④ **[관련서류 보관방법]** 업체와의 계약 서류 등 관련서류 보관방법에 체크표시(√) 한다.

작성 예시

관련서류 보관방법	☐ 소방계획서 내 별첨	☑ 별도 파일철
	☐ 전자문서	☐ 기타( )

1.14 화재예방 및 홍보
1.14.1 화재예방 및 홍보 계획 [서식 1.14]

1. 작성 전 준비사항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유 중인 홍보물품현황

② 화재예방 및 홍보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2. 작성방법

① 화재예방 및 홍보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용	
-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작동방법	- 심폐소생술 등 응급환자 발생 시 조치요령
- 전기, 가스 및 위험물 등 취급 및 관리방법	- 피난약자 유형별 피난방법
- 비상구, 계단 및 출입문 등 관리방법	- 기타 화재예방에 필요한 사항

② **[화재예방 및 홍보방법]** 원하는 홍보방법의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예정월에 체크표시(√) 한다.

작성 예시

화재예방 및 홍보방법	연간계획(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화재예방 홍보기간 운영	☑	☑	☐	☐	☐	☐	☑	☑	☐	☐	☑	☑
포스터, 표어 전시	☑	☑	☑	☑	☑	☑	☑	☑	☑	☑	☑	☑
영상물 상영	☑	☑	☑	☑	☑	☑	☑	☑	☑	☑	☑	☑
체험시설(체험관) 견학	☐	☐	☐	☐	☐	☐	☐	☐	☐	☐	☐	☐
문서, 이메일 공지	☐	☐	☐	☑	☐	☐	☐	☐	☐	☑	☐	☐

③ **[화재예방 및 홍보결과 보관방법]** 원하는 보관방법에 체크표시(√) 한다.

작성 예시

화재예방 및 홍보결과 보관방법	☐ 소방계획서 내 별첨	☑ 별도 파일철
	☐ 전자문서	☐ 기타( )

1.14 화재예방 및 홍보
1.14.2 화재예방 및 홍보 결과 [서식 1.14]

1. 작성 전 준비사항

① 화재예방 및 홍보활동 증빙사진 등

② [부록 1.14] 화재예방 및 홍보

2. 작성방법

① **[화재예방 및 홍보방법]** 기 작성된 화재예방 및 홍보계획과 실제 실시한 홍보방법이 동일한 경우에는 체크표시(√)한 내용 그대로를 작성한다.

② **[일시 및 장소]** 화재예방 및 홍보를 실시한 날짜 및 위치를 작성한다.

③ **[사진 삽입]** 화재예방 및 홍보를 실시했다는 증빙사진을 첨부한다.

(홍보방법에 대한 다양한 예시는 [부록 1.14]를 참고한다.)

작성 예시

화재예방 및 홍보방법	포스터 부착	일시 및 장소	2023.2.13.

작성 예시

화재예방 및 홍보방법	비상행동요령 비치	일시 및 장소	2023.11.8.

화재 시 비상행동요령

화재 전파	1. 화재경보장치(발신기)를 작동하고, 주변에 화재발생 사실을 전파
화재 신고	2. 119 화재신고 현재 위치 : **구 **동 (**부근) OO경기장
초기소화	3.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으로 초기소화
피 난	4. 가까운 비상구(통로)를 통해 신속히 피난
집 결	5. 피난 시 집결지로 안전하게 이동 피난집결장소 : OO경기장 건너편 ****
금지행위	■화재 시 승강기(엘리베이터) 사용금지 ■피난 후 건물 내로 재진입 금지

비상연락처			
	관리(방재)실	B1(방재실)	0000-0000
	소방안전관리자	심O보	0000-0000

1.15 피해 복구 [서식 1.15]

1. 작성 전 준비사항

① 임직원 현황표 및 조직도(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경우는 별도 취합)

② 화재증명원 : 화재원인 파악 이후 소방서 발행 가능(소방서 직접방문)

화재증명원

2. 작성방법

① **[피해복구계획]** 정상 업무 복구과정으로의 계획을 대상물 특성을 고려하여 자유로이 구성하되, 각각의 담당자를 지정 관리한다.

- 업무 예시 : 현장 보존, 피해현황 조사(인명, 재산 등), 보험처리, 설비 복구 계획, 후속 재발방지 대책 등

작성 예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임무	상세내용	담당자(관리부서)
피해복구 계획	현장보존, 피해현황 조사	현장출입금지, 현황파악	김○영(00팀)
	사상자, 설비 등 후속조치	재발장지 대책마련	심○보(00팀)
	손해보험처리	현장실사, 보험사 연락	임○우(00팀)

② **[화재발생개요]** 화재발생시 해당 화재의 피해상황을 기록한다.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은 경미한 사고도 포함하여 기재하되, 소방서에 신고하여 대응한 화재의 경우 화재증명원을 첨부하도록 한다.

작성 예시

화재발생개요 화재발생시 작성	일 시	2023.01.31. 오후 2시경				
	장 소	4층 ○○실 탕비실				
	원 인	발화열원	냉장고 누전			
		발화요인	전기적 요인			
		발화개요	냉장고 전선피복이 손상되어 누전 발생			
	피해상황	인명	□ 사망	명	□ 부상	명
		재산	☑ 피해액	0,000천원	☑ 피해면적	000㎡

③ **[예방대책]** 화재 발생에 따른 그 원인을 파악한 뒤, 이에 따른 예방대책을 자유로이 작성한다.

작성 예시

예방대책 화재발생시 작성	220V 전압 공급지역에서는 누전차단기를 반드시 설치·관리하여야 하고, 110V 지역에도 누전차단기를 설치·관리하여 누전발생시 자동으로 차단되어 더욱 안전하게 사용 가능하도록 한다.

제2장 자위소방대 운영계획 작성방법

2.1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일반현황 [서식 2.1]

2.1.1 일반건축물 [지구대가 없을 경우]

1. 작성 전 준비사항

① 임직원 현황표 및 조직도(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경우는 별도 취합)

② 과거에 작성된 [서식 2.2.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편성표

③ [부록 2.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방법

[부록 2.3]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조직도 및 임무

2. 작성방법

① **[명칭~운영시간]** 대상물의 명칭과 도로명주소를 기재하고 해당하는 등급, 상시근무인원, 운영시간에 체크표시(√) 한다. 운영시간의 경우, 평일 또는 야간에 주용도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간도 함께 작성한다.

작성 예시

2.1.1 일반건축물 (지구대가 없을 경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명 칭	○○경기장					
도 로 명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170					
등 급	□ 특급	☑ 1급	□ 2급	□ 3급		
상 시 근 무 인 원	□ 50명 미만	□ 50명 ~ 100명	☑ 100명 ~ 500명	□ 500명 초과		
운 영 시 간	☑ 평일	☑ 주간 08시 ~ 17시	☑ 휴일	☑ 주간 08시 ~ 17시		
		☑ 야간 17시 ~ 23시		☑ 야간 17시 ~ 23시		

② **[자위소방대 편성표 서식]** 대상물의 상시 근무인원을 고려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편성표 서식에 체크표시(√) 한다.

- Type-II :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에 체크하고 [서식 2.2.2] & [서식 2.3.2]을 함께 작성한다.
- Type-III :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50명 미만인 경우에 체크하고 [서식 2.2.3] & [서식 2.3.3]을 함께 작성한다.

작성 예시

자위소방대 편성표 서식	☑ Type-II [서식 2.2.2] & [서식 2.3.2] 작성 * 상시 근무인원 50명 이상의 경우 TYPE-II 권장
	□ Type-III [서식 2.2.3] & [서식 2.3.3] 작성 * 상시 근무인원 50명 미만인 경우 TYPE-III 권장

③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 자위소방대 : 편성된 지휘통제팀, 현장대응팀의 총 인원을 작성하고 해당하는 근무형태(상근직, 교대직)에 체크표시(√) 한다. 교대직의 경우에는 운영형태(조, 교대)에 대한 사항도 함께 기재한다.
- 지휘통제팀 : 편성된 자위소방대장 및 부대장의 인원을 작성하고 그 인원들을 합산하여 지휘통제팀에 기재한다.
- 현장대응팀 : 편성된 현장대응팀(비상연락팀,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 응급구조팀, 방호안전팀)에 체크표시(√) 하고 각 팀별 인원을 작성한다. 그리고 각 팀별 인원들을 모두 합산하여 현장대응팀에 기재한다.
- 초기대응체계 : 편성된 초기대응체계의 근무조, 근무시간, 인원을 작성하고 해당하는 근무형태에 체크표시(√) 한다. 그리고 편성된 초기대응체계의 총원을 작성한다.

작성 예시

구성	자위소방대	총원	58명	근무형태	☑ 상근직	☑ 교대직 (4 조 3 교대)	
		지휘통제팀	3명	대장	1명	부대장	2명
		현장대응팀	55명	☑ 비상연락팀	5명	☑ 응급구조팀	5명
				☑ 초기소화팀	20명	☑ 방호안전팀	5명
				☑ 피난유도팀	20명		
	초기대응체계	총원	20명	근무형태	☑ 상근직	☑ 교대직 (4 조 3 교대)	
		☑ 1조(평일 주간 08시~17시)		5명	☑ 2조(평일 야간 17시~23시)		5명
		☑ 3조(휴일 주간 08시~17시)		5명	☑ 4조(휴일 야간 17시~23시)		5명

④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임무]

- 자위소방대 임무 : 화재 시 효율적인 자위소방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대장, 부대장, 비상연락팀,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 응급구조팀, 방호안전팀의 임무를 상세히 기재한다. 이 경우, 대상물 관리·이용형태, 소방시설 현황, 위험특성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
- 초기대응체계 임무 : 화재 초기 신속하고 효율적인 자체대응을 위해 초기대응체계 임무를 상세히 기재한다. 단, 초기대응체계는 해당 대상물이 이용되고 있는 동안 상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작성 예시

임무	자위소방대	대장	총괄지휘 및 감독
		부대장	현장지휘 및 감독
		☑ 비상연락팀	상황접수 및 전파, 자위소방대 소집, 화재신고(119) 및 통보연락
		☑ 초기소화팀	자체소방시설을 이용한 초기화재 진압 활동
		☑ 피난유도팀	거주자, 방문자 등 피난유도 및 피난약자에 대한 피난보조 활동
		☑ 응급구조팀	응급상황 발생 시 인명구조 및 응급조치
		☑ 방호안전팀	화재확산방지 및 위험물시설에 대한 제어 등 방호안전 업무
	초기대응체계		화재초기 신속하게 상황전파, 화재진압, 피난유도, 인명구조 등을 수행

※ 비고
초기대응체계는 화재 발생 시 초기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종합방재실, 수위실 등 상시 근무하는 인원을 1명 이상 포함하여 구성하고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이용되고 있는 동안에는 상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2.1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일반현황 [서식 2.1]
2.1.2 일반건축물 [지구대가 있을 경우]

1. 작성 전 준비사항

① 임직원 현황표 및 조직도(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경우는 별도 취합)

② 과거에 작성된 [서식 2.2.1]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편성표

③ [부록 2.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방법
[부록 2.3]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조직도 및 임무

2. 작성방법

① [명칭~운영시간] 대상물의 명칭과 도로명주소를 기재하고 해당하는 등급, 상시근무인원, 운영시간에 체크표시(√) 한다. 운영시간의 경우, 평일 또는 야간에 주용도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간도 함께 작성한다.

작성 예시

2.1.2 일반건축물 (지구대가 있을 경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명칭	○○경기장 등 3개동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170					
등급	□ 특급	☑ 1급	□ 2급	□ 3급		
상시근무인원	□ 50명 미만	□ 50명 ~ 100명	☑ 100명 ~ 500명	□ 500명 초과		
운영시간	☑ 평일	☑ 주간 08시 ~ 17시	☑ 야간 17시 ~ 23시	☑ 휴일	☑ 주간 08시 ~ 17시	☑ 야간 17시 ~ 23시

② [자위소방대 편성표 서식] 아래의 편성표 서식에 체크표시(√) 한다.

- Type-Ⅰ : 연면적 30,000㎡ 이상의 경우이며 [서식 2.2.1] & [서식 2.3.1]을 함께 작성한다. 다만, 연면적이 30,000㎡ 미만이여도 관리권원이 분리되어 있거나 지구대를 편성한 경우에도 작성 가능하다.

작성 예시

자위소방대 편성표 서식	☑ Type-Ⅰ [서식 2.2.1] & [서식 2.3.1] 작성 * 연면적 30,000㎡ 이상의 경우 TYPE-Ⅰ 권장

③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 자위소방대 : 편성된 지휘통제팀, 본부대, 지구대의 총 인원을 작성하고 해당하는 근무형태(상근직, 교대직)에 체크표시(√) 한다. 교대직의 경우에는 운영형태(조, 교대)에 대한 사항도 함께 기재한다.
- 지휘통제팀 : 편성된 자위소방대장 및 부대장의 인원을 작성하고 그 인원들을 합산하여 지휘통제팀에 기재한다.
- 본부대 : 관할구역(동, 층)을 작성하고 편성된 본부대 소속 비상연락팀,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 응급구조팀, 방호안전팀에 체크표시(√) 후 각 팀별 인원을 작성한다. 그리고 그 인원들을 모두 합산하여 본부대 인원을 기재한다.
- 지구대1, 2, 3 : 각 지구대의 관할구역(동, 층)을 작성하고 편성된 지구대 소속 비상연락팀,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에 체크표시(√) 후 각 팀별 인원을 작성한다. 그리고 그 인원들을 모두 합산하여 지구대1, 2, 3에 작성하고 해당 지구대의 책임자성명을 기재한다.

작성 예시

구성	자위소방대	총원	83명	근무형태	☑ 상근직 ☑ 교대직 (4 조 3 교대)		
		지휘통제팀	3명	대장	1명	부대장	2명
		본부대 (경기장 지하2층 ~지상1층)	34명	☑ 비상연락팀	4명	☑ 응급구조팀	5명
				☑ 초기소화팀	10명	☑ 방호안전팀	5명
				☑ 피난유도팀	10명		
		지구대1 (경기장 지상2층 ~지상5층)	22명	☑ 비상연락팀	2명	책임자성명	심○보
				☑ 초기소화팀	10명		
				☑ 피난유도팀	10명		
		지구대2 (별관)	12명	☑ 비상연락팀	2명	책임자성명	임○우
				☑ 초기소화팀	5명		
				☑ 피난유도팀	5명		
		지구대3 (시설관리실)	12명	☑ 비상연락팀	2명	책임자성명	김○찬
				☑ 초기소화팀	5명		
				☑ 피난유도팀	5명		

- 초기대응체계 : 편성된 초기대응체계의 관할구역(동, 층), 근무조, 근무시간, 인원을 작성하고 해당하는 근무형태에 체크표시(√) 한다. 그리고 편성된 초기대응체계의 총원을 작성한다.

작성 예시

구성	초기대응체계	총원	40명	근무형태	☑ 상근직 ☑ 교대직 (4 조 3 교대)	
		동		층	근무시간	인원
		경기장, 별관, 시설관리실(3개동)		전층	1조 평일 주간 08시~17시	10명
		경기장, 별관, 시설관리실(3개동)		전층	2조 평일 야간 17시~23시	10명
		경기장, 별관, 시설관리실(3개동)		전층	3조 휴일 주간 08시~17시	10명
		경기장, 별관, 시설관리실(3개동)		전층	4조 휴일 야간 17시~23시	10명

④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임무]

- 자위소방대 임무 : 화재 시 효율적인 자위소방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대장, 부대장, 본부대 및 지구대 소속 비상연락팀,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 응급구조팀, 방호안전팀의 임무를 상세히 기재한다. 이 경우, 대상물 관리·이용형태, 소방시설 현황, 위험특성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

작성 예시

임무	자위소방대	대장	총괄지휘 및 감독	
		부대장	현장지휘 및 감독	
		본부대 (경기장 지하2층 ~지상1층)	☑ 비상연락팀	상황접수 및 전파, 자위소방대 소집, 화재신고(119) 및 통보연락
			☑ 초기소화팀	자체소방시설을 이용한 초기화재 진압 활동
			☑ 피난유도팀	거주자, 방문자 등 피난유도 및 피난약자에 대한 피난보조 활동
			☑ 응급구조팀	응급상황 발생 시 인명구조 및 응급조치
			☑ 방호안전팀	화재확산방지 및 위험물시설에 대한 제어 등 방호안전 업무

작성 예시

임무	자위소방대	지구대1 (경기장 지상2층 ~지상5층)	☑ 비상연락팀	상황접수 및 전파, 자위소방대 소집, 화재신고(119) 및 통보연락
			☑ 초기소화팀	자체소방시설을 이용한 초기화재 진압 활동
			☑ 피난유도팀	거주자, 방문자 등 피난유도 및 피난약자에 대한 피난보조 활동
		지구대2 (별관)	☑ 비상연락팀	상황접수 및 전파, 자위소방대 소집, 화재신고(119) 및 통보연락
			☑ 초기소화팀	자체소방시설을 이용한 초기화재 진압 활동
			☑ 피난유도팀	거주자, 방문자 등 피난유도 및 피난약자에 대한 피난보조 활동
		지구대3 (시설관리실)	☑ 비상연락팀	상황접수 및 전파, 자위소방대 소집, 화재신고(119) 및 통보연락
			☑ 초기소화팀	자체소방시설을 이용한 초기화재 진압 활동
			☑ 피난유도팀	거주자, 방문자 등 피난유도 및 피난약자에 대한 피난보조 활동

- 초기대응체계 임무 : 화재 초기 신속하고 효율적인 자체대응을 위해 초기대응체계 임무를 상세히 기재한다. 단, 초기대응체계는 해당 대상물이 이용되고 있는 동안 상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작성 예시

임무	초기대응체계	화재초기 신속하게 상황전파, 화재진압, 피난유도, 인명구조 등을 수행

※ 비고
초기대응체계는 화재 발생 시 초기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종합방재실, 수위실 등 상시 근무하는 인원을 1명 이상 포함하여 구성하고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이용되고 있는 동안에는 상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2.1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일반현황 [서식 2.1]
2.1.3 공공기관

1. 작성 전 준비사항

① 임직원 현황표 및 조직도(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경우는 별도 취합)
② 과거에 작성된 [서식 2.2.4]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편성표
③「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2. 작성방법

① **[명칭~운영시간]** 대상물의 명칭과 도로명주소를 기재하고 해당하는 등급, 상시근무인원, 운영시간에 체크표시(√) 한다. 운영시간의 경우, 평일 또는 야간에 주용도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간도 함께 작성한다.

작성 예시

2.1.3 공공기관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명칭	○○경기장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170					
등급	□ 특급	☑ 1급	□ 2급	□ 3급		
상시근무인원	□ 50명 미만	□ 50명 ~ 100명	☑ 100명 ~ 500명	□ 500명 초과		
운영시간	☑ 평일	☑ 주간 08시 ~ 17시	☑ 야간 17시 ~ 23시	☑ 휴일	☑ 주간 08시 ~ 17시	☑ 야간 17시 ~ 23시

② **[자위소방대 편성표 서식]** 아래의 편성표 서식에 체크표시(√) 한다.
- 공공기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지방공사 및 공단, 사립학교인 경우이며 [서식 2.2.4] & [서식 2.3.4]을 함께 작성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연면적 30,000㎡ 이상, 관리권원이 분리되어 있거나 지구대를 편성한 경우에는 자위소방대 편성표 Type-Ⅰ을 공공기관에 맞게 변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작성 예시

자위소방대 편성표 서식	☑ 공공기관 [서식 2.2.4] & [서식 2.3.4] 작성

③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 자위소방대 : 편성된 지휘통제팀, 현장대응팀의 총 인원을 작성하고 해당하는 근무형태(상근직, 교대직)에 체크표시(√) 한다. 교대직의 경우에는 운영형태(조, 교대)에 대한 사항도 함께 기재한다.
- 지휘통제팀 : 편성된 자위소방대장 및 부대장의 인원을 작성하고 그 인원들을 합산하여 지휘통제팀에 기재한다.
- 현장대응팀 : 편성된 현장대응팀(지휘반, 진압반, 구조구급반, 대피유도반)에 체크표시(√) 하고 각 팀별 인원을 작성한다. 그리고 각 팀별 인원들을 모두 합산하여 현장대응팀에 기재한다.
- 초기대응체계 : 편성된 초기대응체계의 근무조, 근무시간, 인원을 작성하고 해당하는 근무형태에 체크표시(√) 한다. 그리고 편성된 초기대응체계의 총원을 작성한다.

작성 예시

구성	자위소방대	총원	53명	근무형태	☑ 상근직	☑ 교대직 (4 조 3 교대)	
		지휘통제팀	3명	대장	1명	부대장	2명
		현장대응팀	50명	☑ 지휘반	5명	☑ 구조구급반	5명
				☑ 진압반	20명	☑ 대피유도반	20명
	초기대응체계	총원	20명	근무형태	☑ 상근직	☑ 교대직 (4 조 3 교대)	
		☑ 1조(평일 주간 08시~17시)		5명	☑ 2조(평일 야간 17시~23시)		5명
		☑ 3조(휴일 주간 08시~17시)		5명	☑ 4조(휴일 야간 17시~23시)		5명

④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임무]

- 자위소방대 임무 : 화재 시 효율적인 자위소방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대장, 부대장, 비상연락팀,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 응급구조팀, 방호안전팀의 임무를 상세히 기재한다. 이 경우, 대상물 관리·이용형태, 소방시설 현황, 위험특성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
- 초기대응체계 임무 : 화재 초기 신속하고 효율적인 자체대응을 위해 초기대응체계 임무를 상세히 기재한다. 단, 초기대응체계는 해당 대상물이 이용되고 있는 동안 상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작성 예시

임무	자위소방대	대장	총괄지휘 및 감독
		부대장	현장지휘 및 감독
		☑ 지휘반	다른 반의 임무 조정, 화재진압 등에 관한 훈련계획을 수립·시행
		☑ 진압반	자체소방시설을 이용한 초기화재 진압 활동
		☑ 구조구급반	응급상황 발생 시 인명구조 및 응급조치
		☑ 대피유도반	거주자, 방문자 등 피난유도 및 피난약자에 대한 피난보조 활동
	초기대응체계	화재초기 신속하게 상황전파, 화재진압, 피난유도, 인명구조 등을 수행	

※ 비고
초기대응체계는 화재 발생 시 초기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종합방재실, 수위실 등 상시 근무하는 인원을 1명 이상 포함하여 구성하고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이용되고 있는 동안에는 상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2.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편성표 (서식 2.2)

2.2.1 Type-Ⅰ * 연면적 30,000㎡ 이상 권장

1. 작성 전 준비사항

① 임직원 현황표 및 조직도(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경우는 별도 취합)

② [부록 2.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방법

[부록 2.3]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조직도 및 임무

2. 작성방법

① [자위소방대 지휘통제팀]

- 자위소방대 대장 : 자위소방대를 총괄 지휘·통제하고 운영하는 자로서 대상물의 소유주, 법인의 대표 또는 관리운영기관의 책임자 등을 기재한다.
- 자위소방대 부대장 : 현장지휘 및 대장의 업무를 보좌하거나 대리하는 자로서 소방안전관리자를 기재한다. 단,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소방안전관리자 및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를 부대장으로 편성한다.

② [본부대] 대상물의 관리·이용형태 및 위험특성을 고려하여 편성된 2 이상의 현장대응조직 중 최초의 현장대응조직으로서 비상연락팀,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 방호안전팀, 응급구조팀을 기본으로 구성하고 상시 근무자 중 자위소방활동이 가능한 인력으로 편성한다.

③ [지구대] 추가적인 현장대응조직으로서 비상연락팀,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을 기본으로 구성하고 상시 근무자 중 자위소방활동이 가능한 인력으로 편성한다. 다만, 각 구역(Zone)별 규모, 편성대원 등 현장 운영여건에 따라 필요한 팀을 구성할 수 있다.

작성 예시

2.2.1 Type-Ⅰ * 연면적 30,000㎡ 이상 권장

자위소방대		소 속	성 명	개별임무	비상연락체계	
					사무실	개인
지휘통제팀	대 장	○○경기장 대표	김○혁	총괄지휘	02-000-0000	010-0000-0000
	부대장(Ⅰ)	00팀	심○보	현장지휘	02-000-0000	010-0000-0000
	부대장(Ⅱ)	00팀	임○우	수신반 제어	02-000-0000	010-0000-0000
	부대장(Ⅲ)					

작성 예시

자위소방대		소 속	성 명	개별임무	비상연락체계	
					사무실	개인
본부대 (경기장 지하2층 ~ 지상1층)	비상연락팀	00팀	안○돈	업무총괄(팀장)	02-000-0000	010-0000-0000
		00팀	정○영	비상방송	02-000-0000	010-0000-0000
		(추가 가능)				
	초기소화팀	00팀	조○석	업무총괄(팀장)	02-000-0000	010-0000-0000
		00팀	조○승	초기소화	02-000-0000	010-0000-0000
		(추가 가능)				
	피난유도팀	00팀	최○진	업무총괄(팀장)	02-000-0000	010-0000-0000
		00팀	김○성	피난유도	02-000-0000	010-0000-0000
		(추가 가능)				
	응급구조팀	00팀	이○실	업무총괄(팀장)	02-000-0000	010-0000-0000
		00팀	이○로	응급구조	02-000-0000	010-0000-0000
		(추가 가능)				
	방호안전팀	00팀	황○철	업무총괄(팀장)	02-000-0000	010-0000-0000
		00팀	이○현	비상반출	02-000-0000	010-0000-0000
		(추가 가능)				
지구대 1 (경기장 지상2층 ~ 지상5층)	비상연락팀	00팀	신○진	비상연락	02-000-0000	010-0000-0000
		00팀	하○우	비상연락	02-000-0000	010-0000-0000
		(추가 가능)				
	초기소화팀	00팀	김○형	초기소화	02-000-0000	010-0000-0000
		00팀	김○호	초기소화	02-000-0000	010-0000-0000
		(추가 가능)				
	피난유도팀	00팀	엄○지	피난유도	02-000-0000	010-0000-0000
		00팀	이○해	피난유도	02-000-0000	010-0000-0000
		(추가 가능)				
지구대 2 (별관)	비상연락팀	별관 00팀	정○효	비상연락	02-000-0000	010-0000-0000
		별관 00팀	채○현	비상연락	02-000-0000	010-0000-0000
		(추가 가능)				
	초기소화팀	별관 00팀	고○희	초기소화	02-000-0000	010-0000-0000
		별관 00팀	신○경	초기소화	02-000-0000	010-0000-0000
		(추가 가능)				
	피난유도팀	별관 00팀	장○근	피난유도	02-000-0000	010-0000-0000
		별관 00팀	강○구	피난유도	02-000-0000	010-0000-0000
		(추가 가능)				

작성 예시

자위소방대		소 속	성 명	개별임무	비상연락체계	
					사무실	개인
지구대 3 (시설관리실)	비상연락팀	시설관리실 00팀	이○종	비상연락	02-000-0000	010-0000-0000
		시설관리실 00팀	이○규	비상연락	02-000-0000	010-0000-0000
		(추가 가능)				
	초기소화팀	시설관리실 00팀	김○민	초기소화	02-000-0000	010-0000-0000
		시설관리실 00팀	김○연	초기소화	02-000-0000	010-0000-0000
		(추가 가능)				
	피난유도팀	시설관리실 00팀	임○원	피난유도	02-000-0000	010-0000-0000
		시설관리실 00팀	심○화	피난유도	02-000-0000	010-0000-0000
		(추가 가능)				

④ **[초기대응체계]**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현장대응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으로 관할구역(동, 층), 근무조, 근무시간(주간·야간·휴일)을 확인하여 최소 필요인원으로 편성한다. 단, 편성된 초기대응체계 대원 중 선임대원을 운영책임자(현장지휘)로 지정한다.

작성 예시

초기대응체계			소 속	성 명	개별임무	비상연락체계	
동	층	근무시간				사무실	개인
경기장 등 3개동	전층	1조	00팀	심○보	현장지휘	02-000-0000	010-0000-0000
		평일 주간	00팀	임○찬	초기소화	02-000-0000	010-0000-0000
		08시~17시	(추가 가능)				
		2조	00팀	임○우	현장지휘	02-000-0000	010-0000-0000
		평일 야간	00팀	윤○구	초기소화	02-000-0000	010-0000-0000
		17시~23시	(추가 가능)				
경기장 등 3개동	전층	3조	00팀	김○찬	현장지휘	02-000-0000	010-0000-0000
		휴일 주간	00팀	김○균	초기소화	02-000-0000	010-0000-0000
		08시~17시	(추가 가능)				
		4조	00팀	이○표	현장지휘	02-000-0000	010-0000-0000
		휴일 야간	00팀	신○재	초기소화	02-000-0000	010-0000-0000
		17시~23시	(추가 가능)				

2.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편성표 (서식 2.2)

2.2.2 Type-Ⅱ * 상시 근무인원 50명 이상 권장

1. 작성 전 준비사항

① 임직원 현황표 및 조직도(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경우는 별도 취합)

② [부록 2.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방법

[부록 2.3]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조직도 및 임무

2. 작성방법

① **[자위소방대 지휘통제팀]**

- 자위소방대 대장 : 자위소방대를 총괄 지휘·통제하고 운영하는 자로서 대상물의 소유주, 법인의 대표 또는 관리운영기관의 책임자 등을 기재한다.
- 자위소방대 부대장 : 현장지휘 및 대장의 업무를 보좌하거나 대리하는 자로서 소방안전관리자를 기재한다.

② **[현장대응팀]** 비상연락팀,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 응급구조팀, 방호안전팀을 기본으로 구성하고 상시 근무자 중 자위소방활동이 가능한 인력으로 편성한다.

작성 예시

2.2.2 Type-Ⅱ * 상시 근무인원 50명 이상 권장

자위소방대		소 속	성 명	개별임무	비상연락체계	
					사무실	개인
지휘통제팀	대 장	○○경기장 대표	김○혁	총괄지휘	02-000-0000	010-0000-0000
	부대장(I)	00팀	심○보	현장지휘	02-000-0000	010-0000-0000
	부대장(Ⅱ)	00팀	임○우	수신반 제어	02-000-0000	010-0000-0000
	부대장(Ⅲ)				02-000-0000	010-0000-0000
현장대응팀	비상연락팀	00팀	안○돈	업무총괄(팀장)	02-000-0000	010-0000-0000
		00팀	정○영	비상방송	02-000-0000	010-0000-0000
		(추가 가능)				
	초기소화팀	00팀	조○석	업무총괄(팀장)	02-000-0000	010-0000-0000
		00팀	조○승	초기소화	02-000-0000	010-0000-0000
		(추가 가능)				

작성 예시

자위소방대		소 속	성 명	개별임무	비상연락체계	
					사무실	개인
현장 대응팀	피난유도팀	00팀	최○진	업무총괄(팀장)	02-000-0000	010-0000-0000
		00팀	김○성	피난유도	02-000-0000	010-0000-0000
		(추가 가능)				
	응급구조팀	00팀	이○실	업무총괄(팀장)	02-000-0000	010-0000-0000
		00팀	이○로	응급구조	02-000-0000	010-0000-0000
		(추가 가능)				
	방호안전팀	00팀	황○철	업무총괄(팀장)	02-000-0000	010-0000-0000
		00팀	이○현	비상반출	02-000-0000	010-0000-0000
		(추가 가능)				

③ **[초기대응체계]**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현장대응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으로 근무조, 근무시간(주간·야간·휴일)을 확인하여 최소 필요인원으로 편성한다. 단, 편성된 초기대응체계 대원 중 선임대원을 운영책임자(현장지휘)로 지정한다.

작성 예시

초기대응체계		소 속	성 명	개별임무	비상연락체계	
					사무실	개인
1조	평일 주간 08시~17시	00팀	심○보	현장지휘	02-000-0000	010-0000-0000
		00팀	임○찬	초기소화	02-000-0000	010-0000-0000
		(추가 가능)				
2조	평일 야간 17시~23시	00팀	임○우	현장지휘	02-000-0000	010-0000-0000
		00팀	윤○구	초기소화	02-000-0000	010-0000-0000
		(추가 가능)				
3조	휴일 주간 08시~17시	00팀	김○찬	현장지휘	02-000-0000	010-0000-0000
		00팀	김○균	초기소화	02-000-0000	010-0000-0000
		(추가 가능)				
4조	휴일 야간 17시~23시	00팀	이○표	현장지휘	02-000-0000	010-0000-0000
		00팀	신○재	초기소화	02-000-0000	010-0000-0000
		(추가 가능)				

2.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편성표 (서식 2.2)

2.2.3 Type-Ⅲ * 상시 근무인원 50명 미만 권장

1. 작성 전 준비사항

① 임직원 현황표 및 조직도(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경우는 별도 취합)

② [부록 2.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방법

[부록 2.3]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조직도 및 임무

2. 작성방법

① **[자위소방대 지휘통제팀]**

- 자위소방대 대장 : 자위소방대를 총괄 지휘·통제하고 운영하는 자로서 대상물의 소유주, 법인의 대표 또는 관리운영기관의 책임자 등을 기재한다.
- 자위소방대 부대장 : 현장지휘 및 대장의 업무를 보좌하거나 대리하는 자로서 소방안전관리자를 기재한다.

② **[현장대응팀]** 화재 시 비상연락, 초기소화, 피난유도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상시 근무자 중 자위소방활동이 가능한 인력으로 편성한다.

작성 예시

2.2.3 Type-Ⅲ * 상시 근무인원 50명 미만 권장

자위소방대		소 속	성 명	개별임무	비상연락체계	
					사무실	개인
지휘 통제팀	대 장	○○경기장 대표	김○혁	총괄지휘	02-000-0000	010-0000-0000
	부대장(Ⅰ)	00팀	심○보	현장지휘	02-000-0000	010-0000-0000
	부대장(Ⅱ)	00팀	임○우	수신반 제어	02-000-0000	010-0000-0000
	부대장(Ⅲ)		김○찬	CCTV 등 제어	02-000-0000	010-0000-0000
현장대응팀		00팀	정○영	화재전파	02-000-0000	010-0000-0000
		00팀	조○승	초기소화	02-000-0000	010-0000-0000
		00팀	김○성	피난유도	02-000-0000	010-0000-0000
		00팀	이○로	응급구조	02-000-0000	010-0000-0000
		00팀	이○현	비상반출	02-000-0000	010-0000-0000
		(추가 가능)				

③ [초기대응체계]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현장대응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으로 근무조, 근무시간(주간·야간·휴일)을 확인하여 최소 필요인원으로 편성한다. 단, 편성된 초기대응체계 대원 중 선임대원을 운영책임자(현장지휘)로 지정한다.

작성 예시

초기대응체계		소 속	성 명	개별임무	비상연락체계	
					사무실	개인
1조	평일 주간 08시~17시	00팀	심○보	현장지휘	02-000-0000	010-0000-0000
		00팀	임○찬	초기소화	02-000-0000	010-0000-0000
		(추가 가능)				
2조	평일 야간 17시~23시	00팀	임○우	현장지휘	02-000-0000	010-0000-0000
		00팀	윤○구	초기소화	02-000-0000	010-0000-0000
		(추가 가능)				
3조	휴일 주간 08시~17시	00팀	김○찬	현장지휘	02-000-0000	010-0000-0000
		00팀	김○균	초기소화	02-000-0000	010-0000-0000
		(추가 가능)				
4조	휴일 야간 17시~23시	00팀	이○표	현장지휘	02-000-0000	010-0000-0000
		00팀	신○재	초기소화	02-000-0000	010-0000-0000
		(추가 가능)				

2.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편성표 (서식 2.2)
2.2.4 공공기관

1. 작성 전 준비사항

① 임직원 현황표 및 조직도(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경우는 별도 취합)

②「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2. 작성방법

① [자위소방대 지휘통제팀]

- 자위소방대 대장 : 자위소방대를 총괄 지휘·통제하고 운영하는 자로서 해당 기관의 기관장을 기재한다.
- 자위소방대 부대장 : 대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임무를 대행하는 자로서 해당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기재한다.

② [현장대응팀] 지휘반, 진압반, 구조구급반, 대피유도반을 기본으로 구성하고 해당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원들을 각 반에 적절히 편성한다.

작성 예시

2.2.4 공공기관

자위소방대		소 속	성 명	개별임무	비상연락체계	
					사무실	개인
지휘 통제팀	대 장	○○경기장 대표	김○혁	총괄지휘	02-000-0000	010-0000-0000
	부대장(I)	00팀	심○보	현장지휘	02-000-0000	010-0000-0000
	부대장(II)	00팀	임○우	수신반 제어	02-000-0000	010-0000-0000
	부대장(III)				02-000-0000	010-0000-0000
현장 대응팀	지휘반	00팀	안○돈	업무총괄(팀장)	02-000-0000	010-0000-0000
		00팀	정○영	수신반 제어	02-000-0000	010-0000-0000
		(추가 가능)				
	진압반	00팀	조○석	업무총괄(팀장)	02-000-0000	010-0000-0000
		00팀	조○승	초기소화	02-000-0000	010-0000-0000
		(추가 가능)				

작성 예시

자위소방대		소 속	성 명	개별임무	비상연락체계	
					사무실	개인
현장 대응팀	구조구급반	00팀	이○실	업무총괄(팀장)	02-000-0000	010-0000-0000
		00팀	이○로	응급구조	02-000-0000	010-0000-0000
		(추가 가능)				
	대피유도반	00팀	최○진	업무총괄(팀장)	02-000-0000	010-0000-0000
		00팀	김○성	피난유도	02-000-0000	010-0000-0000
		(추가 가능)				

③ **[초기대응체계]**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현장대응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으로 근무조, 근무시간(주간·야간·휴일)을 확인하여 최소 필요인원으로 편성한다. 단, 편성된 초기대응체계 대원 중 선임대원을 운영책임자(현장지휘)로 지정한다.

작성 예시

초기대응체계		소 속	성 명	개별임무	비상연락체계	
					사무실	개인
1조	평일 주간 08시~17시	00팀	심○보	현장지휘	02-000-0000	010-0000-0000
		00팀	임○찬	초기소화	02-000-0000	010-0000-0000
		(추가 가능)				
2조	평일 야간 17시~23시	00팀	임○우	현장지휘	02-000-0000	010-0000-0000
		00팀	윤○구	초기소화	02-000-0000	010-0000-0000
		(추가 가능)				
3조	휴일 주간 08시~17시	00팀	김○찬	현장지휘	02-000-0000	010-0000-0000
		00팀	김○균	초기소화	02-000-0000	010-0000-0000
		(추가 가능)				
4조	휴일 야간 17시~23시	00팀	이○표	현장지휘	02-000-0000	010-0000-0000
		00팀	신○재	초기소화	02-000-0000	010-0000-0000
		(추가 가능)				

2.3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조직도 및 임무 (서식 2.3)

2.3.1 Type-Ⅰ * 연면적 30,000㎡ 이상 권장

1. 작성 전 준비사항

① 작성된 [서식 2.1.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일반현황

② 작성된 [서식 2.2.1]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편성표

③ [부록 2.3]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조직도 및 임무

2. 작성방법

①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조직도]

- 자위소방대장 및 부대장 : 편성된 자위소방대장 및 부대장의 소속, 성명을 기재한다.
- 초기대응체계 : 관할구역(동, 층) 및 각 조에 편성된 모든 대원들의 인원을 기재한다.
- 본부대 : 관할구역(동, 층) 및 각 팀(비상연락팀,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 응급구조팀, 방호안전팀)에 편성된 모든 대원들의 소속, 인원을 기재한다.

작성 예시

2.3.1 Type-Ⅰ * 연면적 30,000㎡ 이상 권장(공동주택 제외)

1.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조직도

- 지구대 : 지구대별 관할구역(동, 층) 및 각 팀(비상연락팀,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에 편성된 모든 대원들의 소속, 인원을 기재한다.

작성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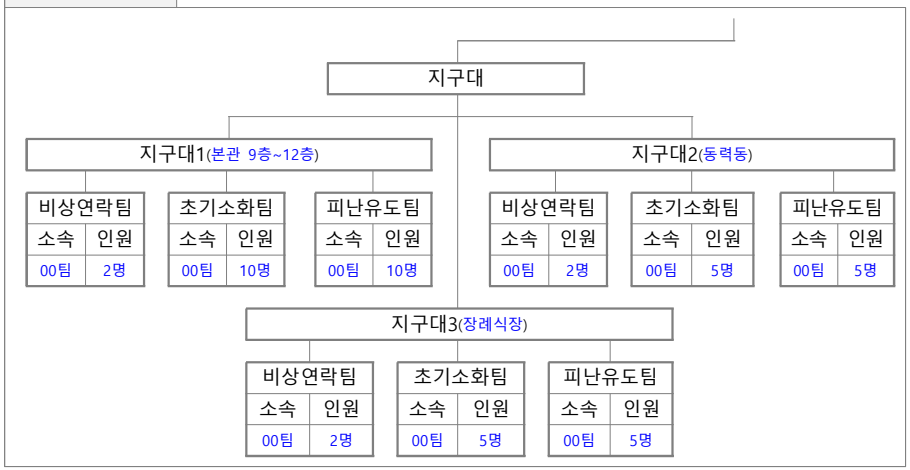

②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임무]** 작성된 **[서식 2.1.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일반현황을 참고하여 기재한다.

작성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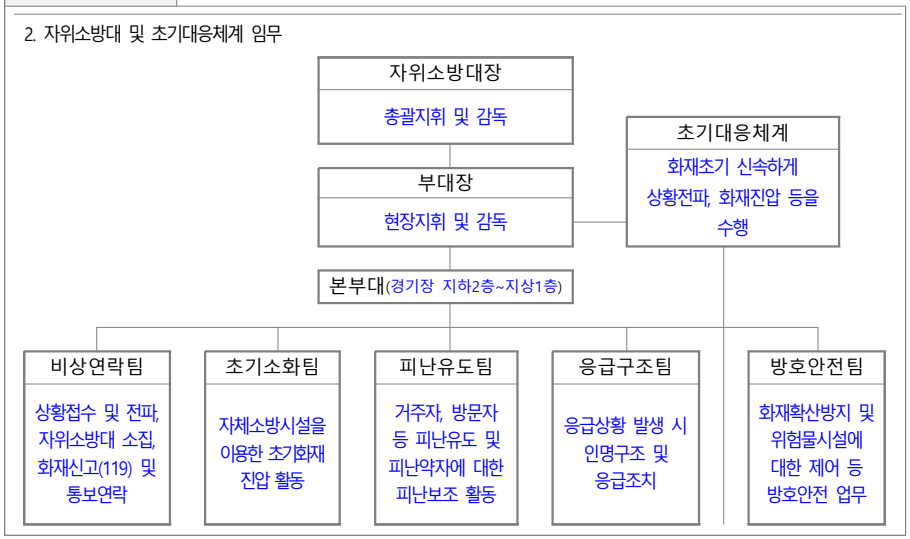

작성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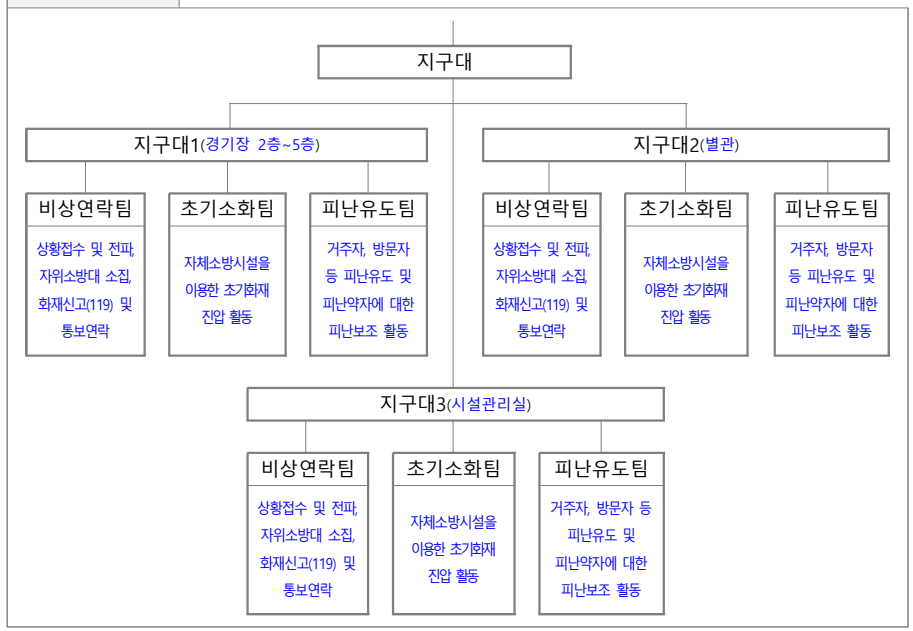

3. [집회용도] 참고사항

① 주·야간 교대근무에 따른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인원이 수시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대별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조직도를 추가로 작성하여 비치할 수 있다.

2.3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조직도 및 임무 (서식 2.3)
2.3.2 Type-Ⅱ * 상시 근무인원 50명 이상 권장

1. 작성 전 준비사항

① 작성된 [서식 2.1.1]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일반현황

② 작성된 [서식 2.2.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편성표

③ [부록 2.3]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조직도 및 임무

2. 작성방법

①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조직도]

- 자위소방대장 및 부대장 : 편성된 자위소방대장 및 부대장의 소속, 성명을 기재한다.
- 초기대응체계 : 각 조에 편성된 모든 대원들의 인원을 기재한다.
- 비상연락팀,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 응급구조팀, 방호안전팀 : 각 팀에 편성된 모든 대원들의 소속, 인원을 기재한다.

작성 예시

2.3.2 Type-Ⅱ * 상시 근무인원 50명 이상 권장

1.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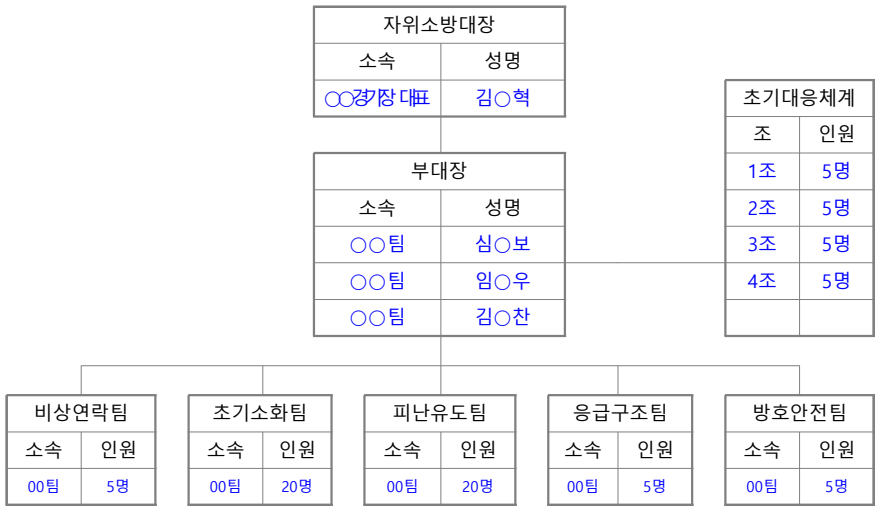

②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임무] 작성된 [서식 2.1.1]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일반현황을 참고하여 기재한다.

작성 예시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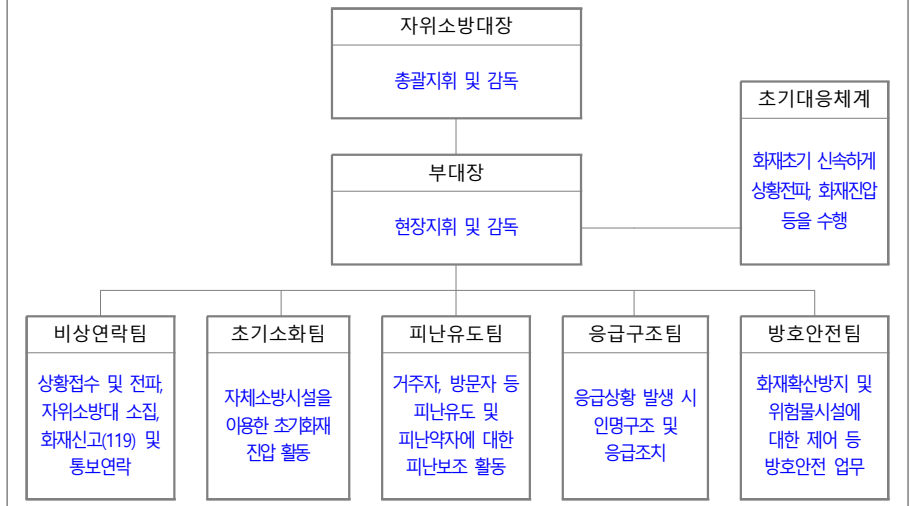

3. [집회용도] 참고사항

① 주·야간 교대근무에 따른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인원이 수시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대별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조직도를 추가로 작성하여 비치할 수 있다.

2.3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조직도 및 임무 (서식 2.3)
2.3.3 Type-Ⅲ * 상시 근무인원 50명 미만 권장

1. 작성 전 준비사항

① 작성된 [서식 2.1.1]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일반현황

② 작성된 [서식 2.2.3]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편성표

③ [부록 2.3]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조직도 및 임무

2. 작성방법

①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조직도]

- 자위소방대장 및 부대장 : 편성된 자위소방대장 및 부대장의 소속, 성명을 기재한다.
- 초기대응체계 : 각 조에 편성된 모든 대원들의 인원을 기재한다.
- 현장대응팀 : 편성된 모든 대원들의 소속, 인원을 기재한다.

작성 예시

2.3.1 Type-Ⅲ * 상시 근무인원 50명 미만 권장

1.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조직도

자위소방대장	
소속	성명
○○경기장 대표	김○혁

부대장	
소속	성명
○○팀	심○보
○○팀	임○우
○○팀	김○찬

초기대응체계	
조	인원
1조	2명
2조	2명
3조	2명
4조	2명

현장대응팀	
소속	인원
○○팀	5명

②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임무] 작성된 [서식 2.1.1]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일반현황을 참고하여 기재한다.

작성 예시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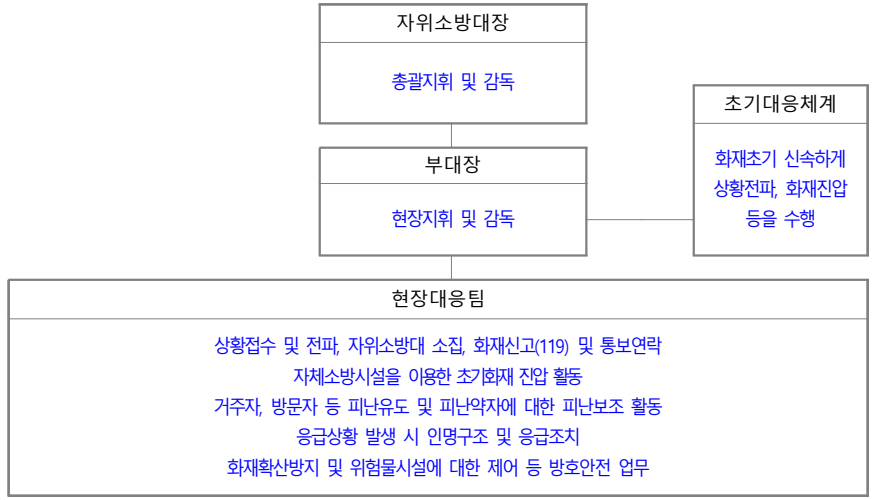

3. [집회용도] 참고사항

① 주·야간 교대근무에 따른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인원이 수시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대별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조직도를 추가로 작성하여 비치할 수 있다.

2.3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조직도 및 임무 (서식 2.3)
2.3.4 공공기관

1. 작성 전 준비사항

① 작성된 [서식 2.1.3]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일반현황

② 작성된 [서식 2.2.4]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편성표

③「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2. 작성방법

①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조직도]

- 자위소방대장 및 부대장 : 편성된 자위소방대장 및 부대장의 소속, 성명을 기재한다.
- 초기대응체계 : 각 조에 편성된 모든 대원들의 인원을 기재한다.
- 지휘반, 진압반, 구조구급반, 대피유도반 : 각 팀에 편성된 모든 대원들의 소속, 인원을 기재한다.

작성 예시

2.3.4 공공기관

1.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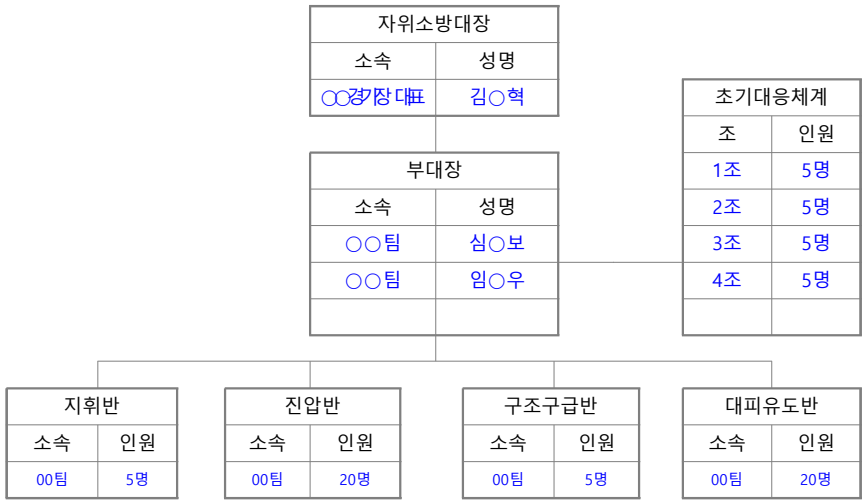

②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임무] 작성된 [서식 2.1.3]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일반현황을 참고하여 기재한다.

작성 예시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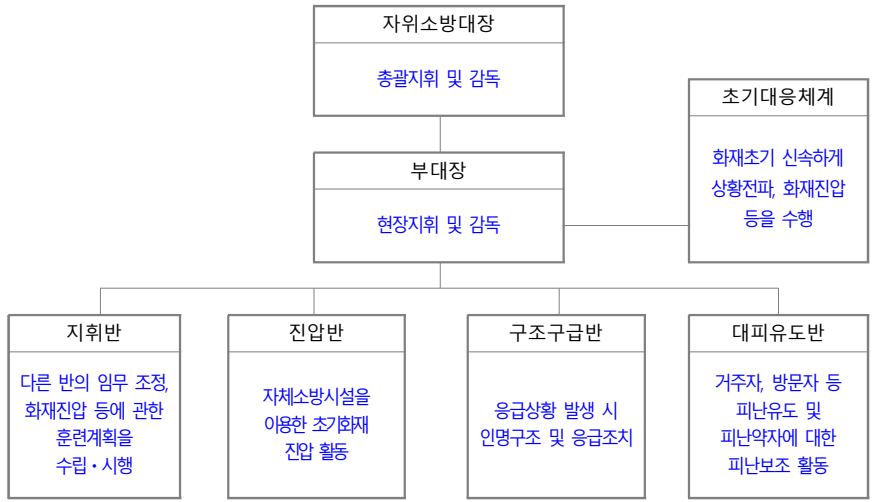

3. [집회용도] 참고사항

① 주·야간 교대근무에 따른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인원이 수시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대별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조직도를 추가로 작성하여 비치할 수 있다.

2.4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개별임무카드 〔서식 2.4〕

1. 작성 전 준비사항

① 작성된 [서식 2.1]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일반현황

② 작성된 [서식 2.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편성표

③ 임무수행에 필요한 자료(행동요령, 유의사항) 등

④ [부록 2.3]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조직도 및 임무

2. 작성방법

① **[성명]**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에 편성된 대원의 이름을 작성한다.

② **[공통임무]** 화재 초기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가 수행해야 할 기본임무를 작성한다. 이 경우, 화재발생장소에 따라 유동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타 팀의 임무도 함께 기재가 가능하다.

③ **[개별임무]** 화재 발생 시 즉각적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각 팀별 기능에 기초하여 개인임무를 부여하고 이를 기재한다. 이 경우, 대원별 임무를 복수로 부여하거나 중복하여 부여할 수 있다.

④ **[세부내용]** 각 대원에게 부여된 개별임무(비상연락처, 행동요령, 유의사항 등)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한다.

작성 예시

전 면

자위소방대 비상연락팀(지휘반)		
공통임무		
1. 화재사실 전파 및 신고(119)		
2. 초기소화 및 피난유도		
3. 기타 초기대응에 필요한 업무지원		
개별임무	성명	정○영
1. 자위소방대원 소집 및 임무부여		
2. 피난개시 명령(비상방송설비, 육성 등 활용)		
3. 관계기관 통보·연락 실시		

후 면

세부내용
□ **비상연락처**
- 방재실 : 000-0000
- 소방안전관리자 : 000-000-0000
- 00소방서 : 000-0000
□ **화재전파 시 유의사항**
- 반복적으로 피난정보 제공(피난경로, 방법 등)
□ **피난개시 명령 시 유의사항**
- 비상방송설비가 자동동작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작부 옆 마이크 스위치를 눌러 육성으로 안내

작성 예시

전 면

자위소방대 초기소화팀(진압반)		
공통임무		
1. 화재사실 전파 및 신고(119)		
2. 초기소화 및 피난유도		
3. 기타 초기대응에 필요한 업무지원		
개별임무	성명	조○승
1. 각층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 사용		
2. 유사시 자동식소화설비(SP 등) 수동조작		
3. 초기소화 실패 시 즉각 보고 후 피난실시		

후 면

세부내용
□ **비상연락처**
- 방재실 : 000-0000
- 소방안전관리자 : 000-000-0000
- 00소방서 : 000-0000
□ **소화기 사용방법**
- 손잡이를 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핀 분리
- 비로 쓸 듯이 좌·우로 흔들면서 방사
□ **소화전 사용방법**
- 2인 1조로 호스가 꼬이지 않도록 전개 후 개폐밸브를 반시계 방향으로 개방

전 면

자위소방대 피난유도팀(대피유도반)		
공통임무		
1. 화재사실 전파 및 신고(119)		
2. 초기소화 및 피난유도		
3. 기타 초기대응에 필요한 업무지원		
개별임무	성명	최○진
1. 최단거리 피난경로 안내		
2. 분산대피 유도(병목현상 방지)		
3. 피난약자 보조인원 요청		

후 면

세부내용
□ **비상연락처**
- 방재실 : 000-0000
- 소방안전관리자 : 000-000-0000
- 00소방서 : 000-0000
□ **피난유도 시 유의사항**
- 낮은자세를 유지하며 피난할 수 있도록 안내
- 엘리베이터 사용불가(단, 비상용은 사용가능)
- 아래층으로 대피불가 시 옥상으로 유도
- 출입구로 접근 불가 시 피난기구 사용
- 피난약자는 반드시 보조자와 같이 피난

전 면

자위소방대 응급구조팀(구조구급반)		
공통임무		
1. 화재사실 전파 및 신고(119)		
2. 초기소화 및 피난유도		
3. 기타 초기대응에 필요한 업무지원		
개별임무	성명	이○실
1. 환자 발생 시 응급조치 실시(심폐소생술 등)		
2.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3. 119구급대 업무 지원		

후 면

세부내용
□ **비상연락처**
- 방재실 : 000-0000
- 소방안전관리자 : 000-000-0000
- 00소방서 : 000-0000
□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방법**
- 반응확인 → 119신고 → 호흡확인 → 가슴압박 30회(필수) → 인공호흡 2회(선택)
□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방법**
- 전원켜기 → 패드부착(2개) → 심장리듬분석 → 심장충격(제세동) 시행 → 심폐소생술 재실시

작성 예시

전 면

자위소방대 방호안전팀		
공통임무		
1. 화재사실 전파 및 신고(119)		
2. 초기소화 및 피난유도		
3. 기타 초기대응에 필요한 업무지원		
개별임무	성명	황○철
1. 위험물 공급차단 및 안전한 장소로 이동		
2. 물품(중요문서, 데이터 등) 비상반출		
3. 유사시 방화문, 방화셔터 수동폐쇄		

후 면

세부내용
□ **비상연락처**
- 방재실 : 000-0000
- 소방안전관리자 : 000-000-0000
- 00소방서 : 000-0000
□ **위험물질 이동 시 유의사항**
- 위험물 혼재는 아래의 경우에만 가능함 (1류+6류, 2류+4류, 2류+5류, 3류+4류, 4류+5류)
□ **물품 비상반출 시 유의사항**
- 비상반출 후 집결지 근처 보관장소 별도마련

전 면

초기대응체계		
공통임무		
1. 화재사실 전파 및 신고(119)		
2. 초기소화 및 피난유도		
3. 기타 초기대응에 필요한 업무지원		
개별임무	성명	이○표
1. 현장상황보고(자위소방대장 또는 부대장)		
2. 각층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 사용		
3. 최단거리 피난경로 안내		

후 면

세부내용
□ **비상연락처**
- 방재실 : 000-0000
- 소방안전관리자 : 000-000-0000
- 00소방서 : 000-0000
□ **소화기 사용방법**
- 손잡이를 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핀 분리
- 비로 쓸 듯이 좌·우로 흔들면서 방사
□ **소화전 사용방법**
- 2인 1조로 호스가 꼬이지 않도록 전개 후 개폐밸브를 반시계 방향으로 개방

3. [집회용도] 참고사항

① 비상상황 시 전체적인 피난경로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소방시설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평상시에는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개별임무카드를 지참하고 숙지하여 초기 화재 시 대처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

②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임무, 개인임무카드 배부, 조직도 비치 관련 사항은 [부록 2.3]을 참고한다.

2.5 지휘통제팀

2.5.1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 장소별 고려사항 (서식 2.5)

1. 작성 전 준비사항

① 작성된 [서식 2.1]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일반현황

② [부록 2.4] 지휘통제팀

2. 작성방법

① **[화재취약장소]**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로서 주로 대상물에서 가연성 물질을 저장·취급하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를 작성한다.

② **[화재위험요인]** 화재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요소로서 대상물 내 화재취약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요인에 체크표시(√) 한다.

③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대상물에 편성된 자위소방대 각 팀에 체크표시(√)하고 화재취약장소에서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우선순위를 기재한다. 이 경우 해당 장소에서 초기대응 우선순위 고려사항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작성 예시

2.5.1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 장소별 고려사항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화재취약장소	화재위험요인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우선순위		고려사항
흡연구역 및 주변 쓰레기통	□ 전기적 요인	☑ 피난유도팀 (대피유도반)	2 순위	흡연 후 담배꽁초를 던지거나 터는 등의 행동으로 불똥이 주변으로 확산하거나 담배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았음에도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무단 투기하여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많고 장소에 익숙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연기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므로 비상방송설비, 호루라기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피난 유도를 실시한다.
	□ 기계적 요인	☑ 초기소화팀 (진압반)	5 순위	
	□ 화학적 요인	☑ 방호안전팀	1 순위	
	□ 가스누출(폭발)	☑ 응급구조팀 (구조구급반)	4 순위	
	□ 자연재해	☑ 비상연락팀 (지휘반)	2 순위	
	☑ 부주의			
	□ 기타( )			

④ **[인명피해 우려장소]** 화재발생 시 사람이 생명을 잃거나 다치는 피해가 예상되는 장소로서 주로 피난 시 병목현상 우려가 있거나 피난약자가 다수 있는 장소를 작성한다.

⑤ **[예상피해]** 인명피해 우려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피해에 체크표시(√) 한다.

⑥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대상물에 편성된 자위소방대 각 팀에 체크표시(√)하고 인명피해 우려장소에서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우선순위를 기재한다. 이 경우 해당 장소에서 초기대응 우선순위 고려사항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작성 예시

인명피해 우려장소	예상피해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우선순위		고려사항
관중석과 출구 사이의 통로	☑ 연기, 유독가스 흡입 ☐ 화상 ☐ 열상 ☑ 넘어짐, 미끄러짐 ☑ 갇힘 ☐ 기타( )	☑ 피난유도팀 (대피유도반)	1 순위	화재발생 시 피난유도팀에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출구로 해야하나 피난시간이 경과할수록 관중들의 불안감 증가로 인하여 지시에 불응하거나 출구 한쪽으로 피난이 집중되면서 병목현상이 심화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피난유도팀은 관중을 출구로 원활하게 안내할 수 있는 지향성 스피커 등을 지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초기소화팀 (진압반)	5 순위	
		☑ 방호안전팀	4 순위	
		☑ 응급구조팀 (구조구급반)	2 순위	
		☑ 비상연락팀 (지휘반)	3 순위	

3. [집회용도] 참고사항

①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장소로는 무대부, 전시실, 계산대, 매점(판매점), 휴게실, 경비실, 화장실, 지하실, 통제실, 보일러실, 쓰레기장(소각로), 창고, 변전실(배분전반), 기계실·공조실, 주차장 등이 있다.

② 지휘통제팀의 임무, 초기대응 시 우선순위 관련 사항은 [부록 2.4]을 참고한다.

2.5 지휘통제팀
2.5.2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 시간대별 기대행동 (서식 2.5)

1. 작성 전 준비사항

① 작성된 [서식 2.1]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일반현황

② 작성된 [서식 2.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편성표

③ [부록 2.4] 지휘통제팀

2. 작성방법

① **[화재발생 후 시간별 기대행동]**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로 편성된 조직의 인원 등을 확인하고 화재발생 후 시간별 기대행동(1분, 5분, 10분)을 기재한다. 다만, 지휘통제팀은 화재진행상황, 부상자 및 사망자 유무 등 상황에 따라 화재발생 후 시간별 기대행동과는 다르게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를 운영 할 수 있다.

작성 예시

2.5.2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 시간대별 기대행동

구분	시간대별 기대행동		
	화재발생+1분이내	화재발생+5분이내	화재발생+10분이내
초기대응체계	1. 화재발생현장 도착 → 현장확인 및 상황보고 2. 초기대응 실시 (초기소화, 피난유도 등)	1. 현장상황 수시보고 2.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 등에게 상황설명 후 함께 업무수행	
지휘통제팀 (자위소방대장 및 부대장)	1. 초기대응체계 출동 명령 2. 자위소방대 출동 명령	1. 실시간 현황파악 및 지시 2. 승강기 제어 명령	1. 119소방대 도착확인 후 화재현황 등 설명 후 현장지휘권 인계 2. 119소방대에 대한 업무지원 지시
비상연락팀 (지휘반)	1. 화재신고접수 2. 초기대응체계 임무부여 3. 화재전파(119 신고) 4. 자위소방대 소집·임무부여	1. 재실자에게 화재상황 전파 및 피난개시명령 실시 (비상방송설비 등) 2. 관계기관 연락	1. 실시간 화재상황 및 피난정보 반복적으로 안내

작성 예시

구분	시간대별 기대행동		
	화재발생+1분이내	화재발생+5분이내	화재발생+10분이내
초기소화팀 (진압반)	1. 화재발생상황 수신 (SMS, 모바일메신저 등) 2. 화재발생현장 및 개별임무수행 장소로 출동	1. 소화기·옥내소화전 등으로 초기소화 실시 2. 필요 시 자동소화설비 수동기동 실시	1. 화재진압현황 보고 2. 초기소화 실패 시 안전한 장소로 피난
피난유도팀 (대피유도반)		1. 발화층, 직상층 주변 피난경로에 위치하여 양방향 피난 실시 2. 피난약자 확인 및 보조	1. 피난유도현황 보고 2. 집결지 안내
응급구조팀 (구조구급반)		1. 응급환자 현황파악 2. 응급상황별 응급조치 실시 3. 환자 이송장소 확인 등 이송준비	1. 응급구조현황 보고 2.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3. 119구급대원 업무보조
방호안전팀		1. 위험물 보관장소 출동 → 공급차단 및 안전구역 이동 2. 유사시 방화문, 방화셔터 수동폐쇄 실시	1. 물품(중요문서, 데이터 등) 비상반출 실시

※ 비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화재대응을 위해 119소방대 출동 시 연소범위, 피난유도상황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소방대 진입장소를 개방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3. [집회용도] 참고사항

① 하나의 공간면적과 용적이 크고, 장소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불특정다수의 인원이 전체 공간에 수용되는 특징이 있어 화재발생 후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면 집단으로 패닉현상이 발생하고 일부 인원은 피난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에 피난유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에 대한 시간별 기대행동(1분, 5분, 10분)을 작성하도록 한다.

② 기본대응절차 및 화재유형별 표준대응절차 관련 사항은 [부록 2.4]을 참고한다.

2.6 비상연락팀(지휘반) [서식 2.6]

1. 작성 전 준비사항

① 작성된 [서식 2.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편성표

② 소방대상물 관계인 등 연락처(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경우는 별도 취합)

③ [부록 2.5] 비상연락팀(지휘반)

2. 작성방법

① [비상연락 개요] 비상상황 발생 시 소방대상물 관계인 등(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근무자 및 거주자, 시설이용자, 방문객, 관계기관)에게 연락할 방법(유선, SMS문자, 모바일메신저, 자체 App,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에 체크표시(√) 하고 그 내용을 작성한다.

작성 예시

■ 대상명 : ○○경기장

1. 비상연락 개요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연락대상	연락방법	연락내용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 유선	
	☑ SMS문자	화재전파,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소집·임무부여 등
	□ 모바일 메신저	
	□ 자체 App 활용	
	□ 기타( )	
거주자 및 근무자 시설이용자 방문객 등	☑ 비상방송설비	화재전파, 상황설명, 피난안내 개시 등
	☑ 기타(확성기)	화재전파, 상황설명, 피난안내 개시 등
관계기관	☑ 자동화재속보설비	소방대상물의 위치, 화재전파 및 신고, 관계인 연락처 등
	□ 기타( )	

② **[비상연락망]** 신속한 상황 전파를 위해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근무자 및 거주자, 입주사대표 등 근무위치(동, 층), 소속 또는 부서명, 성명, 연락처(사무실, 개인)를 작성한다.

작성 예시

2. 비상연락망

근무위치		소속 또는 부서명	성명	연락처
동	층			
본관	5층	○○경기장 대표	김○혁	00-000-0000 (010-0000-0000)
본관	지하1층	00팀	심○보	00-000-0000 (010-0000-0000)
(추가 가능)				

③ **[비상연락절차]** 비화재보(화재에 의한 열, 연기 또는 불꽃 이외의 요인에 의하여 화재경보가 발하는 것) 또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를 구분하여 대응방법을 자세히 기재한다.

작성 예시

3. 비상연락절차

구분	대응방법
비화재보 시	화재상황이 아님을 신속히 재실자, 근무자, 관계인, 관계기관 등에게 신속히 전파
화재 시	화재사실 전파 및 신고,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소집·연락, 관계기관 연락 등

3. [집회용도] 참고사항

① 비상연락망은 수시로 점검하여 현행화(업데이트) 한다.

② 비상연락팀의 주요업무 및 임무, 자위소방대 보고체계 및 임무시달, 비상방송설비 동작방법 등 관련 사항은 [부록 2.5]을 참고한다.

2.7 외부기관 비상연락체계 (서식 2.7)

1. 작성 전 준비사항

① 비상상황 시 신속대응이 가능한 외부기관 비상연락망

② [부록 2.5] 비상연락팀(지휘반)

2. 작성방법

① **[종합방재실(수신반)]** 소방시설, 자동제어설비, 방범보안설비, 공기조화설비 및 기타 전기·가스·승강기 등 통합적 재난관리가 가능한 종합방재실 또는 수신반 근무자의 소속, 이름, 연락처를 작성한다.

작성 예시

최초발견자

종합방재실(수신반)

근무자	연락처
00팀 심○보	010-000-0000
00팀 임○우	010-000-0000
00팀 김○찬	010-000-0000

② **[긴급대응기관, 유관협력기관, 의료기관]** 외부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전파할 수 있도록 긴급대응기관, 유관기관, 의료기관으로 세분화하여 작성한다.

작성 예시

긴급대응기관

기관명	연락처
○○소방서	00-000-0000
○○119 안전센터	00-000-0000
○○구청 재난관리팀	00-000-0000
○○시청 재난상황팀	00-000-0000
고용노동부 위험상황신고	00-000-0000
(추가 가능)	

유관기관

기관명	연락처
한국전력공사	00-000-0000
가스안전공사	00-000-0000
○○발전소	00-000-0000
한국승강기 안전공단	00-000-0000
○○경찰서	00-000-0000
(추가 가능)	

의료기관

기관명	연락처
○○의원	00-000-0000
○○병원	00-000-0000
○○화상 전문병원	00-000-0000
○○대학병원	00-000-0000
○○응급실	00-000-0000
(추가 가능)	

2.8 비상상황별 연락방법 및 안내문구 [서식 2.8]

1. 작성 전 준비사항

① 자체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②「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휴대폰 재난문자방송 표준문안 참고)

③ [부록 2.5] 비상연락팀(지휘반)

2. 작성방법

① **[비상상황]** 대상물의 관리·이용형태, 소방시설 현황, 위험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체크표시(√) 한다.

작성 예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비 상 상 황	□ 비화재보 ☑ 화재폭발 □ 위험물질 □ 재난( ) □ 기타( )

② **[연락방법 및 안내문구]** 비상상황 시 대상물에서 연락 가능한 방법에 체크표시(√) 하고 화재위치,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임무부여 내용, 피난명령개시, 피난방법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안내문구를 작성한다. 다만, 자동화재속보설비의 경우「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5조(기능)제11호에 따라 대상물의 위치, 화재발생 사실, 화재신고, 관계인 연락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작성 예시

연락방법 및 안 내 문 구	☑ SMS문자 (모바일메신저, 자체 App 포함)
	[실제상황] ○○경기장 ○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현 시간부로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를 소집하오니 각 대원들은 개별 임무카드를 확인하고 신속히 현장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예시

연락방법 및 안 내 문 구	☑ 비상방송설비
	○○경기장 방재실에서 안내드립니다. 현재 ○층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119 소방대가 출동하여 도착예정이며 ○○경기장 소속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가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량의 연기로 인한 질식피해가 우려되오니 ○○경기장 임직원 및 방문객 등 모든 분들은 피난계단을 이용하여 1층 외부로 안전하게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
	☑ 자동화재속보설비
	화재발생, 화재발생~ 여기는 서울시 영등포구 영중로 170, ○○경기장 지하1층 방재실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연락처는 010-0000-0000입니다. (반복)
	☑ 기타(육성 또는 확성기)
	불이야, 불이야~ 현재 ○○경기장 ○층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현 시간부로 가까운 피난계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피난하시기 바랍니다. 피난방향은 건물 복도, 주차장, 계단 및 경사로에 설치되어 있는 통로유도등의 화살표 방향입니다. (반복)

3. [집회용도] 참고사항

① 근무자 및 거주자, 방문객 중 한국어가 불가능한 외국인이 다수 있는 경우에는 비상상황별 안내문구를 외국어로 별도 기재하여 외국어 안내방송을 실시해야 한다.

2.9 초기소화팀(진압반) [서식 2.9]

1. 작성 전 준비사항

① 전년도(당해년도) 소방시설 자체점검표 또는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② 초기소화에 필요한 물품현황 등

③ [부록 2.6] 초기소화팀(진압반)

2. 작성방법

① **[초기소화]** 대상물의 해당하는 층수(고층, 지상층, 지하층) 및 사용시설(전기시설, 가스시설, 위험물 시설 등)에 체크표시(√)하고 화재특성(일반, 유류, 전기 등), 위험요인(연기, 유독가스 등) 등을 고려한 초기소화방법을 자세히 기재한다. 또한, 대상물에서 화재가 취약한 장소를 파악하여 명칭, 위치, 화재특성 및 위험요인 등을 고려한 초기소화방법도 함께 기재한다.

작성 예시

■ 대상명 : ○○경기장

1. 초기소화 개요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구분		화재특성 및 위험요인 등을 고려한 초기소화방법
초기소화	층 별	□ 고층(30층 이상)		
		☑ 지상층		계단으로 신속하게 이동하여 초기소화
		☑ 지하층		열, 연기 등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초기소화(미착용 시 진입금지)
	시설별	☑ 전기시설		1. 전기화재(C급)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로 초기소화 2. 가스계 수동기동장치로 초기소화(자동기동 실패 시)
		☑ 가스시설		불꽃을 일으킬 수 있는 기자재 사용을 자제하고 가스에 의한 질식 등에 유의하여 초기소화
		☑ 위험물시설		위험물 특성에 맞는 소화방법을 숙지하여 초기소화
		□ 기타( )		
	화 재 취 약 장 소	명칭	위치	화재특성 및 위험요인 등을 고려한 초기소화방법
		관중석	○○ 경기장	가까운 출입구에 비치된 소화기, 옥내소화전으로 초기소화
				(추가 가능)

② **[초기소화장비 현황]**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초기소화장비(소화기, 소화전, 자동소화설비 수동기동장치 등)의 위치, 수량, 담당자를 확인하고 기재한다.

작성 예시

2. 초기소화장비 현황

장비명	설치위치	수량	담당자(관리부서)	비고
옥내소화전	전 층	층별 4개	임○우(00팀)	-
SP 수동기동장치	전 층	층별 2개	임○우(00팀)	자동기동 실패 시 조작해야함
(추가 가능)				

③ **[초기소화절차]** 비화재보(화재에 의한 열, 연기 또는 불꽃 이외의 요인에 의하여 화재경보가 발하는 것) 또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를 구분하여 대응방법을 자세히 기재한다.

작성 예시

3. 초기소화절차

구분	대응방법
비화재보 시	초기소화장비 원위치 및 수량 재확인, 방재실 복귀 후 추가안내사항 확인
화재 시	소화기·옥내소화전등을 사용하여 화재진압, 초기소화 불가 시 안전한 장소로 피난

3. [집회용도] 참고사항

① 지하층에 연기가 다량으로 발생하면 안전장비 없이 절대 진입하지 않는다.

② 내화조건물이면 자세를 낮추어 중성대 아래쪽에서부터 화점으로 진입한다.

③ 목조문화재이면 정확한 화점을 파악하여 집중적으로 방사하고 화재가 지붕(적심부)내에 진행중이면 상부 용마루 일부를 파괴, 틈새로 집중 방사한다.

④ 초기소화팀의 주요업무 및 임무, 소화기·옥내소화전 사용방법, 스프링클러·가스계소화설비 수동조작장치 수동조작방법 등 관련 사항은 [부록 2.6]을 참고한다.

2.10 피난유도팀(대피유도반) [서식 2.10]

1. 작성 전 준비사항

① 건축물현황도(평면도)

② 기타 피난유도에 필요한 물품현황 등

③ [부록 2.7] 피난유도팀(대피유도반)

2. 작성방법

① [피난유도 개요]

- 화재경보 : 경종이 건물전체에 울릴 경우에는 “전층경보방식”, 발화층과 직상 1개층 또는 발화층과 직상 4개층에 울리는 경우에는 “우선경보방식” 중 해당내용에 체크표시(√) 한다.
- 피난유도 : 대피자가 안전하게 피난층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경로(계단, 피난안전구역, 옥상, 피난기구 등)를 제1피난로, 제2피난로, 제3피난로 등에 체크표시(√) 하고 그 경로와 유도방법을 자세히 기재한다.
- 집결지 : 대상물 주변 화재로부터 안전한 장소를 지정하고 그 지역에서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할 확인사항을 기재한다.

작성 예시

■ 대상명 : ○○경기장

1. 피난유도 개요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화 재 경 보	방식	□ 전층경보방식	☑ 우선경보방식 (발화층 및 직상 1개층, 지하층)	
			□ 우선경보방식 (발화층 및 직상 4개층, 지하층)	
	경보수단	☑ 주·지구경종	□ 시각경보기	☑ 비상방송설비
피 난 유 도	경로	☑ 제1피난로	서편 피난계단 → 피난층(1층)	
		☑ 제2피난로	동편 피난계단 → 피난층(1층)	
		☑ 제3피난로	중앙 피난계단 → 피난층(1층)	
		□ 피난안전구역		
		☑ 옥상	피난계단(서편, 동편, 중앙) → 옥상	
		□ 기타( )		
	방법	피난경로 주변에서 양방향 피난, 분산유도 실시, 집결지 안내		
집 결 지	장소	○○경기장 주변 00중학교		
	확인사항	부상자 및 실종자 현황파악, 화재현장 재진입 차단		

② [피난유도장비 현황]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피난유도장비(경광봉, 호루라기, 안전조끼 등)의 위치, 수량, 담당자를 확인하고 기재한다.

작성 예시

2. 피난유도장비 현황

장비명	설치위치	수량	담당자(관리부서)	비고
경광봉, 호루라기	지하1층 방재실	20개	임○우(00팀)	-
안전조끼(형광)	지하1층 방재실	20개	임○우(00팀)	-
(추가 가능)				

③ [피난유도절차] 비화재보(화재에 의한 열, 연기 또는 불꽃 이외의 요인에 의하여 화재경보가 발하는 것) 또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를 구분하여 대응방법을 자세히 기재한다.

작성 예시

3. 피난유도절차

구분	대응방법
비화재보 시	화재상황이 아님을 신속히 재실자 등에게 전파, 방재실 복귀 후 추가안내사항 확인
화재 시	거주자, 방문자 등에게 피난경로 안내 피난약자에 대한 피난보조 (화재대피 순서에 따라 순차적 피난유도)

3. [집회용도] 참고사항

① 육성, 확성기, 비상방송설비 등을 활용하여 담당구역(동, 층) 별 피난경로를 신속하게 방문객에게 안내하고 안전한 장소로 피난유도한다.

② 피난유도경로(출입구, 계단 등)에 대원을 집중 배치하여 패닉 등으로 인한 병목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③ 피난유도가 완료되면 계단실로 통하는 방화문을 완전히 폐쇄하여 화염 및 연기를 차단하고 피난경로를 확보하도록 한다.

④ 피난유도팀의 주요업무 및 임무, 피난기구 사용방법, 방화셔터 종류별 피난방법 관련 사항은 [부록 2.7]을 참고한다.

2.11 응급구조팀(구조구급반) [서식 2.11]

1. 작성 전 준비사항

① 응급상황 발생 시 환자 이송이 가능한 병원 및 연락처

② 자동심장충격기(AED) 및 의료물품(붕대, 부목, 화상도포제 등) 현황 등

③ [부록 2.8] 응급구조팀(구조구급반)

2. 작성방법

① [응급구조 개요]

- 응급상황 : 대상물에서 발생 가능한 응급상황(출혈, 화상, 심정지, 중독 등)에 체크표시(√) 하고 응급상황별 응급조치방법, 환자 이송장소 및 연락처를 작성한다.
- 현장응급의료소 :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 시 설치가능하며 위치, 운영방법, 지원 가능한 의료물품들을 작성한다. 단, 현장응급의료소 설치계획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없음"에 체크표시(√) 한다.

작성 예시

■ 대상명 : ○○경기장

1. 응급구조 개요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구분	응급조치방법	환자 이송장소 및 연락처
응 급 상 황	☑ 화상	멸균 처리된 거즈를 덮음	00화상전문병원 (00-000-0000)
	☑ 출혈	출혈부위 국소찜질, 압박 등	00의원 (00-000-0000)
	☑ 심정지	심폐소생술 실시	00대학병원 응급실 (00-000-0000)
	☑ 중독(일산화탄소)	기도확보, 인공소생기 사용 등	00대학병원 응급실 (00-000-0000)
	□ 기타( )		
현 장 응급의료소	설치위치	1층 00출입구 밖	
	운영방법	환자 중등도 분류 후 응급처치 실시 또는 인근병원 이송	
	지원가능한 의료물품	붕대, 부목, 들것, 보호장비 등	
	□ 해당없음		

② [응급구조장비 현황]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응급구조장비(AED, 부목, 화상도포제 등)의 위치, 수량, 담당자를 확인하고 기재한다.

작성 예시

2. 응급구조장비 현황

장비명	설치위치	수량	담당자(관리부서)	비고
AED	1층 중앙복도	10개	임○우(00팀)	심정지환자만 사용
화상도포제	2층 사무실	10개	임○우(00팀)	대형
(추가 가능)				

③ [응급구조절차] 비화재보(화재에 의한 열, 연기 또는 불꽃 이외의 요인에 의하여 화재경보가 발하는 것) 또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를 구분하여 대응방법을 자세히 기재한다.

작성 예시

3. 응급구조절차

구분	대응방법
비화재보 시	화상, 부상자 등을 파악하고 응급조치 실시
화재 시	응급조치 실시, 환자 이송,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의료물품 지원, 구급대원 업무보조

3. [집회용도] 참고사항

① 환자의 성명, 연령, 성별 및 부상정도 등 정확한 정보수집에 노력한다.

② 다수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현장응급의료소를 설치하고 운용한다.

③ 현장응급의료소는 중증도 분류에 기초하여 1순위(긴급환자) → 2순위(응급환자) → 3순위(비응급환자) → 4순위(지연환자) 순으로 치료하도록 한다.

④ 응급구조팀의 주요업무 및 임무, 응급상황 발생 시 조치방법, 중증도 분류 기준, 현장응급의료소 운영체계 등 관련 사항은 [부록 2.8]을 참고한다.

2.12 방호안전팀 [서식 2.12]

1. 작성 전 준비사항

① 방화구획 평면도

② 위험물질 및 비상반출물품 보유현황 등

③ [부록 2.9] 방호안전팀

2. 작성방법

① [방호안전]

- 방화구획 : 대상물에 설치된 방화문, 방화셔터 등에 체크표시(√) 하고 자동폐쇄가 되지 않았을 경우 조치방법을 작성한다.
- 위험물질 : 보관하고 있는 위험물질의 품명, 보유량(ℓ,㎏), 설치위치, 긴급차단밸브 유무, 차단방법을 작성한다.
- 비상반출물품 : 사전에 지정한 비상반출물품의 물품명, 보관장소, 시건장치 유무, 반출 후 임시로 보관할 장소를 작성한다.

작성 예시

■ 대상명 : ○○경기장

1. 방호안전 개요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구분	자동폐쇄가 되지 않았을 경우 조치방법
방호안전	방화구획	☑ 방화문	현장으로 이동하여 수동폐쇄
		☑ 방화셔터	수동기동장치를 사용하여 수동폐쇄
		□ 방화스크린	
		□ 방화댐퍼	
		□ 기타( )	

		품명	보유량(ℓ,㎏)	설치위치	긴급차단밸브 유무	차단방법
방호안전	위험물질	제2석유류(경유)	1,200	지하2층 발전기실	유	자동
		(추가 가능)				

		물품명	보관장소	시건장치 유무	반출 후 보관장소
방호안전	비상반출물품	개인정보DB	지하2층 전산실	유	집결지
		(추가가능)			

② [방호안전장비 현황]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방호안전장비(방화셔터 수동기동장치, 가스차단기구 등)의 설치위치, 수량, 담당자를 확인하고 기재한다.

작성 예시

2. 방호안전장비 현황

장비명	설치위치	수량	담당자(관리부서)	비고
방화셔터 수동기동장치	각 층 계단 옆	2개	임○우(00팀)	-
가스차단기구	1층 00업체	1개	임○우(00팀)	-
(추가가능)				

③ [방호안전절차] 비화재보(화재에 의한 열, 연기 또는 불꽃 이외의 요인에 의하여 화재경보가 발하는 것) 또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를 구분하여 대응방법을 자세히 기재한다.

작성 예시

3. 방호안전절차

구분	대응방법
비화재보 시	일시적으로 폐쇄된 방화구획 수동복구, 차단된 전기·가스 시설 수동복구 등
화재 시	방화구획 폐쇄여부 확인, 위험물시설에 대한 제어, 비상반출 등

3. [집회용도] 참고사항

① 화재 시 승강기, 공기조화설비, 비상발전기 등 자동제어시스템이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필요 시 수동으로 통제하도록 한다.

② 저장하고 있는 위험물질의 운반 및 취급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한다.

③ 문화재이면 건물내부의 고가치 유물의 반출을 고려해야 하며 사전에 문화재 담당기관과 반출목록, 인계절차 등을 협의해야 한다.

④ 방화구획 설치기준, 방호안전팀의 주요업무 및 임무, 방화셔터 수동기동장치 수동조작방법, 가스차단밸브 수동폐쇄방법, 누전차단기 수동차단방법 등 관련 사항은 [부록 2.9]을 참고한다.

2.13 초기대응체계 [서식 2.13]

1. 작성 전 준비사항

① 작성된 [서식 2.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편성표

② 초기대응에 필요한 물품현황 등

③ [부록 2.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방법
[부록 2.3]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조직도 및 임무
[부록 2.10] 초기대응체계

2. 작성방법

① **[초기대응체계 편성]**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경비(보안) 근무자, 대상물 관리인 등 상시 근무자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보조자가 없는 대상물은 대원 중 선임)을 운영책임자로 지정한다.

- 근무형태, 근무시간 및 위치 : 실제 근무하고 있는 근무형태(평일·휴일·주간·야간)에 체크표시(√) 하고 근무시간 및 근무위치를 작성한다.
- 소속 및 성명 : 초기대응체계로 편성된 대원의 소속 및 이름을 작성한다.
- 임무 : 개인별 부여한 임무(초기소화, 비상연락, 피난유도 등)를 작성한다.
- 비고 : 운영책임자 또는 대원여부를 확인하여 작성한다.

작성 예시

■ 대상명 : ○○경기장

1. 초기대응체계 편성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근무형태		근무시간 및 위치	소속 및 성명	임무	비고
평일	☑ 주간	08시 ~ 17시, 지하1층 방재실	00팀 심○보	초기소화, 비상연락, 피난유도 등	운영책임자 (소방안전관리자)
	□ 야간				
평일	□ 주간	17시 ~ 23시, 지하1층 방재실	00팀 임○우	초기소화, 비상연락, 피난유도 등	대원 (교대근무자)
	☑ 야간				
휴일	☑ 주간	08시 ~ 17시, 지하1층 방재실	00팀 김○찬	초기소화, 비상연락, 피난유도 등	운영책임자 (선임)
	□ 야간				
휴일	□ 주간	17시 ~ 23시, 지하1층 방재실	00팀 이○표	초기소화, 비상연락, 피난유도 등	대원 (교대근무자)
	☑ 야간				

② **[초기대응장비 현황]**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초기대응장비(무전기, 경광봉, 호루라기, 간이소화기 등)의 설치위치, 수량, 담당자를 확인하고 기재한다.

작성 예시

2. 초기대응장비 현황

장비명	설치위치	수량	담당자(관리부서)	비고
무전기	지하1층 방재실	10개	임○우(00팀)	-
경광봉, 호루라기	지하1층 방재실	20개	임○우(00팀)	-
간이소화기	지하1층 방재실	20개	임○우(00팀)	-

③ **[초기대응절차]** 비화재보(화재에 의한 열, 연기 또는 불꽃 이외의 요인에 의하여 화재경보가 발하는 것) 또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를 구분하여 대응방법을 자세히 기재한다.

작성 예시

3. 초기대응절차

구분	대응방법
비화재보 시	화재상황이 아님을 신속히 재실자, 근무자, 관계인, 관계기관 등에게 전파
화재 시	초기소화, 비상연락, 피난유도 등 화재 초기 신속하게 대응

3. [집회용도] 참고사항

① 초기대응체계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이용시간 동안 상시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주요업무는 '화재사실 전파 및 신고(1순위) → 초기소화(2순위) → 피난유도(3순위)'를 기본으로 수행한다.

② 평일야간 및 휴일에 당직근무자, 야간근무자, 경비원 등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운영책임자는 각 대원들이 개별임무를 숙지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초기대응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도록 한다.

③ 초기대응체계 정의, 조직구성방법, 인력편성 및 운영방법, 임무 관련 사항은 [부록 2.2] & [부록 2.3], 주요업무 관련 사항은 [부록 2.10]을 참고한다.

2.14 자위소방대 교육 · 훈련 실시 결과 기록부 [서식 2.14]

1. 작성 전 준비사항

① [서식 1.11] 소방훈련 및 교육

② [부록 1.11] 소방훈련 방법

[부록 2.11]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교육훈련

2. 작성방법

① **[작성일자, 작성자]** 소방훈련 및 교육을 종료한 후 7일 이내에 기록부를 작성하고 소방안전관리자가 최종 서명한다.

②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대상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 건물명, 도로명주소, 대표자(또는 책임자) 이름 및 전화번호를 기입한다.
- 근무인원 : 평일, 휴일을 구분하여 주간, 야간에 근무인원을 기입한다.
- 등급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규모 등을 확인하여 체크표시(√) 한다.

작성 예시

작성일자	2023. 11. 09.			작성자	심○보(서명)	
소방안전 관리대상물	대상명	○○경기장			대표자	김○혁
	소재지	서울시 영등포구 영중로 170			전화번호	02-000-0000
	근무인원	평일		휴일		
		주간(08:00~17:00)	야간(17:00~23:00)	주간(08:00~17:00)	야간(17:00~23:00)	
		120명	20명	40명	20명	
	등급	[ ]특급	[√]1급	[ ]2급	[ ]3급	

③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이름, 선임일자, 자격구분, 보유자격, 연락처를 기재한다.

작성 예시

	성명	선임일자	보유자격	자격구분	연락처	비고
소방안전 관리자	심○보	2019.03.06.	1급	[√]주 [ ]보조	010-0000-0000	
	임○우	2019.09.08.	1급	[ ]주 [√]보조	010-0000-0000	
	(추가 가능)			[ ]주 [ ]보조		
				[ ]주 [ ]보조		

④ **[자위소방대, 초기대응체계]**

- 자위소방대 : 자위소방대장의 이름 및 연락처, 부대장과 자위소방대 팀별 인원을 파악하고 총 인원 등을 기재한다.
- 초기대응체계 : 초기대응체계의 조직구성(평일 주간·야간, 휴일 주간·야간) 인원을 파악하고 총 인원 등을 기재한다.

작성 예시

자위소방대	총원(명)	대장성명	부대장(명)	응급구조(명)	초기소화(명)
	58명	김○혁	2명	5명	20명
		대장연락처	피난유도(명)	비상연락(명)	방호안전(명)
		010-0000-0000	20명	5명	5명
초기대응체계	조직구성	4개조			
	총원(명)	20명			

⑤ **[교육·훈련 결과]**

- 인원 : 편성된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총원을 작성하고 실제 참석 또는 미참석한 인원을 확인하여 기재한다.
- 일시/장소 :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년도, 일자, 장소를 기입한다.
- 주요내용 : 실시한 소방훈련 및 교육내용(소화·통보·피난방법 등)을 기입한다.
- 보완사항 : 소방훈련 및 교육 중 발생한 미비사항 또는 불량사항 등을 파악하여 보완내용을 작성한다.
- 조치사항 : 작성된 보완사항을 바탕으로 향후 개선해야 할 부분을 파악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재한다.

작성 예시

교육·훈련 결과						
인원	자위소방대			초기대응		
	총원(명)	참석	미참석	총원(명)	참석	미참석
	58명	38명	20명	20명	10명	10명
일시/장소	2023.11.09. 10:00~12:00 / ○○경기장(훈련) 및 시설관리실 1층 대강당(교육)					
주요내용	초기소화, 자위소방대 등 비상연락 실시, 대피유도 및 집결지 안내 등					
보완사항	재실자에 대한 양방향 피난유도 미흡					
조치사항	재실자가 피난경로를 잃지 않고 양방향피난이 가능하도록 분산유도 재교육					

⑥ **[교육·훈련 참석확인]** 교육당일 참석자의 직책, 성명을 작성하고 확인부분에 자필서명 한다.

작성 예시

□ 교육·훈련 참석확인 (뒷쪽)

연번	직책	성명	확인	연번	직책	성명	확인
1	대표	김○혁	자필서명	41		~	
2	○○팀	심○보	자필서명	42		~	
3	○○팀	임○우	자필서명	43		~	
4	○○팀	안○돈	자필서명	44		~	
5	○○팀	정○영	자필서명	45		~	
6	○○팀	조○석	자필서명	46		~	
7	○○팀	조○승	자필서명	47	○○팀	신○재	자필서명
8	○○팀	최○진	자필서명	48	○○팀	최○종	자필서명
9	○○팀	김○성	자필서명	49	○○팀	이○표	자필서명
10	○○팀	이○실	자필서명	50	○○팀	최○비	자필서명

3. [집회용도] 참고사항

①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에 당직근무자, 야간근무자, 경비원 등 주로 교대직 근무자가 편성되어 소방교육·훈련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모든 대원들이 빠짐없이 교육·훈련에 참석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교육 및 훈련이력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한다.

②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소집 및 소방교육·훈련 실시 관련 사항은 [부록 2.11]을 참고한다.

제3장 피난계획 작성방법

3.1 피난시설 및 기타시설 일반현황 [서식 3.1]

1. 작성 전 준비사항

① 작성된 [서식 1.1] 건축물 일반현황

② 자체점검 실시결과보고서

③ 건축물 도면

④ [부록 3.1] 일반현황

2. 작성방법

① **[명칭~피난안내정보제공]** 해당 건축물의 명칭과 건축물 현황 그리고 화재경보방식 및 경보수단을 작성된 [서식 1.1]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 화재경보 : 경종이 건물전체에 울릴 경우는 "전층경보방식", 발화층과 직상 1개 층 또는 발화층과 직상 4개 층에 울리경우를 구분하여 체크표시(√) 한다.
- 피난안내정보제공 : 재실자 및 거주자에게 피난안내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구분하여 체크표시(√) 한다. 자세한 사항은 [부록 3.1]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작성 예시

명 칭	○○○경기장					
건축물현황	층수	지하 _2_층/지상 _4_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용도	문화 및 집회
화재경보	방식	☑ 전층경보방식	□ 우선경보방식 (발화층 및 직상 1개층, 지하층) □ 우선경보방식 (발화층 및 직상 4개층, 지하층)			
	경보수단	☑ 주·지구경종	☑ 시각경보기		☑ 비상방송설비	
피난안내정보 제공	방식	□ 연 2회 피난안내 교육을 실시 □ 분기별 1회 이상 피난안내방송을 실시 ☑ 피난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 □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 시청이 용이한 장소에 피난안내영상 제공				

② [피난시설~승강기] 건축물 도면 및 자체점검 실시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작성 예시

피 난 시 설	계 단	☐ 직통계단	☐ 특별피난계단
		☑ 피난계단	☐ 옥외계단
	기 타 시 설	☐ 대피공간	☐ 피난안전구역
		☐ 인증 대체시설	☐ 경량칸막이
		☐ 기타 ( )	
피 난 구 조 설 비	피 난 기 구	☑ 완강기	☐ 미끄럼대
		☐ 간이완강기	☐ 다수인피난장비
		☐ 피난사다리	☑ 기타 (승강식피난기)
	인명구조 기구	☐ 방열복	☑ 방화복
		☑ 공기호흡기	☑ 인공소생기
	비상조명등	☑ 비상조명등	☑ 휴대용 비상조명등
	유도등	☑ 2선식	☐ 3선식
방 화 시 설		☑ 방화문 ☐ 방화셔터 ☐ 방화스크린 ☐ 자동폐쇄장치	
승 강 기		☑ 승용 ☐ 비상용 ☐ 피난용	

3. [집회용도] 참고사항

① 불특정 다수가 모여 있는 시설로서 피난 시 병목현상 발생에 따른 피난시간이 오래 걸리며, 피난약자의 수와 피난유도 및 피난보조자의 능력에 따라 인명피해의 정도가 좌지우지될 수 있다. 해당용도 특성에 맞는 피난전략이 필요하며, 해당 시설을 처음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건물의 구조 및 피난 동선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② [부록 3.1]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3.2 피난시설 및 기타시설 세부현황 [서식 3.2]

1. 작성 전 준비사항

① 작성된 소방시설 자체점검표 또는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② (별도의) 작성·보관 중인 피난·방화시설 설치 현황 리스트

③ [부록 3.4] 피난유도

2. 작성방법

① [번호~개수] 소방도면과 현장 확인을 통해 설치된 시설에 체크표시(√) 하고, 동별, 층별, 세부명칭, 위치, 개수를 작성한다.

- 피난시설, 피난구조설비, 방화시설을 구분하여 체크표시(√) 하고, 해당시설의 세부명칭과 위치를 작성한다.
- 작성이 완료되면 [서식 3.4]에 해당시설의 위치를 표기한다.
- 계단의 경우 전 층이 이어진 경우도 있고, 부분적으로 이용되는 계단 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파악하여 층을 구분시켜야 한다.

작성 예시

번호	동별	층별	시설구분	세부명칭	위치	개수
1	A, B, D	3~4층	☐ 피난시설 ☑ 피난구조설비 ☐ 방화시설	완강기	각 층 동쪽, 서쪽 복도	각 10개
2	A, B, D	각 층	☐ 피난시설 ☑ 피난구조설비 ☐ 방화시설	휴대용비상조명등	각 복도 벽면	60개
3	A, B, D	지하1~4층	☐ 피난시설 ☑ 피난구조설비 ☐ 방화시설	비상조명등	계단	각 층 6개
4	A, B, D	1~4층	☐ 피난시설 ☑ 피난구조설비 ☐ 방화시설	공기호흡기	각 층 동쪽, 서쪽 복도	각 2개

3. [집회용도] 참고사항

① 많은 사람들이 운집되어 있는 형태로써 화재 시 원활한 피난을 위해서는 피난시설 및 기타시설의 세부적인 현황파악이 중요하다.

② [부록 3.4]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3.3 피난인원현황 [서식 3.3]

1. 작성 전 준비사항

① 작성된 [서식 1.2] 건축물 세부현황

② 거주인원, 근무인원 연명부

③ [부록 3.2] 인원현황

2. 작성방법

① **[거주인원~피난약자]** 연명부를 확인하여 작성한다.

- 근무자·거주자와 시설이용자를 구분하여 작성한다.
- 방문인원은 대략적인 일평균 인원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 근무자·거주자, 시설이용자 중 피난약자가 있는 경우 해당유형을 체크표시(√) 한다.
- 외국인의 경우 기타로 분류하여 체크표시(√) 한다.

작성 예시

☐ 거주인원 ____명	☑ 근무인원 200 명	☑ 방문인원(평균) 약 8,000 명	
피 난 약 자	☑ 노 인 ☑ 어린이	☑ 영유아 ☑ 임산부	☑ 기타 ☑ 장애인

② **[층별(구역별)~담당자]** 각 층별, 실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수용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여 작성한다.
- 층별 명칭/용도, 면적은 작성된 [서식 1.2]를 확인하여 작성한다.
- 상시인원 작성 시 근무·거주 인원은 현재인원, 방문 인원은 최대수용인원 또는 일평균 방문인원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 관리주체 작성 시 해당 동, 층마다 별도의 관리주체(입주사)가 있으면 별도 표기하여야 한다.

작성 예시

층별(구역별)		명칭/용도	(바닥)면적	상시인원(명)			관리주체	담당자
동	층			근무	거주	방문	(입주사)	(연락처)
경기장	지하2	전기실	1,000㎡	-	-	-	○○관리공단	심○보 0000-0000
경기장	지하2	기계실	600㎡	16	-	-	○○관리공단	심○보 0000-0000
경기장	지하1	사무실	3,000㎡	80	-	-	○○관리공단	심○보 0000-0000
경기장	지하1	창고	1,000㎡	-	-	-	○○관리공단	심○보 0000-0000
경기장	1	안내데스크	150㎡	4	-	8,000	○○관리공단	심○보 0000-0000
경기장	1	관람석	30,000㎡	-	-	8,000	○○카페	정○창 0000-0000
경기장	2	관람석	25,000㎡	-	-	8,000	○○관리공단	심○보 0000-0000
경기장	2	○○편의점	200㎡	-	-	1,000	○○편의점	홍○훈 0000-0000
	~							
경기장	4	관람석	20,000㎡	-	-	8,000	○○관리공단	심○보 0000-0000
		(추가가능)						

3. [집회용도] 참고사항

① 불특정 다수인들이 운집되는 시설로써 모든 유형의 피난약자가 존재할 수 있다.

② 방문인원의 경우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당 시설의 최대 수용 인원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을 권장한다.

③ [부록 3.2]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3.4 피난유도 절차 및 피난경로(집결지) 설정 (서식 3.4)

1. 작성 전 준비사항

① 작성된 [서식 1.2.2] 화재취약장소/인명피해우려장소 현황

② 작성된 [서식 3.2] 피난시설 및 기타시설 세부현황

③ 작성된 피난안내도 및 대상물 주변 약도(인터넷, 사진 등)

④ 근무·거주자 연명부

⑤ [부록 3.3] 피난경로 및 집결지

⑥ [부록 3.4] 피난유도

2. 작성방법

① **[비화재보]** 비화재보가 발생하여 경종, 비상방송 등이 송출되어 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비화재보 시 근무자·방문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대응방법을 작성한다.

작성 예시

구분	대응방법
비화재보	안내방송 및 각 층별, 구역별 피난유도자를 배치하여 비화재보 상황 전파

② **[화재 시]** 작성된 화재취약장소/인명피해우려장소 현황을 기준으로 동, 층을 구분하여 해당 구역의 인원과, 피난유도자 성명 및 배치장소, 피난유도 시 사용하는 장비, 피난방법을 상세히 작성한다.

- 피난유도자(배치장소) : 일반적인 경우 피난유도자는 개인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교대근무 등 인원이 수시로 변하는 운영형태에서는 팀별, 조별, 과별로 피난유도자를 지정하는 것이 좋다. 또한, 병목현상 등을 방지하고 양방향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배치장소를 지정한다.
- 피난유도 장비를 활용한 피난방법 : 피난유도 시 사용하는 장비들과 해당 구역에서 피난하는 경로를 포함하여 자세하게 작성한다.
- 출입구가 여러 개일 경우 해당 출입구 마다 피난유도를 해야 하며, 출입구 밖에서 집결지로 유도하는 인원을 별도 배치하여야 한다.

작성 예시

	구역		피난유도자 (배치장소)	피난유도 장비를 활용한 피난방법
	동	층		
화재 시	경기장	동문 앞	홍○훈(동문앞 복도) 김○기(안내데스크 앞)	경광봉, 호루라기를 활용 1. 흡연장 출입을 막고 경기장에서 동문으로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피난유도 2. 안내데스크 앞에서 동문을 제외한 출입구로 피난유도

③ **[동별~집결지]** 피난유도 절차에 따라 동별, 층별, 구역 등을 구분해서 작성하고, 피난경로의 개수와 피난유도자 배치장소 및 피난시설 등의 위치도 함께 작성한다.

- 해당 동, 층에 설치되어있는 피난구조설비 및 피난시설의 위치를 작성된 [서식 3.2]를 참고하여 표기한다.
- 특정소방대상물에 피난안전구역이 있을 경우 해당 층별로 집결지를 별도 작성한다.

작성 예시

동별	층별	피난경로 개수	피난유도자	피난구조설비	집결지
경기장	동문 앞	2	2명	-	경기장 앞 공터

④ **[집결지]** 대상물 주변 약도(인터넷, 사진 등)를 삽입한다. 이 때 대상물에서

집결지까지의 이동경로(거리, 시간)를 반드시 표기한다. 또한 집결지에서 확인하여야 할 사항을 작성한다.

- 집결지가 2곳 이상으로 되어있는 경우 제1집결지, 제2집결지 형식으로 작성한다.

작성 예시

집 결 지	장소	경기장 앞 공터
	확인사항	재실자 피난현황 및 재진입 방지

3. [집회용도] 참고사항

① 규모가 큰 집회용도의 경우 출입구가 여러 개소가 있어 건물 내에서 피난완료 후 집결지로 유도가 어려울 수 있다. 대상물의 특성상 집결지가 멀리 떨어져 있다면 제1집결지(건물 앞 공터 등)에서 피난중인 사람들을 제2집결지(최종 집결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한다.

② 피난을 완료한 재실자 등이 다시 대상물로 재진입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집결지에 집결한 인원에 대해 부상자 및 실종자 현황을 파악하며, 습득한 화재 및 피해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③ 방문인원 변동이 수시로 있기 때문에 해당 시설의 최대수용 인원을 기준으로 인원을 파악하는 것을 권장하며, 층별, 구역별 인원을 파악하여 피난계획을 수립하여야 효율적인 피난을 할 수 있다.

④ [부록 3.3]과 [부록 3.4]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3.5 피난약자 현황 및 피난계획 (서식 3.5)

3.5.1 피난약자 현황 및 피난계획

1. 작성 전 준비사항

① 작성된 [서식 3.4] 피난유도 절차 및 피난경로(집결지) 설정

② 임직원 연명부 및 조직도(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경우는 별도 취합)

③ 피난약자현황 현황 사전 조사결과(각 층·구역별 유형 및 인원 현황)

④ [부록 3.5] 피난약자

2. 작성방법

① [근무·거주자] 특정소방대상물에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 중 피난약자를 파악하여 작성한다.

② [시설이용자] 시설이용자 중 피난약자를 파악하여 작성한다.

작성 예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근무·거주자 (현재인원)	□ 노인	명	□ 어린이	명	□ 영유아	명
	☑ 임산부	2 명	□ 장애인	명	□ 기타	명
시설이용자	☑ 노인	☑ 어린이	☑ 영유아	☑ 임산부	☑ 장애인	☑ 기타

③ [피난계획] 동, 층을 구별하여 해당 구역에 피난약자 유형을 구분하고, 방문인원 또는 최대수용 인원과 피난보조자 현황을 작성한다.

- 해당 층, 구역별 피난약자의 활동구역과 피난약자, 방문인원 또는 최대수용인원을 산정하여 작성한다.
- 피난보조자는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 팀, 과, 조별로 작성한다.

작성 예시

	구역		인원	유형	피난보조자	피난보조장비	세부 피난방법
	동	층					
피난계획	경기장	1층	00명	모든 유형	김○혁, 김○영	유형별 준비	행사주체 관계자와 협력하여 피난보조 및 정문, 후문으로 피난
	경기장	2층	00명	모든 유형	심○보, 임○우	유형별 준비	보호자와 함께 보조하며 각 층 피난 계단을 이용하여 대피
	경기장	3층	00명	모든 유형	김○찬, 홍○훈	유형별 준비	보호자와 함께 보조하며 각 층 피난 계단을 이용하여 대피
	경기장	4층	00명	모든 유형	정○창, 김○현	유형별 준비	보호자와 함께 보조하며 각 층 피난 계단을 이용하여 대피

3. [집회용도] 참고사항

① 집회용도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용하는 시설로써 모든 유형의 피난약자가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피난약자 피난계획 수립 시 모든 유형에 대한 피난계획이 필요하다.

② [부록 3.5]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3.5 피난약자 현황 및 피난계획 [서식 3.5]

3.5.2 피난보조자 업무수행 절차

1. 작성 전 준비사항

① 작성된 [서식 3.5.1] 피난약자 현황 및 피난계획

2. 작성방법

① **[피난보조자]** 작성된 [서식 3.5.1]의 피난보조자 명단을 작성한다.

② **[세부 업무]** 해당 구역에 피난약자 없는 경우 추가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작성한다.

작성 예시

피난보조자	유형 별 업무수행	세부 업무
김○형, 김○영	1. 피난약자가 있는 경우	[서식 3.5.1] 세부피난 방법에 따라 피난보조
	2. 피난약자가 없는 경우	1층 관람석에 도착하여 피난약자가 없을 경우 2층 관람석으로 이동하여 피난보조 지원
심○보, 임○우	1. 피난약자가 있는 경우	[서식 3.5.1] 세부피난 방법에 따라 피난보조
	2. 피난약자가 없는 경우	2층 관람석에 도착하여 피난약자가 없을 경우 3층 관람석으로 이동하여 피난보조 지원
김○찬, 홍○훈	1. 피난약자가 있는 경우	[서식 3.5.1] 세부피난 방법에 따라 피난보조
	2. 피난약자가 없는 경우	3층 관람석에 도착하여 피난약자가 없을 경우 4층 관람석으로 이동하여 피난보조 지원
정○창, 김○현	1. 피난약자가 있는 경우	[서식 3.5.1] 세부피난 방법에 따라 피난보조
	2. 피난약자가 없는 경우	4층 관람석에 도착하여 피난약자가 없을 경우 피난유도팀 지원

3. [집회용도] 참고사항

① 공연장, 집회장 등 큰 행사 등이 있을 경우 불특정 다수가 방문하지만, 해당 날짜, 시간에 시설이용자 중 피난약자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피난약자가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를 구분하여 추가적인 업무를 부여함으로써 피난보조자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피난의 효율을 극대화 시켜야 한다.

② [부록 3.5]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3.6 피난약자 유형별 피난방법 [서식 3.6]

1. 작성 전 준비사항

① 작성된 [서식 3.5] 피난약자 현황 및 피난계획

② 자체 화재 안전관리 계획서 등 피난관련 서류

③ [부록 3.5] 피난약자

2. 작성방법

① **[피난약자 구분]** 특정소방대상물에 근무·거주·방문자의 피난약자 유형을 세분화하여 작성한다.

② **[피난방법]** 피난약자 구분에 대해 세부적인 피난방법을 작성한다.

- 피난약자 구분에 따른 거동가능, 부측(보조)필요, 거동불능을 구분하여 세부적인 피난방법을 [부록 3.5]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③ **[유의사항]** 피난약자 구분에 따른 피난 시 유의사항을 작성한다.

- 피난 시 주의해야 할 행동 또는 필요한 장비 등 유의사항을 작성한다.

작성 예시

피난약자 구분	피난방법	유의사항
노인	1. 피난약자 옆에서 1인 1조 또는 2인 1조로 보행을 도와주며 피난보조 2. 보호자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함께 보조 3. 긴급하게 피난이 필요할 때는 2인 1조로 안아서 이동 4. 특별피난계단으로 대피가 불가능할 경우 서쪽 복도 끝에 있는 완강기 또는 각 객실에 있는 간이완강기를 이용하여 피난 5. 지병이 있는 경우 피난완료 후 쉽게 알 수 있도록 지병을 표시(손등 등)	계단 등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어린이	1.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함께 보조하며 피난보조 2. 행사 등 여러명의 아이들이 있는 경우 한줄 서기로 맨 앞에 가장 나이가 많은 어린이를 두고 앞사람을 따라 대피유도하며, 피난보조자는 맨 뒤에서 뒤처지는 어린이가 없는지 유의하며 대피 3. 거동이 어려운 어린이의 경우 안거나 업어서 이동	한줄 서기로 대피유도 시 특별피난계단으로 첫 번째 어린이를 안내 후 맨 뒤로 이동

작성 예시

피난약자 구분	피난방법	유의사항
영유아	1. 보호자가 안아서 피난하는 것을 보조 2. 다자녀 가족인 경우 피난보조자가 영유아를 안아서 피난보조 3. 이동 중 연기를 흡입할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되었다면 피난완료 후 신속하게 병원 후송	안아서 이동할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연기흡입 우려가 있음
임산부	1.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함께 보조하며 피난보조 2. 만삭의 산모의 경우 2인 1조로 안아서 이동 3. 피난완료 후 산모의 상태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병원 후송	피난보조 시 산모의 호흡이 가빠질 수 있으므로 상태를 수시로 확인
장애인	1. 장애유형별 피난보조실시 - 지체장애인 : 2인 1조로 안거나 업어서 피난 - 청각장애인 : 표정, 제스처, 손전등을 통해 의사표현, 스마트폰의 문자 기능으로 메모를 통한 의사소통 - 시각장애인 : 지팡이를 이용해 피난하는 것을 옆에서 보조 - 지적장애인 : 보호자나 담당자가 도와주는 것을 옆에서 보조	보호자에게 장애유형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피난보조

3. [집회용도] 참고사항

① 해당 시설의 운영형태, 행사 주체마다 피난약자 유형이 상이하기 때문에 모든 유형의 피난약자를 대상으로 피난보조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부록 3.5]를 참고한다.

3.7 피난관련 기구 및 피난유도장비 등 세부현황 [서식 3.7]

1. 작성 전 준비사항

① 작성된 [서식 3.2] 피난시설 및 기타시설 세부현황

② 작성된 [서식 3.4] 피난유도 절차 및 피난경로(집결지) 설정

③ [부록 3.4] 피난유도

2. 작성방법

① **[동별~수량]** 동별, 층별을 구분하여 작성하고, 피난유도 및 보조 장비 명칭을 작성한다.

- 기구 및 장비 명칭 : 해당 명칭과 사진을 첨부한다.
- 보관장소 :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사진 또는 안내도를 첨부한다.
- 사용방법 : 해당 기구 및 장비의 사용방법 등을 자세하게 작성한다.

작성 예시

번호	동별	층별	기구 및 장비 명칭	보관장소	수량
1	A동	지하1층	경광봉	지하1층 방재실 1번 캐비닛	24개
사용방법					
피난유도 시 경광봉을 사용하여 재실자 및 거주자가 피난경로를 알기 쉽도록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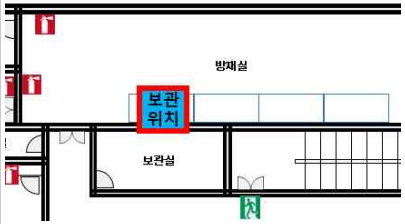	

번호	동별	층별	기구 및 장비 명칭	보관장소	수량
2	A동	지하1층	호루라기	지하1층 방재실 1번 캐비닛	40개
사용방법					
피난유도 시 호루라기를 사용하여 재실자 및 거주자에게 피난유도를 용이하게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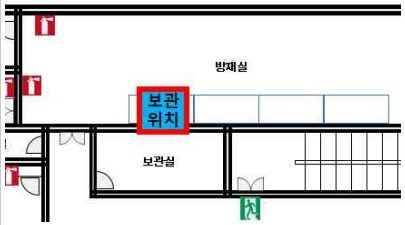	

작성 예시

번호	동별	층별	기구 및 장비 명칭	보관장소	수량
3	A동	각 층	공기호흡기	복도 중앙	층별 8개
사용방법					
화재 시 연기로 인해 호흡이 곤란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할 때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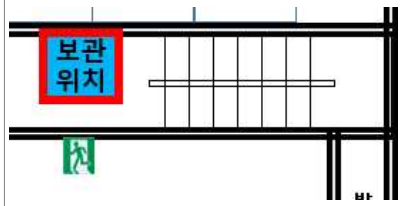	

번호	동별	층별	기구 및 장비 명칭	보관장소	수량
4	A동	1층, 2층	들것	복도 중앙	층별 8개
사용방법					
피난 시 거동불능 환자를 들것에 눕혀 2인 1조로 피난약자 대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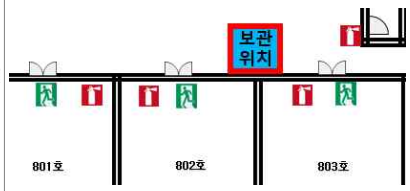	

3.8 피난보조자 비상연락망 [서식 3.8]

1. 작성 전 준비사항

① 작성된 [서식 3.5] 피난약자 현황 및 피난계획

② 비상연락망

2. 작성방법

① **[소속~근무위치]** 피난보조자의 소속과 근무위치를 작성한다.

② **[보조자~전화번호]** 피난보조자와 연락처를 작성한다.

- 일반적인 경우 피난유도자는 개인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교대근무 등 인원이 수시로 변하는 운영형태에서는 팀별, 조별, 과별로 피난유도자를 지정하는 것이 좋다.
- 연락처는 개별연락처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교대근무의 경우 해당 팀, 조, 과별 연락처를 작성한다.

작성 예시

구 분	소속	근무위치	보조자	전화번호
피난 보조자	관리팀	1층 사무실	김○혁	000-0000-0000
	관리팀	1층 사무실	김○영	000-0000-0000
	시설팀	방재실	심○보	000-0000-0000
	시설팀	방재실	임○우	000-0000-0000
	시설팀	방재실	김○찬	000-0000-0000
	시설팀	방재실	홍○훈	000-0000-0000
	시설팀	방재실	정○창	000-0000-0000
	시설팀	방재실	김○현	000-0000-0000

Ⅲ. 소방계획서 작성예시

※ 아래의 집회용도 중 해당되는 특정소방대상물 용도를 체크표시(√) 하세요					
집회용도	☐ 관광휴게시설	☐ 문화집회시설	☐ 문화재	☐ 묘지관련시설	☑ 운동시설
	☐ 운수시설	☐ 장례시설	☐ 종교시설		

[00경기장] 소방계획서

[2022년 12월 10일]

결재	작 성	검 토	승 인
	심○보	김○영	김○혁

소방청 National Fire Agency

한국소방안전원 KOREA FIRE SAFETY INSTITUTE

소방계획서 개정이력

순번	일자	주요 개정내용	작성자	검토	승인
1	2022.12.10	2023년 소방계획 수립	심○보	김○영	김○혁
2	2023.01.05.	[서식 1.10.3] 비화재보 발생 내용 추가	심○보	김○영	김○혁
3	2023.01.27.	[서식 1.7.3] 소방안전관리자 대리자 지정 내용 추가	심○보	김○영	김○혁
4	2023.02.15.	[서식 1.11.2], [서식 1.11.3] 2023년 제1차 소방교육,훈련 세부계획 작성	심○보	김○영	김○혁
	(추가가능)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5.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 · 유지(제3호 · 제4호 및 제6호의 업무를 말한다)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CONTENTS

제1장 소방안전관리계획

서식 1.1 건축물 일반현황 161
서식 1.2 건축물 세부현황 162
서식 1.3 건축물 위치·운영현황 및 소방차 세부진입 계획 164
서식 1.4 소방시설 현황 166
서식 1.5 피난·방화시설 및 제연, 방염 관련 현황 167
서식 1.6 기타시설 현황 169
서식 1.7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등 일반현황 173
서식 1.8 업무대행 현황 176
서식 1.9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 구성현황 177
서식 1.10 소방안전관리자 자체점검 및 업무 수행 182
서식 1.11 소방훈련 및 교육 185
서식 1.12 화기취급감독 191
서식 1.13 소방시설 공사/정비 기록 194
서식 1.14 화재예방 및 홍보 195
서식 1.15 피해 복구 197

제2장 자위소방대 운영계획

서식 2.1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일반현황 199
서식 2.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편성표 203
서식 2.3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조직도 및 임무 208

CONTENTS

서식 2.4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개별임무카드 ····· 213
서식 2.5 지휘통제팀 ····· 215
서식 2.6 비상연락팀(지휘반) ····· 217
서식 2.7 외부기관 비상연락체계 ····· 218
서식 2.8 비상상황별 연락방법 및 안내문구 ····· 219
서식 2.9 초기소화팀(진압반) ····· 220
서식 2.10 피난유도팀(대피유도반) ····· 221
서식 2.11 응급구조팀(구조구급반) ····· 222
서식 2.12 방호안전팀 ····· 223
서식 2.13 초기대응체계 ····· 224
서식 2.14 자위소방대 교육·훈련 실시 결과 기록부 ····· 225

제3장 피난계획

서식 3.1 피난시설 및 기타시설 일반현황 ····· 228
서식 3.2 피난시설 및 기타시설 세부현황 ····· 229
서식 3.3 피난인원현황 ····· 230
서식 3.4 피난유도 절차 및 피난경로(집결지) 설정 ····· 233
서식 3.5 피난약자 현황 및 피난계획 ····· 234
서식 3.6 피난약자 유형별 피난방법 ····· 236
서식 3.7 피난관련 기구 및 피난유도장비 등 세부현황 ····· 237
서식 3.8 피난보조자 비상연락망 ····· 238

제1장 소방안전관리계획

서식 1.1 건축물 일반현황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명 칭		○○경기장					
도 로 명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170					
연 락 처		대표자(책임자)	김○혁	소방안전관리자	심○보		
		연락처	0000-0000	연락처	0000-0000		
시설현황	수신기위치	지하 1층 방재실					
	규모/구조	대상물 급수	1급	주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사용승인일	2007.10.20.
		연면적	40,000㎡	건축면적	9,000㎡	층수	지하 2층 지상 5층
		높이	29m	구조	철골철근 콘크리트	지붕	콘크리트
	승 강 기	☑ 승용		□ 비상용		□ 피난용	
	주 차 장	□ 옥내		☑ 옥외		☑ 전기차충전소 **[서식1.6.3]** 작성	
		□ 자주식	□ 기계식	☑ 자주식	□ 기계식		
	계 단	☑ 특별피난계단		□ 직통계단			
		□ 피난계단		□ 옥외계단			
운영현황	운 영 시 간	☑ 평일	☑ 주간	08시~17시	☑ 휴일	☑ 주간	08시~17시
			☑ 야간	17시~23시		☑ 야간	17시~23시
	인 원 현 황	☑ 근무인원	200명	□ 거주인원	명	☑최대수용인원	3,000명
	공 공 기 관	□ 해당 **[서식1.11.5]** 작성 생략		☑ 해당없음			
	업 무 대 행	☑ 해당 **[서식1.8]** 작성		□ 해당없음			
	권 원 분 리	☑ 해당 **[서식1.9]** 작성		□ 해당없음			
화 재 보 험		☑ 가입		□ 미가입			
		보험사		가입기간		가입금액	
		○○보험		2023.01.01.~2023.12.31.		대인	000,000,000원
						대물	0,000,000,000원

서식 1.2 건축물 세부현황

1.2.1 구역별 세부현황

구역별		명칭/용도	(바닥)면적	근무자 및 거주자				관리주체 (입주사)	담당자 (연락처)
				평일		휴일			
동	층			주간	야간	주간	야간		
본관	지하 2층	기계실	800㎡	7	2	2	2	○○관리공단	심○보 0000-0000
		전기실	1,000㎡	-	-	-	-	○○관리공단	심○보 0000-0000
	지하 1층	사무실	1,000㎡	25	-	-	-	○○관리공단	심○보 0000-0000
		방재실	100㎡	3	1	1	1	○○관리공단	심○보 0000-0000
	1층	경기장	8,400㎡	-	-	-	-	○○관리공단	심○보 0000-0000
		○○카페	100㎡	2	-	-	-	○○카페	정○창 0000-0000
		○○편의점	50㎡	1	1	1	1	○○편의점	김○현 0000-0000
	~								
	5층	창고	500㎡	-	-	-	-	○○관리공단	심○보 0000-0000
	PH	E/V실 물탱크실	50㎡	-	-	-	-	○○관리공단	심○보 0000-0000

※ 비고

1. 소방안전관리자는 구역별 인원현황 및 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2. 근무자 및 거주자의 인원현황은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을 파악하여 작성한다.
3. 근무자 : 보수를 받고 일을 하는 자 / 거주자 : 일정한 곳에 거주하는 자

1.2.2 화재취약장소/인명피해우려장소 현황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화재취약장소	위치	화재위험요소	
흡연장	경기장 동문 앞	□ 전기적 요인 □ 기계적 요인 □ 화학적 요인 □ 가스누출(폭발)	□ 자연재해 ☑ 부주의 □ 기타(　　)
(추가 가능)		□ 전기적 요인 □ 기계적 요인 □ 화학적 요인 □ 가스누출(폭발)	□ 자연재해 □ 부주의 □ 기타(　　)
		□ 전기적 요인 □ 기계적 요인 □ 화학적 요인 □ 가스누출(폭발)	□ 자연재해 □ 부주의 □ 기타(　　)
인명피해우려장소	**위치**	**시건장치**	
관중석과 출구 사이의 통로	1~2층 경기장	설치유무	☑ 유　□ 무
		개폐방법 (열쇠위치, 암호 등)	방재실 출입구 우측 마스터키 비치
(추가 가능)		설치유무	□ 유　□ 무
		개폐방법 (열쇠위치, 암호 등)	
		설치유무	□ 유　□ 무
		개폐방법 (열쇠위치, 암호 등)	

※ 비고

소방안전관리자는 대상물의 구역별(동별, 층별) 화재취약장소 및 인명피해우려장소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화재예방대책, 자위소방대 운영계획 및 피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서식 1.3 건축물 위치 · 운영현황 및 소방차 세부진입 계획

건축물 위치

건축물 운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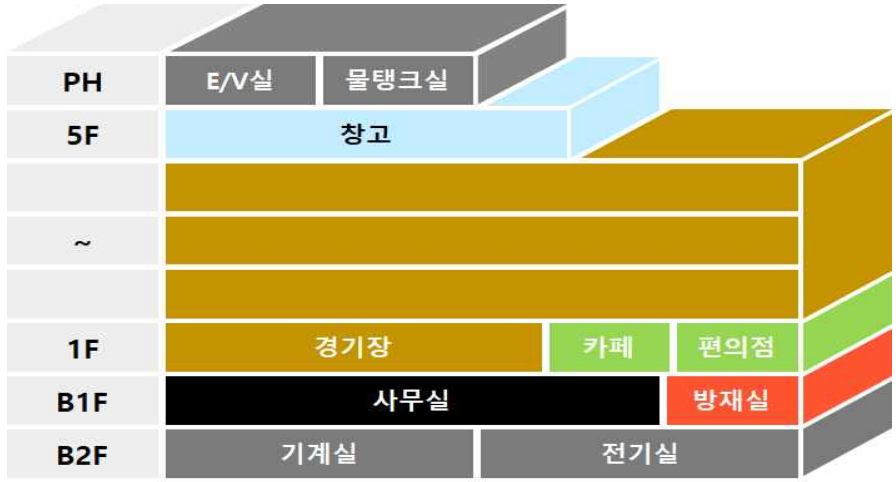

소방차 진입경로

소방차 진입장소 및 주변 소방시설 현황	수신기 위치	지하 1층 방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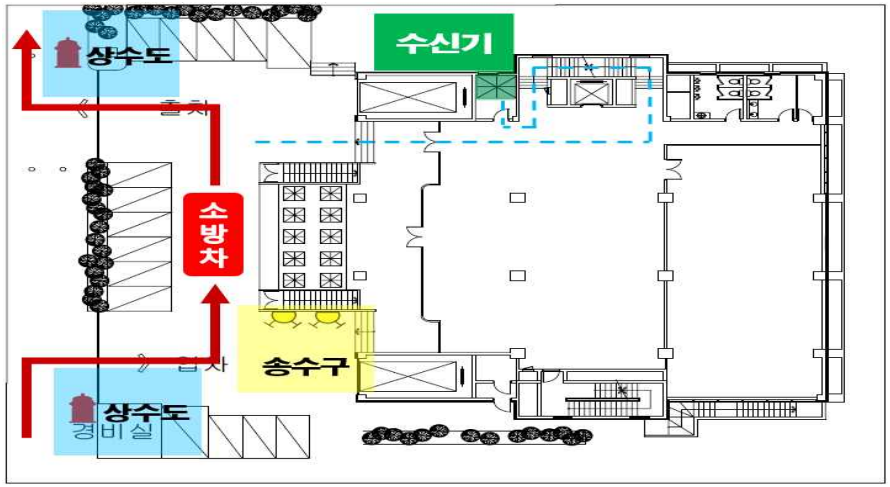

세부사항	관할소방서 (119안전센터)	영등포소방서	최단거리	2km	예상도착시간	8분
	소방차 전용구역 유무		소방차 진입 장애요인 유무		주차장진입 가능여부	
	무		1층 소방차 주차공간 협소		불가능	

서식 1.4 소방시설 현황

■ 대상명 : ○○경기장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소 화 설 비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 옥내소화전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할론소화설비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분말소화설비
	□ 미분무소화설비	□ 강화액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경 보 설 비	□ 단독경보형감지기	□ 통합감시시설
	□ 비상경보설비	□ 자동화재속보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	☑ 누전경보기
	□ 화재알림설비	☑ 가스누설경보기
	☑ 비상방송설비	
피 난 구 조 설 비	☑ 피난기구	□ 공기안전매트 □ 피난사다리 ☑ (간이)완강기 □ 미끄럼대 □ 구조대 □ 다수인피난장비 □ 승강식피난기 □ 하향식피난구용내림식사다리
	☑ 인명구조기구	□ 피난유도선
	☑ 유도등	☑ 비상조명등
	□ 유도표지	☑ 휴대용비상조명등
소 화 용 수 설 비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 소화수조 및 저수조
소 화 활 동 설 비	☑ 거실제연설비	
	□ 부속실 등 제연설비	☑ 비상콘센트설비
	☑ 연결송수관설비	☑ 무선통신보조설비
	□ 연결살수설비	□ 연소방지설비

※ 비고

1. 각 소방시설 설치장소, 규격 등은 소방시설 자체점검표 참조
2. 건물군을 관리하는 경우 해당 양식을 대상물별로 추가 작성하여 첨부

서식 1.5 피난 · 방화시설 및 제연, 방염 관련 현황

1.5.1 피난·방화시설 및 제연, 방염 관련 일반현황

■ 대상명 : ○○경기장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피 난 시 설	계 단	□ 직통계단					
		☑ 피난계단					
		□ 특별피난계단					
		□ 옥외계단					
	기 타 시 설	□ 대피공간					
		□ 경량칸막이					
		□ 피난안전구역					
		□ 기타 ( )					
		□ 옥상광장	개폐방법				
	피 난 층	위치	1층	출입구	8개소		
방 화 구 획	해당유무	☑ 면적 별	☑ 층 별	□ 용도 별			
	☑유 □무	☑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유 ☑무)					
		☑ 방화셔터 (출입구 ☑유 □무)					
		□ 방화스크린					
제 연 구 획	해당유무	구분	구역 위치				
	☑유 □무	☑ 거실 제연 □ 전실 제연	전 층 거실제연				
방 염	해당유무	☑ 물품명	벽지, 인테리어필름	위치	전층	성적서 비치장소	지하 1층 방재실
	☑유 □무	☑ 물품명	합판, 장	위치	전층	성적서 비치장소	지하 1층 방재실
		□ 물품명		위치		성적서 비치장소	
내 부 마 감 재 료		☑ 불연재료	□ 준불연재료	□ 난연재료	□ 기타 ( )		

※ 비고

1. 피난시설의 세부내용은 피난계획서 참조
2. 건물군을 관리하는 경우 해당 양식을 대상물별로 추가 작성하여 첨부
3. 방염성적서는 별도로 보관할 경우 관리가 어려우므로 소방계획서 내 사본 첨부를 권장

1.5.2 방화·제연구획 현황도

■ 대상명 : ○○경기장

방화·제연구획 현황	구역	지하 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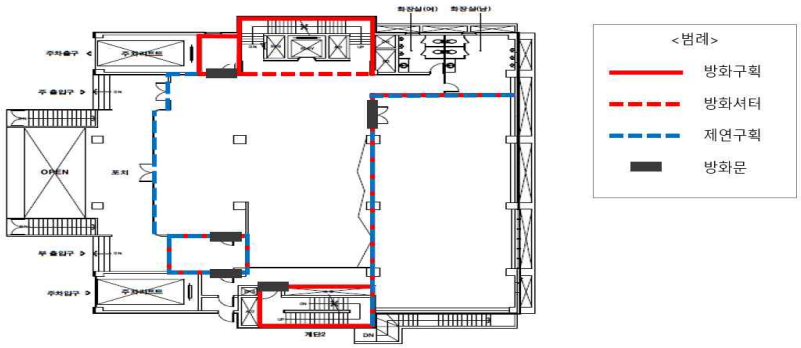

방화·제연구획 현황	구역	

(추가가능)

서식 1.6 기타시설 현황

1.6.1 기타시설 일반현황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전 기 시 설	수전용량	9,000kW		-		
	변압기용량	4,500kVA	설치위치	지하 2층 전기실	수량	2대
	비상발전기	2,000kW	설치위치	지하 2층 전기실	수량	2대
	비고					
가 스 시 설	가스종류	사용위치	용도	정압기 위치	차단기구	차단기 위치
	LPG	지하 2층 기계실	보일러 연료	1층 외부 북동편	☑유 □무	지하 2층 기계실
	LNG	2층 식당	취사	1층 외부 북동편	☑유 □무	식당 주방 내부
	(추가가능)				□유 □무	
	□ 해당없음					
	비고					
위 험 물 시 설	구분	설치위치	유별	품명	보유량(ℓ,kg)	지정수량의 배수
	옥내탱크 저장소	지하 2층 발전기실	제4류	제2석유류 (경유)	1,200	1.2
	(추가가능)					
	□ 해당없음					
	비고					
흡 연 장	설치여부	☑ 유 □ 무	위치	1층 서편 출입구 인근	소화기 비치	☑ 유 □ 무

1.6.2 기타시설 현황도

■ 대상명 : ○○경기장

전기시설 현황도	구역	지하 2층 전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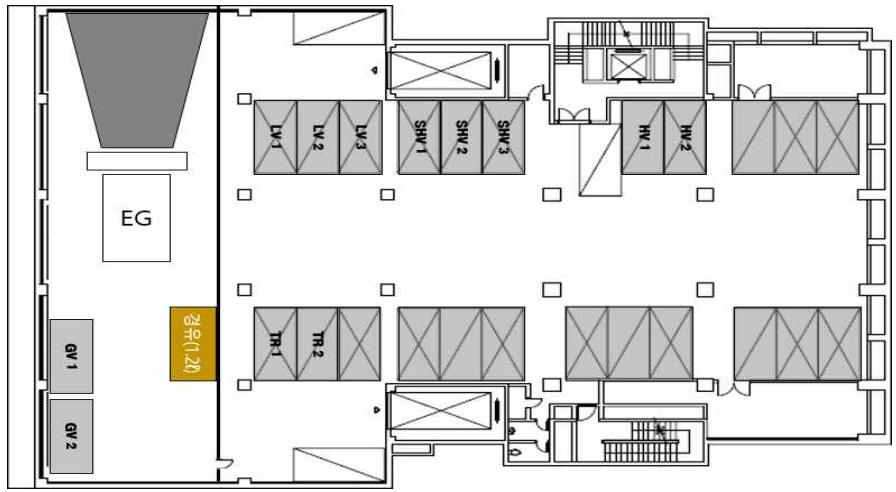

가스시설 현황도	구역	1층 외부 북동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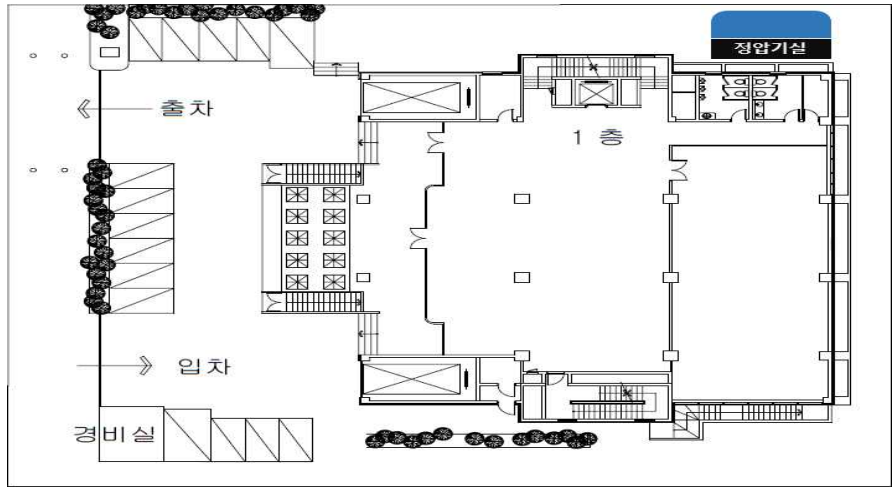

위험물시설 현황도	구역	지하 2층 발전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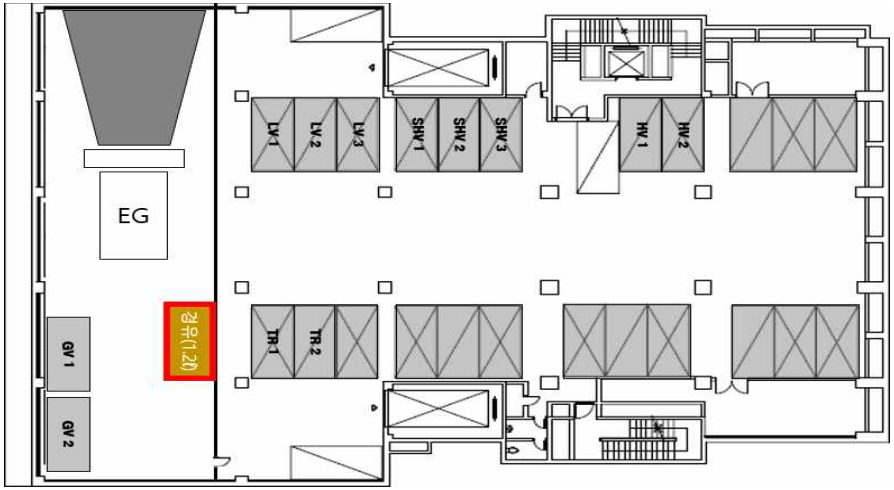

흡연실 현황도	구역	1층 외부 남동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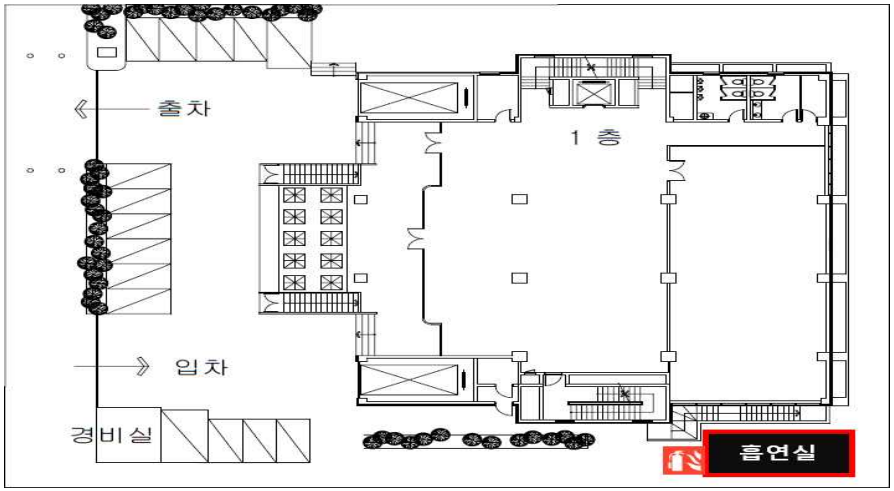

1.6.3 전기차충전소 현황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전기차충전소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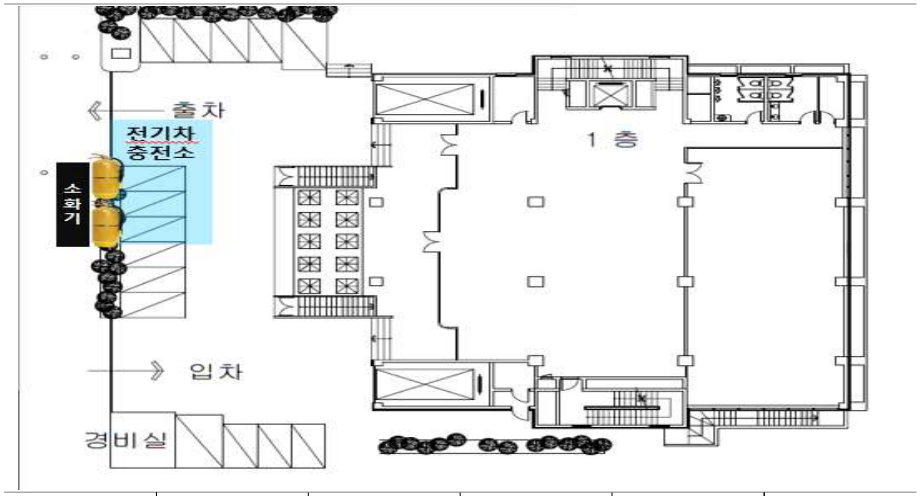

충전방식	☑급속 □완속	설치위치	지하 1층 주차장	수용대수	3대

화재 시 대응장비 현황

장비명칭	D급 소화기	장비명칭	질식소화덮개
보관장소	전기차충전소 뒤편	보관장소	지하 1층 방재실
화재 시 대응장비	☑ 소화기 ☑ 질식소화덮개	☑ 옥내소화전 □ 기타( )	☑ 스프링클러설비

서식 1.7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등 일반현황

1.7.1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등 선임현황

구분	소속	선임자 성명	선임일자	실무교육 수료일자	담당업무
소방안전관리자	○○관리공단	심○보	2019.03.06	2021.08.07.	·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관리공단	임○우	2019.09.08.	2021.10.07.	·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관리공단	성○운	2021.05.02.	2021.10.22.	·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위험물안전관리자	○○관리공단	김○찬	2022.01.01.	2024.04.22.	· 위험물안전관리자 업무
전기안전관리자	○○관리공단	문○희	2021.12.01.	-	· 전기설비 유지·관리
가스안전관리자	○○관리공단	조○래	2021.07.22.	-	· 가스설비 유지·관리
(추가가능)					

1.7.2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주 출입구 5m 이내에 부착]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별표 2]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대상명 : ○○경기장)

이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 심 ○ 보 (선임일자 : 2019년 03월 06일)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 : 1급

□ 소방안전관리자 근무 위치 : 지하 1층 방재실

[수 신 기 위 치] : 지하 1층 방재실

[수신기까지 경로] : 현 출입구 → 중앙계단 → 지하 1층 출입구 좌측 방재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이 표지를 붙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연락처 : 010-0000-0000

※ 이 현황표의 규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크기, 재질, 글씨체를 정할 수 있다.

가. 크기: A3 용지(가로 420밀리미터 × 세로 297밀리미터)

나. 재질: 아트지(스티커) 또는 종이

다. 글씨체

1)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나눔고딕Extra Bold 46포인트(흰색)

2) 대상명: 나눔고딕Extra Bold 35포인트(흰색)

3) 본문 제목 및 내용: 나눔바른고딕 30포인트(검정색)

4) 하단내용: 나눔바른고딕 24포인트(검정색)

5) 연락처: 나눔고딕Extra Bold 30포인트(흰색)

라. 바탕색: 남색(RGB: 28,61,98), 회색(RGB: 242,242,242)

1.7.3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대리자 지정현황

구분	선임자 성명	대리자 성명	대리기간	지정사유
소방안전관리자	심○보	임○우	2023.01.27.~02.02.	병가
(추가가능)				

※ 비고
여행,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안전관리자의 해임·퇴직과 동시에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소지하거나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를 대리자로 지정하여 안전관리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대리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서식 1.8 업무대행 현황 (해당 시 아래 예시 참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구 분	내 용		
대행여부	□ 해당없음	(아래 내용 작성 생략)	
	☑ 해당	☑ 1급(11층 이상)	□ 2급 □ 3급
업체현황	업 체 명	○○소방	
	업체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000	
	등록번호	0000-000000	
	연락처	00-0000-0000	
계약사항	계약기간	2023.01.01.~2023.12.31.	
	점검주기	월 1회	
	계약범위	1.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3. 기타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관리감독	감독사항	점검 후 점검내용 확인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점검표 보관방법	□ 소방계획서 내 별첨	☑ 별도 파일철	
	□ 전자문서	□ 기타( )	

※ 비고
업무대행 소방점검 기술인력은 업무대행 시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점검표'를 작성하고 소방안전관리자(또는 관계인)에게 점검결과를 설명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서식 1.9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 구성현황

1.9.1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 구성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구 분	소속 및 직책	성명	위촉일
협의장	○○관리공단 총무부장	김○혁	2022.12.09.
부협의장	○○관리공단 안전관리과장	김○영	2022.12.09.
간사(소방안전관리자)	○○관리공단 시설팀장	심○보	2022.12.09.
위 원	○○관리공단 시설팀	임○우	2022.12.09.
위 원	○○관리공단 시설팀	김○찬	2022.12.09.
위 원	㈜○○ 총무과장	홍○훈	2022.12.09.
위 원	㈜○○ 안전관리팀장	이○범	2022.12.09.
(추가가능)			

회의록 보관방법		
	□ 소방계획서 내 별첨	☑ 별도 파일철
	□ 전자문서	□ 기타( )

※ 비고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관련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2. 협의회 구성현황은 협의장, 부협의장, 위원, 간사(소방안전관리자)로 구성할 수 있다.

1.9.2 회의록

회의일시	2022.12.23. 13:00~14:00	회의장소	3층 세미나실
회의내용	2023년 소방계획서 심의		
의결사항	원안에 동의함		
건의사항	해당없음		

참석위원	구분	성명	확인(서명)	구분	성명	확인(서명)
	협의장	김○혁	김○혁	(추가가능)		
	부협의장	김○영	김○영			
	간 사	심○보	심○보			
	위 원	임○우	임○우			
	위 원	김○찬	김○찬			
	위 원	홍○훈	홍○훈			
	위 원	이○범	이○범			

1.9.3 입주사 현황

[서식 활용 시 아래 예시 참고]

번호	업체명	용도	관리구역	대표자 (책임자)	연락처
1	㈜○○	업무시설	3~4층	홍○훈	0000-0000
	(추가가능)				

1.9.4 입주사(권원)별 관리현황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업 체 명		㈜○○					
일반현황	관리구역	3~4층					
	용 도	업무시설					
	운영시간	☑ 평일	☑ 주간	09시~18시	□ 휴일	□ 주간	-
			□ 야간	-		□ 야간	-
	연 락 처	대표자 (책임자)	홍○훈		개인	010-0000-0000	
					사무실	0000-0000	
	입주기간	2015.03.15.~2025.03.14.					
	개별보안	□ 예	☑ 아니오	비상연락처		0000-0000	
인원현황	상시인원	☑ 근무자	50명	□ 거주자	명	□ 방문자	약 명
		☑ 평일	☑ 주간	50명	□ 휴일	□ 주간	명
			□ 야간	명		□ 야간	명
위험물 시설 등	시설현황	□ 위험물		□ 특수가연물			
		품명	수량	위치	특이사항		
		해당없음					
		비고.					
	화기취급	□ 조리(취사)시설		☑ 개인전열기 사용			
		□ 개별 난방		□ 기타 열원시설( )			
기 타	※ 회의실 우측 공실을 사무용품 저장창고로 이용 중 (종이, 의자, 책상 등 다수의 가연물 보관)						

자위소방대 현황

운영여부	☑ 운영		☐ 해당없음 (자위소방대 부분 작성 생략)			
운영현황	편성인원	15명	근무형태	☑ 상근직	☐ 교대직 (조 교대)	
자위소방대	☑지휘통제팀	1명	☑비상연락팀	4명	☑초기소화팀	6명
	☑피난유도팀	4명	☐ 응급구조팀	명	☐ 방호안전팀	명

자위소방대 편성표

구 분	소 속	성 명	개별임무	비상연락체계	
				사무실	개인
지휘통제팀	㈜○○	홍○훈	관리구역 상황통제	0000-0000	0000-0000
비상연락팀	㈜○○	조○원	119 및 방재실 연락	0000-0000	0000-0000
초기소화팀	㈜○○	박○철	소화기, 소화전 이용 초기소화	0000-0000	0000-0000
~					
(추가가능)					

피난약자 피난계획(상시인원)

피난약자	☐ 노인	☑ 임산부	☐ 영유아	☐ 어린이	☑ 장애인

성 명	활동 구역	피난약자 유형	연락처 (피난약자)	피난계획	피난보조	
					보조자	연락처
김○아	3층	임산부	0000-0000	피난보조자 이○호의 보조를 받아 피난	이○호	0000-0000
김○성	4층	청각장애인	0000-0000	피난보조자 임○찬의 보조를 받아 피난	임○찬	0000-0000
(추가가능)						

※ 비고
피난약자 유형(노인[65세↑ 중 자의피난이 불가능한 사람], 영유아[6세↓], 아동[13세↓], 임산부, 장애인(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등)

서식 1.10 소방안전관리자 자체점검 및 업무 수행

1.10.1 연간 점검 계획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건축물 사용승인일 : 2007년 10월 20일

자체점검	☑ 작동점검	점검시기	2023년 4월		
		결과보고시기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	제출처	영등포소방서
		점 검 자	☐ 자체 ☑ 외주		
	☑ 종합점검	점검시기	☐ 최초점검	년 월	
			☑ 종합점검	2023년 10월	
			☐ 종합점검 2차(특급대상물)	년 월	
		결과보고시기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	제출처	영등포소방서
		점 검 자	☐ 자체 ☑ 외주		
	☐ 외관점검 (공공기관)	점검시기	매월 일		
		점검횟수	매월 회 이상		
		점 검 자	☐ 자체 ☐ 외주		

일상점검	☐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			
	수 행 자	소방안전관리자	수행주기	☐ 매월 (일)
	수행횟수	월 1회 이상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구 분	업무내용		
	소방시설	· 소방시설 외관상 파손 여부 · 소방시설 상태표시등 이상 여부		· 소방시설 전원 공급 상태 · 수신기 및 제어반 스위치 상태 확인
	피난·방화 시 설	· 피난 방화시설 파손여부 · 피난경로 상 장애물 적치 여부		· 도어클로저 탈락 여부 · 방화문 잠금 등 행위 여부
	화기취급감독	· 불꽃, 스파크 발생할 수 있는 작업 감독 · 기타 화재 발생 요인에 대한 관리		
	기타사항	· 가연물 보관 장소 확인 · 흡연장 관리상태 및 소화기 외관 상태 확인		· 기타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 · 분리수거장 관리상태 확인

관련서류 보관방법	☐ 소방계획서 내 별첨	☑ 별도 파일철
	☐ 전자문서	☐ 기타( )

※ 비고
1. 일상점검(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 수행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하되, 소방안전관리자 부재 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나 소방안전관리자를 관리·감독하는 관계인이 수행한다.
2. 관련서류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2년간 보관), 업무 수행 기록표(2년간 보관), 이행계획서 및 이행완료 보고서 등

1.10.2 업무 수행 기록표 [2년간 보관]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수행일자	2023.01.07.		수행자	심○보 (서명)	
소방안전 관리대상물	상호	○○경기장	등급	[ ]특급 [√]1급 [ ]2급 [ ]3급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170			
	지하층	지상층	연면적(㎡)	바닥면적(㎡)	동수
	2층	5층	40,000	8,550	1

항 목	확인내용	확인결과	조치사항
소방시설	· 소방시설 외관상 파손 여부 · 소방시설 상태표시등 이상 여부 · 수신기 및 제어반 스위치 상태 확인 · 소방시설 전원 공급 상태	[√] 양호 [ ] 불량	-
피난방화시설	· 피난 방화시설 파손여부 · 피난경로 상 장애물 적치 여부 · 방화문 잠금 등 행위 여부 · 도어클로저 탈락 여부	[ ] 양호 [√] 불량	방화문 고임목 제거
화기취급감독	· 불꽃, 스파크 발생할 수 있는 작업 감독 · 기타 화재 발생 요인에 대한 관리	[√] 양호 [ ] 불량	-
기타사항	· 가연물 보관 장소 확인 · 흡연장 청결 상태 및 소화기 외관 상태 확인 · 분리수거장 관리상태 확인 · 기타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	[√] 양호 [ ] 불량	-

불량사항 개선보고	보고일시	보고방법	보고받은 사람
	2023. 01. 08. 14:00	[√]대면 [ ]서면 [ ]정보통신	김○영
	조치방법	[ ]이전 [√]제거 [ ]수리·교체 [ ]기타	

※ 작성요령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날을 포함하여 월 1회 이상 작성
2. 당해연도 소방계획서 및 소방시설등(최초점검, 작동점검, 종합점검) 점검표에 따른 점검항목을 참고하여 작성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특성에 따라 기타사항에 추가항목을 작성
4. 경보설비의 수신반, 소화설비의 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펌프 등)는 중점확인하여 작성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10.3 화재/비화재보 이력 [부록 1.9 숙지]

구분 (화재/비화재보)	발생일시	발생장소	발생원인	조치사항
비화재보	2023.01.05. 14:20	3층 복도	연기감지기 오작동	복구 후 해당구역 주시
비화재보	2023.03.13. 19:38	3층 복도	연기감지기 오작동	감지기 교체
비화재보	2023.04.02. 22:05	지하 2층 기계실	연기감지기 오작동	일시적인 먼지로 인한 오작동으로 추정
화재	2023.05.27. 10:36	4층 ○○실 탕비실	냉장고 누전으로 인한 화재	전력 차단 및 소화기를 이용하여 화재 진압
(추가가능)				

서식 1.11 소방훈련 및 교육

1.11.1 소방훈련 및 교육 연간계획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대 상 자			
☑ 근무자	170명	□ 거주자	명
☑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30명		

교 육

대상자	구분	연간계획(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근무자 거주자	소방교육	□	□	□	□	□	☑	□	□	□	□	□	☑
	피난교육	□	□	□	□	□	☑	□	□	□	□	□	☑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	□	☑	□	□	☑	□	□	☑	□	□	☑

훈 련

대상자	구분	연간계획(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근무자 거주자	소방훈련	□	□	□	□	□	☑	□	□	□	□	□	☑
	피난훈련	□	□	□	□	□	☑	□	□	□	□	□	☑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	□	☑	□	□	☑	□	□	☑	□	□	☑

1.11.2 소방훈련 및 교육 세부계획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2023년 제 1 차] 소방훈련 · 교육 및 자체평가 계획

명 칭	2023년 제1차 ○○경기장 소방훈련 및 교육			
일 시	2023.03.09. 10:00~15:00			
장 소	○○경기장 1층(훈련) 및 3층 세미나실(교육)			
대 상	☑ 자위소방대 ☑ 근무자 □ 거주자			
종 류	실습	□ 기본훈련 □ 부분(기능)훈련 ☑ 종합훈련		
	이론	☑ 강의식 □ 세미나/워크샵		
주 관 부 서	시설팀			
참 여 대 상	자위소방대(30명), 근무자(170명), 방문자			
훈 련 형 태	☑ 자체훈련 □ 합동훈련 (참여기관 :)			
시 나 리 오	본관 1층 경기장에서 원인미상의 화재발생			
교 보 재	교육자료(PPT), 경광봉, 호루라기, 안전조끼, 소화기, 훈련용 연막 등			
훈 련 계 획	1.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등을 활용한 초기소화 2. 화재신고 및 자위소방대 등 비상연락 실시 3. 대피유도(피난약자 포함) 및 집결지 안내			
교 육 계 획	1. 화재유형 별 소화원리 2. 화재신고 및 비상연락방법 3. 방화문, 방화셔터 등 자동폐쇄가 되지 않았을 경우 수동폐쇄방법			
평 가 계 획	평가일시	2023.03.09. 10:00~11:00	평가자	심○보(서명)
	평가방법	평가 체크리스트 활용		

※ 비고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소방훈련 및 교육, 피난훈련 및 교육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소방훈련과 병행하여 실시 할 수 있다.

1.11.3 소방훈련 시나리오

상황메세지	훈련시간	훈련위치 (평가관 위치)	훈련상황	훈련내용 (기대행동)
훈련 전 안내방송 송출				
본관 1층 경기장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	훈련시작 +30초이내	발화층	화재경보 및 화재발생인지	1. 본관 1층 경기장에서 연기발생 2. 화재경보 음향장치 작동(자동송출) 3. 초기대응체계 등 실제화재여부 확인
	훈련시작 +1분이내	발화층	화재전파(내부)	화재발생확인 및 방재실 등 연락
		방재실	화재신고 및 초기대응	(비상연락팀) 1. 119에 신속히 신고 2. 자위소방대 소집 및 초기대응지시 3. 초기대응체계에게 초기소화 명령
	훈련시작 +3분이내	발화층	초기소화	(초기대응체계, 초기소화팀) 소화기, 옥내소화전을 이용하여 화재진압
		방재실	화재전파(외부) 및 피난개시명령	(비상연락팀) - 비상방송설비 사용 1. 재실자에게 화재상황 전파 2. 신속한 피난안내 실시
본관 1층 경기장 출입구 앞 방화셔터 미작동 확인	훈련시작 +5분이내	발화층, 직상층, 지하층	피난유도	(피난유도팀) 1. 피난경로(계단) 주변에서 재실자가 양방향피난이 가능하도록 분산유도 실시 2. 피난약자에 대한 피난 실시 3. 집결지 안내
		발화층	방호안전	(방호안전팀) 방화셔터 미 작동구역 확인 및 수동폐쇄
119소방대 도착 및 화재완전진압	훈련시작 +8분이내	발화층	초기소화	(초기대응체계, 초기소화팀) 추가 발화가능성 확인 및 현장대기
		방재실	진압완료전파 및 피난명령	(비상연락팀) - 비상방송설비 사용 1. 재실자에게 화재완전진압 안내 2. 지속적인 피난안내 실시
		1층 출입구	119소방대 도착	(비상연락팀) 119소방대원에게 화재현황(장소 등)을 설명하고 현장지휘권 인계
1층 계단부근 응급환자(골절) 발생	훈련시작 +10분이내	1층 계단부근	응급구조	(응급구조팀) 들것을 사용하여 응급환자(골절) 이송
훈련종료안내	훈련시작 +15분이내	방재실	상황종료 전파	(비상연락팀) - 비상방송설비 사용 1. 훈련종료 안내 2. 소방훈련 대상자 집합 및 평가

1.11.4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 [2년간 보관]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소방안전 관리대상물	대상명	○○경기장		용도	문화 및 집회
	대표자	김○혁 (서명)		전화번호	0000-0000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170			
	등급	[ ] 특급	[√] 1급	[ ] 2급	[ ] 3급

	성명	선임일자	보유자격	자격구분	연락처
소방안전 관리자	심○보	2019.03.06.	1급	[√]주 [ ]보조	010-0000-0000
	임○우	2019.09.08.	2급 강습수료	[ ]주 [√]보조	010-0000-0000
	성○운	2021.05.02.	건축기사	[ ]주 [√]보조	010-0000-0000
				[ ]주 [ ]보조	

소방훈련 결과				
일시/장소	2023.03.09. 10:00~11:00 / ○○경기장 1층		[√] 자체훈련	[ ] 합동훈련
참석결과	훈련교관	참석대상(명)	참석(명)	미참석(명)
	심○보	200	190	10
훈련보조재료	교육자료(PPT), 경광봉, 호루라기, 안전조끼, 소화기, 훈련용 연막 등			

	소화훈련	통보훈련	피난훈련
훈련내용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 등을 활용한 초기소화	화재신고 및 자위소방대 등 비상연락 실시	대피유도(피난약자 포함) 및 집결지 안내

훈련성과	1.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 등의 사용법 숙지로 초기소화능력 증대 2. 신속하고 정확한 대피방법을 습득 3. 신속하고 정확한 비상연락 및 통보방법을 습득
문제점	1. 피난약자에 대한 피난보조 미숙으로 피난 지연 2. 피난 시 병목현상 발생
개선계획	1. 피난약자 유형별 피난보조 방법 재교육 2. 호루라기, 경광봉 등을 활용한 신속한 피난경로 안내 실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뒷쪽)

소방교육 결과				
일시/장소	2023.03.09. 14:00~15:00 / ○○경기장 3층 세미나실			
참석결과	교육강사	참석대상(명)	참석(명)	미참석(명)
	임○우	200	190	10
교육내용	1. 화재유형 별 소화원리 2. 화재신고 및 비상연락방법 3. 방화문, 방화셔터 등 자동폐쇄가 되지 않았을 경우 수동폐쇄방법			
교육성과	1. 화재유형 별 소화방법 습득 2. 신속하고 정확한 비상연락 및 통보방법을 습득			
문제점	방화문, 방화셔터 등 수동폐쇄 관련 이해도 부족			
개선계획	방화문, 방화셔터 등 수동폐쇄방법을 실제 조작하며 동작원리 이해			

소방훈련·교육 관련사진

소방훈련

소방훈련

소방교육

소방교육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11.5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 제출 [공공기관 제외 특급,1급]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소방안전 관리대상물	대상명	○○경기장	용도	문화 및 집회
	대표자	김○혁	전화번호	0000-0000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170		
	등급	[ ] 특급 [√] 1급		

	성명	선임일자	자격종류	자격구분
소방안전 관리자	심○보	2019.03.06.	1급 소방안전관리자	[√]주 [ ]보조
	임○우	2019.09.08.	2급 강습교육 수료	[ ]주 [√]보조
	성○운	2021.05.02.	건축기사	[ ]주 [√]보조

[√] 소방훈련 [√] 소방교육

일시/장소	2023.03.09. 10:00~15:00 / ○○경기장 1층(훈련) 및 3층 세미나실(교육)		
참석결과	총대상자(명)	참석(명)	미참석(명)
	200	190	10
주요내용	1.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등을 활용한 초기소화 2. 화재신고 및 자위소방대 등 비상연락 실시 3. 대피유도 및 집결지 안내		
주요성과	1.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 등의 사용법 숙지로 초기소화능력 증대 2. 신속하고 정확한 대피방법을 습득 3. 신속하고 정확한 비상연락 및 통보방법을 습득		
문제점	1. 피난약자에 대한 피난보조 미숙으로 피난 지연 2. 피난 시 병목현상 발생 3. 방화문, 방화셔터 등 수동폐쇄 관련 이해도 부족		
조치사항	1. 피난약자 유형별 피난보조 방법 재교육 2. 호루라기, 경광봉 등을 활용한 신속한 피난경로 안내 실시 3. 방화문, 방화셔터 등 수동폐쇄방법을 실제 조작하며 동작원리 이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위와 관이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2023년 03월 09일

제출자(대표자) : 김○혁 (직인 또는 서명)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1.12 화기취급감독

1.12.1 화기취급작업 현황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작업일자 및 시간	작업장소	작업내용	작업책임자 (업체명)
2023.04.05. 09:30~16:30	4층 ○○실	S/P 배관공사	구○모 (○○산업)
(추가가능)			

관련서류 보관방법	□ 소방계획서 내 별첨	☑ 별도 파일철
	□ 전자문서	□ 기타(　　)

※ 비고

화재예방을 위해 화기취급감독자(소방안전관리자)는 화기취급작업을 사전에 허가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화재감시자 등이 입회하여 관리·감독해야 한다.

1.12.2 화기취급작업 신청서

허 가 사 항	허가번호 : 2023-04-01	허가일자 : 2023년 4월 5일
화 재 감 시 자	성명 : 임○우 (서명)	휴대폰번호 : 010-0000-0000
신 청 인	업체명 : ○○산업	작업책임자 : 구○모
	연락처 : 010-0000-0000	
작 업 명	4층 ○○실 S/P 배관 증설 공사	
작 업 구 분	☑ 용접 ☑ 용단 □ 땜 □ 연마 □ 기타 (　　)	
작 업 구 역	(신청서 1건 당 작업장소 범위 : ① 층별 신청, ② 해당 층에서 반경 20m 초과마다 신청) 4층 ○○실	
작 업 일 시	(작업기간 중 1일 단위 신청) 2023년 4월 5일 10:00 ~ 16:30	

초기대응체계

현장책임자	
성 명	구○모 (서명)
연락처	010-0000-0000

비상연락		초기소화		피난유도	
성 명	권○현 (서명)	성 명	김○균(서명)	성 명	정○훈(서명)
연락처	010-0000-0000	연락처	010-0000-0000	연락처	010-0000-0000

		점검내용	결과 [○, ×]
화 기 작 업 체 크 리 스 트 (작 업 전)		1. 작업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조치 여부	○
		2. 작업에 맞는 보호구 착용 여부	○
		3. 작업구역 내 가스농도 측정 및 잔류물질 확인 여부	○
		4. 작업구역 11m 內 인화성 및 가연성 물질 제거상태	○
		5. 인화성 물질 취급 작업과 동시작업 유무	○
		6. 불티 비산방지조치(불티차단막/방화포 등) 실시 여부	○
		7. 작업지점 5m 이내 소화기 비치 여부	○
		8. 교육 실시 여부(소방시설 사용법, 피난로 위치, 초기대응체계 등)	○
화 기 작 업 자 작 성	밀폐공간 작 업 시 (체 크)	9. 밀폐공간 관계자 외 출입제한 여부	/
		10. 밀폐공간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 착용 여부	/
		11. 밀폐공간의 환기 설비 설치 여부	/
		12. 작업자의 개인통신장비 및 휴대용 산소농도측정기 착용 여부	/
		13. 구조장비(구급함/구명줄/삼각대 등) 준비 여부	/
		14. 가스 및 산소농도 측정 여부	/
		15. 전화하면 5분이내 구조할 수 있는 위치에 구조팀 대기	/
		16. 필요한 구조팀 담당자 성명 :	/
작 업 자 명 단		구○모, 권○현, 김○균, 정○훈	

작업책임자 구○모 (서명)

1.12.3 화기취급작업 허가서

[본 화기작업 허가서는 반드시 작업현장에 게시하고 작업완료 후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반납해야 한다.]

허 가 사 항	허가번호 : 2023-04-01	허가일자 : 2023년 4월 5일	(소방안전관리자) 심○보 (서명)
화재감시자	성명 : 임○우 (서명)	휴대폰번호 : 010-0000-0000	
작 업 명	4층 ○○실 S/P배관 증설 공사		
작 업 구 분	☑ 용접 ☑ 용단 ☐ 땜 ☐ 연마 ☐ 기타 ( )		
작 업 구 역	4층 ○○실		
작 업 일 시	2023년 4월 5일 10:00 ~ 16:30		

	점검내용	결과 [○, ×]
화 기 작 업 체크리스트 (작 업 중)	1. 화기작업 허가서 발급 및 비치 여부	○
	2. 화재감시자 배치 여부	○
	3. 작업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조치 여부	○
	4. 작업에 맞는 보호구 착용 여부	○
	5. 작업구역 내 가스농도 측정 및 잔류물질 확인 여부	○
	6. 작업구역 11m 內 인화성 및 가연성 물질 제거상태	○
	7. 인화성 물질 취급 작업과 동시작업 유무	○
	8. 불티 비산방지조치(불티차단막/방화포 등) 실시 여부	○
	9. 작업지점 5m 이내 소화기 비치 여부	○
소방안전관리자 확 인	10. 교육 실시 여부(소방시설 사용법, 피난로 위치, 초기대응체계 등)	○
밀폐공간 작 업 시 (체 크)	11. 밀폐공간 관계자 외 출입제한 여부	/
	12. 밀폐공간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 착용 여부	/
	13. 밀폐공간의 환기 설비 설치 여부	/
	14. 작업자의 개인통신장비 및 휴대용 산소농도측정기 착용 여부	/
	15. 구조장비(구급함/구명줄/삼각대 등) 준비 여부	/
	16. 가스 및 산소농도 측정 여부	/
	17. 전화하면 5분이내 구조할 수 있는 위치에 구조팀 대기	/
	18. 필요한 구조팀 담당자 성명 :	/

	확인사항	작업책임자 확인
작 업 종 료 후 안전조치 (작업종료 후 작성 → 반납)	1. 불티잔존 여부(작업 종료 후 30분 후 확인)	구○모 (서명)
	2. 전원차단 상태	
	3. 인화성・가연성 물품의 보관상태	
반 납 확 인	**소방안전관리자**	**심○보 (서명)**

서식 1.13 소방시설 공사/정비 기록

작업내용	작업기간	작업책임자	확인일자	비고
본관 4층 ○○실 S/P 배관 증설	2023.04.05. ~ 04.07.	구○모 (○○산업)	2023.04.07.	공사 종료 후 확인 결과 이상없음
2층 ○○실 연기감지기 교체	2023.04.24.	임○우	2023.04.24.	감지기 교체 후 확인 결과 이상없음
(추가가능)				

관련서류 보관방법	☐ 소방계획서 내 별첨	☑ 별도 파일철
	☐ 전자문서	☐ 기타( )

※ 비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해당하는 소방시설 착공신고 대상의 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사업자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

서식 1.14 화재예방 및 홍보

1.14.1 화재예방 및 홍보 계획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화재예방 및 홍보방법	연간계획(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화재예방 홍보기간 운영	☑	☑	□	□	□	□	☑	☑	□	□	☑	☑
포스터, 표어 전시	☑	☑	☑	☑	☑	☑	☑	☑	☑	☑	☑	☑
영상물 상영	☑	☑	☑	☑	☑	☑	☑	☑	☑	☑	☑	☑
체험시설(체험관) 견학	□	□	□	□	□	□	□	□	□	□	□	□
문서, 이메일 공지	□	□	□	☑	□	□	□	□	□	☑	□	□
홍보물(리플렛, 스티커) 배부	□	□	□	□	□	□	□	□	□	□	□	□
현수막, 배너 설치	☑	☑	☑	☑	☑	☑	☑	☑	☑	☑	☑	☑
모바일 App, SNS 활용	☑	☑	☑	☑	☑	☑	☑	☑	☑	☑	☑	☑
구내 캠페인 방송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화재예방 및 홍보결과 보관방법		
	□ 소방계획서 내 별첨	☑ 별도 파일철
	□ 전자문서	□ 기타( )

1.14.2 화재예방 및 홍보 결과

화재예방 및 홍보방법	포스터 부착	일시 및 장소	2023.01.05. 전 층 복도

화재예방 및 홍보방법	비상 시 행동요령 비치	일시 및 장소	2023.01.18. 각 실 출입구 인근

화재 시 비상행동요령

화재 전파	1. 화재경보장치(발신기)를 작동하고, 주변에 화재발생 사실을 전파
화재 신고	2. 119 화재신고 현재 위치 : **구 **동 (**부근) OO경기장
초기소화	3.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으로 초기소화
피 난	4. 가까운 비상구(통로)를 통해 신속히 피난
집 결	5. 피난 시 집결지로 안전하게 이동 피난집결장소 : OO경기장 건너편 ****
금지행위	■화재 시 승강기(엘리베이터) 사용금지 ■피난 후 건물 내로 재진입 금지

비상연락처			
	관리(방재)실	B1(방재실)	0000-0000
	소방안전관리자	심O보	0000-0000

서식 1.15 피해 복구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임무	상세내용	담당자(관리부서)
피해복구 계획	현장보존, 피해현황 조사	현장출입금지, 현황파악	김○영(안전관리과)
	사상자, 설비 등 후속조치	재발장지 대책마련	심○보(시설팀)
	손해보험처리	현장실사, 보험사 연락	임○우(시설팀)

화재 발생 개요 **화재발생시 작성**	일 시	2023.01.31. 오후 2시경				
	장 소	4층 ○○실 탕비실				
	원 인	발화열원	냉장고 누전			
		발화요인	전기적 요인			
		발화개요	냉장고 전선피복이 손상되어 누전 발생			
	피해상황	인명	□ 사망	명	□ 부상	명
		재산	☑ 피해액	0,000천원	☑ 피해면적	000㎡

예방대책 **화재발생시 작성**	220V 전압 공급지역에서는 누전차단기를 반드시 설치·관리하여야 하고, 110V 지역에도 누전차단기를 설치·관리하여 누전발생시 자동으로 차단되어 더욱 안전하게 사용 가능하도록 한다.

제2장 자위소방대 운영계획

서식 2.1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일반현황 [서식 1개만 선택작성]

2.1.1 일반건축물 (지구대가 없을 경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명칭	○○경기장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170					
등급	□ 특급	☑ 1급	□ 2급	□ 3급		
상시근무인원	□ 50명 미만	□ 50명 ~ 100명	☑ 100명 ~ 500명	□ 500명 초과		
운영시간	☑ 평일	☑ 주간 08시 ~ 17시	☑ 야간 17시 ~ 23시	☑ 휴일	☑ 주간 08시 ~ 17시	☑ 야간 17시 ~ 23시
자위소방대 편성표 서식	☑ Type-Ⅱ [서식 2.2.2] & [서식 2.3.2] 작성 * 상시 근무인원 50명 이상의 경우 TYPE-Ⅱ 권장					
	□ Type-Ⅲ [서식 2.2.3] & [서식 2.3.3] 작성 * 상시 근무인원 50명 미만인 경우 TYPE-Ⅲ 권장					

구성	자위소방대	총원	58명	근무형태	☑ 상근직	☑ 교대직 (4 조 3 교대)
		지휘통제팀	3명	대장 1명	부대장 2명	
		현장대응팀	55명	☑ 비상연락팀 5명	☑ 응급구조팀 5명	
				☑ 초기소화팀 20명	☑ 방호안전팀 5명	
				☑ 피난유도팀 20명		
	초기대응체계	총원	20명	근무형태	☑ 상근직	☑ 교대직 (4 조 3 교대)
		☑ 1조(평일 주간 08시~17시)	5명	☑ 2조(평일 야간 17시~23시)	5명	
		☑ 3조(휴일 주간 08시~17시)	5명	☑ 4조(휴일 야간 17시~23시)	5명	
임무	자위소방대	대장	총괄지휘 및 감독			
		부대장	현장지휘 및 감독			
		☑ 비상연락팀	상황접수 및 전파, 자위소방대 소집, 화재신고(119) 및 통보연락			
		☑ 초기소화팀	자체소방시설을 이용한 초기화재 진압 활동			
		☑ 피난유도팀	거주자, 방문자 등 피난유도 및 피난약자에 대한 피난보조 활동			
		☑ 응급구조팀	응급상황 발생 시 인명구조 및 응급조치			
		☑ 방호안전팀	화재확산방지 및 위험물시설에 대한 제어 등 방호안전 업무			
	초기대응체계	화재초기 신속하게 상황전파, 화재진압, 피난유도, 인명구조 등을 수행				

※ 비고

초기대응체계는 화재 발생 시 초기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종합방재실, 수위실 등 상시 근무하는 인원을 1명 이상 포함하여 구성하고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이용되고 있는 동안에는 상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2.1.2 일반건축물 (지구대가 있을 경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명칭	○○경기장 등 3개동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170					
등급	□ 특급	☑ 1급	□ 2급	□ 3급		
상시근무인원	□ 50명 미만	□ 50명 ~ 100명	☑ 100명 ~ 500명	□ 500명 초과		
운영시간	☑ 평일	☑ 주간 08시 ~ 17시	☑ 야간 17시 ~ 23시	☑ 휴일	☑ 주간 08시 ~ 17시	☑ 야간 17시 ~ 23시
자위소방대 편성표 서식	☑ Type-Ⅰ [서식 2.2.1] & [서식 2.3.1] 작성 * 연면적 30,000㎡ 이상의 경우 TYPE-Ⅰ 권장(공동주택 제외)					

구성	자위소방대	총원	83명	근무형태	☑ 상근직	☑ 교대직 (4 조 3 교대)	
		지휘통제팀	3명	대장 1명	부대장 2명		
		본부대 (경기장 지하2층 ~지상1층)	34명	☑ 비상연락팀 4명	☑ 응급구조팀 5명		
				☑ 초기소화팀 10명	☑ 방호안전팀 5명		
				☑ 피난유도팀 10명			
		지구대1 (경기장 지상2층 ~지상5층)	22명	☑ 비상연락팀 2명	책임자성명	심○보	
				☑ 초기소화팀 10명			
				☑ 피난유도팀 10명			
		지구대2 (별관)	12명	☑ 비상연락팀 2명	책임자성명	임○우	
				☑ 초기소화팀 5명			
				☑ 피난유도팀 5명			
		지구대3 (시설관리실)	12명	☑ 비상연락팀 2명	책임자성명	김○찬	
				☑ 초기소화팀 5명			
				☑ 피난유도팀 5명			
	초기대응체계	총원	40명	근무형태	☑ 상근직	☑ 교대직 (4 조 3 교대)	
		동		층	근무시간	인원	
		경기장, 별관, 시설관리실(3개동)		전층	1조 평일 주간 08시~17시	10명	
		경기장, 별관, 시설관리실(3개동)		전층	2조 평일 야간 17시~23시	10명	
		경기장, 별관, 시설관리실(3개동)		전층	3조 휴일 주간 08시~17시	10명	
		경기장, 별관, 시설관리실(3개동)		전층	4조 휴일 야간 17시~23시	10명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임무	자위소방대	대장	총괄지휘 및 감독	
		부대장	현장지휘 및 감독	
		본부대 (경기장 지하2층 ~지상1층)	☑ 비상연락팀	상황접수 및 전파, 자위소방대 소집, 화재신고(119) 및 통보연락
			☑ 초기소화팀	자체소방시설을 이용한 초기화재 진압 활동
			☑ 피난유도팀	거주자, 방문자 등 피난유도 및 피난약자에 대한 피난보조 활동
			☑ 응급구조팀	응급상황 발생 시 인명구조 및 응급조치
			☑ 방호안전팀	화재확산방지 및 위험물시설에 대한 제어 등 방호안전 업무
		지구대1 (경기장 지상2층 ~지상5층)	☑ 비상연락팀	상황접수 및 전파, 자위소방대 소집, 화재신고(119) 및 통보연락
			☑ 초기소화팀	자체소방시설을 이용한 초기화재 진압 활동
			☑ 피난유도팀	거주자, 방문자 등 피난유도 및 피난약자에 대한 피난보조 활동
		지구대2 (별관)	☑ 비상연락팀	상황접수 및 전파, 자위소방대 소집, 화재신고(119) 및 통보연락
			☑ 초기소화팀	자체소방시설을 이용한 초기화재 진압 활동
			☑ 피난유도팀	거주자, 방문자 등 피난유도 및 피난약자에 대한 피난보조 활동
		지구대3 (시설관리실)	☑ 비상연락팀	상황접수 및 전파, 자위소방대 소집, 화재신고(119) 및 통보연락
			☑ 초기소화팀	자체소방시설을 이용한 초기화재 진압 활동
			☑ 피난유도팀	거주자, 방문자 등 피난유도 및 피난약자에 대한 피난보조 활동
	초기대응체계	화재초기 신속하게 상황전파, 화재진압, 피난유도, 인명구조 등을 수행		

※ 비고

초기대응체계는 화재 발생 시 초기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종합방재실, 수위실 등 상시 근무하는 인원을 1명 이상 포함하여 구성하고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이용되고 있는 동안에는 상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2.1.3 공공기관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명칭	○○경기장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170				
등급	□ 특급	☑ 1급	□ 2급	□ 3급	
상시근무인원	□ 50명 미만	□ 50명 ~ 100명	☑ 100명 ~ 500명	□ 500명 초과	
운영시간	☑ 평일	☑ 주간 08시 ~ 17시	☑ 휴일	☑ 주간 08시 ~ 17시	
		☑ 야간 17시 ~ 23시		☑ 야간 17시 ~ 23시	
자위소방대 편성표서식	☑ 공공기관 [서식 2.2.4] & [서식 2.3.4] 작성				

구성	자위소방대	총원	53명	근무형태	☑ 상근직	☑ 교대직 (4 조 3 교대)
		지휘통제팀	3명	대장	1명	부대장 2명
		현장대응팀	50명	☑ 지휘반	5명	☑ 구조구급반 5명
				☑ 진압반	20명	☑ 대피유도반 20명
	초기대응체계	총원	20명	근무형태	☑ 상근직	☑ 교대직 (4 조 3 교대)
		☑ 1조(평일 주간 08시~17시)	5명	☑ 2조(평일 야간 17시~23시)	5명	
		☑ 3조(휴일 주간 09시~18시)	5명	☑ 4조(휴일 야간 17시~23시)	5명	

임무	자위소방대	대장	총괄지휘 및 감독
		부대장	현장지휘 및 감독
		☑ 지휘반	다른 반의 임무 조정, 화재진압 등에 관한 훈련계획을 수립・시행
		☑ 진압반	자체소방시설을 이용한 초기화재 진압 활동
		☑ 구조구급반	응급상황 발생 시 인명구조 및 응급조치
		☑ 대피유도반	거주자, 방문자 등 피난유도 및 피난약자에 대한 피난보조 활동
	초기대응체계	화재초기 신속하게 상황전파, 화재진압, 피난유도, 인명구조 등을 수행	

※ 비고

초기대응체계는 화재 발생 시 초기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종합방재실, 수위실 등 상시 근무하는 인원을 1명 이상 포함하여 구성하고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이용되고 있는 동안에는 상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서식 2.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편성표 [서식 1개만 선택작성]

2.2.1 Type- Ⅰ

* 연면적 30,000㎡ 이상 권장(공동주택 제외)

자위소방대		소 속	성 명	개별임무	비상연락체계	
					사무실	개인
지휘통제팀	대 장	○○경기장 대표	김○혁	총괄지휘	02-000-0000	010-0000-0000
	부대장(I)	00팀	심○보	현장지휘	02-000-0000	010-0000-0000
	부대장(II)	00팀	임○우	수신반 제어	02-000-0000	010-0000-0000
	부대장(III)					
본부대 (경기장 지하2층 ~ 지상1층)	비상연락팀	00팀	안○돈	업무총괄(팀장)	02-000-0000	010-0000-0000
		00팀	정○영	비상방송	02-000-0000	010-0000-0000
		(추가 가능)				
	초기소화팀	00팀	조○석	업무총괄(팀장)	02-000-0000	010-0000-0000
		00팀	조○승	초기소화	02-000-0000	010-0000-0000
		(추가 가능)				
	피난유도팀	00팀	최○진	업무총괄(팀장)	02-000-0000	010-0000-0000
		00팀	김○성	피난유도	02-000-0000	010-0000-0000
		(추가 가능)				
	응급구조팀	00팀	이○실	업무총괄(팀장)	02-000-0000	010-0000-0000
		00팀	이○로	응급구조	02-000-0000	010-0000-0000
		(추가 가능)				
	방호안전팀	00팀	황○철	업무총괄(팀장)	02-000-0000	010-0000-0000
		00팀	이○현	비상반출	02-000-0000	010-0000-0000
		(추가 가능)				
지구대 1 (경기장 지상2층 ~ 지상5층)	비상연락팀	00팀	신○진	비상연락	02-000-0000	010-0000-0000
		00팀	하○우	비상연락	02-000-0000	010-0000-0000
		(추가 가능)				
	초기소화팀	00팀	김○형	초기소화	02-000-0000	010-0000-0000
		00팀	김○호	초기소화	02-000-0000	010-0000-0000
		(추가 가능)				
	피난유도팀	00팀	엄○지	피난유도	02-000-0000	010-0000-0000
		00팀	이○해	피난유도	02-000-0000	010-0000-0000
		(추가 가능)				

지구대 2 (별관)	비상연락팀	별관 00팀	정○효	비상연락	02-000-0000	010-0000-0000
		별관 00팀	채○현	비상연락	02-000-0000	010-0000-0000
		(추가 가능)				
	초기소화팀	별관 00팀	고○희	초기소화	02-000-0000	010-0000-0000
		별관 00팀	신○경	초기소화	02-000-0000	010-0000-0000
		(추가 가능)				
	피난유도팀	별관 00팀	장○근	피난유도	02-000-0000	010-0000-0000
		별관 00팀	강○구	피난유도	02-000-0000	010-0000-0000
		(추가 가능)				
지구대 3 (시설관리실)	비상연락팀	시설관리실 00팀	이○종	비상연락	02-000-0000	010-0000-0000
		시설관리실 00팀	이○규	비상연락	02-000-0000	010-0000-0000
		(추가 가능)				
	초기소화팀	시설관리실 00팀	김○민	초기소화	02-000-0000	010-0000-0000
		시설관리실 00팀	김○연	초기소화	02-000-0000	010-0000-0000
		(추가 가능)				
	피난유도팀	시설관리실 00팀	임○원	피난유도	02-000-0000	010-0000-0000
		시설관리실 00팀	심○화	피난유도	02-000-0000	010-0000-0000
		(추가 가능)				

초기대응체계			소 속	성 명	개별임무	비상연락체계	
동	층	근무시간				사무실	개인
경기장 등 3개동	전층	1조 평일 주간 08시~17시	00팀	심○보	현장지휘	02-000-0000	010-0000-0000
			00팀	임○찬	초기소화	02-000-0000	010-0000-0000
			(추가 가능)				
		2조 평일 야간 17시~23시	00팀	임○우	현장지휘	02-000-0000	010-0000-0000
			00팀	윤○구	초기소화	02-000-0000	010-0000-0000
			(추가 가능)				
경기장 등 3개동	전층	3조 휴일 주간 08시~17시	00팀	김○찬	현장지휘	02-000-0000	010-0000-0000
			00팀	김○균	초기소화	02-000-0000	010-0000-0000
			(추가 가능)				
		4조 휴일 야간 17시~23시	00팀	이○표	현장지휘	02-000-0000	010-0000-0000
			00팀	신○재	초기소화	02-000-0000	010-0000-0000
			(추가 가능)				

2.2.2 Type-Ⅱ

* 상시 근무인원 50명 이상 권장

자위소방대		소 속	성 명	개별임무	비상연락체계	
					사무실	개인
지휘 통제팀	대 장	○○경기장 대표	김○혁	총괄지휘	02-000-0000	010-0000-0000
	부대장(I)	00팀	심○보	현장지휘	02-000-0000	010-0000-0000
	부대장(Ⅱ)	00팀	임○우	수신반 제어	02-000-0000	010-0000-0000
	부대장(Ⅲ)					
현장 대응팀	비상연락팀	00팀	안○돈	업무총괄(팀장)	02-000-0000	010-0000-0000
		00팀	정○영	비상방송	02-000-0000	010-0000-0000
		(추가 가능)				
	초기소화팀	00팀	조○석	업무총괄(팀장)	02-000-0000	010-0000-0000
		00팀	조○승	초기소화	02-000-0000	010-0000-0000
		(추가 가능)				
	피난유도팀	00팀	최○진	업무총괄(팀장)	02-000-0000	010-0000-0000
		00팀	김○성	피난유도	02-000-0000	010-0000-0000
		(추가 가능)				
	응급구조팀	00팀	이○실	업무총괄(팀장)	02-000-0000	010-0000-0000
		00팀	이○로	응급구조	02-000-0000	010-0000-0000
		(추가 가능)				
	방호안전팀	00팀	황○철	업무총괄(팀장)	02-000-0000	010-0000-0000
		00팀	이○현	비상반출	02-000-0000	010-0000-0000
		(추가 가능)				

초기대응체계		소 속	성 명	개별임무	비상연락체계	
					사무실	개인
1조	평일 주간 08시~17시	00팀	심○보	현장지휘	02-000-0000	010-0000-0000
		00팀	임○찬	초기소화	02-000-0000	010-0000-0000
		(추가 가능)				
2조	평일 야간 17시~23시	00팀	임○우	현장지휘	02-000-0000	010-0000-0000
		00팀	윤○구	초기소화	02-000-0000	010-0000-0000
		(추가 가능)				
3조	휴일 주간 08시~17시	00팀	김○찬	현장지휘	02-000-0000	010-0000-0000
		00팀	김○균	초기소화	02-000-0000	010-0000-0000
		(추가 가능)				
4조	휴일 야간 17시~23시	00팀	이○표	현장지휘	02-000-0000	010-0000-0000
		00팀	신○재	초기소화	02-000-0000	010-0000-0000
		(추가 가능)				

2.2.3 Type-Ⅲ

* 상시 근무인원 50명 미만 권장

자위소방대		소 속	성 명	개별임무	비상연락체계	
					사무실	개인
지휘 통제팀	대 장	○○경기장 대표	김○혁	총괄지휘	02-000-0000	010-0000-0000
	부대장(I)	00팀	심○보	현장지휘	02-000-0000	010-0000-0000
	부대장(Ⅱ)	00팀	임○우	수신반 제어	02-000-0000	010-0000-0000
	부대장(Ⅲ)					
현장대응팀		00팀	정○영	화재전파	02-000-0000	010-0000-0000
		00팀	조○승	초기소화	02-000-0000	010-0000-0000
		00팀	김○성	피난유도	02-000-0000	010-0000-0000
		00팀	이○로	응급구조	02-000-0000	010-0000-0000
		00팀	이○현	비상반출	02-000-0000	010-0000-0000
		(추가 가능)				

초기대응체계		소 속	성 명	개별임무	비상연락체계	
					사무실	개인
1조	평일 주간 08시~17시	00팀	심○보	현장지휘	02-000-0000	010-0000-0000
		00팀	임○찬	초기소화	02-000-0000	010-0000-0000
		(추가 가능)				
2조	평일 야간 17시~23시	00팀	임○우	현장지휘	02-000-0000	010-0000-0000
		00팀	윤○구	초기소화	02-000-0000	010-0000-0000
		(추가 가능)				
3조	휴일 주간 08시~17시	00팀	김○찬	현장지휘	02-000-0000	010-0000-0000
		00팀	김○균	초기소화	02-000-0000	010-0000-0000
		(추가 가능)				
4조	휴일 야간 17시~23시	00팀	이○표	현장지휘	02-000-0000	010-0000-0000
		00팀	신○재	초기소화	02-000-0000	010-0000-0000
		(추가 가능)				

2.2.4 공공기관

자위소방대		소 속	성 명	개별임무	비상연락체계	
					사무실	개인
지휘 통제팀	대 장	○○경기장 대표	김○혁	총괄지휘	02-000-0000	010-0000-0000
	부대장(I)	00팀	심○보	현장지휘	02-000-0000	010-0000-0000
	부대장(II)	00팀	임○우	수신반 제어	02-000-0000	010-0000-0000
	부대장(III)					
현장 대응팀	지휘반	00팀	안○돈	업무총괄(팀장)	02-000-0000	010-0000-0000
		00팀	정○영	수신반 제어	02-000-0000	010-0000-0000
		(추가 가능)				
	진압반	00팀	조○석	업무총괄(팀장)	02-000-0000	010-0000-0000
		00팀	조○승	초기소화	02-000-0000	010-0000-0000
		(추가 가능)				
	구조구급반	00팀	이○실	업무총괄(팀장)	02-000-0000	010-0000-0000
		00팀	이○로	응급구조	02-000-0000	010-0000-0000
		(추가 가능)				
	대피유도반	00팀	최○진	업무총괄(팀장)	02-000-0000	010-0000-0000
		00팀	김○성	피난유도	02-000-0000	010-0000-0000
		(추가 가능)				

초기대응체계		소 속	성 명	개별임무	비상연락체계	
					사무실	개인
1조	평일 주간 08시~17시	00팀	심○보	현장지휘	02-000-0000	010-0000-0000
		00팀	임○찬	초기소화	02-000-0000	010-0000-0000
		(추가 가능)				
2조	평일 야간 17시~23시	00팀	임○우	현장지휘	02-000-0000	010-0000-0000
		00팀	윤○구	초기소화	02-000-0000	010-0000-0000
		(추가 가능)				
3조	휴일 주간 08시~17시	00팀	김○찬	현장지휘	02-000-0000	010-0000-0000
		00팀	김○균	초기소화	02-000-0000	010-0000-0000
		(추가 가능)				
4조	휴일 야간 17시~23시	00팀	이○표	현장지휘	02-000-0000	010-0000-0000
		00팀	신○재	초기소화	02-000-0000	010-0000-0000
		(추가 가능)				

서식 2.3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조직도 및 임무 [서식 1개만 선택작성]

2.3.1 Type- I

* 연면적 30,000㎡ 이상 권장(공동주택 제외)

1.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조직도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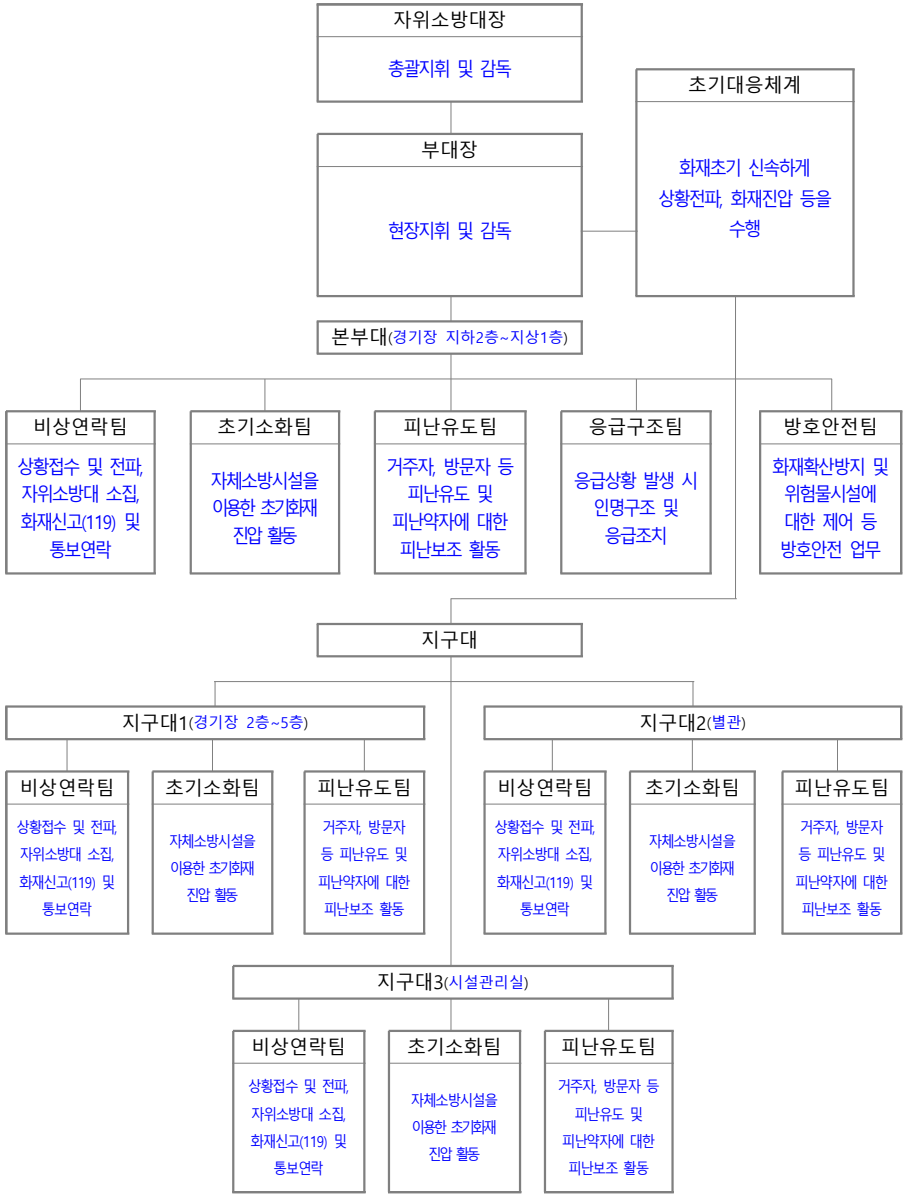

2.3.2 Type-Ⅱ

* 상시 근무인원 50명 이상 권장

1.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조직도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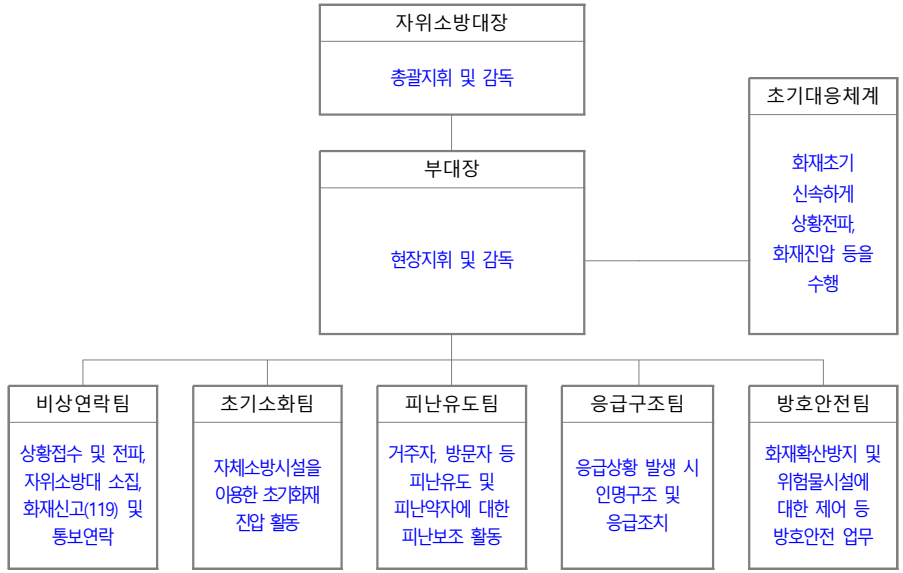

2.3.3 Type-Ⅲ

* 상시 근무인원 50명 미만 권장

1.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조직도

자위소방대장	
소속	성명
○○경기장 대표	김○혁

부대장	
소속	성명
00팀	심○보
00팀	임○우

초기대응체계	
조	인원
1조	2명
2조	2명
3조	2명
4조	2명

현장대응팀	
소속	인원
00팀	5명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임무

자위소방대장
총괄지휘 및 감독

부대장
현장지휘 및 감독

초기대응체계
화재초기 신속하게 상황전파, 화재진압 등을 수행

현장대응팀
상황접수 및 전파, 자위소방대 소집, 화재신고(119) 및 통보연락 자체소방시설을 이용한 초기화재 진압 활동 거주자, 방문자 등 피난유도 및 피난약자에 대한 피난보조 활동 응급상황 발생 시 인명구조 및 응급조치 화재확산방지 및 위험물시설에 대한 제어 등 방호안전 업무

2.3.4 공공기관

1.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조직도

자위소방대장	
소속	성명
○○경기장 대표	김○혁

부대장	
소속	성명
00팀	심○보
00팀	임○우

초기대응체계	
조	인원
1조	5명
2조	5명
3조	5명
4조	5명

지휘반	
소속	인원
00팀	5명

진압반	
소속	인원
00팀	20명

구조구급반	
소속	인원
00팀	5명

대피유도반	
소속	인원
00팀	20명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임무

자위소방대장
총괄지휘 및 감독

부대장
현장지휘 및 감독

초기대응체계
화재초기 신속하게 상황전파, 화재진압 등을 수행

지휘반	진압반	구조구급반	대피유도반
다른 반의 임무 조정, 화재진압 등에 관한 훈련계획을 수립·시행	자체소방시설을 이용한 초기화재 진압 활동	응급상황 발생 시 인명구조 및 응급조치	거주자, 방문자 등 피난유도 및 피난약자에 대한 피난보조 활동

서식 2.4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개별임무카드

전 면

자위소방대 비상연락팀(지휘반)		
공통임무		
1. 화재사실 전파 및 신고(119)		
2. 초기소화 및 피난유도		
3. 기타 초기대응에 필요한 업무지원		
개별임무	성명	정○영
1. 자위소방대원 소집 및 임무부여		
2. 피난개시 명령(비상방송설비, 육성 등 활용)		
3. 관계기관 통보·연락 실시		

후 면

세부내용
□ **비상연락처**
- 방재실 : 000-0000
- 소방안전관리자 : 000-000-0000
- 00소방서 : 000-0000
□ **화재전파 시 유의사항**
- 반복적으로 피난정보 제공(피난경로, 방법 등)
□ **피난개시 명령 시 유의사항**
- 비상방송설비가 자동동작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작부 옆 마이크 스위치를 눌러 육성으로 안내

전 면

자위소방대 초기소화팀(진압반)		
공통임무		
1. 화재사실 전파 및 신고(119)		
2. 초기소화 및 피난유도		
3. 기타 초기대응에 필요한 업무지원		
개별임무	성명	조○승
1. 각층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 사용		
2. 유사시 자동식소화설비(SP 등) 수동조작		
3. 초기소화 실패 시 즉각 보고 후 피난실시		

후 면

세부내용
□ **비상연락처**
- 방재실 : 000-0000
- 소방안전관리자 : 000-000-0000
- 00소방서 : 000-0000
□ **소화기 사용방법**
- 손잡이를 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핀 분리
- 빗자루로 쓸 듯이 좌·우로 흔들면서 방사
□ **소화전 사용방법**
- 2인 1조로 호스가 꼬이지 않도록 전개 후 개폐밸브를 반시계 방향으로 개방

전 면

자위소방대 피난유도팀(대피유도반)		
공통임무		
1. 화재사실 전파 및 신고(119)		
2. 초기소화 및 피난유도		
3. 기타 초기대응에 필요한 업무지원		
개별임무	성명	최○진
1. 최단거리 피난경로 안내		
2. 분산대피 유도(병목현상 방지)		
3. 피난약자 보조인원 요청		

후 면

세부내용
□ **비상연락처**
- 방재실 : 000-0000
- 소방안전관리자 : 000-000-0000
- 00소방서 : 000-0000
□ **피난유도 시 유의사항**
- 낮은자세를 유지하며 피난할 수 있도록 안내
- 엘리베이터 사용불가(단, 비상용은 사용가능)
- 아래층으로 대피불가 시 옥상으로 유도
- 출입구로 접근 불가 시 피난기구 사용
- 피난약자는 반드시 보조자와 같이 피난

전 면

자위소방대 응급구조팀(구조구급반)		
공통임무		
1. 화재사실 전파 및 신고(119)		
2. 초기소화 및 피난유도		
3. 기타 초기대응에 필요한 업무지원		
개별임무	성명	이○실
1. 환자 발생 시 응급조치 실시(심폐소생술 등)		
2.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3. 119구급대 업무 지원		

후 면

세부내용
□ **비상연락처**
- 방재실 : 000-0000
- 소방안전관리자 : 000-000-0000
- 00소방서 : 000-0000
□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방법**
- 반응확인 → 119신고 → 호흡확인 → 가슴압박 30회(필수) → 인공호흡 2회(선택)
□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방법**
- 전원켜기 → 패드부착(2개) → 심장리듬분석 → 심장충격(제세동) 시행 → 심폐소생술 재실시

전 면

자위소방대 방호안전팀		
공통임무		
1. 화재사실 전파 및 신고(119)		
2. 초기소화 및 피난유도		
3. 기타 초기대응에 필요한 업무지원		
개별임무	성명	황○철
1. 위험물 공급차단 및 안전한 장소로 이동		
2. 물품(중요문서, 데이터 등) 비상반출		
3. 유사시 방화문, 방화셔터 수동폐쇄		

후 면

세부내용
□ **비상연락처**
- 방재실 : 000-0000
- 소방안전관리자 : 000-000-0000
- 00소방서 : 000-0000
□ **위험물질 이동 시 유의사항**
- 위험물 혼재는 아래의 경우에만 가능함 (1류+6류, 2류+4류, 2류+5류, 3류+4류, 4류+5류)
□ **물품 비상반출 시 유의사항**
- 비상반출 후 집결지 근처 보관장소 별도마련

전 면

초기대응체계		
공통임무		
1. 화재사실 전파 및 신고(119)		
2. 초기소화 및 피난유도		
3. 기타 초기대응에 필요한 업무지원		
개별임무	성명	이○표
1. 현장상황보고(자위소방대장 또는 부대장)		
2. 각층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 사용		
3. 최단거리 피난경로 안내		

후 면

세부내용
□ **비상연락처**
- 방재실 : 000-0000
- 소방안전관리자 : 000-000-0000
- 00소방서 : 000-0000
□ **소화기 사용방법**
- 손잡이를 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핀 분리
- 빗자루로 쓸 듯이 좌·우로 흔들면서 방사
□ **소화전 사용방법**
- 2인 1조로 호스가 꼬이지 않도록 전개 후 개폐밸브를 반시계 방향으로 개방

서식 2.5 지휘통제팀

2.5.1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 장소별 고려사항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화재취약장소	화재위험요인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우선순위		고려사항
흡연구역 및 주변 쓰레기통	□ 전기적 요인 □ 기계적 요인 □ 화학적 요인 □ 가스누출(폭발) □ 자연재해 ☑ 부주의 □ 기타( )	☑ 피난유도팀 (대피유도반)	2 순위	흡연 후 담배꽁초를 던지거나 터는 등의 행동으로 불똥이 주변으로 확산하거나 담배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았음에도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무단 투기하여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많고 장소에 익숙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연기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므로 비상방송설비, 호루라기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피난 유도를 실시한다.
		☑ 초기소화팀 (진압반)	4 순위	
		☑ 방호안전팀	5 순위	
		☑ 응급구조팀 (구조구급반)	3 순위	
		☑ 비상연락팀 (지휘반)	1 순위	
(추가 가능)	□ 전기적 요인 □ 기계적 요인 □ 화학적 요인 □ 가스누출(폭발) □ 자연재해 □ 부주의 □ 기타( )	□ 피난유도팀 (대피유도반)	순위	
		□ 초기소화팀 (진압반)	순위	
		□ 방호안전팀	순위	
		□ 응급구조팀 (구조구급반)	순위	
		□ 비상연락팀 (지휘반)	순위	
인명피해 우려장소	예상피해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우선순위		고려사항
관중석과 출구 사이의 통로	☑ 연기, 유독가스 흡입 □ 화상 □ 열상 ☑ 넘어짐, 미끄러짐 ☑ 갇힘 □ 기타( )	☑ 피난유도팀 (대피유도반)	1 순위	화재발생 시 피난유도팀에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출구로 해야하나 피난시간이 경과할수록 관중들의 불안감 증가로 인하여 지시에 불응하거나 출구 한쪽으로 피난이 집중되면서 병목현상이 심화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피난유도팀은 관중을 출구로 원활하게 안내할 수 있는 지향성 스피커 등을 지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초기소화팀 (진압반)	5 순위	
		☑ 방호안전팀	4 순위	
		☑ 응급구조팀 (구조구급반)	2 순위	
		☑ 비상연락팀 (지휘반)	3 순위	
(추가 가능)	□ 연기, 유독가스 흡입 □ 화상 □ 열상 □ 넘어짐, 미끄러짐 □ 갇힘 □ 기타( )	□ 피난유도팀 (대피유도반)	순위	
		□ 초기소화팀 (진압반)	순위	
		□ 방호안전팀	순위	
		□ 응급구조팀 (구조구급반)	순위	
		□ 비상연락팀 (지휘반)	순위	

2.5.2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 시간대별 기대행동

구분	시간대별 기대행동		
	화재발생+1분이내	화재발생+5분이내	화재발생+10분이내
초기대응체계	1. 화재발생현장 도착 → 현장확인 및 상황보고 2. 초기대응 실시 (초기소화, 피난유도 등)	1. 현장상황 수시보고 2.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 등에게 상황설명 후 함께 업무수행	
지휘통제팀 (자위소방대장 및 부대장)	1. 초기대응체계 출동 명령 2. 자위소방대 출동 명령	1. 실시간 현황파악 및 지시 2. 승강기 제어 명령	1. 119소방대 도착확인 후 화재현황 등 설명 후 현장지휘권 인계 2. 119소방대에 대한 업무지원 지시
비상연락팀 (지휘반)	1. 화재신고접수 2. 초기대응체계 임무부여 3. 화재전파(119 신고) 4. 자위소방대 소집·임무부여	1. 재실자에게 화재상황 전파 및 피난개시명령 실시 (비상방송설비 등) 2. 관계기관 연락	1. 실시간 화재상황 및 피난정보 반복적으로 안내
초기소화팀 (진압반)	1. 화재발생상황 수신 (SMS, 모바일메신저 등) 2. 화재발생현장 및 개별임무수행 장소로 출동	1. 소화기·옥내소화전 등으로 초기소화 실시 2. 필요 시 자동소화설비 수동기동 실시	1. 화재진압현황 보고 2. 초기소화 실패 시 안전한 장소로 피난
피난유도팀 (대피유도반)		1. 발화층, 직상층 주변 피난경로에 위치하여 양방향 피난 실시 2. 피난약자 확인 및 보조	1. 피난유도현황 보고 2. 집결지 안내
응급구조팀 (구조구급반)		1. 응급환자 현황파악 2. 응급상황별 응급조치 실시 3. 환자 이송장소 확인 등 이송준비	1. 응급구조현황 보고 2.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3. 119구급대원 업무보조
방호안전팀		1. 위험물 보관장소 출동 → 공급차단 및 안전구역 이동 2. 유사시 방화문, 방화셔터 수동폐쇄 실시	1. 물품(중요문서, 데이터 등) 비상반출 실시

※ 비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화재대응을 위해 119소방대 출동 시 연소범위, 피난유도상황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소방대 진입장소를 개방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서식 2.6 비상연락팀(지휘반)

■ 대상명 : ○○경기장

1. 비상연락 개요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연락대상	연락방법	연락내용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 유선	
	☑ SMS문자	화재전파,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소집·임무부여 등
	□ 모바일 메신저	
	□ 자체 App 활용	
	□ 기타( )	
근무자 및 거주자 시설이용자 방문객 등	☑ 비상방송설비	화재전파, 상황설명, 피난안내 개시 등
	☑ 기타(확성기)	화재전파, 상황설명, 피난안내 개시 등
관계기관	☑ 자동화재속보설비	소방대상물의 위치, 화재전파 및 신고, 관계인 연락처 등
	□ 기타( )	

2. 비상연락망

근무위치		소속 또는 부서명	성명	연락처
동	층			
본관	5층	○○경기장 대표	김○혁	00-000-0000 (010-0000-0000)
본관	지하1층	00팀	심○보	00-000-0000 (010-0000-0000)
(추가 가능)				

3. 비상연락절차

구분	대응방법
비화재보 시	화재상황이 아님을 신속히 재실자, 근무자, 관계인, 관계기관 등에게 신속히 전파
화재 시	화재사실 전파 및 신고,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소집·연락, 관계기관 연락 등

서식 2.7 외부기관 비상연락체계

최초발견자

종합방재실(수신반)

근무자	연락처
00팀 심○보	010-000-0000
00팀 임○우	010-000-0000
00팀 김○찬	010-000-0000

긴급대응기관

기관명	연락처
○○소방서	00-000-0000
○○119 안전센터	00-000-0000
○○구청 재난관리팀	00-000-0000
○○시청 재난상황팀	00-000-0000
고용노동부 위험상황신고	00-000-0000
(추가 가능)	

유관기관

기관명	연락처
한국전력공사	00-000-0000
가스안전공사	00-000-0000
○○발전소	00-000-0000
한국승강기 안전공단	00-000-0000
○○경찰서	00-000-0000
(추가 가능)	

의료기관

기관명	연락처
○○의원	00-000-0000
○○병원	00-000-0000
○○화상 전문병원	00-000-0000
○○대학병원	00-000-0000
○○응급실	00-000-0000
(추가 가능)	

서식 2.8 비상상황별 연락방법 및 안내문구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비 상 상 황	□ 비화재보 ☑ 화재폭발 □ 위험물질 □ 재난( ) □ 기타( )
연락방법 및 안내문구	☑ SMS문자 (모바일메신저, 자체 App 포함)
	[실제상황] ○○경기장 ○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현 시간부로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를 소집하오니 각 대원들은 개별 임무카드를 확인하고 신속히 현장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 비상방송설비
	○○경기장 방재실에서 안내드립니다. 현재 ○층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119 소방대가 출동하여 도착예정이며 ○○경기장 소속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가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량의 연기로 인한 질식피해가 우려되오니 ○○경기장 임직원 및 방문객 등 모든 분들은 피난계단을 이용하여 1층 외부로 안전하게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
	☑ 자동화재속보설비
	화재발생, 화재발생~ 여기는 서울시 영등포구 영중로 170, ○○경기장 지하1층 방재실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연락처는 010-0000-0000입니다. (반복)
	☑ 기타(육성 또는 확성기)
	불이야, 불이야~ 현재 ○○경기장 ○층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현 시간부로 가까운 피난계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피난하시기 바랍니다. 피난방향은 건물 복도, 주차장, 계단 및 경사로에 설치되어 있는 통로유도등의 화살표 방향입니다. (반복)

서식 2.9 초기소화팀(진압반)

■ 대상명 : ○○경기장

1. 초기소화 개요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구분		화재특성 및 위험요인 등을 고려한 초기소화방법
초기소화	층 별	□ 고층(30층 이상)		
		☑ 지상층		계단으로 신속하게 이동하여 초기소화
		☑ 지하층		열, 연기 등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초기소화(미착용 시 진입금지)
	시 설 별	☑ 전기시설		1. 전기화재(C급)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로 초기소화 2. 가스계 수동기동장치로 초기소화(자동기동 실패 시)
		☑ 가스시설		불꽃을 일으킬 수 있는 기자재 사용을 자제하고 가스에 의한 질식 등에 유의하여 초기소화
		☑ 위험물시설		위험물 특성에 맞는 소화방법을 숙지하여 초기소화
		□ 기타( )		
	화 재 취 약 장 소	명칭	위치	화재특성 및 위험요인 등을 고려한 초기소화방법
		관중석	○○ 경기장	가까운 출입구에 비치된 소화기, 옥내소화전으로 초기소화
				(추가 가능)

2. 초기소화장비 현황

장비명	설치위치	수량	담당자(관리부서)	비고
옥내소화전	전 층	층별 4개	임○우(00팀)	-
SP 수동기동장치	전 층	층별 2개	임○우(00팀)	자동기동 실패 시 조작해야함
(추가 가능)				

3. 초기소화절차

구분	대응방법
비화재보 시	초기소화장비 원위치 및 수량 재확인, 방재실 복귀 후 추가안내사항 확인
화재 시	소화기·옥내소화전등을 사용하여 화재진압, 초기소화 불가 시 안전한 장소로 피난

서식 2.10 피난유도팀(대피유도반)

■ 대상명 : ○○경기장

1. 피난유도 개요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화 재 경 보	방식	□ 전층경보방식	☑ 우선경보방식 (발화층 및 직상 1개층, 지하층) □ 우선경보방식 (발화층 및 직상 4개층, 지하층)	
	경보수단	☑ 주·지구경종	□ 시각경보기	☑ 비상방송설비
피 난 유 도	경로	☑ 제1피난로	서편 피난계단 → 피난층(1층)	
		☑ 제2피난로	동편 피난계단 → 피난층(1층)	
		☑ 제3피난로	중앙 피난계단 → 피난층(1층)	
		□ 피난안전구역		
		☑ 옥상	특별피난계단(서편, 동편) 및 피난계단(중앙) → 옥상	
		□ 기타( )		
	방법	피난경로 주변에서 양방향 피난, 분산유도 실시, 집결지 안내		
집 결 지	장소	○○경기장 주변 00중학교		
	확인사항	부상자 및 실종자 현황파악, 화재현장 재진입 차단		

2. 피난유도장비 현황

장비명	설치위치	수량	담당자(관리부서)	비고
경광봉, 호루라기	지하1층 방재실	20개	임○우(00팀)	-
안전조끼(형광)	지하1층 방재실	20개	임○우(00팀)	-
(추가 가능)				

3. 피난유도절차

구분	대응방법
비화재보 시	화재상황이 아님을 신속히 재실자 등에게 전파, 방재실 복귀 후 추가안내사항 확인
화재 시	거주자, 방문자 등에게 피난경로 안내 피난약자에 대한 피난보조 (화재대피 순서에 따라 순차적 피난유도)

서식 2.11 응급구조팀(구조구급반)

■ 대상명 : ○○경기장

1. 응급구조 개요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구분	응급조치방법	환자 이송장소 및 연락처
응 급 상 황	☑ 화상	멸균 처리된 거즈를 덮음	00화상전문병원 (00-000-0000)
	☑ 출혈	출혈부위 국소찜질, 압박 등	00의원 (00-000-0000)
	☑ 심정지	심폐소생술 실시	00대학병원 응급실 (00-000-0000)
	☑ 중독(일산화탄소)	기도확보, 인공소생기 사용 등	00대학병원 응급실 (00-000-0000)
	□ 기타( )		
현 장 응급의료소	설치위치	1층 00출입구 밖	
	운영방법	환자 중등도 분류 후 응급처치 실시 또는 인근병원 이송	
	지원 가능한 의료물품	붕대, 부목, 들것, 보호장비 등	
	□ 해당없음		

2. 응급구조장비 현황

장비명	설치위치	수량	담당자(관리부서)	비고
AED	1층 중앙복도	10개	임○우(00팀)	심정지환자만 사용
화상도포제	지하1층 방재실	10개	임○우(00팀)	대형
(추가 가능)				

3. 응급구조절차

구분	대응방법
비화재보 시	화상, 부상자 등을 파악하고 응급조치 실시
화재 시	응급조치 실시, 환자 이송,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의료물품 지원, 구급대원 업무보조

서식 2.12 방호안전팀

■ 대상명 : ○○경기장

1. 방호안전 개요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구분	자동폐쇄가 되지 않았을 경우 조치방법
방호안전	방화구획	☑ 방화문	현장으로 이동하여 수동폐쇄
		☑ 방화셔터	수동기동장치를 사용하여 수동폐쇄
		□ 방화스크린	
		□ 방화댐퍼	
		□ 기타(　　)	

	위험물질	품명	보유량(ℓ,kg)	설치위치	긴급차단밸브 유무	차단방법
		제2석유류 (경유)	1,200	지하2층 발전기실	유	자동
		(추가 가능)				

	비상반출물품	물품명	보관장소	시건장치 유무	반출 후 보관장소
		개인정보DB	지하2층 전산실	유	집결지
		(추가 가능)			

2. 방호안전장비 현황

장비명	설치위치	수량	담당자(관리부서)	비고
방화셔터 수동기동장치	각 층 계단 옆	2개	임○우(00팀)	-
가스차단기구	1층 00업체	1개	임○우(00팀)	-
(추가 가능)				

3. 방호안전절차

구분	대응방법
비화재보 시	일시적으로 폐쇄된 방화구획 수동복구, 차단된 전기·가스 시설 수동복구 등
화재 시	방화구획 폐쇄여부 확인, 위험물시설에 대한 제어, 비상반출 등

서식 2.13 초기대응체계

■ 대상명 : ○○경기장

1. 초기대응체계 편성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근무형태		근무시간 및 위치	소속 및 성명	임무	비고
평일	☑ 주간	08시 ~ 17시, 지하1층 방재실	00팀 심○보	초기소화, 비상연락, 피난유도 등	운영책임자 (소방안전관리자)
	□ 야간				
평일	□ 주간	17시 ~ 23시, 지하1층 방재실	00팀 임○우	초기소화, 비상연락, 피난유도 등	대원 (교대근무자)
	☑ 야간				
평일	□ 주간	(추가 가능)	(추가 가능)		
	□ 야간				
휴일	☑ 주간	08시 ~ 17시, 지하1층 방재실	00팀 김○찬	초기소화, 비상연락, 피난유도 등	운영책임자 (선임)
	□ 야간				
휴일	□ 주간	17시 ~ 23시, 지하1층 방재실	00팀 이○표	초기소화, 비상연락, 피난유도 등	대원 (교대근무자)
	☑ 야간				
휴일	□ 주간	(추가 가능)	(추가 가능)		
	□ 야간				

2. 초기대응장비 현황

장비명	설치위치	수량	담당자(관리부서)	비고
무전기	지하1층 방재실	10개	임○우(00팀)	-
경광봉, 호루라기	지하1층 방재실	20개	임○우(00팀)	-
간이소화기	지하1층 방재실	20개	임○우(00팀)	-

3. 초기대응절차

구분	대응방법
비화재보 시	화재상황이 아님을 신속히 재실자, 근무자, 관계인, 관계기관 등에게 전파
화재 시	초기소화, 비상연락, 피난유도 등 화재 초기 신속하게 대응

서식 2.14 **자위소방대 교육 · 훈련 실시 결과 기록부** **[2년간 보관]**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교육 · 훈련 실시 결과 기록부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작성일자	2023. 11. 09.			작성자	심○보(서명)	
소방안전 관리대상물	대상명	○○경기장			대표자	김○혁
	소재지	서울시 영등포구 영중로 170			전화번호	02-000-0000
	근무인원	평일		휴일		
		주간(08:00~17:00)	야간(17:00~23:00)	주간(08:00~17:00)	야간(17:00~23:00)	
		120명	20명	40명	20명	
	등급	[ ]특급	[√]1급	[ ]2급	[ ]3급	

소방안전 관리자	성명	선임일자	보유자격	자격구분	연락처	비고
	심○보	2019.03.06.	1급	[√]주 [ ]보조	010-0000-0000	
	임○우	2019.09.08.	1급	[ ]주 [√]보조	010-0000-0000	
	(추가 가능)			[ ]주 [ ]보조		
				[ ]주 [ ]보조		

자위소방대	총원(명)	대장성명	부대장(명)	응급구조(명)	초기소화(명)
	58명	김○혁	2명	5명	20명
		대장연락처	피난유도(명)	비상연락(명)	방호안전(명)
		010-0000-0000	20명	5명	5명
초기대응체계	조직구성	4개조			
	총원(명)	20명			

교육 · 훈련 결과

인원	자위소방대			초기대응		
	총원(명)	참석	미참석	총원(명)	참석	미참석
	58명	38명	20명	20명	10명	10명
일시/장소	2023.11.09. 10:00~12:00 / ○○경기장(훈련) 및 시설관리실 1층 대강당(교육)					
주요내용	초기소화, 자위소방대 등 비상연락 실시, 대피유도 및 집결지 안내 등					
보완사항	재실자에 대한 양방향 피난유도 미흡					
조치사항	재실자가 피난경로를 잃지 않고 양방향피난이 가능하도록 분산유도 재교육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교육·훈련 참석확인 (뒷쪽)

연번	직책	성명	확인	연번	직책	성명	확인
1	대표	김○혁	자필서명	26		~	
2	○○팀	심○보	자필서명	27		~	
3	○○팀	임○우	자필서명	28		~	
4	○○팀	안○돈	자필서명	29		~	
5	○○팀	정○영	자필서명	30		~	
6	○○팀	조○석	자필서명	31		~	
7	○○팀	조○승	자필서명	32		~	
8	○○팀	최○진	자필서명	33		~	
9	○○팀	김○성	자필서명	34		~	
10	○○팀	이○실	자필서명	35		~	
11	○○팀	이○로	자필서명	36		~	
12	○○팀	황○철	자필서명	37		~	
13	○○팀	이○현	자필서명	38		~	
14		~		39		~	
15		~		40		~	
16		~		41		~	
17		~		42		~	
18		~		43		~	
19		~		44		~	
20		~		45		~	
21		~		46		~	
22		~		47	○○팀	신○재	자필서명
23		~		48	○○팀	최○종	자필서명
24		~		49	○○팀	이○표	자필서명
25		~		50	○○팀	최○비	자필서명

제3장 피난계획

서식 3.1 피난시설 및 기타시설 일반현황

명 칭		○○○경기장				
건축물현황	층수	지하 2 층/지상 4 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용도	문화 및 집회
화 재 경 보	방식	☑ 전층경보방식	☐ 우선경보방식 (발화층 및 직상 1개층, 지하층) ☐ 우선경보방식 (발화층 및 직상 4개층, 지하층)			
	경보수단	☑ 주·지구경종	☑ 시각경보기	☑ 비상방송설비		
피난안내정보 제 공	방식	☐ 연 2회 피난안내 교육을 실시 ☐ 분기별 1회 이상 피난안내방송을 실시 ☑ 피난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 ☐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 시청이 용이한 장소에 피난안내영상 제공				
피 난 시 설	계 단	☐ 직통계단	☐ 특별피난계단			
		☑ 피난계단	☐ 옥외계단			
	기 타 시 설	☐ 대피공간	☐ 피난안전구역			
		☐ 인증 대체시설	☐ 경량칸막이			
		☐ 기타 ( )				
피 난 구 조 설 비	피 난 기 구	☑ 완강기	☐ 미끄럼대			
		☐ 간이완강기	☐ 다수인피난장비			
		☐ 피난사다리	☑ 기타 (승강식피난기)			
	인명구조 기구	☐ 방열복	☑ 방화복			
		☑ 공기호흡기	☑ 인공소생기			
	비상조명등	☑ 비상조명등	☑ 휴대용 비상조명등			
	유도등	☑ 2선식	☐ 3선식			
방 화 시 설		☑ 방화문	☐ 방화셔터	☐ 방화스크린	☐ 자동폐쇄장치	
승 강 기		☑ 승용	☐ 비상용	☐ 피난용		

서식 3.2 피난시설 및 기타시설 세부현황

번호	동별	층별	시설구분	세부명칭	위치	개수
1	A, B, D	3~4층	☐ 피난시설 ☑ 피난구조설비 ☐ 방화시설	완강기	각 층 동쪽, 서쪽 복도	각 10개
2	A, B, D	각 층	☐ 피난시설 ☑ 피난구조설비 ☐ 방화시설	휴대용비상조명등	각 복도 벽면	60개
3	A, B, D	지하1~4층	☐ 피난시설 ☑ 피난구조설비 ☐ 방화시설	비상조명등	계단	각 층 6개
4	A, B, D	1~4층	☐ 피난시설 ☑ 피난구조설비 ☐ 방화시설	공기호흡기	각 층 동쪽, 서쪽 복도	각 2개
			☐ 피난시설 ☐ 피난구조설비 ☐ 방화시설			
			☐ 피난시설 ☐ 피난구조설비 ☐ 방화시설			
			☐ 피난시설 ☐ 피난구조설비 ☐ 방화시설			
			☐ 피난시설 ☐ 피난구조설비 ☐ 방화시설			
			☐ 피난시설 ☐ 피난구조설비 ☐ 방화시설			
			☐ 피난시설 ☐ 피난구조설비 ☐ 방화시설			
			☐ 피난시설 ☐ 피난구조설비 ☐ 방화시설			
			☐ 피난시설 ☐ 피난구조설비 ☐ 방화시설			
			☐ 피난시설 ☐ 피난구조설비 ☐ 방화시설			

서식 3.3 피난인원현황

☐ 거주인원 ____명 ☑ 근무인원 200 명 ☑ 방문인원(평균) 약 8,000 명

피 난 약 자: ☑ 노 인 ☑ 영유아 ☑ 기타 ☑ 어린이 ☑ 임산부 ☑ 장애인

층별(구역별) 동	층	명칭/용도	(바닥)면적	상시인원(명) 근무	거주	방문	관리주체 (입주사)	담당자 (연락처)
경기장	지하2	전기실	1,000㎡	-	-	-	○○관리공단	심○보 0000-0000
경기장	지하2	기계실	600㎡	16	-	-	○○관리공단	심○보 0000-0000
경기장	지하1	사무실	3,000㎡	80	-	-	○○관리공단	심○보 0000-0000
경기장	지하1	창고	1,000㎡	-	-	-	○○관리공단	심○보 0000-0000
경기장	1	안내데스크	150㎡	4	-	8,000	○○관리공단	심○보 0000-0000
경기장	1	관람석	30,000㎡	-	-	8,000	○○카페	정○창 0000-0000
경기장	2	관람석	25,000㎡	-	-	8,000	○○관리공단	심○보 0000-0000
경기장	2	○○편의점	200㎡	-	-	1,000	○○편의점	홍○훈 0000-0000
	~							
경기장	4	관람석	20,000㎡	-	-	8,000	○○관리공단	심○보 0000-0000
		(추가가능)						

* 추가서식 필요 시 별첨하여 작성

※ 비고. 피난약자 유형
1. 노인[65세↑ 중 자의피난이 불가능한 사람], 어린이[13세↓], 영유아[6세↓], 임산부
2. 장애인 (유형 :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등)
3. 기타 : 외국인 등

번호	동별	층별	방화구획 개수	집결지
1	본관	4층	4	1층 경기장 앞 공터

번호	동별	층별	방화구획 개수	집결지
2	본관	3층	4	1층 경기장 앞 공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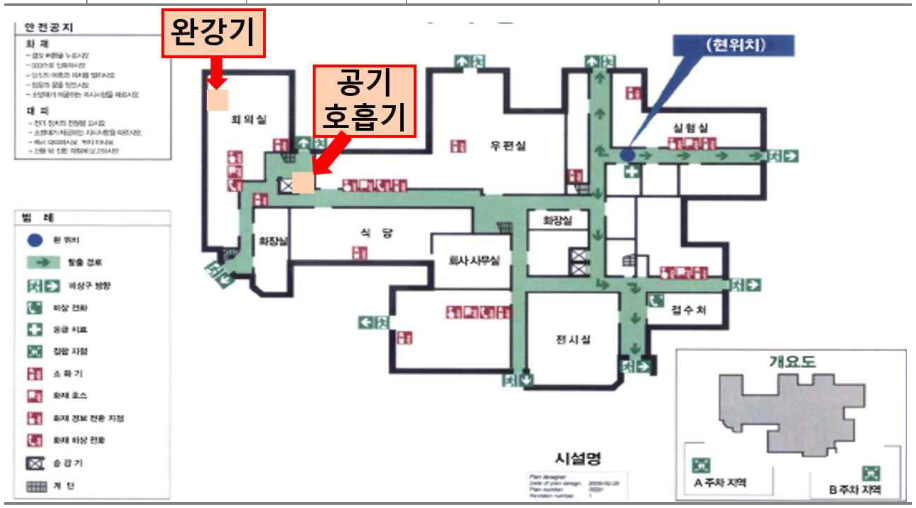

집 결 지	장소	경기장 앞 공터
	확인사항	재실자 피난현황 및 재진입 방지

집결지 1

집결지 2

[집결지 약도 삽입(인터넷, 사진 등)]

※ 비고.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집결지 이동경로(거리, 시간)을 반드시 표기해야한다.

서식 3.4 피난유도 절차 및 피난경로(집결지) 설정

1. 피난유도 절차

구분	대응방법			
비화재보	안내방송 및 각 층별, 구역별 피난유도자를 배치하여 비화재보 상황 전파			
화재 시	구역		피난유도자 (배치장소)	피난유도 장비를 활용한 피난방법
	동	층		
	경기장	동문 앞	홍○훈(동문앞 복도) 김○기(안내데스크 앞)	경광봉, 호루라기를 활용 1. 흡연장 출입을 막고 경기장에서 동문으로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피난유도 2. 안내데스크 앞에서 동문을 제외한 출입구로 피난유도

2. 피난경로

동별	층별	피난경로 개수	피난유도자	피난구조설비	집결지
경기장	동문 앞	2	2명	-	경기장 앞 공터

3. 집결지

집 결 지	장소	경기장 앞 공터
	확인사항	재실자 피난현황 및 재진입 방지

※ 비고. 소방안전관리자는 대상물의 구역별(동별, 층별) 화재취약장소 및 인명피해우려장소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피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서식 3.5 피난약자 현황 및 피난계획

3.5.1 피난약자 현황 및 피난계획

근무·거주자 (현재인원)	☐ 노인	명	☐ 어린이	명	☐ 영유아	명
	☑ 임산부	2 명	☐ 장애인	명	☐ 기타	명
시설이용자	☑ 노인	☑ 어린이	☑ 영유아	☑ 임산부	☑ 장애인	☑ 기타

피 난 계 획	구역		인원	유형	피난보조자	피난보조장비	세부 피난방법
	동	층					
	경기장	1층	00명	모든 유형	김○혁, 김○영	유형별 준비	행사주체 관계자와 협력하여 피난보조 및 정문, 후문으로 피난
	경기장	2층	00명	모든 유형	심○보, 임○우	유형별 준비	보호자와 함께 보조하며 각 층 피난 계단을 이용하여 대피
	경기장	3층	00명	모든 유형	김○찬, 홍○훈	유형별 준비	보호자와 함께 보조하며 각 층 피난 계단을 이용하여 대피
	경기장	4층	00명	모든 유형	정○창, 김○현	유형별 준비	보호자와 함께 보조하며 각 층 피난 계단을 이용하여 대피

※ 비고. 피난약자 유형 및 작성방법
1. 노인[65세↑ 중 자의피난이 불가능한 사람], 어린이[13세↓], 영유아[6세↓], 임산부
2. 장애인 (유형 :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등)
3. 기타 : 외국인 등

3.5.2 피난보조자 업무수행 절차

피난보조자	유형 별 업무수행	세부 업무
김○형, 김○영	1. 피난약자가 있는 경우	[서식 3.5.1] 세부피난 방법에 따라 피난보조
	2. 피난약자가 없는 경우	1층 관람석에 도착하여 피난약자가 없을 경우 2층 관람석으로 이동하여 피난보조 지원
심○보, 임○우	1. 피난약자가 있는 경우	[서식 3.5.1] 세부피난 방법에 따라 피난보조
	2. 피난약자가 없는 경우	2층 관람석에 도착하여 피난약자가 없을 경우 3층 관람석으로 이동하여 피난보조 지원
김○찬, 홍○훈	1. 피난약자가 있는 경우	[서식 3.5.1] 세부피난 방법에 따라 피난보조
	2. 피난약자가 없는 경우	3층 관람석에 도착하여 피난약자가 없을 경우 4층 관람석으로 이동하여 피난보조 지원
정○창, 김○현	1. 피난약자가 있는 경우	[서식 3.5.1] 세부피난 방법에 따라 피난보조
	2. 피난약자가 없는 경우	4층 관람석에 도착하여 피난약자가 없을 경우 피난유도팀 지원
	1. 피난약자가 있는 경우	[서식 3.5.1] 세부피난 방법에 따라 피난보조
	2. 피난약자가 없는 경우	
	1. 피난약자가 있는 경우	[서식 3.5.1] 세부피난 방법에 따라 피난보조
	2. 피난약자가 없는 경우	
	1. 피난약자가 있는 경우	[서식 3.5.1] 세부피난 방법에 따라 피난보조
	2. 피난약자가 없는 경우	
	1. 피난약자가 있는 경우	[서식 3.5.1] 세부피난 방법에 따라 피난보조
	2. 피난약자가 없는 경우	

※ 비고. 해당 구역에 피난약자가 있는 경우 우선 피난보조를 하고, 피난약자가 없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다른 구역 피난보조 지원 또는 다른 업무를 수행한다.

서식 3.6 피난약자 유형별 피난방법

피난약자 구분	피난방법	유의사항
노인	1. 피난약자 옆에서 1인 1조 또는 2인 1조로 보행을 도와주며 피난보조 2. 보호자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함께 보조 3. 긴급하게 피난이 필요할 때는 2인 1조로 안아서 이동 4. 특별피단계단으로 대피가 불가능할 경우 서쪽 복도 끝에 있는 완강기 또는 각 객실에 있는 간이완강기를 이용하여 피난 5. 지병이 있는 경우 피난완료 후 쉽게 알 수 있도록 지병을 표시(손등 등)	계단 등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어린이	1.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함께 보조하며 피난보조 2. 행사 등 여러명의 아이들이 있는 경우 한줄 서기로 맨 앞에 가장 나이가 많은 어린이를 두고 앞사람을 따라 대피유도하며, 피난보조자는 맨 뒤에서 뒤처지는 어린이가 없는지 유의하며 대피 3. 거동이 어려운 어린이의 경우 안거나 업어서 이동	한줄 서기로 대피유도 시 특별피난계단으로 첫 번째 어린이를 안내 후 맨 뒤로 이동
영유아	1. 보호자가 안아서 피난하는 것을 보조 2. 다자녀 가족인 경우 피난보조자가 영유아를 안아서 피난보조 3. 이동 중 연기를 흡입할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되었다면 피난완료 후 신속하게 병원 후송	안아서 이동할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연기흡입 우려가 있음
임산부	1.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함께 보조하며 피난보조 2. 만삭의 산모의 경우 2인 1조로 안아서 이동 3. 피난완료 후 산모의 상태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병원 후송	피난보조 시 산모의 호흡이 가빠질 수 있으므로 상태를 수시로 확인
장애인	1. 장애유형별 피난보조실시 - 지체장애인 : 2인 1조로 안거나 업어서 피난 - 청각장애인 : 표정, 제스처, 손전등을 통해 의사표현, 스마트폰의 문자 기능으로 메모를 통한 의사소통 - 시각장애인 : 지팡이를 이용해 피난하는 것을 옆에서 보조 - 지적장애인 : 보호자나 담당자가 도와주는 것을 옆에서 보조	보호자에게 장애유형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피난보조

※ 비고. 피난약자 유형
1. 노인[65세↑ 중 자의피난이 불가능한 사람], 어린이[13세↓], 영유아[6세↓], 임산부
2. 장애인 (유형 :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등)
3. 기타 : 외국인 등

서식 3.7 피난관련 기구 및 피난유도장비 등 세부현황

번호	동별	층별	기구 및 장비 명칭	보관장소	수량
1	A동	지하1층	경광봉	지하1층 방재실 1번 캐비닛	24개
사용방법					
피난유도 시 경광봉을 사용하여 재실자 및 거주자가 피난경로를 알기 쉽도록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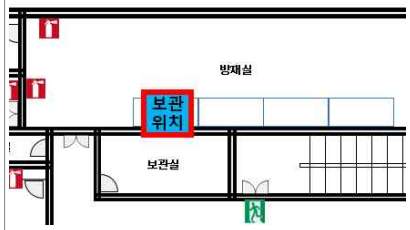	

번호	동별	층별	기구 및 장비 명칭	보관장소	수량
2	A동	지하1층	호루라기	지하1층 방재실 1번 캐비닛	40개
사용방법					
피난유도 시 호루라기를 사용하여 재실자 및 거주자에게 피난유도를 용이하게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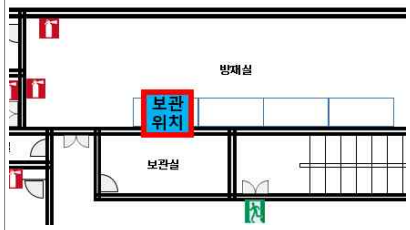	

번호	동별	층별	기구 및 장비 명칭	보관장소	수량
3	A동	각 층	공기호흡기	복도 중앙	층별 8개
사용방법					
화재 시 연기로 인해 호흡이 곤란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할 때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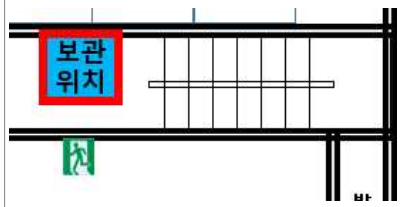	

번호	동별	층별	기구 및 장비 명칭	보관장소	수량
4	A동	1층, 2층	들것	복도 중앙	층별 8개
사용방법					
피난 시 거동불능 환자를 들것에 눕혀 2인 1조로 피난약자 대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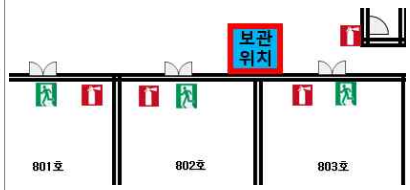	

서식 3.8 피난보조자 비상연락망

구 분	소속	근무위치	보조자	전화번호
피난 보조자	관리팀	1층 사무실	김○혁	000-0000-0000
	관리팀	1층 사무실	김○영	000-0000-0000
	시설팀	방재실	심○보	000-0000-0000
	시설팀	방재실	임○우	000-0000-0000
	시설팀	방재실	김○찬	000-0000-0000
	시설팀	방재실	홍○훈	000-0000-0000
	시설팀	방재실	정○창	000-0000-0000
	시설팀	방재실	김○현	000-0000-0000

※ 비고. 최근 업데이트 날짜 : 년 월 일

Ⅳ. 소방계획서 부록

IV. 소방계획서 부록

제1장 소방안전관리계획

1.1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 243
1.2 소방차 세부진입계획 ····· 247
1.3 소방시설 ····· 248
1.4 피난·방화시설 및 방염 ····· 259
1.5 기타시설 관리 ····· 265
1.6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유의사항 ····· 269
1.7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 ····· 271
1.8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업무 및 업무 수행 기록 ····· 272
1.9 종합방재실 운영 및 화재/비화재보 발생 시 대응절차 ··· 274
1.10 소방훈련 및 교육 ····· 283
1.11 소방훈련 방법 ····· 286
1.12 자체점검 구분 기준 ····· 292
1.13 화기취급작업 ····· 295
1.14 화재예방 및 홍보 ····· 298

제2장 자위소방대 운영계획

2.1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 303
2.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방법 ····· 305
2.3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조직도 및 임무 ····· 312

2.4 지휘통제팀 ····· 314
2.5 비상연락팀(지휘반) ····· 317
2.6 초기소화팀(진압반) ····· 319
2.7 피난유도팀(대피유도반) ····· 322
2.8 응급구조팀(구조구급반) ····· 326
2.9 방호안전팀 ····· 330
2.10 초기대응체계 ····· 332
2.11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교육·훈련 ····· 334

제3장 피난계획

3.1 일반현황 ····· 335
3.2 인원현황 ····· 339
3.3 피난경로 및 집결지 ····· 340
3.4 피난유도 ····· 345
3.5 피난약자 ····· 350
3.6 피난훈련 및 교육 ····· 355

제4장 소방안전관리자, 관계인의 업무 및 벌칙사항

4.1 소방안전관리자 및 관계인의 업무 ····· 357
4.2 벌칙사항 ····· 358

제1장 소방안전관리계획

1.1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1.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대상물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고 하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구분	기준
특급	①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②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는 제외) ③ ②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는 제외)
1급	①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②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 ③ ②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는 제외) ④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2급	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에 따라 1)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3)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 ②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③ 지하구 ④「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⑤「문화재보호법」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3급	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②「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비고
-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제조소등과 지하구는 특급, 1급에서 제외

2. 각 등급별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별표 4

구분	기준
특급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①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②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④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1급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①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②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④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2급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①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②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④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3급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①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③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 비고
- 상위 자격증으로 하위 대상물에 선임이 가능하다.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력 중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은 제외한다.

3.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물과 최소선임기준은 아래와 같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구분	기준
선임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 ① 「건축법 시행령」 별표Ⅰ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중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② 연면적이 1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 제외) ③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제외)
선임 기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1명을 선임 다만, 아래의 경우 기준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한다. ① 아파트의 경우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 ②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 제외)의 경우 연면적 15,000㎡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 (방재실에 자위소방대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소방자동차 중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또는 무인방수차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30,000㎡로 한다.)
선임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① 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 ② 「국가기술자격법」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③ 공공기관, 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비고

-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은 관할소방서장이 야간이나 휴일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선임 예시

예시1) 연면적이 10,000㎡ 인 특정소방대상물(의료, 노유자, 수련, 숙박시설 제외) : 소방안전관리자 1명

예시2) 연면적이 10,000㎡ 인 의료, 노유자, 수련, 숙박시설 : 소방안전관리자 1명, 소방안전관리보조자 1명 선임

예시3) 연면적이 15,000㎡ 인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안전관리자 1명, 소방안전관리보조자 1명 선임

예시4) 연면적이 20,000㎡ 인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안전관리자 1명, 소방안전관리보조자 1명 선임

예시5) 연면적이 30,000㎡ 인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안전관리자 1명, 소방안전관리보조자 2명 선임

예시6) 아파트 세대 300세대인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안전관리자 1명, 소방안전관리보조자 1명 선임

예시7) 아파트 세대 450세대인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안전관리자 1명, 소방안전관리보조자 1명 선임

예시8) 아파트 세대 600세대인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안전관리자 1명, 소방안전관리보조자 2명 선임

* 위 예시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최소 선임 기준임

4.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기준
특급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①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②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④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 받은 사람(기간한정 소방안전관리자 제외) ② 특급 또는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자

5.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관련 벌금, 양벌기준, 과태료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안전관리자, 총괄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다른 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한 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1.2 소방차 세부진입계획

1. 소방차 출동 시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차 활동 구역을 확보하고 소방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수신기의 위치, 옥외소화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등을 파악하여 출동한 소방대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소방차 전용구역은 「소방기본법」제21조의2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구역을 말하며, 공동주택 외 다른 용도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①「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②「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라목의 기숙사 중 3층 이상의 기숙사 예외) 하나의 대지에 하나의 동으로 구성되고「도로교통법」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정차 또는 주차가 금지된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에 직접 접하여 소방자동차가 도로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3. 소방차 전용구역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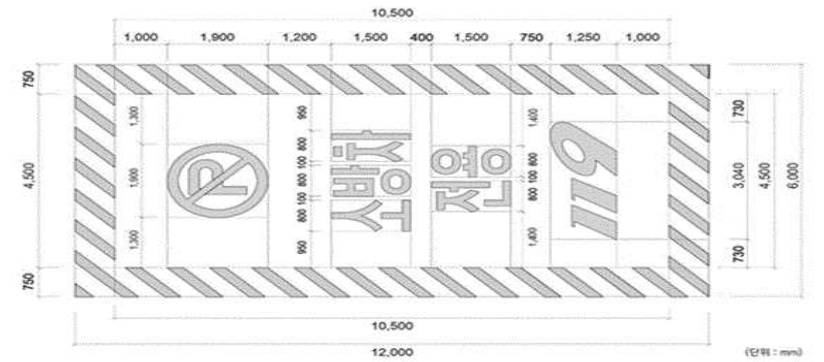

비고
1. 전용구역 노면표지의 외곽선은 빗금무늬로 표시하되, 빗금은 두께를 30센티미터로 하여 50센티미터 간격으로 표시한다.
2. 전용구역 노면표지 도료의 색채는 황색을 기본으로 하되, 문자(P, 소방차 전용)는 백색으로 표시한다.

4.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3 소방시설

1. 건축물 내 설치된 소방시설은 화재 시 즉시 동작되고 재실자, 자위소방대 및 출동한 소방대원이 바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건축물 내 어떤 소방시설이 설치가 되어있고 소방시설의 위치 등 현황파악을 하여야 하며, 평상시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하고 관계인은 올바르게 실행되고 있는지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2. 소방시설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구분	정의	종류
소화설비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경보설비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단독경보형 감지기,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화재알림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통합감시시설,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피난구조설비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	피난기구(완강기, 구조대 등), 인명구조기구(방열복, 방화복, 공기호흡기 등), 유도등,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소화용수설비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저수조, 그 밖에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

3. 소방용품은 소방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를 말하며 다음과 같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구분	종류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1. 소화기구(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는 제외) 2. 자동소화장치 3. 소화전, 관창, 소방호스, 스프링클러헤드,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유수제어밸브 및 가스관선택밸브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1. 누전경보기 및 가스누설경보기 2. 발신기,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및 음향장치(경종만 해당)
피난구조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1.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지지대 포함) 2. 공기호흡기(충전기 포함) 3. 피난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및 예비 전원이 내장된 비상조명등
소화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	1. 소화약제 2. 방염제(방염액·방염도료 및 방염성물질)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제품 또는 기기	1. 축광표지 2. 예비전원 3. 비상콘센트설비 4. 표시등 5. 소화전함 6.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가지관과 스프링클러헤드를 연결하는 플렉시블 파이프) 7. 소방용전선(내화전선 및 내열전선) 8. 탐지부 9. 지시압력계 10. 공기안전매트 11. 소방용밸브(개폐표시형 밸브, 릴리프 밸브, 푸트 밸브) 12. 소방용 스트레이너 13. 소방용 압력스위치 14.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15.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 16.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 17. 소화설비용 헤드(물분무헤드, 분말헤드, 포헤드, 살수헤드) 18. 방수구 19. 소화기가압용 가스용기 20. 소방용흡수관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교체하여야 한다. 분말소화기는 10년이 경과하면, 교체하거나 성능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성능확인검사에 합격한 경우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내용연수 경과 후 10년 미만 : 3년
- 내용연수 경과 후 10년 이상 : 1년

5. 소방용품의 검인증 제도는 다음과 같다.

① 소방용품 검인증제도란?

- 소방용품이 형상, 구조, 재질 성분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 시험, 승인 및 검사하여 합격표시를 부착하는 제도

※ 소방용품의 검인증제도는 형식승인(법정의무), 성능인증(법정임의)로 운영

② 소방용품 검인증절차

인증신청	⇨	소방용품 인증	⇨	제품검사	⇨	판매
제조업체에서 인증신청		소방용품의 승인 및 승인서 발급		소방용품의 검사 및 합격표시 부착		합격표시가 부착된 소방용품의 판매
제조업체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제조업체 → 사용자

③ 소방안전관리자 주요점검사항

1) 소방시설을 구성하여 설치 및 비치된 소방용품의 세부현황을 파악한다.

- 소방용품의 합격표시 확인을 통한 검·인증 제품 확인
- 소방용품의 표시사항의 생산년도 파악을 통한 교체주기 점검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홈페이지 접속 > 합격표시조회 > 합격번호 입력 조회
<https://www.kfi.or.kr>

<소방용품의 합격표시 조회 절차>

<형식승인>

<성능인증>

<합격표시 예>

2) 개별 소방용품의 점검항목에 따른 작동성능을 점검한다.

3) 점검결과 소방용품이 불량(부식, 성능불량 등)인 경우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수리 및 교체를 진행한다.

④ 소방용품 합격표시 종류

1) 형식승인

표준형(스티커)	기타 특수형		
	방염제(용기부착)	구조대(가열부착)	스프링클러헤드(가열부착)
기타 특수형		❖ 은색바탕(방염제 백색)에 검정색 마크 및 글자 - 영문(4자리) + 숫자(5자리) ❖ 합격표시의 직접표시('17.12.29개정) - 합격표시 및 글자 색상은 검정색 ※ 제품 바탕색과 구분되는 선명한 색상 가능 - 업체 영문이니셜(2자리) + 당해년도(2자리) + 알파벳(2자리) + 숫자(5자리) ※ 예시 : AB 18-AA00001	
가스관선택밸브, 관창, 소화전, 포소화약제 (각인,음각)	소방호스 (날인, 불멸잉크)		

2) 성능인증

표준형(스티커)	기타 특수형		
	지시압력계(스티커)	침구류(가열부착)	공기안전매트(가열부착)
기타 특수형		❖ 은색바탕에 검정색 마크 및 글자 (침구류 등 방염제품은 백색바탕에 남색) - 영문기호 4자리 + 숫자 5자리 ❖ 합격표시의 직접표시('17.12.29개정) - 합격표시 및 글자 색상은 검정색 ※ 제품 바탕색과 구분되는 선명한 색상 가능 - 업체 영문이니셜(2자리) + 당해년도(2자리) + 알파벳(2자리) + 숫자(5자리) ※ 예시 : AB 18-AA00001	
방수구 (각인,음각)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 (날인, 불멸잉크)		
방열복 (봉제, QR코드 병행)			

3) 합격표시 변천

구분	'79.9.23 이전	~ '94.1.25	~ '08.1.3	~ '10.12.31	~ 현재
형상 (소화기)					
형상 (헤드)					
비고	내무부	한국소방검정공사		한국소방산업기술원	

⑤ 소방용품 형식승인 대상품목

연번	품명	설명
1	소화기 	• **소화약제를 압력에 의하여 방사**하며, **사람이 조작하여 소화**하는 소방용품 • 충전되는 소화약제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 - 분말소화기 : 분말소화약제를 충전한 소화기 - 가스계소화기 : 할론소화약제, 청정소화약제, CO^2소화약제를 충전한 소화기 - 액체계소화기 : 강화액, 침윤제를 충전한 소화기
2	에어졸식소화용구 	• 소화기보다 작은 형태로 **스프레이식으로 방사**하는 간이소화용구 • **일반 가정이나 자동차 등에 설치**하여 사용
3	투척용소화용구 	• 화재발생시 화점방향으로 **던져서 소화**를 행하는 소화용구 • **어린이집, 노유자 시설 등에 설치**
4	자동확산소화기 	• **화재시 열에 의해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소화용구 • **주방이나 보일러실** 등에 설치
5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 가스의 누출이나 **화재발생시 경보를 발하고, 가스의 누출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것으로 **아파트 주방**에 설치
6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 화재발생에 따른 **열이나 연기를 감지하여 경보를 발하고,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소화장치** • **전산실, 컴퓨터실 등 소손피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설치**

연번	품명	설명
7	가스·분말 자동소화장치 	• 화재발생에 따른 **열이나 연기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소화장치 (소화약제 : **가스, 분말**) • **EPS실, TPS실, 배전반 등 밀폐된 장소**에 설치
8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 화재발생에 따른 **열이나 연기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소화장치 (소화약제 : **미세한 분말**) • **EPS실, TPS실, 배전반 등 밀폐된 장소**에 설치
9	소화전 	• **옥내소화전방수구**와 **옥외소화전**으로 구분 • **옥내소화전방수구**는 소화전함내에 설치되는 방수구로서 소방호스에 연결되어 소화용수를 개방하거나 차단하는 밸브 • **옥외소화전**은 옥외소화전설비의 소화수 토출밸브로서 소방대상물 주변에 일정간격으로 설치되어 화재발생시 밸브를 개방하여 사용하는 제품
10	소공간용 소화용구 	• 분전반·배전반 등의 **소공간(0.3㎥)에 설치**되어 화재를 자동 감지하여 소화하는 **간이소화용구** * KFI 인정('15.1.12.) ⇨ 형식승인('22.12.1. 시행) • **로프형, 패드형, 실드형, 필름형, 용기형, 스틱형**으로 구분
11	관창 	• 소방호스, 방수총, 중간연결금속구의 말단에 연결되어 소화용수를 화점에 방수하게 하는 **토출기구** • **방사형** 및 **직사형**으로 구분
12	소방호스 	• 화재 시 소화전이나 소방자동차 등에 연결하여 소화용수를 방수하기 위한 **호스** • **쟈켓트 부분**과 **결합금속구**로 구성
13	스프링클러헤드 	• 화재로 인한 열기에 반응하여 방사구에서 물을 뿜어 소화하는 제품 • 천정 또는 지붕 밑, 측벽 등에 설치 • **폐쇄형**과 **개방형**으로 구분

연번	품명	설명
14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 소화설비 배관내의 압력을 감지하고 **일정압력이 떨어지면 압력스위치를 작동시켜 주펌프를 가동**시키거나, **충압펌프를 가동**하여 전체 **배관내의 압력을 일정하게 조정**하는 장치 • **압력챔버, 기동용압력스위치**로 구분
15	유수제어밸브 	• **유수검지장치**와 **일제개방밸브**로 구분됨 • **유수검지장치**는 소방설비 배관내에 장착되어 **밸브 본체내의 유수 현상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신호와 경보를 발하는** 장치로, **습식, 준비작동식, 건식**으로 구분 • **일제개방밸브**는 **개방형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 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설비에 사용하는 밸브**로서 **화재발생시 자동 또는 수동식 기동장치에 의하여 열려지는** 소방용 밸브
16	가스관선택밸브 	• **가스계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에서 **2개소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경우 **화재시 해당 구역 또는 대상물에 소화가스를 방출**할 수 있도록 선택하는 밸브
17	누전경보기 	• 경계전로의 **누설전류를 변류기로 검출**하여 **관계자에게 경보를 발하는** 수신부로 구성되는 장치
18	가스누설경보기 	• **가연성가스** 또는 **불완전연소가스가 새는 것을 탐지하여 관계자나 이용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장치 • 사용가스에 따라 **LNG, LPG용**으로 구분
19	발신기 	• **화재 발생 신호를 수동으로 수신기 또는 중계기에 발신**하는 장치
20	수신기 	•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해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하며 **소화설비, 제연설비 등 장치를 제어**하는 소방용품

연번	품명	설명
21	중계기 	• **감지기, 발신기, 가스누설경보기 등에서 발하여진 신호를 수신기, 가스누설경보기에 신호를 발신**하며 **소화설비, 제연설비 등 장치에 제어신호를 발신**하는 소방용품
22	감지기 	• 화재 시 발생되는 **열이나 연기, 불꽃**을 이용하여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는 하여, **수신기에 화재신호를 발신**하는 장치 - **단독경보형감지기** : 화재시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
23	음향장치(경종) 	• 화재시 관계인에게 화재발생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경보기구** 또는 **비상경보설비에 사용되는 벨 등의 음향장치**
24	피난사다리 	• 화재시 긴급 대피하거나 구조, 활동하는데 따른 안전성과 조작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횡봉, 종봉의 간격, 안치수 등을 규정하고 있고 디딤면이 미끄러지거나 걸림장치 등이 빠지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되어 있는 피난기구 • **올림식, 내림식**(하향내림식 포함), **고정식**으로 구분
25	구조대 	• **화염과 연기로 건물 내의 계단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지상으로 직접 피난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섬유 포지로 만들어진 긴자루 모양**의 터널을 사용자가 내부에 들어가 자중에 의해 내려오는 피난 기구 • **경사강하식, 수직강하식**으로 구분
26	완강기(간이완강기 및 지지대 포함) 	• 화재 발생시 **계단, 승강기 등을 사용하기 곤란할 경우**에 **창문이나 베란다 등을 통해 하강로프장치**로 내려오는 피난기구 • 완강기, 간이완강기로 구분 • 완강기는 반복하여 사용할수 있으나, 간이완강기는 1회용임

연번	품명	설명
27	공기호흡기 (충전기 포함) 	• **공기호흡기**와 **공기호흡기의 충전기**로 구분 • **공기호흡기**는 화재현장에서 인명구조 또는 진압활동 시 신선한 공기를 호흡할 수 있도록 고압용기에 공기를 축압하고 마스크로 송기되도록 제작된 개인장비로 면체, 등지게, 용기로 구분 • **공기호흡의 충전기**는 용기 등에 호흡용 공기를 압축충전할 수 있는 장비
28	유도등 (피난구·통로·객석) 	• 화재발생시 인명의 안전을 위하여 **비상구 또는 피난을 위한 설비까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점등되는 소방용품으로 용도에 따라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등으로 구분
29	비상조명등 (예비 전원 내장) 	• 화재발생 등으로 인하여 전원이 차단되는 경우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을 할 수 있도록 최소 밝기 유지를 위한 비상조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치 • **상용전원이 차단되면 비상전원으로 점등되는 조명등**
30	소화약제 	• 소방설비에 사용되는 가스계, 액체계, 분말상의 물질 • **할론1301, 분말소화약제, 포소화약제** 등이 있음
31	방염제(방염액, 방염도료, 방염성물질) 	• 가연성재료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약품을 결합시켜 불꽃이 닿거나 열을 받았을 때 **연소하기 어렵게 하거나 연소를 지연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액체 또는 고체상태 약품 • 방염제로는 **방염액, 방염도료, 방염성 물질** 등을 포함

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설치해야할 대상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적합하게 설치되기를 원해 착공신고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설치되는 설비를 자진설비라고 한다.

자진설비와 관련된 용어 정의 및 관련법령 기준은 다음과 같다.

설비명	정 의
소방시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설비
법정설비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4] 상 설치의무가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
대체설비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에 따라 설치할 경우 법정설비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
자진설비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4] 상 설치의무가 없으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되기를 원하는 소방시설
임의설비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4] 상 설치의무가 없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자진설비 제외) 또는 소방시설과 구성품·기능·구조 등이 유사한 설비

구 분	화재안전 기준 적용	착공신고 및 감리자 지정	자체점검	소방안전 관리자 선임	형식승인 제품사용	위반시 처벌	
						공사업법	시설법
법정설비	O	O	O	O	O	O	O
대체설비	O	△[1]	O	△[2]	O	O	O
자진설비	O	△[3]	X	X	O	O	X
임의설비	X	X	X	X	X	X	X

1) 비상경보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로 대체한 경우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상 설치의무가 있는 소방시설(법정설비) 기준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결정
3) 착공신고는 하여야 하나, 소방공사감리자는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7.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의 위치, 개수 등 현황을 파악하고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소방시설을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소방시설의 관리
①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되고 있지 않을 경우 → 관계인에게 관련 기준에 따라 개수・이전・제거・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것 → 관계인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릴 것
②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특별한 사유 없이 차단 시 즉각 복구조치를 하여야 하며, 점검, 정비를 위한 폐쇄·차단은 가능하다.
③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내용 중 경보설비의 수신반, 소화설비의 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펌프 등)에서 불량이 발생한 경우 →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를 하여야 하며, 그 시기가 길어질 경우 소방관서에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8. 소방시설 유지·관리의 주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소방시설 유지·관리 관련 주요 위반 사례	
수신반 주경종, 지구경종 정지	MCC 조작판넬 수동상태
소방시설 오동작 후 방치	물건 적치로 인한 사용 장애

1.4 피난 · 방화시설 및 방염

1. 피난시설, 방화시설 및 방염물품은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시켜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다.
   피난시설은 재실자들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설이며, 방화시설 및 방염물품은 화재의 확산을 방지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물품이다.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는 평상시 피난시설, 방화시설 및 방염물품에 대한 유지·관리를 해야 하고, 관계인은 이를 관리·감독해야 한다.

2. 각각의 용어의 정의 및 종류는 다음과 같다.

구분	정의	종류
피난시설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소방대상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안전한 장소로 피난할 때 사용하는 시설	계단(직통계단·피난계단 등), 복도, 출입구(비상구 포함), 그 밖에 피난 시설(옥상광장, 피난안전구역, 피난용 승강기 및 승강장 등)
방화시설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시설	방화구획(방화문, 방화셔터, 내화구조의 바닥·벽), 방화벽 및 내화성능을 갖춘 내부마감재 등
방염	연소하기 쉬운 재질에 발화 및 화염확산을 지연시키는 가공처리 방법	1.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 ①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 ② 카펫, 두께가 2mm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 제외) ③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④ 암막·무대막(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설치하는 스크린 포함) 2.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 합성수지류, 섬유류, 합판이나 목재,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칸막이, 흡음재, 방음재

3. 건축법에 따른 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옥외계단 등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직통계단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계단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직접 연결된 계단
피난계단 직통계단 요건 + 피난계단 요건	1. 계단실이 건물 내부와 분리되어 있다. 2. 계단실에 1개의 출입문이 있다
특별피난계단 직통계단 요건 + 특별피난계단 요건	1. 계단실이 건물 내부와 분리되어 있다. 2. 계단실과 건물 내부 사이에 부속실(또는 노대)이 설치되어 있다. 3. 계단실에 2개의 출입문이 있다.
옥외계단 직통계단 요건 + 옥외에 설치	1. 계단이 옥외에 설치되어 있다. 2. 모든 층에서 지상으로 계단이 분리되지 않고 직접 연결된 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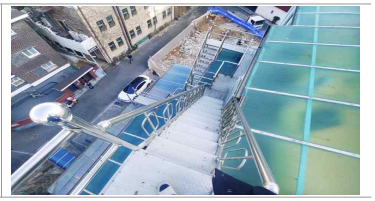

*피난층 : 건축법상 피난층은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피난안전구역을 말하지만, 소방시설법에 따른 피난층의 정의는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으로만 규정되고 있다.

4. 승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피난용승강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승용 승강기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객이 이용하는 승강기
비상용 승강기	화재 시 소화 및 구조활동에 적합하게 제작된 승강기로서, 승용 승강기와는 별도로 추가로 설치해야하는 승강기를 말한다. ① 높이 31m를 넘는 층에서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500㎡ 이하인 건축물 → 비상용 승강기 1대 이상 설치 ② 높이 31m를 넘는 층에서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500㎡를 넘는 건축물 → 1대 + 1,500㎡를 넘는 3,000㎡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기준은「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0조 참고
피난용 승강기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강기로서 비상용 승강기처럼 별도로 추가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승용 승강기 중 피난용 승강기의 성능을 갖는 승강기를 말한다.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 승강기 중 1대 이상은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 ※ 피난용 승강기의 설치기준은「건축법 시행령」제91조 및「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0조 참고

5. 방화구획은 화재와 연기가 전파하지 않도록 방화벽, 바닥, 방화문으로 구획하는 것으로 용도별, 면적별, 층별, 수직관통부별로 구획한다. 방화구획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획의 종류	내화구조의 기준	구획구분의 구조
면적별 구획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000㎡ 이내마다 구획 2. 11층 이상은 층내 바닥면적 200㎡(실내마감재료가 불연재인 경우 500㎡) 이내마다 구획 → 스프링클러설비 등 자동식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상기 면적의 3배 이내마다 구획	1. 내화구조의 바닥, 벽 2. 출입구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 3.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
층별 구획	매층마다 구획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	
용도별 구획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대상부분과 기타부분 사이의 구획	
수직관통부별 구획	설비, 전기, 통신 등 배관과 전선, 덕트가 관통하는 구간은 다른 부분과 구획 (관통하는 부분은 내화성능이 있는 충전재로 시공)	

6. 제연구획은 화재 발생 시 화재발생 장소에서 발생한 연기를 적극적으로 제연하기 위한 구역을 말하며 구획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연구획기준	구획구분의 구조
1. 하나의 제연구역의 면적은 1,000㎡ 이내로 할 것 2. 거실과 통로(복도를 포함)는 각각 제연구획 할 것 3. 통로상의 제연구역은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60m를 초과하지 않을 것 4. 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60m 원내에 들어갈 수 있을 것 5. 하나의 제연구역은 2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층의 구분이 불분명한 부분은 그 부분을 다른 부분과 별도로 구획할 것	1. 보. 제연경계벽 및 벽(화재 시 자동으로 구획되는 가동벽 . 셔터. 방화문을 포함)으로 설치 2. 재질은 내화재료, 불연재료 또는 제연경계벽으로 성능을 인정받은 것으로서 화재 시 쉽게 변형 . 파괴되지 아니하고 연기가 누설되지 않는 기밀성 있는 재료로 할 것 3. 제연경계는 제연경계의 폭이 0.6m 이상이고, 수직거리는 2m 이내로 할 것(구조상 불가피한 경우는 2m 초과 가능) 4. 제연경계벽은 배연 시 기류에 따라 그 하단이 쉽게 들리지 아니하여야 하며, 또한 가동식의 경우에는 급속히 하강하여 인명에 위해를 주지 않는 구조 일 것

7. 소방안전관리자는 피난·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해야 하며 아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관련 금지행위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한다)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ex) 비상구 등에 잠금장치(고정식 잠금장치 등)를 설치, 방화문 철거 또는 고임장치(도어스톱) 설치 등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ex) 계단, 복도(통로)에 방범철책(쇠창살) 설치 등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ex) 임의구획으로 무창층을 발생시킴, 방화구획 임의변경 등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8.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물 및 방염대상물품은 다음과 같다.

구분		기준
설치대상		①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②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1) 문화 및 집회시설 2) 종교시설 3)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③ 의료시설 ④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⑤ 노유자 시설 ⑥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⑦ 숙박시설 ⑧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소(이하 "다중이용업소"라 한다) ⑩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등은 제외한다)
방염대상물품	제조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된 물품	①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 ② 카펫, 두께가 2mm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 제외) ③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④ 암막·무대막(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설치하는 스크린 포함)
	건축물 내부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는 것	①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② 합판이나 목재 ③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않는 벽체를 말한다) ④ 흡음(吸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⑤ 방음(防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9. 피난·방화시설 및 방염물품 관련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는 아래와 같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 · 피난시설 ·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벌칙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 방염대상물품을 방염성능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지 아니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방염대상물품을 방염성능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지 아니한 자 - 자체점검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관계인 또는 관계인에게 중대위반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관리업자 등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벌칙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 방염대상물품을 방염성능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지 아니한 자

1.5 기타시설 관리

1.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의 위험물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로서 연소의 위험이 있거나 연소에 도움을 주는 물질이다.
   건축물 내에서 위험물을 취급·저장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는 이에 대한 안전관리를 해야 하며, 일정 수량 이상을 취급·저장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한다.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 5, 별표 6 참고)

2. 위험물을 구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 1

구분	성질	품명	지정수량
제1류	산화성고체	1. 아염소산염류	50kg
		2. 염소산염류	50kg
		3. 과염소산염류	50kg
		4. 무기과산화물	50kg
		5. 브롬산염류	300kg
		6. 질산염류	300kg
		7. 요오드산염류	300kg
		8. 과망간산염류	1,000kg
		9. 중크롬산염류	1,000kg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50kg, 300kg, 1,000kg
		11. 1~10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제2류	가연성고체	1. 황화린	100kg
		2. 적린	100kg
		3. 유황	100kg
		4. 철분	500kg
		5. 금속분	500kg
		6. 마그네슘	500kg
		7.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1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100kg, 500kg
		9. 인화성고체	1,000kg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1. 칼륨	10kg
		2. 나트륨	10kg
		3. 알킬알루미늄	10kg
		4. 알킬리튬	10kg
		5. 황린	20kg

구분	성질	품명		지정수량
		6.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을 제외한다) 및 알칼리토금속		50kg
		7.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을 제외한다.)		50kg
		8. 금속의 수소화물		300kg
		9. 금속의 인화물		300kg
		10.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300kg
		11.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10kg, 20kg, 50kg, 300kg
제4류	인화성액체	1. 특수인화물		50ℓ
		2. 제1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ℓ
			수용성액체	400ℓ
		3. 알코올류		400ℓ
		4. 제2석유류	비수용성액체	1,000ℓ
			수용성액체	2,000ℓ
		5. 제3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0ℓ
			수용성액체	4,000ℓ
		6. 제4석유류		6,000ℓ
		7. 동식물유류		10,000ℓ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1. 유기과산화물		10kg
		2. 질산에스테를류		10kg
		3. 니트로화합물		200kg
		4. 니트로소화합물		200kg
		5. 아조화합물		200kg
		6. 디아조화합물		200kg
		7. 히드라진 유도체		200kg
		8. 히드록실아민		100kg
		9. 히드록실아민염류		100kg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10kg, 100kg, 200kg
제6류	산화성액체	1. 과염소산		300kg
		2. 과산화수소		300kg
		3. 질산		300kg
		4.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300kg
		5.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300kg

3. 위험물 유별 특징 및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구분	성질	특징	주의사항
제1류	산화성고체	① 강산화제로서 다량의 산소 함유 ② 가열, 충격, 마찰 등에 의해 분해, 산소 방출	- 화기·충격주의 - 가연물 접촉주의 - 물기엄금
제2류	가연성고체	① 저온 착화하기 쉬운 가연성 물질 ② 연소 시 유독가스 발생	- 화기주의 - 화기엄금 - 물기엄금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① 물과 반응하거나 자연발화에 의해 발열 또는 가연성가스 발생 ② 용기 파손 또는 누출에 주의	- 화기엄금 - 물기엄금 - 공기접촉엄금
제4류	인화성액체	① 인화가 용이 ② 대부분 물보다 가볍고,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움 ③ 주수소화 불가능한 것이 대부분임	- 화기엄금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① 가연성으로 산소를 함유하여 자기연소 ② 가열, 충격, 마찰 등에 의해 착화, 폭발 ③ 연소속도가 매우 빨라서 소화곤란	- 화기엄금 - 충격주의
제6류	산화성액체	① 강산으로 산소를 발생하는 조연성 액체(자체는 불연) ② 일부는 물과 접촉하면 발열	- 가연물접촉주의

※ 각 위험물별 품명 및 지정수량은「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 1을 참고한다.

4. 위험물의 혼재기준은 아래와 같다.

위험물의 구 분	제1류	제2류	제3류	제4류	제5류	제6류
제1류		×	×	×	×	○
제2류	×		×	○	○	×
제3류	×	×		○	×	×
제4류	×	○	○		○	×
제5류	×	○	×	○		×
제6류	○	×	×	×	×	

비 고 1. "×"표시는 혼재할 수 없음을 표시한다.
2. "○"표시는 혼재할 수 있음을 표시한다.

※ 이 표는 지정수량의 1/10 이하의 위험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전기·가스·위험물 및 기타화재에 따른 화재예방요령은 다음과 같다.

주요화재	화재예방요령
전기화재	- 퓨즈나 과전류차단기, 전선 등은 정격용량의 제품을 사용 - 용량에 적합한 규격전선의 사용 및 노후된 배선은 교체 - 천정속 및 전산기기의 청소 등을 통해 먼지나 가루 제거 - 문어발식 콘센트의 사용 금지 - 각종 전기기기는 사용 후 플러그 제거 - 분전함 등 전기기관 부근에는 위험물, 기타 가연물의 방치 금지 - 전열기 등의 자동온도조절장치 작동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 - 전기장판 등 불필요한 전열기기의 사용하지 않기 - 젖은 손으로 전기 취급 금지 * 이상 징후 발생 시 안전점검 및 정비 후 사용

주요화재	화재예방요령
가스화재	- 가스시설 사용 시 장시간 자리 이탈 금지 - 가스사용 전 가스누설 여부 냄새로 확인하고 환기 후 사용 - 가스사용 후(외출시) 중간 또는 안전밸브 폐쇄 - 가스시설 주위의 위험성 및 가연성물질 방치 금지 - 호스와 밸브 등 비눗물 등 이용하여 누설여부 정기적 점검 - 장시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중간밸브와 메인밸브를 잠근다. - 휴대용부탄가스, 헤어스프레이 등 폭발성 용기는 반드시 구멍을 뚫어 버린다. - 가스 점화 시 불이 붙었는지 반드시 확인
유류 및 기타화재	- 화공약품 및 유류 사용장소에는 적응성 있는 소화기 비치 - 유류 사용기기 주변에 가연물의 적재 금지 - 흡연 장소의 별도 지정 및 소화기 등 화재 안전대책 강구 - 용접 등 실내 작업을 지양하고 불가피한 경우 안전대책 수립 후 감독자 입회하에 실시 - 유류 사용기기별로 책임자를 지정하여 사용 및 관리 - 과열이 되기 쉬운 가전제품, 보일러 등은 무리해서 사용하지 말고, 항상 사용 전 안전 점검 후에 사용

1.6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유의사항

1.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이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중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가능한 자격자가 없는 경우,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점검업체)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해당 건물의 관계인 중 1명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관리하는 형태를 말한다.

2.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는 자격취득자는 아니지만 소방시설관리업자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자를 뜻한다.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사람도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을 맡길 수 있다.)

3.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이 가능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아래와 같다.
   가.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과 아파트는 제외)
   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다.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4.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선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강해야 한다.

교육대상자	교육면제대상
❶ 특정소방대상물 신축 등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❶ 업무대행감독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❷ 업무대행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에 기존선임자를 변경하여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❷ '22.12.1 이전 업무대행감독자로 선임되어 선임 유지중인 소방안전관리자

5.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9대 업무 중 7가지 업무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2가지 업무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대행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때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한 내용에 대해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수행 가능한 업무
❶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❷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❸ 소방훈련 및 교육 ❹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❺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 ❻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❼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❶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❷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6. 업무대행 소방점검 기술인력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점검표'를 작성하고 소방안전관리자(또는 관계인)에게 점검결과를 설명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소방안전관리자는 '업무 수행 기록표'를 작성할 때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점검표'를 참고하고 관련서류들을 자체 보관한다.

7. 공공기관은 소방점검업체에서 업무를 대행한다고 하더라도 자격이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1.7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

1.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권원별 관계인은 권원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총괄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총괄소방안전관리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하고 해당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를 공동으로 수행해야 한다.

2. 총괄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총괄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특정소방대상물
(각 권원별 관계인은 권원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상 업무를 총괄하는 총괄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한다.)
1) 층수 11층 이상(지하층 제외)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복합건축물
2) 지하가
3) 판매시설 중 또매시장, 소매시장 및 전통시장

②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 하나의 관리 권원으로 보아 소방안전관리자 1명 선임
2) 화재 수신기 또는 가압송수장치가 하나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 하나의 관리 권원으로 보아 소방안전관리자 1명 선임
3) 화재 수신기 또는 가압송수장치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 각각의 관리 권원으로 보아 각각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3. 공동소방안전관리가 필요한 대상물은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를 통해 다음 사항들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 총괄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권한에 대한 사항
-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의 소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의 소방훈련 및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 공용 부분의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동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4.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있지 않지만 소방안전관리를 위해 타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8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업무 및 업무 수행 기록

1.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5항에 따른 9가지 업무를 수행해야한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❶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❻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❷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❼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
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❽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❹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❾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❺ 소방훈련 및 교육	

2.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화기취급의 감독,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소방안전관리자 부재 시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등을 수행해야 한다.
이때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범위 내에서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자체적으로 협의하여 정한다.

구분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업무	비고
평상시	소방안전관리자가 지정한 업무	업무 지정 시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가 협의
화재 시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관리자 부재 시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3. 소방안전관리자 뿐만 아니라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법령에 나와 있는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세부적인 내용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협의하여 대상물 특성에 맞게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
이때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 등을 위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을 업무 수행 기록표에 월 1회 이상 작성·관리해야 하고, 이를 작성한 날로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5.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은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작동점검)에 준하여 실시하고 업무수행 내용 중 유지보수 또는 시정이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관계인에게 알리고 업무 수행 기록표에 기록해야 한다.

6. 소방안전관리자가 30일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7.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내용 중 경보설비의 수신반, 소화설비의 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펌프 등)에서 불량이 발생한 경우에는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며, 그 시기가 길어질 경우 소방관서에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8.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및 관계인의 업무 관련 벌금, 양벌기준, 과태료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벌칙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지도·감독을 하지 않은 관계인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1.9 종합방재실 운영 및 화재/비화재보 발생 시 대응절차

1. 최근 건축기술의 발달 및 토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많이 건축되고 있으며, 대상물 특성상 화재, 재난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신속·정확한 초기대응을 하기 위하여 초고층 대상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종합방재실을 설치·운영해야 하고 일반 대상물에도 설치·운영을 하는 추세다.

2. 소방안전관리자는 평상시 업무처리절차를 명확히 하고 장애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통해 최적의 성능을 유지하여,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아래의 평상시/화재 발생 시 운영 절차를 참고하여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종합방재실 설치 대상이 아닌 일반 대상물도 참고할 수 있다.)

① 평상 시 운영

- 소방안전관리자는 1) 보고체계를 확립하고, 2) 시스템의 유지·보수하고, 3) 비상대응매뉴얼을 구축해야한다.

1) 보고체계 확립

소방안전관리자는 평상시 및 비상상황 발생 시 보고절차를 수립하여 관리자의 현장상황 파악 및 비상 시 신속한 상황 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구분		보고시간	보고내용	보고방법
평상시	주간	10시, 17시	근무자 현황 및 순찰 시 확인사항	무전기
	야간	05시, 22시		
화재 시		즉시	화재장소, 화재규모 등	무전기 (관리자 부재 시 유선)
설비 이상 발생		즉시	이상 설비 및 고장 내용	유선 보고
(추가가능				

2) 시스템 유지·보수

소방안전관리자는 종합방재시스템(방재시스템)을 유지·관리하여 비상 시 장애요소가 없도록 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제품 보수 절차서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정기 유지보수의 주요내용]

1. 전체 시스템의 기능 점검 및 데이터 백업
2. 종합방재실의 기능 점검
3. 수신기, 전원중계반의 기능 점검
4. 감지기 등 모든 단말기기의 기능 점검
5. 신호라인 회로, 기동장치 회로, 통보기구의 회로 점검
6. 시스템에 공급되는 전원의 측정
7. 각 장치의 청소
8. 예비품의 상태 점검
9. 보고서 작성

3) 비상대응매뉴얼 구축

소방안전관리자는 비상 시 신속하고 원활한 대응을 위해 대응매뉴얼을 구축해야 한다. (아래 화재 발생 시 / 비화재보 시 대응절차 참조)

② 화재 시 운영

- 화재 시 운영절차 : 감지기 또는 발신기의 작동으로 화재신호가 수신되었을 경우, 운영자는 신속하게 실화재의 유무를 파악하여 신속한 피난 및 초기소화를 유도하도록 한다.
- 소방대와의 협력 : 소방대의 진입로 및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사전에 조치를 하고 소방관계자에게 현장 상황을 인계하고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 시스템 복구 : 화재의 진압과 함께 상황이 종료되면 종합방재실의 운영자는 시스템의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여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평상시와 같이 업무에 임한다.

❶ 실제 화재 발생 시 대응절차

순서		대책
상황 : 건축물에 경종과 사이렌이 울린다.		
1단계	수신기 확인	● 화재표시등, 지구표시등 확인
2단계	실제 화재 여부 확인	● 해당구역(지구표시등 점등구역)으로 이동하여 실제 화재여부를 확인한다.
3단계	실제 화재 발생	● 현장 출동 요원은 즉시 주변에 화재사실을 알리고 119 신고 및 소방안전관리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린 후 초기소화를 실시한다.
4단계	자위소방대 소집	● 소방안전관리자는 건물 내 비상방송설비 등을 이용해 화재사실을 알리고 자위소방대를 소집한 뒤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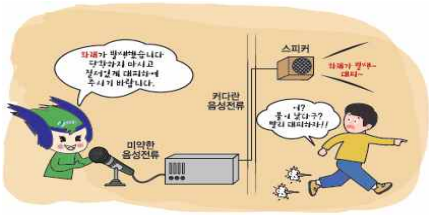
5단계	자위소방대임무수행	● 자위소방대원은 현장 출동 요원과 함께 초기소화를 실시하고 재실자들이 안전하게 피난을 할 수 있도록 피난유도를 한다.
6단계	소방대 도착	● 출동한 소방대에게 현장 상황 및 대상물에 대한 정보 등을 인계한다.

❷ 비화재보 시 대응절차 (자동화재탐지설비)

순서		대책
상황 : 건축물에 경종과 사이렌이 울린다.		
1단계	수 신 기 확 인	● 화재표시등, 지구표시등 확인
2단계	실제 화재 예부 확인	● 해당구역(지구표시등 점등구역)으로 이동하여 실제 화재여부를 확인한다.
3단계	음향장치 정 지	● 비화재보인 것을 확인 후 재실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음향장치(주경종, 지구경종, 비상방송, 사이렌 등)를 정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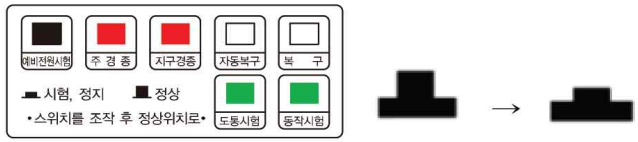
4단계	비화재보 원인 제거	● 감지기 동작표시등 확인 → 감지기 교체 등 ● 발신기표시등 점등 확인 → 해당구역의 발신기 누름스위치 복구
5단계	수 신 기 복 구	● 복구스위치를 눌러 수신기 정상으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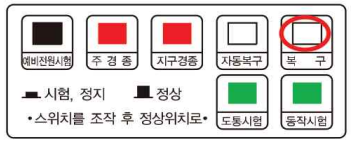
6단계	음향장치 복 구	● 음향장치(주경종, 지구경종, 비상방송, 사이렌 등)를 정상 또는 연동으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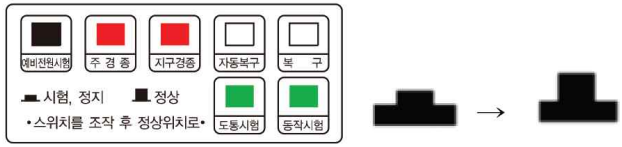
7단계	스위치주의등 확 인	● 스위치주의등 소등 확인

3. 비화재보가 자주 발생하는 대상물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비화재보를 예방할 수 있다.

주요 원인	관련내용	대책
주방에 「비적응 감지기」가 설치된 경우		적응성 감지기 (정온식 감지기등)로 교체
「천장형온풍기」에 밀접하게 설치된 경우		기류흐름 방향 외 이격설치
「장마철 공기 중 습도 증가」에 의한 감지기 오동작		복구스위치 누름 혹은 동작된 감지기 복구
「청소불량 (먼지·분진)」에 의한 감지기 오동작		내부 먼지 제거 후 복구스위치 누름 또는 감지기 교체
「건축물 누수」로 인한 감지기 오동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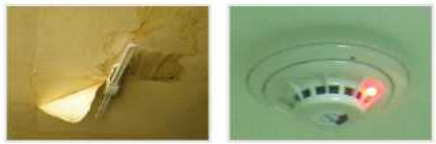	누수부분 방수처리 및 감지기 교체
「담배연기」로 인한 연기감지기 동작		흡연구역에 환풍기 등 설치
「발신기」를 장난으로 눌러 발신기 동작		입주자 소방안전교육을 통한 계도

4. 최근 가스계 소화설비의 작동으로 인해 인명피해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가스계 소화설비는 전기화재에 효과적이며 소화약재 방출시 잔여물이 남지 않아 방호대상물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전기실, 기계실 및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에 많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한번의 오동작으로 가스중독 및 사망에 이르는 등 인명피해의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작업 전, 중, 후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러므로 소방안전관리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

<최근 10년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누출사고 현황>

번호	일자	장소	사고내용	인명피해
1	'22.3.21	서울 ○○텔	훈련대비 소방시설 점검 중 부주의로 CO2 소화설비 작동	없음
2	'22.3.19	서울 ○○센터	소방시설 점검 중 부주의로 CO2 소화설비 작동	부상 : 1명
3	'21.10.23	서울 ●●센터	지하3층 발전기실에서 공사작업 중 CO2 소화설비 작동	사망 : 3명 부상 : 18명
4	'21.03.09	경기 ○○역 변전실	지하1층 변전실 ESS 작업 중 전기사고로 CO2 소화설비 작동	부상 : 1명
5	'20.08.21	대전 서구 ○○빌딩	기계식 주차장 지하 2층에 누출된 CO2 가스에 중독 추정	사망 : 1명 부상 : 1명
6	'18.12.28	서울 ○○박물사	소방점검업체에서 3층 소방시설점검 중 청정 소화약제 유출	부상 : 13명
7	'18.09.04	○○사업장	노후 소방설비 교체 후 기존 배선 철거작업 중 CO2 소화설비 작동	사망 : 2명 부상 : 1명
8	'15.02.14	경주 ○○호텔	지하1층 기계실 오작동 CO2 소화설비 작동	사망 : 1명 부상 : 6명
9	'14.03.27	●●사업장	소방시설 오작동으로 CO2 누출	사망 : 1명

❶ 가스계 소화설비 질식사고 원인

○ 소화설비의 종류, 계통도 매뉴얼에 대한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미확인

○ 가스계 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에서 작업 시(화기사용 또는 연기가 발생 할 우려가 있는 작업)에는 오작동 방지를 위해 작동스위치를 수동으로 전환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 화재감지 경보장치가 울렸으나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경보장치 스위치를 끄고 작업

○ 안전수칙 미숙지, 가스계 소화설비 작동 시 대처방법, 소화약제의 유해·위험성 등에 대한 사전 소방안전교육 미실시

○ 점검 시 화재신호 복구 전 정보전달 미흡으로 솔레노이드밸브 체결 등 조작 미숙

❷ 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사전 조치사항

○ 가스계 소화설비 점검인원 상호 간 정보전달체계 확립 후 점검 실시

○ 작업 시작 전 소방시설 운영 담당자와 작업장소 도면 검토 및 현장조사 실시

- 작업장소에 설치된 소화설비의 종류, 배치도, 화재감지기의 종류 및 형식, 가스계 소화설비 작동 위험성, 경보장치 작동, 대피 출입문 위치, 안전조치 사항 등

○ 가스계 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에서 작업 시(화기사용 또는 연기가 발생 할 우려가 있는 작업)에는 오작동 방지를 위해 자동·수동전환스위치는 반드시 『수동』측으로 전환(제어반의 솔레노이드밸브 연동정지)조치, 자동전자밸브(솔레노이드밸브) 및 기동용기 동관 분리 후 작업 실시

- 해당장소에 안전수칙(안전수칙 내용, 담당자 및 연락처) 게시 및 외부인 출입금지표지 설치

○ 화재 및 오작동 등에 의한 소화설비 작동 시 조치사항 등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실시

- 경보설비 및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감지기가 작동 후 소화약제가 방출되기 30초 이내에 대피하는 방법, 소화약제의 유해성 등

○ 소화약제가 방출된 장소에 들어가기 전에 완전히 환기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들어가지 말아야 하며, 인명구조 등으로 꼭 들어가야 할 경우에는 공기호흡기를 착용하여야 함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주요 안전설비(사진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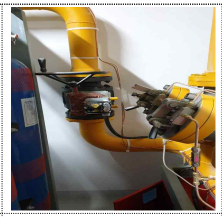	
소화약제 방출표시등	**방출지연 스위치** (오른쪽 노란색 버튼)	**수동잠금밸브**	**공기호흡기**

※ 방출지연 스위치(왼쪽부터 2번째 사진)는 소화설비 작동 전 긴급으로 멈춤을 해야 할 상황 시 사용 → 가스계 소화설비는 통상 30초 정도의 지연시간 설정이 되어 있는데, 방출지연 스위치를 누름과 동시에 소화약제 방출 정지

❸ 질식사고 예방 기본 안전수칙

○ 작업 시작 전 점검, 작업안전수칙 게시, 가스계 소화설비 작동 시 대처방법, 소화약제의 유해·위험성 등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실시

○ 가스계 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발전기실 등)에서 작업 시에는소화설비 오작동 방지를 위해 소화설비의 자동·수동전환 스위치를 반드시 『수동』으로 전환하고, 기동용기(또는 저장용기)에 설치된 솔레노이드밸브 및 기동용기 동관 분리 후 작업 실시

○ 관리감독자(소방안전관리자) 또는 감시인 배치

○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 설치 및 공기호흡기 비치

○ 작업내용을 건물 내 근로자(입주자)에 사내방송 등을 통하여 공지(일시, 장소, 작업내용 등)

❹ 가스계 소화설비 작동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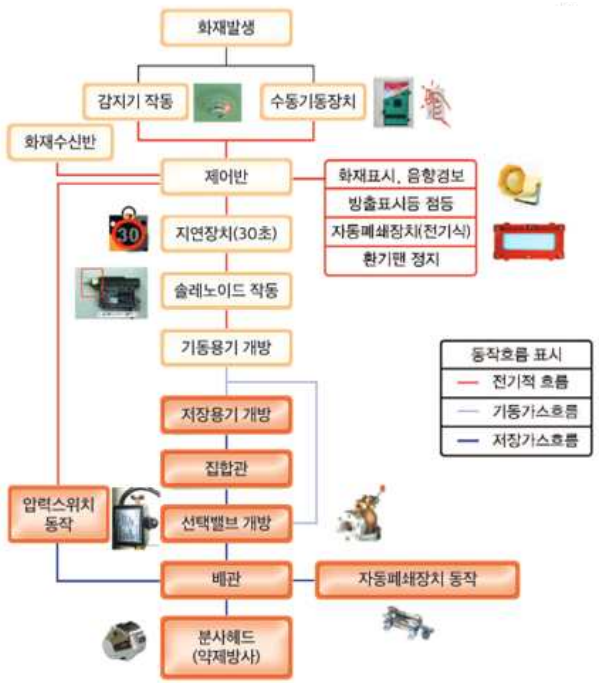

1.10 소방훈련 및 교육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화재로 인한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비상대응을 위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6항,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6조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위소방대(초기대응체계를 포함한다)를 소집하여 그 편성상태를 점검하고 편성된 근무자 등에 대하여는 화재 발생 초기대응에 필요한 기본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소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병행하여 실시 할 수 있다.

2. 소방훈련과 교육(실습과 이론)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구분		정의
훈련	기본훈련	자위소방대와 초기대응체계 또는 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
	부분(기능)훈련	자위소방대와 초기대응체계의 편성상태 및 편성된 팀별 기능에 기초한 임무수행 훈련
	종합훈련	자위소방대와 초기대응체계, 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기본훈련과 부분(기능)훈련을 결합하여 복합적으로 진행하는 훈련
교육	강의식	특정한 주제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설명하여 가르치는 방식
	세미나/워크샵	특정한 주제에 대하여 상호간 토론·연구하는 방식
대상자	거주자, 근무자	건물내 재실자(거주자 및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훈련과 교육을 실시
	자위소방대	편성된 자위소방대원들을 대상으로 훈련과 교육을 실시

※ 비고 : 소방실습 및 이론에 대한 시간은 1시간 이상을 권장한다.

3. 소방훈련 및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대상물의 특성, 편성된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임무 등을 고려해야 하며 참고사항은 아래와 같다.

훈련종류		훈련 및 교육내용
기본훈련		소화훈련 : 소화기 또는 옥내소화전 사용방법 등 통보훈련 : 화재사실 전파(119신고, 구내전파 등) 피난훈련 : 피난방법(피난기구 상용법 포함) 및 피난경로에 따른 피한 후 집결지 이동 등
부분(기능) 훈련	초기대응체계	초기대응(상황전파, 초기소화, 피난유도 등)
	비상연락	화재사실 전파 및 신고(119신고, 구내 전파, 자위소방대 소집, 관계기관 통보, 경보설비 작동 등)
	초기소화	자체소방시설을 활용한 초기화재 진압(소화기, 옥내소화전, 자동소화설비 수동기동 등)
	피난유도	구역별(층, 계단 등) 피난유도, 피난약자 보조, 재실자 확인, 집결지 안내 및 인원파악 등
	응급구조	부상자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등 인명구조
	방호안전	출입통제, 위험시설에 대한 제어, 피난·방화설비 조작 등
종합훈련		기본훈련과 부분(기능)훈련을 결합하여 복합적으로 진행하는 훈련

4. 소방훈련과 교육(실습과 이론)에 필요한 교보재는 다음과 같다.

구분	교보재(장비)	비고
초기소화	소화기(분말, 이산화탄소), 파괴용구 등	
비상연락	무전기, 휴대용확성기 등	
피난유도	경광봉, 호루라기, 안전조끼, 휴대용확성기, 랜턴 등	
응급구조	애니(심폐소생술용 마네킹), AED, 응급처치 장비, 들것 등	
기타	교육자료(PPT, 영상 등), 훈련용 연막, 명찰 등	

이 외 건물에 설치된 각종 소방시설(소화기, 옥내소화전, 경보설비, 피난기구 등)을 사용하여 훈련과 교육을 진행한다.

5.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에서 추가로 소방훈련과 교육을 요청할 경우에도 반드시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소방훈련을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6. 공공기관의 경우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여야하며,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만을 설치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제7항 및 제36조제4항에 따라 소방훈련·교육을 실시 결과 기록부[서식 1.11.4]를 작성하고 소방훈련·교육을 실시한 날로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서[서식 1.11.5]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11 소방훈련 방법

1. 미리 짜여진 각본에 의해 진행자가 주도하는 방식의 훈련으로는 실질적인 훈련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재난 상황에 따라 효과적인 대응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훈련이 아닌 상황에 따라 적절한 행동을 보여줄 수 있는 무각본 소방훈련 형태가 바람직하다. 이는 훈련일정 및 장소를 미리 공지함으로써 거주원이 사전에 훈련에 관한 제반사항을 숙달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재상황을 부여했을 때 각본 없이 자위소방대가 해당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훈련형태이다. 훈련자에 대한 각본이 없는 형태이지만 훈련을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진행 상황을 미리 계획하고 숙지하여야 하므로 스토리보드 즉, 훈련 진행을 위한 시나리오는 반드시 필요하다.

2. 시나리오를 구성·작성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최초 화재발생 장소의 선정 및 화재원인, 화재유형과 규모를 가정한다.
② 피난을 위한 시나리오 작성을 위해 재실자수, 피난약자 등을 사전에 파악한다.
③ 구조 및 구급활동 평가를 위한 인명피해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④ 그 밖에 초기대응 방법, 피난경로의 선택, 집결장소 등을 고려한 상황 메시지를 만들어 해당 상황에 따른 적절한 기대행동을 작성한다.

3. 소방훈련 시 필요한 준비물은 아래와 같다.

상황카드	평가관 표찰	화재표지판	연기발생장치
훈련상황카드1 전달시간: 13:00 / 전달장소: 2층 복도 카드명칭: 화재발생 상황내용: *2층 oo매장에서 연기발생	평가관 2021 화재대응훈련 한국소방안전원		

4. 훈련 전에는 재실자, 근무자, 관계인, 방문객 등에게 소방훈련 상황임을 반드시 안내한다.

5. 소방훈련 평가 체크리스트는 소방훈련을 더욱 체계적이고 정량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누구에게나 명확하게 현재의 훈련수준을 알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소방훈련 또는 화재 시 더 나은 대응역량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6. 소방훈련 시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근무자 및 거주자, 방문객 등이 상황별 적합한 행동을 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소방훈련 평가 체크리스트는 평가분야, 항목, 방법을 상, 중, 하로 나누어 전체 훈련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단, 대상물의 상황에 따라 자위소방대(초기대응체계를 포함함다)를 통합하여 편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합 편성된 자위소방대가 기존에 수행했던 임무도 병행하여 수행하고 평가자는 이를 평가해야 한다.

7. 소방훈련 평가자는 전체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다음과 같이 훈련수준을 평가한다. 이 경우 편성된 자위소방대에 해당하는 평가항목을 확인하고 평가해야 하며 자체 체크리스트를 활용할 수 있다.
(후면의 체크리스트 활용)

※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평가기준	평가결과		
	양호	보통	불량
전체 평가한 항목(100%) 중 상, 중의 개수가 70% 이상	v		
전체 평가한 항목(100%) 중 상, 중의 개수가 55% 이상		v	
전체 평가한 항목(100%) 중 상, 중의 개수가 40% 이상			v

8. 훈련이 종료되면 평가관이 현장에서 소방훈련 평가 체크리스트를 정리하고 잘된 점과 미흡한 점으로 나누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9. 훈련당일에는 [무각본 소방훈련 진행팀 사전미팅 -> 평가관 배치 -> 훈련실시 및 평가 -> 현장회의] 순으로 진행한다.

<소방훈련 평가 체크리스트>

※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연번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방법	평가결과				비고
				상	중	하	해당 없음	
1	화재발견/신고/전파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화재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는가?	현장확인					
2		화재발견자는 화재발생을 명확히 전파하는가?	최초발견자가 "불이야!" 등의 육성이나 발신기를 통해 화재사실을 알렸는지 확인					
3		화재발견자는 화재발생을 관련부서에 정확하고 신속히 통보하였는가?	화재장소 및 상황 등 통보내용 일치여부 확인					
4		안전부서(방재실)는 화재상황에 대한 안내방송을 즉시 실시했는가?	통보받은 후 즉시 실시하는지 확인					
5		안전부서(방재실)는 각 대응조직에 즉시 연락을 취했는가?	통보받은 후 각 대응조직 별 팀장(반장)에게 즉시 연락을 취하는지 확인					
6		안전부서(방재실)에는 방송내용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는가?	현장확인					
7		화재경보(안내)를 받은 재실자는 경보에 즉시 반응하는가?	현장확인					
8		화재인지 후 거실 내로 재진입하는 재실자가 있는가?	현장확인					
9	비상연락/지원요청	비상대응계획을 비치하고 있는가?	현장확인					
10		비상연락체계가 실제 근무자 명단에 맞게 업데이트 되었는가?	비상연락망을 확인하여 최종 업데이트 일자의 적절성 확인, 사전평가					
11		비상연락체계 가동은 적시에 이루어지는가?	실제로 비상연락망을 가동하여 적시에 적절한 조치가 내려지는지 확인					
12		사고발생의 지원 등을 위한 외부기관과의 연락체계는 확보되어 있는가?	현장확인					
13		외부기관으로의 지원요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졌는가?	현장확인					
14		야간 및 휴일근무 시 대리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대리자 지정여부 확인					

15		현장지휘소는 안전한 장소에 위치하였는가?	현장확인					
16	지휘 및 상황통제	지휘부로의 사고현황에 대한 보고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졌는가?	현장확인					
17		보고현황을 상황판에 실시간으로 입력하는 등 정보공유가 적시에 이루어지는가?	상황판 등에 기록여부 확인					
18		현장지휘자는 사고현장에 대한 종합적인 지휘통제 역량을 보유하였는가?	초기대응, 현장통제, 조직운영, 응급구조 등 확인					
19		현장지휘자는 현장지휘권 인계 시 사고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였는가?	사고정보 누락없이 인계했는지 확인					
20		언론대응을 위한 보도자료는 준비되어 있는가?	보도자료 확인					
21		언론브리핑은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하게 실시되었는가?	현 사고상황에 부합하는지 확인					
22		현장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여 적절한 지시를 내렸는가?	상황에 적합한 판단행위 확인					
23	초동조치/ 의료구호	소화기 사용자는 소화기를 신속하게 작동시키는가?	현장확인					
24		옥내소화전 사용자는 2인 1조가 되어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했는가?	현장확인					
25		초기소화 실패 시 다른 임무를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가?	현장확인					
26		화재진압 시 소방대장과 소방대원간의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는가?	현장확인					
27		초기대응을 위한 역할 분담이 적절한가?	구성원들의 신고,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 부상자 구조, 대피 유도에 대한 분담이 적정하였는지 확인					
28		초동조치를 위해 필요한 개인안전장비 등을 적절히 착용하였는가?	안전모, 안전화, 개인보호구 등 확인					
29		물질에 따른 적응성 있는 소화약제를 적절히 사용하였는가?	일반화재, 전기화재, 유류화재에 따른 구분					

30		반응이 없는 부상자 발생 시 절차에 따라 부상자 소생을 위한 적절한 대응을 하는가?	현장확인					
31		부상자가 안전한 장소에 있지 않다면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가?	현장확인					
32		환자별, 증상별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졌는가?	현장확인					
33		응급의료반원은 적절한 감염예방장비를 갖추고 출동하였는가?	장갑, 마스크, 페이스쉴드 등 착용여부 확인					
34		병원 이송환자에 대한 추적관리(병원명칭, 사상자 인적사항 및 환자상태 등)는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현장확인					
35		무호흡 또는 심정지 환자 발생시 가슴압박을 적절히 시행하는가?	가슴압박 자세 등 확인					
36	피난/ 방호조치	대피자들은 사전에 피난장소와 피난경로에 대한 안내를 충분히 받았는가?	집결지 인터뷰					
37		피난통로는 장애물 없이 원활한 피난이 가능한가?	현장확인					
38		대피자는 비상상황 안내후 즉각적인 대피를 하였는가?	현장확인					
39		건물 내 재실자는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하였는가?	계단쪽 대피유도방법 확인					
40		병목현상 방지를 위해 양방향 피난이 적절히 이루어지는가?	양방향 대피 현장확인					
41		건물내 재실자 여부를 확인하는가?	재실자 확인여부 행동으로 확인					
42		사고 유형별 대피계획 (대상인원, 대피경로, 집결지 선정 등)은 적절히 수립되었는가?	서류상 사전검토					
43		효과적인 대피유도를 위한 적정한 인력이 배치되었는가?	재실자 인원 대비 대피유도인력 확인					
44		사전에 지정된 대피집결지가	집결지 확인					

		있는가?						
45		집결지에서의 인원파악과 보고가 충분히 신속하고 정확한가?	집결지에서 인원파악 행동 확인					
46		화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 가스 등 관련설비를 즉시 차단하였는가?	현장확인					
47		건물 내 방화문을 닫는 등 방화구획 조치를 충분히 실시하였는가?	방화문 상태 확인					
48		인근 구역 등으로의 화재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적절히 취했는가?	화재현장 주변 가연물 등 제거행동 확인					
49		사고현장 통제라인 설치 및 주요 출입구에 인원, 차량통제 등 현장통제가 적절한가?	통제라인 설치 및 출입통제 확인					
50		반출자산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켰는가?	화재현장으로 떨어진 안전한 장소인지 확인					
51		119소방대 및 응급차량을 신속하게 현장으로 안내하였는가?	현장확인					
52	사후복구	시설/설비에 대한 신속한 응급복구(전기, 가스, 통신 등)가 이루어졌는가?	현장확인					
53		피해상황에 대한 집계 및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는가?	현장확인					
54		사고원인 조사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한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현장확인					
55		언론에 대해 필요한 사후 조치사항이 적절한가?	현장확인					

1.12 자체점검 구분 기준

1. 자체점검이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관계인이 스스로 점검하거나 소방시설관리업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체점검은 작동점검, 종합점검으로 구분하며 점검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작동점검 :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점검
   ② 종합점검 :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점검
   1) 최초점검 :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
   2) 그 밖의 종합점검 : 최초점검을 제외한 종합점검

점검구분	점검대상
작동점검	작동점검은 영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①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대상을 말한다) ②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제조소등 ③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의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종합점검	종합점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①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②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③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④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행령」 제2조제1호나목, 같은 조 제2호(비디오물소극장업은 제외한다)·제6호·제7호·제7호의2 및 제7호의5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⑤ 제연설비(연기 제어)가 설치된 터널 ⑥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연면적(터널·지하구의 경우 그 길이와 평균폭을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한다)이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다만,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3. 각 점검별 횟수 및 시기는 다음과 같다.

점검구분	점검 횟수 및 시기
작동점검	① 종합점검 대상은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 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종합점검	① 최초점검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법」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② ①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

4. 공동주택(아파트등으로 한정한다)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에 따라 세대별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 마다 전체 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 마다 전체 세대수의 30퍼센트 이상 점검하도록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아날로그감지기 등 특수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신기에서 원격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할 때마다 모든 세대를 점검해야 한다.)

5.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점검이 끝날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관계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6.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제출받거나 스스로 자체점검을 실시한 관계인은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점검인력 배치확인서(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만 해당) 및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서면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7. 자체점검 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관리업자 등, 점검일시, 점검자 등 자체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기록표에 기록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게시기간은 자체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게시한다.

8.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소방시설등점검표)를 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외관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 한 후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여야한다. 다만, 작동점검 또는 종합점검을 실시한 달에는 외관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13 화기취급작업

1. 건축물 내에서는 증축, 개축, 대수선, 인테리어 공사, 설비에 대한 보수작업 등 공사현장 내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이 있으며, 소방안전관리자는 대상물 내에서 화기취급작업 시 안전대책을 세우고 화재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2. 화기취급작업 관련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용어	정의
화기취급작업	용접, 용단, 연마, 땜, 드릴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및 가연성 물질의 점화원이 될 수 있는 모든 기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말한다.
작업구역	화기취급작업이 수행되는 설비 및 배관 등을 포함하여 해당 설비 및 배관을 차단할 수 있는 지점까지의 구역
허용농도	가연성 증기나 가스 : 폭발하한의 10% 이하 독성 증기나 가스 : 거의 모든 사람이 1시간 동안 노출되어도 오염물질의 냄새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건강상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공기 중 최대농도(비상대응 수립절차 참조)
용접	2개 이상의 고체금속을 하나로 접합시키는 금속 가공 방법
용단	전극봉과 모재금속 간에 아크열 등으로 용융시켜 금속을 자르거나 잘라내는 것
땜	접합하려는 모재보다 녹는점이 낮은 비철금속 또는 합금을 용가재로 사용하여 모재를 거의 용융시키지 않고 납재만을 용융시켜 접합하는 방법
연마	금속 제품 등의 표면을 마무리하는 가공 방법

3. 화기취급작업 시작 전 작업책임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화기취급작업 신청서를 작성 후 소방안전관리자에게 허가를 득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는 화기취급작업 신청서를 검토 및 현장 확인 후 점검내용 등이 조건에 충족되었을 경우 화기취급작업 허가서를 발부한다.
작업책임자는 허가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작업이 종료되고 나서 현장 정리 후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반납한다. (아래 화기취급작업 절차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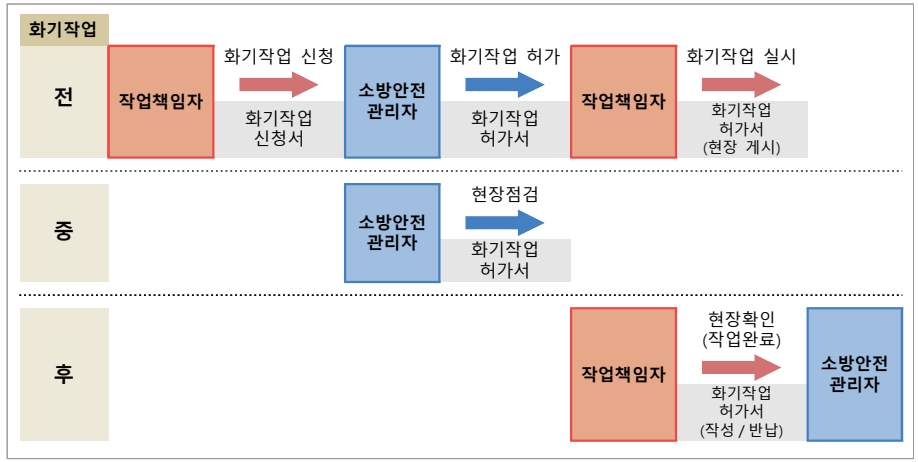

4. 작업책임자는 작업 신청 전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초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화기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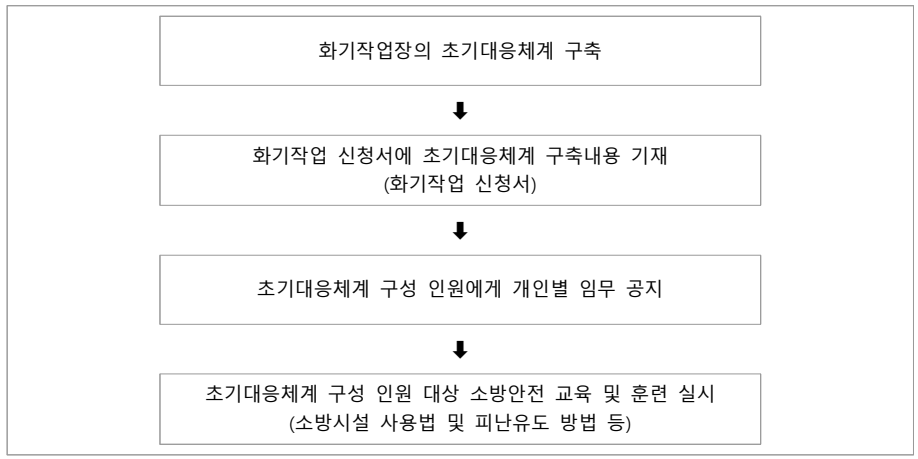

5. 소방안전관리자는 작업책임자의 화기취급작업 신청 시 아래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1. 화기작업 신청서 1건당 장소 및 기간 기준
① 작업 장소 기준 : 동별, 층별 신청
② 작업 기간 기준 : 작업기간 중 1일 단위 신청

2. 작업 전 확인사항
① 공통사항
- 작업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조치 여부
- 작업에 맞는 보호구 착용 여부
- 작업구역 내 가스농도 측정 및 잔류물질 확인 여부
- 작업구역 11m 內 인화성 및 가연성 물질 제거상태
- 인화성 물질 취급 작업과 동시작업 유무
(동시 작업 시 화재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안전교육 실시, 비상 시 대응방안 수립 및 작업 중 각별한 주의 필요)
- 불티 비산방지조치(불티차단막/방화포 등) 실시 여부
- 교육 실시 여부

② 밀폐공간
- 밀폐공간 관계자 외 출입제한 여부
- 밀폐공간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 착용 여부
- 밀폐공간의 환기 설비 설치 여부
- 작업자의 개인통신장비 및 휴대용 산소농도측정기 착용 여부
- 구조장비(구급함/구명줄/삼각대 등) 준비 여부
- 가스 및 산소농도 측정 여부
- 전화하면 5분 이내 구조할 수 있는 위치에 구조팀 대기 등

6.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감시 및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및 재실자 대피 유도를 위한 화재감시자를 작업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화재감시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하며, 아래 임무를 숙지해야 한다.

①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소화설비를 갖추고 그 사용법을 숙지하여 화재를 진화할 수 있어야 하며 인근 소화설비의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②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등 대피를 위한 장비를 갖춰야 한다.
③ 화재 발생 시 즉시 경보를 울려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고 초기소화를 실시한다.

1.14 화재예방 및 홍보

1. 재실자들을 위한 교육·훈련도 중요하지만 시간, 공간적 특성에 맞는 화재예방 홍보 또한 매우 중요하다. 포스터 전시, 영상물 상영, SNS 활용 등 다양한 홍보방법으로 재실자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고 홍보자료를 주기적으로 노출시켜 화재예방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킬 수 있다.

2. 홍보 방법은 매우 다양하며 그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구분	홍보방법
화재예방 홍보기간 운영	일정 기간 동안 화재원인별, 장소별, 계절별 특성을 고려한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포스터, 표어 전시	복도, 계단, 승강장 등 출입자, 재실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포스터 및 표어 등을 전시한다.
영상물 상영	엘리베이터 내 영상광고, 영화상영 전 광고영상, 거실, 복도 통로 내 영상상영장비 등을 이용하여 화재예방 및 안전수칙 등에 관한 영상을 상영한다.
체험시설(체험관) 견학	별도의 체험관을 운영하여 소화기 실습, 연기피난체험, 인명구조기구 사용 실습 등을 체험해볼 수 있다.
문서, 이메일 공지	사내 문서 또는 이메일을 통해 화재예방과 관련 유의사항들을 전파할 수 있다.
홍보물(리플렛, 스티커) 배부	리플렛, 부채, 책갈피 등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물품에 화재예방과 관련된 문구, 내용들을 기입하여 홍보한다.
현수막, 배너 설치	건물 주출입구 인근, 건물 외부 등에 현수막 또는 배너 등을 설치하여 홍보한다.

3. 아래는 다양한 홍보자료의 예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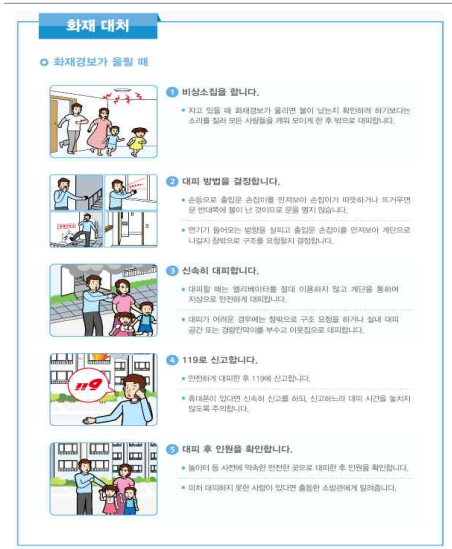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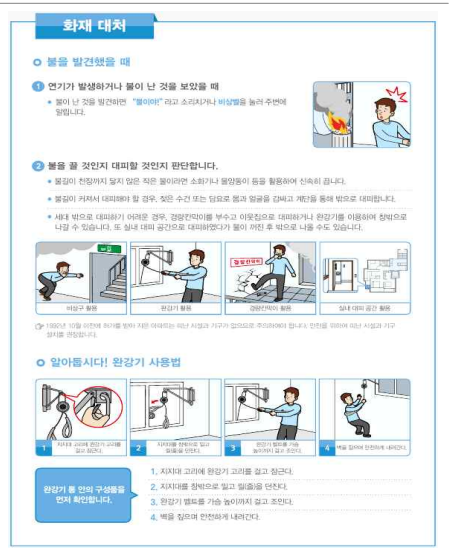

화재 대처방법

화재 진압방법

기타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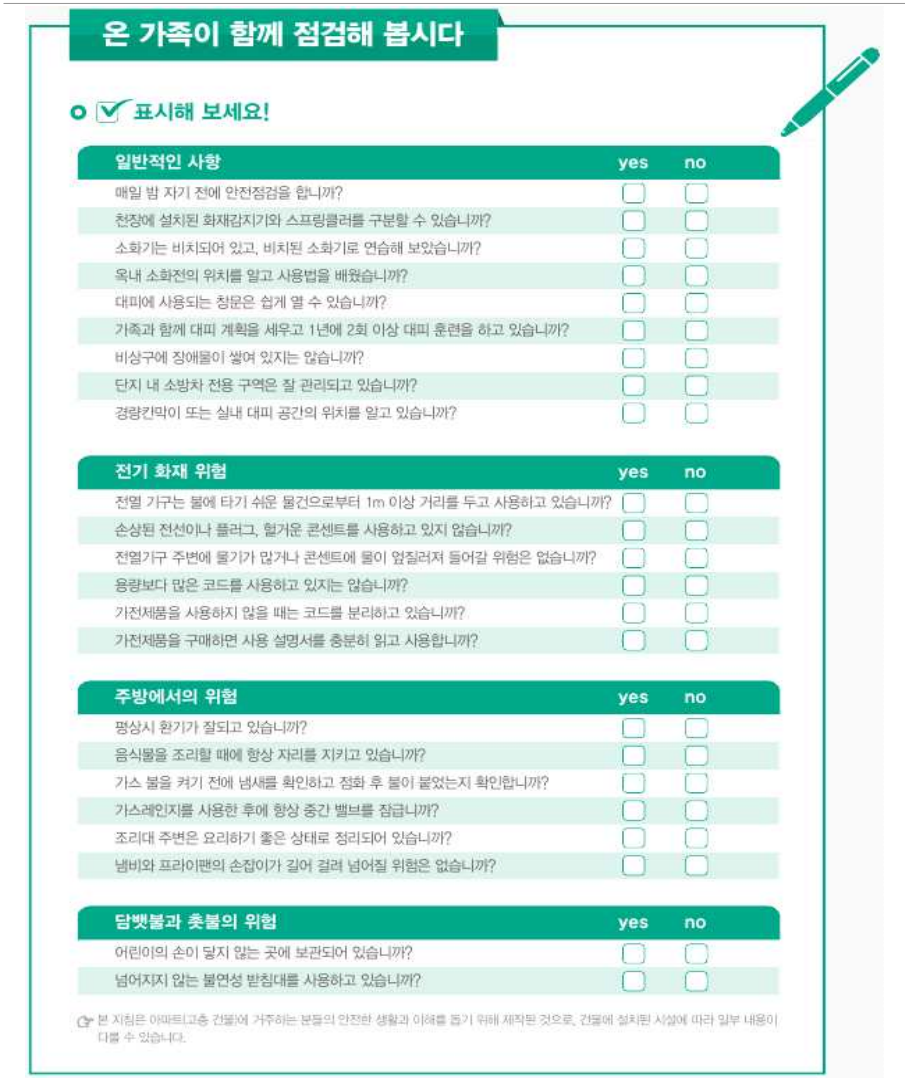

화재예방 체크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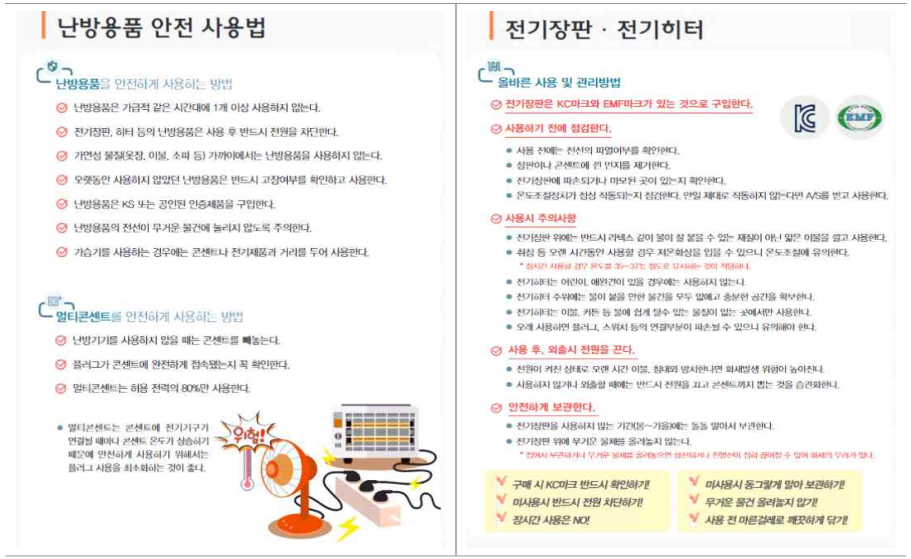

전열기구 안전 사용법

화재예방 포스터

4. 화재예방과 관련된 자료는 아래 사이트에서 참고할 수 있다.

- 한국소방안전원 : https://www.kfsi.or.kr
- 소방청 : https://www.nfa.go.kr
- 국민재난안전포털 : https://www.safekorea.go.kr
- 각 시·도 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

① 서울소방재난본부 : https://fire.seoul.go.kr
② 경기도소방재난본부 : https://119.gg.go.kr
③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 https://119.gg.go.kr/north
④ 인천소방본부 : https://www.incheon.go.kr/119
⑤ 강원소방본부 : https://fire.gwd.go.kr
⑥ 대전소방본부 : https://www.daejeon.go.kr/dj119
⑦ 충청북도소방본부 : https://cb119.chungbuk.go.kr
⑧ 충청남도소방본부 : https://www.cn119.go.kr
⑨ 세종소방본부 : https://www.sejong.go.kr/fire.do
⑩ 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 : https://www.gwangju.go.kr/fire
⑪ 전북소방본부 : https://www.sobang.kr
⑫ 전남소방본부 : https://www.jnsobang.go.kr
⑬ 부산소방재난본부 : https://119.busan.go.kr
⑭ 대구소방안전본부 : https://www.daegu.go.kr/119
⑮ 울산광역시소방본부 : https://fire.ulsan.go.kr
⑯ 경상북도소방본부 : https://gb119.go.kr
⑰ 경상남도소방본부 : https://www.gnfire.go.kr
⑱ 창원소방본부 : https://www.changwon.go.kr/119
⑲ 제주소방안전본부 : https://www.jeju.go.kr/119

제2장 자위소방대 운영계획

2.1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1. 자위소방대의 사전적 정의는 관할 구역 내의 주택지역과 해당 기관, 기업의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에는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조직된 민간 조직의 소방대를 말하지만 법적인 정의는 화재 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 팀별 맡은 임무를 수행하며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재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초기대응체계란 신속하고 효율적인 자체 대응을 위해 대응조직을 구성·운영하며 초기 대응 능력을 보다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소방훈련 모습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소방 합동훈련 모습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소방서)

2. 자위소방대와 유사한 개념으로는 자체소방대가 있다. 자위소방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운영되지만 자체소방대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다량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 근거 법령과 설치대상에서 차이가 있다.

구분	자위소방대	자체소방대
관련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설치대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만배 이 상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3. 자위소방대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편성·운영하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규모·용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응급구조 및 방호안전기능 등을 추가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편성할 수 있다.
   ① 화재 발생 시 비상연락, 초기소화 및 피난유도
   ② 화재 발생 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

4. 자위소방대 편성조직은 비상연락, 초기소화, 응급구조, 방호안전, 피난유도로 구성되며 초기대응체계는 자위소방대에 포함하여 편성하되, 화재 발생 시 초기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근무하는 사람의 근무위치, 근무인원 등을 고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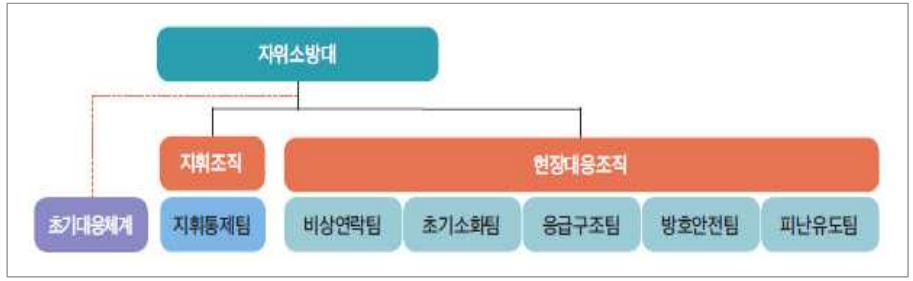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기본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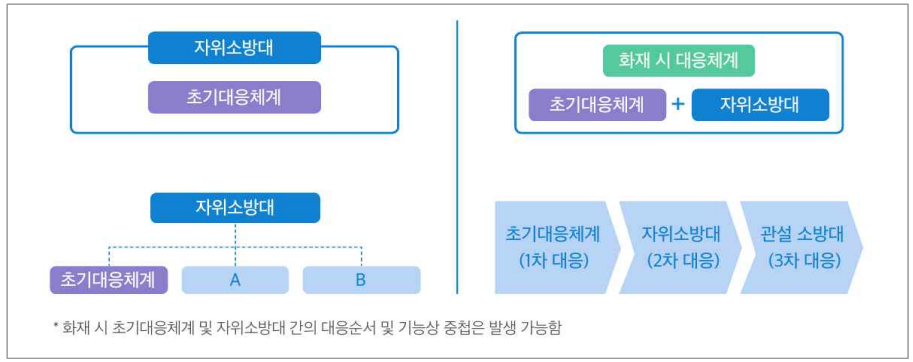

초기대응체계 운영 개념도

5.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이용되고 있는 동안 초기대응체계를 상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2.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방법

1.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는 대상처의 규모, 소방시설 및 편성대원의 특성에 따라 조직편성·운영 기준을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대상처별 관리 및 이용형태가 특수한 경우에는 현장 여건에 따라 조직 편성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구분	편성대상	편성기준	
TYPE-Ⅰ	▪ 특급 ▪ 1급 (연면적 30,000㎡ 이상 포함 - 공동주택 제외)	지휘통제	지휘통제팀
		현장대응 (본부대)	비상연락팀,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 응급구조팀, 방호안전팀 * 필요 시 팀 가감 편성
		현장대응 (지구대)	각 구역(Zone)별 현장대응팀 * 구역별 규모, 인력에 따라 편성
TYPE-Ⅱ	▪ 1급 * 연면적 30,000㎡ 이상의 경우 TYPE-Ⅰ 참고 및 적용 (공동주택 제외) ▪ 2급 (상시 근무인원 50명 이상)	지휘통제	지휘통제팀
		현장대응	비상연락팀,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 응급구조팀, 방호안전팀 * 필요 시 팀 가감 편성
TYPE-Ⅲ	▪ 2·3급 * 상시 근무인원 50명 이상의 경우 TYPE-Ⅱ 참고 및 적용	지휘통제	지휘통제팀
		현장대응	▪ (10인 미만) 현장대응팀 * 개별 팀 구분 없음 ▪ (10인 이상) 비상연락팀, 초기소화팀, 피난유도팀 * 필요 시 팀 가감 편성
초기 대응 체계	▪ 상시 근무 또는 거주인원	초기대응	초기대응팀(휴일·야간 포함)

※ 비고
1. 지휘통제팀은 수신반, 종합방재실 등을 거점으로 화재상황의 모니터링, 지휘통제 임무 수행 현장대응팀은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비상연락, 초기소화, 피난유도 등의 임무를 수행
2. 대원편성은 상시근무 또는 거주 인원 중 자위소방활동이 가능한 인력을 기준으로 조직 구성
3. 초기대응체계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이용시간 동안 운영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유형별(TYPE) 조직구성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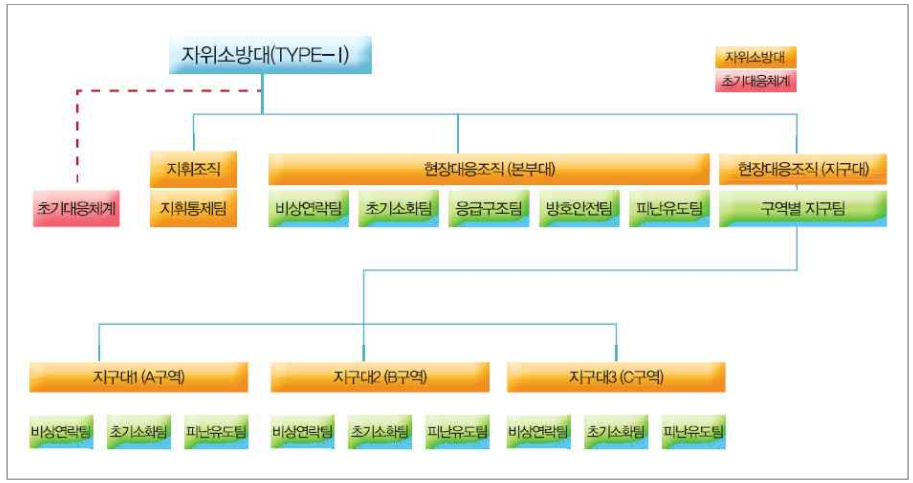

자위소방대 구성도 (TYPE-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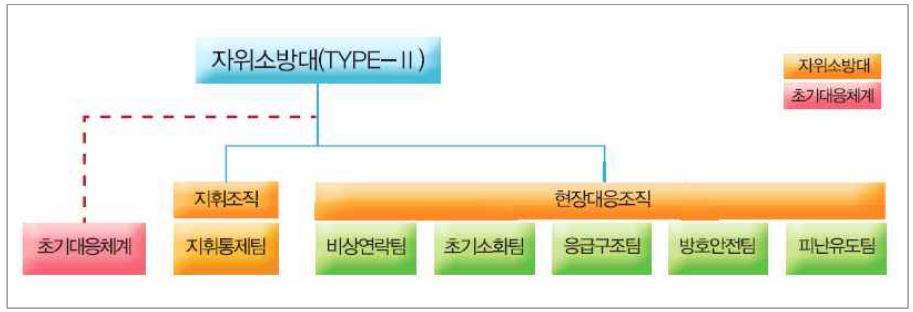

자위소방대 구성도 (TYPE-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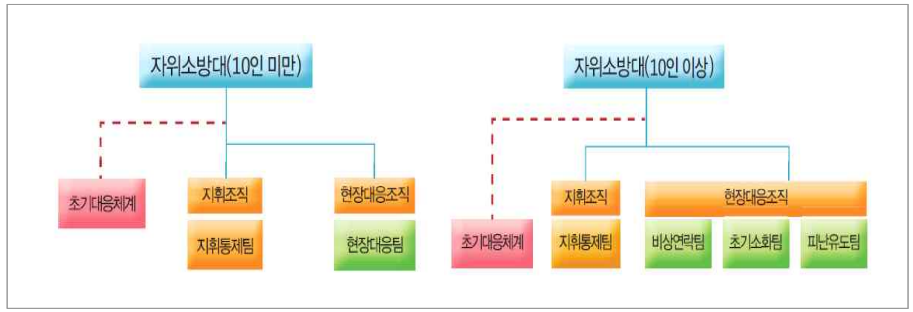

자위소방대 구성도 (TYPE-III)

3. 지구대 설정 시 고려할 수 있는 구역(Zone) 설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적용기준	구역설정
수직구역	대상물의 층(Floor)	단일 층 또는 일부 층(5층 이내)을 하나의 구역으로 설정
수평구역	대상물의 면적(Area)	하나의 층이 1,000㎡ 초과 시 구역을 추가 설정하거나 대상물의 방화구획 기준으로 구분
임차구역	대상구역의 관리권원 (Tenancy)	구역 내 관리권원(임차권)별로 분할하거나 다수의 관리권원을 통합해 설정
용도구역	대상구역의 용도 (Occupancy)	비거주용도(주차장, 공장, 강당 등)는 구역설정에서 제외

지구대 구역(Zone) 설정(예시)

4.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인력편성 및 운영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만,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대장 또는 부대장이 대상물에 부재하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또는 소방안전 관련 업무수행이 가능한 사람)를 지정하여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

구분		인력편성 및 운영방법
자위 소방대	대장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유주, 법인의 대표 또는 관리기관의 책임자를 자위소방대장으로 지정한다.
	부대장	▪ 소방안전관리자를 부대장으로 지정한다. 단,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소방안전관리자 및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를 부대장으로 편성한다.
	비상연락 초기소화 피난유도 응급구조 방호안전	▪ 자위소방대원은 대상물 내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 중 자위소방 활동이 가능한 인력으로 편성한다. ▪ 각 팀별 최소편성 인원은 2명 이상으로 하고 각 팀별 책임자(팀장)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 각 팀별 구성인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팀별 기능을 통합하여 팀 조직을 가감하거나 현장대응팀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초기대응체계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경비(보안) 근무자 또는 대상물 관리인 등 상시근무자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근무자의 근무위치, 근무인원 등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보조자가 없는 대상처는 대원 중 선임)를 운영책임자로 지정한다. ▪ 1명 이상은 수신반(또는 종합방재실)에 근무해야 하며 화재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또는 지휘통제가 가능해야 한다. ▪ 휴일 및 야간에 무인경비시스템을 통해 감시하는 경우에는 무인경비회사와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비상연락, 초기소화 및 피난유도 등의 기본기능과 대상물 특성을 반영한 특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역 내 근무인원으로 구성된 구역별 소규모 팀으로 편성하여 화재 발생 초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시공간적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무조별, 근무시간별(주간·야간·휴일)로 구분하여 최소 필요인원으로 조직하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이용되는 기간 동안에는 상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다만, 화재발생 시 출동하여 초기소화 시까지 걸리는 시간, 피난 조력 에 필요한 인원 등 실제 훈련결과를 반영하여 구역별 인원 또는 구역범위를 가감할 수 있다.

5.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 해당 대상물의 자위소방대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편성한다. 또한, 공동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위소방대 구성을 위해 자위소방대 운영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6. 하나의 관리권원인 대상처 내에 다수의 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 등급(특급, 1급, 2급, 3급)이 가장 높은 대상물을 본부대로 편성하고 그 밖의 대상물은 지구대로 구성할 수 있다.

다수소방대상물 적용기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3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인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權原)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별표 4에 따른 등급 중 둘 이상에 해당하면 그중에서 등급이 높은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다수 소방대상물인 경우, 본부대 및 지구대 구성(예시)

7.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할 때에는 아래의 화재유형별 사고특성 및 위험요인을 반드시 고려하여 편성해야 한다.

화재유형	사고특성 및 위험요인
목조건물	▪ 화염 분출면이 크고 복사열이 커서 접근이 곤란함 ▪ 인접 건물로의 연소 속도가 매우 빠름 ▪ 화재 초기 신속하게 화점에 진입하여 소화하거나 실패 시 연소방지에 중점

화재유형	사고특성 및 위험요인
방화조건물	▪ 화재초기의 연소상황은 목조화재와 비슷하지만 연소확대 속도는 느림 ▪ 건물의 외벽과 처마의 사이가 적어 공기 유입이 적고 연기나 열이 충만함
내화조건물	▪ 밀폐구조로 연기가 충만하고 발화점 및 신속한 상황판단이 어려움 ▪ 파이프샤프트, 덕트 등으로 연소확대 가능성이 있음 ▪ 창문, 간판 등의 파손, 낙하 주의
아파트	▪ 초기소화 실패 시 상층부로 연소가 확대 될 가능성이 있음 ▪ 고층에서 화재 발생 시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출동시간 지연
주택	▪ 건물 대부분이 저층건물로서 다른 건물과 인접해 있음 ▪ 노후된 건물(벽돌조)의 경우 화염에 의한 붕괴의 가능성이 있음 ▪ 다수의 가연물(소파, 의자, 책장, 서랍, 매트리스)이 존재함
지하철	▪ 대부분의 화재가 지하에서 발생하여 소화, 통보, 피난 등 많은 장애요소 상존 ▪ 발화요인이 누전, 기구 내 고압전선 등 전기적 원인일 가능성이 높음
지하가	▪ 화재위치 확인, 소화, 통보, 피난 등 많은 장애요소 상존 ▪ 정전과 유독가스 등에 의한 심리적·생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지하층	▪ 공간이 작고 공기유입량도 적어 연소가 완만하지만 농연 및 열기가 충만함 ▪ 진입구 협소 및 배연구 역할로 진입이 곤란함 ▪ 진입 시 방향감각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음
지하공동구	▪ 전력케이블, 통신케이블, 가스배관, 수도배관이 함께 수용되어 있는 지하관로로 손실 시 생활기반(통신망 등) 마비 혼란초래 ▪ 폴리에틸렌 피복 등이 연소하면서 농연(유독가스)과 고열 발생
터널	▪ 폐쇄공간의 특성상 갇힌 공기 온도가 순식간에 1천℃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 ▪ 터널 내 정체차량중 LPG, 위험물 적재차량 확인 필요 ▪ 외기풍향에 의해 터널 내 풍향변화 있고 진입구 한정
고층건물	▪ 굴뚝효과, 온도팽창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한 연기유동이 급속하게 진행됨 ▪ 층수가 높아 조직활동의 분담화가 요구됨
초고층건물	▪ 화재하중이 매우 높아 연소확대가 매우 빠르게 진행됨 ▪ 플래쉬오버 발생 시 고온의 열과 압력으로 인하여 창문 등이 파괴될 수 있음 ▪ 다양한 공간구획과 높고 낮은 천장이 혼재되어 연소조건이 다양하고 인명구조 활동 제약, 특별피난계단으로 진입 시 대피자와 혼잡 발생

화재유형		사고특성 및 위험요인
차량 화재	일반	▪ 엔진룸 후드 아래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외부로부터 주수 시 효과가 적음 ▪ 연료 시스템의 잠재적인 폭발 주의
	전기차	▪ 충전, 충돌 시 발생할 수 있으며 열폭주에 의해 온도가 급격히 상승 ▪ 특히, 리튬이온배터리의 경우 탄화수소 계열의 가연성 가스 및 유해가스 발생
목조문화재		▪ 목재를 주요 건축재료로 사용하여 급격한 화재확산 가능 ▪ 문화재 파괴, 반출 등에 대한 외부 의사결정과정 필요 ▪ 독특한 지붕구조로 화원 위치 등 확인 어려움
백화점		▪ 백화점 및 대형 소매 점포에서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의 고객이 있음 ▪ 가연성의 상품이 대량으로 진열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되면 연소력이 강하고 인명위험도 매우 높음
여관, 호텔		▪ 이용객 대부분이 건물의 구조를 잘 모르고 음주, 해방감 등으로 화재에 무방비 상태일 가능성이 있음 ▪ 각 방이 밀실상태이고 심야에는 이용객이 숙면상태이므로 비상벨, 비상방송 등으로 피난유도가 어려울 수 있음
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 고령자, 입원환자 등 피난약자 다수 존재 ▪ 평일야간, 휴일에는 당직의사, 간호사, 경비원 등 소수의 인원으로 운영

2.3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조직도 및 임무

1.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임무는 아래와 같다.

구분		임무
자위 소방대	대장	자위소방대를 총괄 지휘
	부대장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임무를 대행
	비상연락	화재사실의 전파 및 신고 (119신고, 구내 전파, 자위소방대 소집, 관계기관 통보 등)
	초기소화	화재 시 자체소방시설을 활용한 초기화재 진압 활동
	피난유도	재실자(피난약자 포함)에 대한 피난 유도, 집결지 안내
	응급구조	심폐소생술 등 인명구조 및 부상자 응급조치, 응급의료소 설치·지원
	방호안전	화재확산 방지 및 위험시설에 대한 제어 등 방호안전 업무
초기대응체계		화재 초기에 신속하게 상황전파, 화재진압 등을 수행

2. 자위소방대 각 팀별 기능에 기초하여 자위소방대별 개별임무를 부여하되 대원별 임무를 복수로 하거나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또한, 화재 발생 장소별 유동적이고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하며 자위소방대원 담당구역에서의 화재 발생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임무 전환체계를 구축한다.

화재발생 상황	자위소방대원 임무
근무하는 구역(층)에서 화재 발생 시	신고·화재전파, 초기소화 및 피난유도
화재발생 구역(층)보다 상위 층에서 근무 시	신고·화재전파, 신속한 피난유도
화재발생 구역(층)보다 하위 층에서 근무 시	신고·화재전파, 상층부 피난유도 및 초기소화 지원

3. 화재 초기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개별임무카드를 작성하여 각 대원들에게 배부하고, 이를 숙지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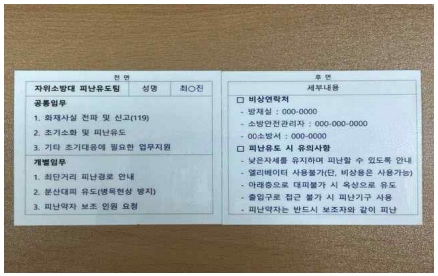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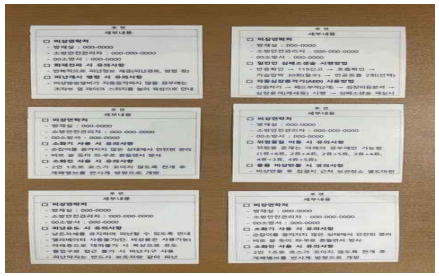

개별임무카드(예시)

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화재 초기에 신속하게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를 운영·소집하기 위하여 자위소방대장, 부대장, 대원, 초기대응체계의 소속과 성명, 인원, 임무가 포함되어 있는 조직도를 아래에 해당하는 장소에 비치하도록 한다. 이 경우 조직도를 비치하는 위치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여야 한다.
   - 수신반이 있는 장소(복도인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방재실
   -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 또는 (총괄)소방안전관리자가 근무하는 장소
   -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가 근무하는 장소

5.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조직도는 시인성이 높아지도록 색상을 추가하거나 눈에 잘 띄도록 크기를 A4(210㎜×297㎜) 이상으로 하며 쉽게 훼손, 변형되지 않도록 코팅처리 하는 것을 권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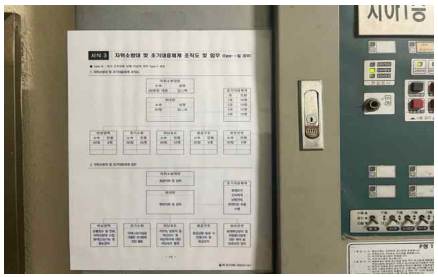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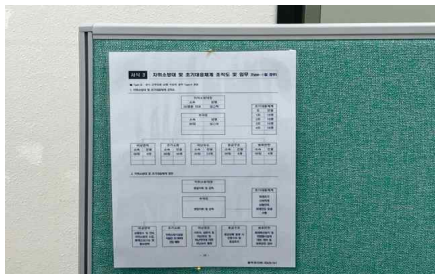

조직도 비치(예시)

2.4 지휘통제팀

1. 지휘통제팀은 화재 시 사고현장 전반을 관리하는 조직으로서 현장에서의 중요사항을 판단하고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를 지휘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다. 따라서, 지휘통제팀은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대원들과 구별되는 복장 또는 표식을 착용하고 초기대응과정에서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2. 지휘통제팀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① 초기 사고 정보 수집 및 평가
   ② 내・외부 관계자들에게 초기 사고 정보 및 평가 공유
   ③ 사고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체적 관점에서 임무부여
   ④ 사고현장 위험요인 파악 및 대원 안전보장
   ⑤ 사고대응활동에 참여하는 유관 조직(기관)들과의 상호 연락관계 확립 및 유지

3. 119소방대가 사고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초기대응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초기대응 시 우선순위를 확립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생명보호(1순위) → 사고 안정화(2순위) → 재산보호 및 환경보호(3순위)'를 기본으로 판단한다.

4. 건축물화재에서 초기대응 시 우선순위는 아래의 'RECEO'절차에 따라 판단한다.
   ① R(Rescue) : 신속한 피난안내, 응급구조 등으로 생명보호
   ② E(Exposure) : 건물 외부 위험 확산 방지(이미 화재가 해당 건축물 전체로 확산된 경우) → 인접한 건물, 차량, 시설물, 숲(산)으로의 확대여부를 판단. 외부확대 위험이 있으면 두 번째로 외부 확대방어에 자원 우선 배치
   ③ C(Confine) : 건물 내부 확산방지 → 건축물인 경우 내부의 다른 구획으로의 확대위험이 있는지 판단. 내부 확대위험이 있으면 세 번째 우선순위로 자원 배치
   ④ E(Extinguish) : 화재진압 → 화점 진압에 네 번째 우선순위로 자원 배치
   ⑤ O(Overhaul) : 종합 점검・조사 → 종합적인 상황 점검・조사를 통해 전반적 사고관리를 위한 다음 조치사항 실행을 위한 자원 배치

5. 지휘통제팀의 기본대응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건물 및 화재규모, 인명피해 여부, 연소 확대 여부 등 파악

② 효과적인 피난안내 및 상황별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임무조정

③ 119소방대 출동 시 연소범위, 피난유도상황 등의 정보를 제공

6. 화재유형별 표준대응절차는 아래와 같다.

화재유형	표준대응절차
목조건물	▪ 생명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소화, 통보, 피난 등 초기대응 실시 ▪ 옥내에서는 화재의 역류(Back draft)에 주의 ▪ 지붕이 타서 파괴된 경우 비화의 염려가 있으므로 비화경계 활동 실시
방화조건물	▪ 목조건물과 동일하게 생명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초기대응 실시 ▪ 농연, 열기가 건물에 충만해 있는 경우는 플래쉬오버에 주의
내화조건물	▪ 화재초기 재실자에 대한 피난유도 및 신속히 화점에 진입하여 소화 ▪ 화재가 확산될 수 있는 샤프트, 장비 배선관, 배연구 등을 파악 ▪ 악화될 수 있는 화재 및 건물상황에 주의
아파트	▪ 신고접수 및 출동단계에서 아파트 관리자에게 대피안내방송, 진입로 확보, 소방시설 작동확인, 가스차단, 주정차차량 이동 지시, 화단 장애물 제거 ▪ 주민 안전대피에 주력
주택	▪ 연소 확대방지를 위해 난방연료(가스, 유류)를 차단, 제거 ▪ 전등, 반자, 선반, 장식물, 지붕의 낙하(붕괴) 또는 가스 폭발 등에 유의 ▪ 다른 건물로의 연소 확대를 차단
지하철	▪ 내부진입은 급기, 배기 확인 후 급기측 진입 원칙(단독행동 금지) ▪ 출입구 마다 피난유도팀 배치 ▪ 인력 부족 시, 지상과 가까운 곳 또는 발화지점과 먼 곳부터 피난유도 실시
지하가	▪ 내부진입은 급기, 배기 확인 후 급기측 진입 원칙(단독행동 금지) ▪ 지하에 가압(송풍) 청정공간 확보가 가능하면 대피소로 활용 ▪ 방연셔터·방화셔터·방화문을 닫아 연기 확산 및 연소 확대 차단
지하층	▪ 비상구 신속 개방, 급기구 진입 ▪ 급격한 공기유입 방지로 화재의 역류(Back draft) 발생요인 차단 ▪ 지상층으로의 연기유입이나 연소 확대를 차단

화재유형		표준대응절차
지하공동구		▪ 지하공동구 관리기관 작업자 내부 고립여부 확인 ▪ 지하공동구와 연결된 다른 건물이나 시설로 연기 유입되거나 연소 확대되지 않도록 차단
터널		▪ 화재지점으로 차량이 더 이상 밀려들지 않도록 교통통제(2차 재해방지) ▪ 터널의 기류가 팬(fan)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것이라면, 화재발생 위치에 따라 팬의 회전방향(기류의 방향)을 바꿈
고층건물		▪ 초기 화재시 엘리베이터, 시설물 및 건물 출입 인원 통제를 위한 로비통제 실시 ▪ 화점층 및 화점상층 피난유도 최우선 ▪ 화재초기 층수 상관없이 화점층 진입 일거에 소화 ▪ 고층건축물의 층수, 높이 및 상황을 감안하여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초고층건물		▪ 피난유도를 최우선적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소화활동 중지 ▪ 피난유도 시 초고층 건물의 30층마다 설치된 피난 및 안전구역으로 대피유도 ▪ 비상용엘리베이터 활용 화점 직하층 진입 원칙
차량 화재	일반	▪ 소화 시 폭발 등 2차 사고를 대비하여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 ▪ 화재가 발생한 차량이 일반 수송차인 경우 적재 화물의 종류 파악 ▪ 유출된 차량연료를 고려 진화방법 결정(가연성, 비가연성) ▪ 위험물차량 화재 경우 화재진압 후 가연성증기 발생상황, 기름유출상황 확인
	전기차	▪ 전기차 화재현장에 미연소된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수 있기에 주변을 분무 소화하여 폭발 위험 제거 ▪ 열전도도가 높은 배터리팩 바닥 부위에 집중방사하여 냉각소화 ▪ 상방향 방사장치, 질식소화덮개, 이동식 소화수조, 이동식 컨테이너 등 전기자동차화재 대응장비를 확보하고 사용(권장)
목조문화재		▪ 문화재 담당기관과 통신체계 확보 ▪ 2차적 피해(수손피해, 붕괴 등)를 고려 화점에 집중 방수 ▪ 지붕 내(적심부) 화재 진행시 용마루 등 파괴, 해체를 고려하여 초기소화 ▪ 문화재 담당기관의 의사결정을 고려하여 건물내부의 고가치 유물의 반출
백화점		▪ 화재발생지점 및 연소범위를 신속히 파악 ▪ 비상방송설비 등을 활용하여 이용객을 안전한 장소로 피난유도 ▪ 식당, 계단실, 에스컬레이터 로비, 창 근처, 화장실 등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
여관, 호텔		▪ 화염이 화점실에서 분출되고 있는 경우 베란다, 복도 등 횡방향으로 피난유도 ▪ 항상 객실에 이용객이 있다고 가정하여 초기대응(이용객 명부를 활용) ▪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을 활용하여 초기소화
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 다수가 피난할 경우 미끄럼대, 구조대 등 피난기구를 적극 활용 ▪ 보행불능자는 2인 1조로 업거나 안아서 피난유도하거나 들것 등을 사용 ▪ 정신병원, 요양원인 경우 쇠창살을 절단할 수 있는 도구를 준비

2.5 비상연락팀(지휘반)

1. 비상연락팀의 주요업무 및 임무는 아래와 같다.

주요업무	임무
화재전파	비상방송설비(일반방송설비 또는 확성기 등 장비)를 사용하여 신속하게 화재사실을 전파하여 근무자, 거주자 등이 화재 상황을 인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피난개시를 명령한다.
대원소집 및 임무부여	자위소방대장 또는 부대장은 자위소방대원을 소집하고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상연락체계를 활용해 대원을 소집한다.
관계기관 통보·연락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유관기관, 협력업체등에 화재사실을 전파하고 신속한 대응을 준비한다.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최신화하여 항시 유지한다.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간 비상연락과 안전정보 확보, 필요시 구호요청을 위해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내부 및 외부 비상연락망을 확보하여 만일의 사태에 상호 연락이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비상연락망을 점검하고 업데이트 하여야 한다.

3. 평상 시 휴대용 전화기 등을 통해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비상연락이 가능하지만 지진으로 인한 화재 등 대형재난의 경우 인한 통신장애 및 통화량 폭주로 인한 휴대전화 불통의 변수도 고려해야 한다. 이를 대비하여 또 다른 수단의 비상연락체계(무전기, 전달자, 확성기 등)도 활용할 수 있다.

4. 자위소방대 보고체계 및 개별 임무시달은 아래와 내용을 참고한다.
① 대장 등 보고내용 : 화재장소, 규모, 상황, 부상자현황 등
② 개별 임무시달 예시

- "여기는 방재센터 자위소방부대장입니다. 현재 00층 00 부근에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 초기소화팀은 즉각 현장으로 출동하여 소화작업을 실시하며,
- 피난유도팀은 즉시 피난유도 장소로 이동하여 피난유도를 실기하기 바람."

5. 비상방송설비 동작방법은 아래와 같다.
① 비상방송 : 화재 시 비상방송이 송출되면(싸이렌 동작 시) 마이크 키를 잡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도록 유도방송 시작
* 비상음성발생기 내장형 : 화재 시 경보음과 함께 자동으로 안내방송 송출
- 비상방송 문안 예시

- "여기는 00빌딩 방재실입니다. 금일 00시 00분경 0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 건물내에 계신 모든 고객께서는 당황하지 마시고 대피유도자의 지시에 따라 침착하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마시고 비상구를 이용하여 건물 1층 00앞 대피집결지로 신속히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피시에는 자세를 최대한 낮추시고, 소지하고 계시는 젖은 손수건이나 마스크, 휴지 등으로 호흡기를 가리신 후 안전하게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1회 반복)

② 일반방송 : 전체(구역별) 스위치를 켜고(On) 차임방송 후 마이크 키를 잡고 마이크 방송을 시작

비상방송설비

비상방송설비 사용 예시

6. 비상방송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도록 한다.
①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에 화재신호가 접수되면 비상방송설비의 수신부로 신호를 자동으로 전달하며, 신호를 받은 수신부는 10초 이내로 비상방송이 자동 송출한다.
② 방송은 스피커를 통해 자동화재탐지설비 경보방식과 동일하게 송출되기 때문에 피난유도 담당대원은 방송에 따라 해당구역의 재실자 및 거주자들이 피난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정된 위치에서 큰소리로 피난유도 한다.
③ 만약 일반방송설비만 설치되어 있다면 비상연락팀에서 수동으로 일반방송을 송출하며, 담당 대원은 송출된 방송에 따라 피난유도를 한다.
④ 피난유도대원은 피난하는 사람들에게 낮은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반복적 안내를 해야 한다. 연기는 천장에서부터 바닥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낮은 자세를 유지해야 연기흡입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2.6 초기소화팀(진압반)

1. 초기소화는 화재초기에 신속한 대응으로 화재를 진화해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초기소화팀은 소화기 및 소화전 등을 사용하여 신속하게 초기소화활동을 실시해야 하며 자동소화설비(스프링클러설비, 가스계소화설비 등)가 동작하지 않을 경우 수동조작장치(SVP)를 작동하여야 한다.

2. 초기소화팀의 주요업무 및 임무는 아래와 같다.

주요업무	임무
화재진화	소화기 및 소화전 등을 사용하여 초기소화작업을 실시한다. 화재가 발생한 구역 주변에 자동소화설비(스프링클러, 가스계소화설비 등)가 설치되어 있고 수동기동을 통한 소화가 필요할 때는 즉시 수동조작장치(SVP)를 작동하여 초기대응한다.
초기소화 실패 시 즉시 피난	초기소화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 자위소방대장 및 부대장에게 보고 후 피난한다. 이때 열 또는 연기 확산방지를 위해 출입문을 닫거나 방화문, 방화셔터를 폐쇄하도록 한다.

3. 소화기 사용방법은 아래와 같다.
   ① 소화기 위치를 확인하고 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옮긴다.
   ② 소화기를 바닥에 내려놓은 후 한 손은 소화기 몸통을 잡고 다른 한 손은 안전핀을 잡아당긴다.
   ③ 한 손은 손잡이를, 다른 한 손은 노즐을 잡고 화점을 향하게 한다.
   ④ 소화가 완전히 될 때까지 약제를 화점을 향하여 골고루 방사한다.

안전핀 제거모습

소화기 방사모습

4. 옥내소화전 사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한 사람이 옥내소화전 함을 열고 호스와 노즐을 화점 가까이 전개한다.
   ② 호스와 노즐(관창)을 잡은 사람은 방수할 준비를 마친 후 소화전함에 대기하고 있는 조력자에게 “밸브개방”이라고 외친다. 이때, 조력자는 밸브를 시계반대방향으로 끝까지 돌려 개방한다.

방수준비 완료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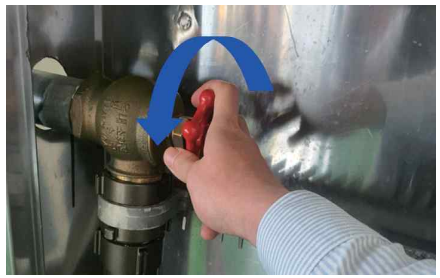

밸브 개방모습

   ③ 밸브가 개방되면 호스와 노즐(관창)을 잡은 사람은 노즐을 조작하여 화점을 향해 방수한다. 이때, 노즐을 시계반대방향으로 돌리면 분사형태로, 시계방향으로 돌리면 직사형태로 방수된다.

직사형태 방수

분사형태 방수

   ④ 방수가 끝나면 조력자에게 “밸브폐쇄”라고 외친다. 이때, 조력자는 밸브를 시계방향으로 끝까지 돌려 폐쇄한다.

5.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수동조작장치 사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만, 수동조작장치는 스프링클러 헤드가 개방되었음에도 약제(가압수)가 방사되지 않은 경우에만 사용한다.

수동조작장치(SVP)의 수동조작스위치 누름 → 약제(가압수) 방사

6. 가스계소화설비 수동조작장치 사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만, 수동조작장치는 교차회로방식의 A,B 감지기가 동작했음에도 자동으로 약제(가스)가 방출되지 않거나 긴급상황에만 사용한다.

기동버튼 누름 → 약제(가스) 방출

방출지연버튼 누름 → 일시정지

7. 초기소화 시 화원의 종류, 화세의 크기를 고려하여 화재를 진화해야 한다. 만약 실패하게 되면 대형화재로 이어져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초기소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각 자위소방대장 및 부대장에게 보고 후 피난에 집중해야 한다.

2.7 피난유도팀(대피유도반)

1. 피난유도팀의 주요업무 및 임무는 다음과 같다.

주요업무	임무
사전 피난준비	해당 대상물의 특성에 부합하는 피난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피난안내도를 비치한다. 이 경우, 피난약자의 현황 및 피난방법을 사전에 조사하여 피난계획에 반영한다.
피난유도	재실자 및 방문자들을 집결지 또는 피난안전구역(설치가 되어있는 경우에 한 함)으로 피난을 유도한다, 피난약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정된 피난보조대원이 피난을 보조하고 우선 피난할 수 있게 유도한다.
피난기구 관리	피난유도 시 대체 피난경로가 없을 경우 피난기구(완강기 등)를 사용하여 피난유도한다. 이를 위해 피난기구를 관리하고 사용방법을 숙지한다.

2. 피난유도팀은 화염 및 연기로부터 대상물의 거주자, 근무자 및 방문자를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유도)해야 한다. 또한 피난시간과 피난경로, 집결지를 사전에 고려하여 해당 대상물의 특성에 부합하는 피난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피난약자의 현황 및 피난방법 등을 조사하여 피난계획에 반영한다.

3. 피난기구 사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하향식 피난사다리

② 완강기

지지대를 벽면에 부착

완강기의 속도조절기의 연결부를
고리에 걸고 지지대와 연결 후 나사를 조임

창밖으로 줄을 놓고 벨트를 머리에서부터
뒤집어쓰고 뒤틀림이 없도록 겨드랑이 밑에 검

창밖으로 줄을 놓고 벨트를 머리에서부터
뒤집어쓰고 뒤틀림이 없도록 겨드랑이 밑에 검

고정링을 조절해 벨트를 가슴에 확실히 조임

지지대를 창밖으로 향하게 한 후 두 손으로
속도조절기 바로 밑의 로프 2개를 잡음

발부터 창밖으로 내밀고 두 손은 건물 외벽을
향해 뻗치고 두발을 뻗어 내려감

발부터 창밖으로 내밀고 두 손은 건물 외벽을
향해 뻗치고 두발을 뻗어 내려감

발부터 창밖으로 내밀고 두 손은 건물 외벽을
향해 뻗치고 두발을 뻗어 내려감

③ 구조대

구조대 활강포를 지상으로 천천히 내림

활강포 끝 부분에 부착된 후크를 말뚝에 끼운 다음

하부지지 로프를 이용해 팽팽하게 당겨 고정

입구틀을 세우고 구조대 본체의 볼트로 단단히 고정

탈출시 발을 지지대 판에 올린 후 한발씩 차례로
구조대 안에 넣어 양다리를 벌리고 하강

④ 승강식 피난기

화재 등 사고 발생시 피난자가 발판에
올라서서 기동스위치를 누르면

하강속도는 탑승자의 체중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아래층으로 내려감

피난자가 안전하게 지상으로 내리면
자동으로 발판이 다시 올라감

승강식 피난기의 최대 사용하중은 150Kg이며
어린이를 동반한 2인까지 탑승 가능

4. 방화셔터 종류별 대피방법은 다음과 같다.

2.8 응급구조팀(구조구급반)

1. 응급구조는 갑자기 발생한 응급환자에 대한 기본 응급조치를 수행하여 환자의 고통과 불안을 경감시키고 중증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환자유형별 골든타임 내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의사의 전문적인 치료를 받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2. 응급구조팀의 주요업무 및 임무는 다음과 같다.

주요업무	임무
응급조치	주요 응급상황(출혈, 화상, 골절, 심정지 등) 발생 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수행한다. 단, 사고현장이 안전하지 않을 경우 대피를 최우선으로 하고 추후 현장안전이 확보 된 상황에서 응급조치를 실시한다.
응급이송 및 응급의료소 설치·지원	응급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전문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또한,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 시 응급의료소 설치를 지원하고 치료에 필요한 물품들을 옮겨주는 등 응급처치 업무를 보조·수행할 수 있다.

3.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구호를 위하여 침착한 태도로 정확하고도 신속하게 전문 의료기관에 이송될 수 있도록 다음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① 긴박한 상황에서도 구조자는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한다. 응급환자 발생 시 현장에 있는 구조자는 지형, 환경, 주변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2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② 응급처치 시 사전에 보호자 또는 당사자의 이해와 동의를 얻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체의 접촉 등으로 인하여 법적 문제 발생 우려)

③ 당황하거나 흥분하지 말고 침착하게 사고의 정도와 환자의 모든 상태를 확인한다. 이때 환자에게 필요이상의 움직임을 금하고 안전을 유지한다.

④ 환자상태를 관찰하며 모든 손상을 발견하여 처치하되 불확실한 처치는 하지 않는다. 의식이 있으면 직접 환자와 대화하며 처치를 실시하고,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기도를 개방하고 똑바로 눕힌 상태에서 환자상태를 확인하며, 보호자나 목격자와의 대화를 통해 발생상황 및 환자상태를 추가적으로 확인한다.

4. 주요 응급상황별 응급조치방법은 다음과 같다.

주요 응급상황	응급조치방법
출혈	소독거즈로 출혈부위를 덮은 후 상처부위를 직접 압박(최후 수단 : 지혈대 사용)
화상	화상부위를 흐르는 찬물에 10분~15분 냉각하고 소독거즈로 화상부위를 덮음
골절	부목(나무판 등)을 사용하여 골절부위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
심폐소생술	가슴압박 30회, 기도유지 순서로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반복시행
자동심장충격기(AED)	전원켜기 -> 패드부착(2개) -> 심장리듬 분석 -> 심장충격 -> 심폐소생 순서로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반복시행 *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없는 심정지 환자에게만 사용

5. 환자별 응급처치 체계도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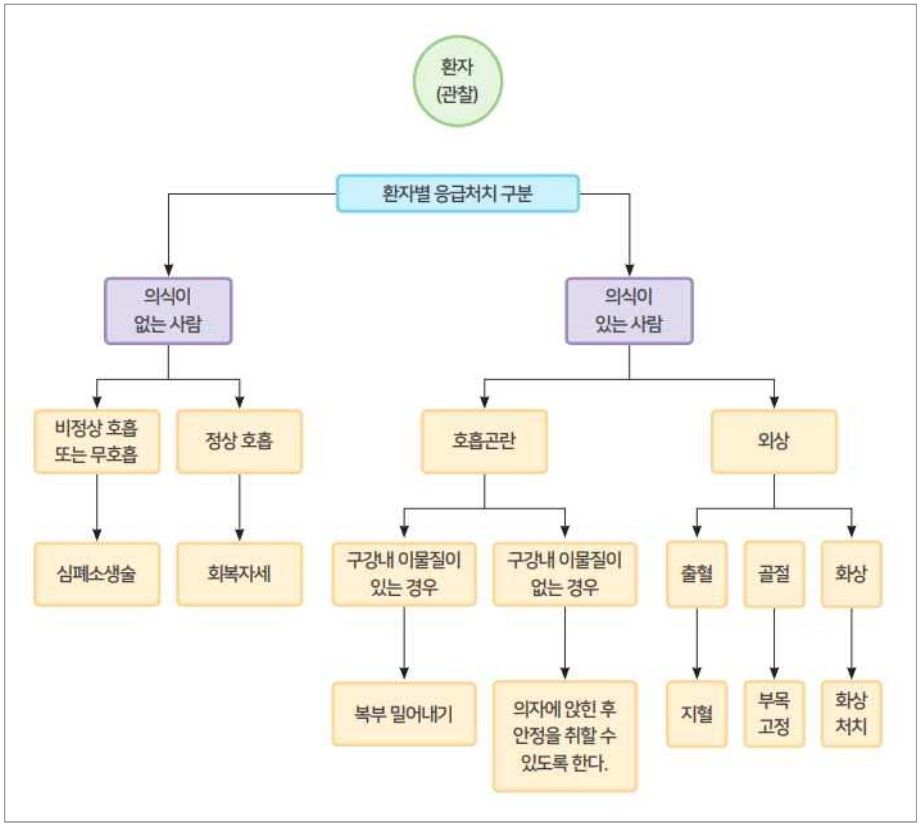

6. 환자를 이송할 경우에는 안전한 들것 등 적절한 이송수단을 선정해야 하며 현장상황 및 환자의 증상에 따라 최적·최단거리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이송해야한다. (들것 사용 시 환자를 끈 등으로 고정시켜 추락 예방)

7. 다수의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최초 현장정보(장소, 사고유형, 환자수 등)를 신속하게 전파하고 중증도 분류기준에 기초하여 환자를 분산·이송해야 한다.

긴급	**수분 혹은 단 시간 내에 즉각적인 응급처치와 이송이 필요한 환자** ▪ 기도폐쇄, 심한 호흡곤란 혹은 호흡정지 ▪ 심장마비의 순간이 인지된 심정지 ▪ 대량출혈 혹은 수축기 혈압이 80mmHg 이하의 쇼크 ▪ 개방성 흉부열상, 긴장성 기흉, 혼수상태의 중증 두부손상 ▪ 개방성 복부 열상, 골반골 골절을 동반한 복부손상 ▪ 기도화상을 동반한 중증의 화상, 경추손상이 의심되는 경우 ▪ 기타 환경응급 및 내과적 이상 등(저체온증, 지속적인 천식 또는 심장질환)
↓	
응급	**수 시간 이내에 응급처치를 시행하여야 하는 환자** ▪ 경추를 제외한 부위의 척추골절 ▪ 중증의 출혈, 다발성 골절, 중증의 화상 ▪ 의식의 저하
↓	
비응급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손상으로 보행 가능한 환자** ▪ 소량의 출혈, 경증의 열상 또는 단순 골절, 경증의 화상 또는 타박상
↓	
지연환자	**이미 사망하였거나 생존 가능성이 없는 환자** ▪ 두부 또는 체간의 절단, 20분 이상 호흡이나 맥박이 없는 환자 ▪ 시신의 부패, 사후강직 및 시반의 발생 ▪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8. 현장응급의료소는 요구조자의 구조가 수시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거나 이송자원의 상대적 부족으로 현장의 중환자 처치시간이 수십 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거나 다수사상자로 인해 환자의 분류 및 구정배정이 필요한 경우 설치한다.

9. 현장응급의료소는 화재 등으로부터 안전한 인근건물을 이용하거나 건물이 없는 경우에는 천막, 노천 활동을 시행할 수 있다. (건물 > 천막 > 노천)

10. 현장응급의료소 천막설치장소 선정 시에는 다음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① 응급구조팀의 안전이 확보된 곳이어야 한다.
② 구급차 동선과 구조되어 나오는 환자 동선이 교차하는 곳이어야 한다.
③ 화재, 화학재난 등의 경우 바람을 등지는 방향으로 설치해야 한다.
④ 우천시일 경우 배수가 잘되는 곳이어야 한다.
⑤ 전기, 수도가 가깝고 가능하면 그늘인 장소로 선택한다.

11. 현장응급의료소 운영체계는 다음과 같다.
① 환자 이송 : 대피소 또는 피해현장에서 현장응급의료소로 환자를 이송하거나 중증도 분류에 따라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현장응급의료소에서 후방의료시설로 환자를 이송 * 각 의료기관과 긴밀한 연락체계 유지 필수
② 중증도 분류 : 환자 중증도 분류를 담당하며 환자 상태에 따라 긴급, 응급, 비응급, 지연환자 4단계로 분류하고 환자의 가슴부위, 어깨 등 잘 보이거나 부상이 없는 곳에 분류표나 띠 스티커를 부착
③ 응급처치 : 부착된 중증도 분류표나 띠 스티커를 확인하고 긴급,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이후 비응급, 지연환자에 대해서도 필요시 응급처치를 시행

현장응급의료소 운영체계

2.9 방호안전팀

1. 건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 중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은 일정 구역마다 방화구획을 하도록 되어있다. 방화구획은 바닥 및 벽은 내화구조, 문은 60분+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으로 언제나 닫힌 상태로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서 화재 발생 시 화염 및 열, 연기의 유동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방화구획 설치기준]

구획의 종류	구획단위	구획구분의 구조
면적별 구획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000㎡ 이내마다 구획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내장재가 불연재인 경우 500㎡) 이내마다 구획 ※ 스프링클러설비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상기 면적의 3배 이내마다 구획	1. 내화구조의 바닥, 벽 2. 60분+ 방화문·60분 방화문 3. 자동방화셔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
층별 구획	매층마다 구획(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 제외)	
용도별 구획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대상부분과 기타부분 사이의 구획	

[방화문 및 방화셔터 정의]

구분	정의
60분+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이고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방화문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방화셔터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화재 시 연기 및 열을 감지하여 자동 폐쇄되는 셔터

2. 방호안전팀은 화재 시 건축물 방화구획이 면적별, 층별, 용도별로 제대로 형성되는지 확인하고 만약 방화구획 형성을 실패했을 경우 수동기동장치를 활용하여 수동으로 조작하여야 한다. 또한 위험물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면 긴급차단밸브를 작동시키거나 가스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면 가스차단밸브를 수동으로 차단하는 등 2차적인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3. 방호안전팀의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주요업무		임무
화재 확산 방지	방화구획 관리	화재 시 열, 연기 확산방지를 위해 자동으로 화재구역 및 인근구역의 방화문, 방화셔터가 폐쇄되고 방화구획을 형성하는지 확인한다. 만약 방화구획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수동기동장치를 활용하여 수동으로 조작한다.
	자동제어 시스템 통제	자동제어시스템이 설치된 경우 승강기, 공기조화설비, 비상발전기 등 필요한 설비의 자동제어를 유지·관리하며 필요 시 수동으로 통제한다. 그 밖에 전기, 가스, 위험물질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제거, 이동하거나 차단한다.
비상반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비상반출물품(중요문서, 데이터 등)을 사전에 지정하고 반출계획을 수립한다, 반출계획에는 비상반출 후 임시보관장소, 시건장비 개방계획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4. 방화셔터 수동기동장치(연동제어기) 수동조작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방화셔터가 설치되어 있는 주변 벽면을 확인하여 수동기동장치를 찾는다.

② 수동기동장치의 기동버튼을 강하게 누른다.

방화셔터 수동기동장치(연동제어기) 수동조작방법

방화셔터 수동기동 모습

5. 가스차단밸브 수동폐쇄 및 누전차단기 수동차단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가스차단밸브 수동폐쇄 : 메인 가스차단밸브의 위치를 확인하고 닫는다.

② 누전차단기 수동차단방법 : 분전반 내 누전차단기 위치를 확인하고 내린다.

가스차단밸브 수동폐쇄방법

전기시설 분전반 누전차단기 수동차단방법

2.10 초기대응체계

1. 초기대응체계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이용시간 동안 상시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주요업무는 '화재사실 전파 및 신고(1순위) → 초기소화(2순위) → 피난유도(3순위)'를 기본으로 수행한다.

2. 화재사실 전파 및 신고(1순위)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건물 내 화재전파 : 화재감지기가 동작되기 전 화재를 인지할 경우 발신기를 눌러 화재사실을 알린다. 이 경우, 육성으로 "불이야"라고 큰소리로 함께 외치며 주변 소리 날 수 있는 물건을 모두 두들겨서 모두에게 알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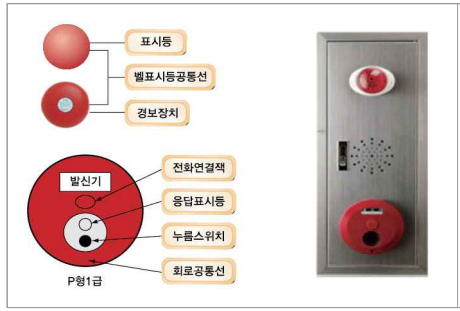

P형 1급 발신기

옥내소화전 함 발신기(비상벨)

② 119 신고 : 국번없이 119로 전화하여 신고하거나 119다매체신고서비스(문자, 영상통화, 앱 등)을 활용하여 신고가 가능하다.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신고하되 언제(When), 어디서(Where), 무슨(What) 일이 발생했는지, 어떻게(How) 되었는지는 반드시 알려준다. 이후 보충적인 답변으로는 누가(Who), 왜(Why)를 통해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예시) 지금 여기 노원구 상계00아파트 1000동 앞 베란다 방향인데(어디서), 203호 베란다 밖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꽃이 보이면서 펑펑 소리가 나요.(무엇을) (추가답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실외기 과열 같기도 한데 잘은 모르겠고(Why), 내부에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경비아저씨가(Who) 203호에 연락을 하는 중인가 봐요.(How)

③ 지휘통제팀 보고 : 지휘통제팀이 신속하게 자위소방대를 소집·운영하고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전화 등을 활용하여 사고 상황정보를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한다.

3. 초기소화(2순위) 방법은 다음과 같다.

4. 피난유도(3순위)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담당구역 별로 양방향 피난유도하며 자력대피 불가능자 및 잔류자를 확인한다.

② 연소실, 화재층, 직상층 등 위험이 예상되는 층 순으로 재실자의 피난을 유도한다.

③ 육성 또는 확성기로 계단을 통한 피난안전구역 또는 지상층으로 피난을 유도한다. 피난장소는 원칙적으로 지상층이지만 상황에 따라 옥상으로 대피가 가능하다.

④ 거동불가능자 및 피난약자 등 피난층까지의 피난이 어려운 경우 피난안전구역을 활용하여 구조를 위한 대기 장소로 활용하며, 재탈출을 위한 휴식공간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⑤ 방화문 입구 등 병목현상에 의한 피난지연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통제인원을 배치하고 잔류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방화문을 반드시 폐쇄한다.

2.11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교육 · 훈련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연 1회 이상 자위소방대를 소집하여 그 편성 상태 및 초기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편성된 근무자에 대한 소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초기대응체계에 편성된 근무자 등에 대해서는 화재 발생 초기대응에 필요한 기본 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소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에 대한 소방교육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6조(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에 대한 소방교육을 실시하였을 때는 그 실시 결과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의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교육·훈련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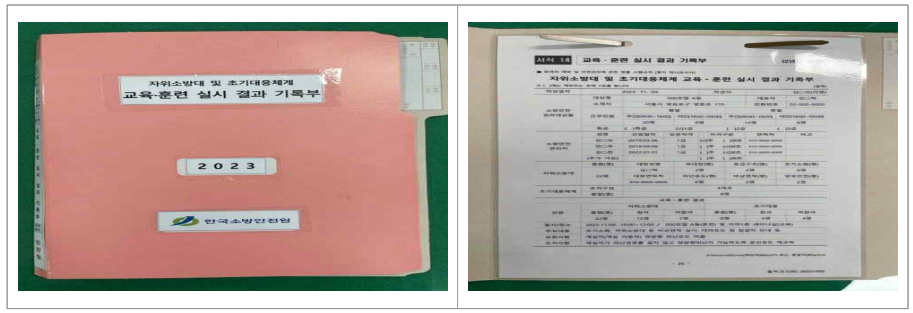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교육·훈련 실시결과기록부 보관(예시)

4. 소방청장은 자위소방대의 구성·운영 및 교육, 초기대응체계의 편성·운영 등에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으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해당 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제3장 피난계획

3.1 일반현황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시행 및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피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피난계획”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 또는 출입하는 사람들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피난은 화재 등으로 인한 재난 발생 시 보다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행위로 화염 및 연기로부터 대상물의 거주자, 근무자 및 방문자를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유도)하기 위해 건물에 설치되어있는 피난시설, 피난구조설비, 방화시설 등을 파악해야 한다. 또한 피난시간과 피난경로, 집결지를 사전에 고려하여 해당 대상물의 특성에 부합하는 피난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기 위해 건물에 화재 시 화재경보방식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피난계획은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규모, 용도, 수용인원 및 근무·거주자 및 방문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4. 피난계획 수립 시 아래의 일반적인 원칙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① 피난경로는 간단명료하게 한다. (피난 경로는 가능한 한 짧게한다)
② 피난설비는 고정식 설비를 위주로 설치한다.
③ 피난수단은 원시적 방법에 의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2방향의 피난통로를 확보한다.
⑤ 피난통로를 완전 불연화한다.
⑥ 화재 층의 피난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⑦ 피난시설 중 피난경로는 복도 및 거실을 가리킨다.
⑧ 인간의 본능적 행동을 무시하지 않도록 고려한다.
⑨ 계단은 직통계단으로 할 것
⑩ 피난설비는 Fool proof 와 Fail safe의 원칙을 중시한다.

구분	정의
Fool proof	비상사태 대비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화재는 재해와 같은 비상사태에서 정신이 혼란하게 되고 판단능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피난 대책은 누구나 알아보기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것
Fail safe	이중 안전장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의 수단이 고장이 생겼을 때 2차적 수단에 의하여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5. 화재경보방식 중 전층경보와 우선경보는 아래와 같다.

구분	경보방식		대상
2023.2.10. 이전 허가 건축물	전층경보	화재발생 시 주·지구경종, 시각경보장치가 전층에서 경보한다.	우선경보 이외 건축물
	우선경보	화재발생 시 주·지구경종, 시각경보장치가 발화층+직상 1개층에서 경보한다.	5층 이상(지하층 제외), 연면적 3,000㎡ 초과 건축물
		화재발생 시 주·지구경종, 시각경보장치가 발화층+직상 4개층에서 경보한다.	30층 이상(지하층 제외) 건축물
2023.2.10. 이후 허가 건축물	전층경보	화재발생 시 주·지구경종, 시각경보장치가 전층에서 경보한다.	우선경보 이외 건축물
	우선경보	화재발생 시 주·지구경종, 시각경보장치가 발화층+직상 4개층에서 경보한다.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 건축물

6.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의거하여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① 연 2회 피난안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② 분기별 1회 이상 피난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방법
③ 피난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는 방법
④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 시청이 용이한 장소에 피난안내영상을 제공하는 방법

① 피난안내 교육 실시 예시

② 피난안내방송 실시 예시	③ 피난안내도 게시 예시

④ 피난안내영상 제공 예시	

7. 피난계획 수립 시 해당 건물의 피난시설, 피난구조설비, 방화구획 등 현황을 조사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8. 계단은 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으로 구분되며, 특징은 아래와 같다.

계단구분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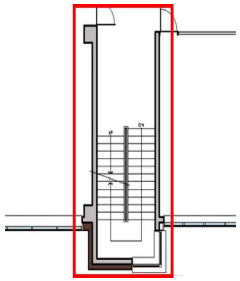	각 층에서 계단으로 가는데 계단실 앞 출입문이 없음
직통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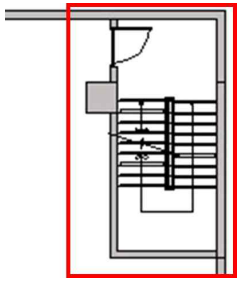	각 층에서 계단으로 가는데 계단실 앞 출입문이 1개 있음
피난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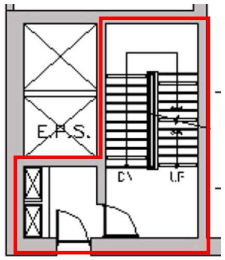	각 층에서 계단으로 가는데 계단실 앞 출입문이 2개 있음
특별피난계단	

9. 해당 필지에 다수의 건물군이 있을 경우 건물별로 피난시설 및 기타시설 일반현황을 작성하여 건물별 시설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3.2 인원현황

1. 해당 건물의 규모, 용도,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근무자·거주자 및 방문자를 구분해서 인원을 파악하고, 이 중 피난약자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2. 피난약자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를 말하며 피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반드시 피난약자에 대한 현황을 사전에 조사하고 피난 시 피난보조를 해야 한다.

3. 동, 층 등 구역을 구분하여 해당 구역의 면적과 상시인원을 파악하여야 한다. 구역별 면적은 건축물 대장을 참고하고, 해당 건물의 연명부를 통해 구역별 피난인원을 산정해야 한다.

4.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의 경우 시설이용자가 수시로 변경되는 일이 많이 발생하므로 인원파악 시 최대수용인원을 기준으로 파악하는 것이 좋다.

5.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등 불특정 다수인들이 방문이 많은 건물은 최대수용인원 또는 관람석의 의자 개수 등으로 방문객인원을 파악한다.

6. 해당 필지에 다수의 건물군이 있을 경우 건물별로 피난시설 및 기타시설 일반현황을 작성하여 건물별 인원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3.3 피난경로 및 집결지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피난유도 안내정보 제공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연 2회 피난안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 분기별 1회 이상 피난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방법
- 피난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는 방법
-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 시청이 용이한 지역에 피난안내영상을 제공하는 방법

2. 피난안내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
-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 피난관련 시설의 위치 및 대처방법

3. 표준 피난안내도는 관계자가 쉽고 통일성 있게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표준 피난안내도 작성기준 및 예시는 아래와 같다.
- 표준피난안내도 작성기준

표준피난안내도 작성기준		
공통 작성요령		피난안내도는 계단, 비상구, 피난동선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고 명확하게 작성한다. 피난안내도는 충분한 가시성과 가독성이 있어야 한다.
설치위치		피난안내도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쉽게 접근하여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다중이용업소는 관련법에 따름.
내용 및 표시		'화재 시 피난요령' 및 '소화기 사용요령'은 적절한 외국어를 병기하여 사용한다. 비상구 표시는 계단입구 또는 주출입구 및 비상구에 표시한다. 피난동선은 밝은 녹색으로 명확하게 표시하며 현재 위치를 중심으로 양방향 또는 가장 가까운 피난경로를 작성한다.
규격	크기	A3(420x297mm)이상의 크기로 하며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바닥면적이 각각 400m^2 미만인 경우 B4(364x257mm)이상의 크기로 할 수 있다.
	재질	코팅처리한 종이, 아크릴, 강판 등 쉽게 훼손 또는 변형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구성틀	피난안내도의 제목은 상단부 좌측에, 건물명(업체명)과 층수는 상단부 우측에 표기한다. '화재 시 피난요령'과 '소화기 사용요령'은 픽토그램과 함께 중앙부 좌측에 표기하며 그 범위가 가로 폭 대비 25%이상을 넘어가지 않도록 작성한다.

	글씨체	- 국문 타이틀 : 굵은 고딕체 46포인트 이상(흰색) - 영문 타이틀 : 굵은 고딕체 18포인트 이상(흰색) - 건물명과 층수 : 굵은 고딕체 또는 로고 사용(흰색) - 소제목 : 굵은 고딕체 13포인트 이상(적색) - 본문 : 고딕체 13포인트 이상(검정색)
	바탕색	전체 바탕색은 노랑색(Y100) 또는 흰색으로 하되 상단의 띠는 적색(C6 M100 Y100)으로 한다.

- 표준 피난안내도 예시(범례)

4. 화재 시 근무자·거주자 및 방문자를 안전구역 또는 집결지로 피난을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피난경로를 사전에 설정하고 피난훈련을 통해 대비해야 한다.
- 양방향 피난로의 설정 : 2개소 이상의 계단이 구성된 경우 각각 피난로를 설정한다.
-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된 대상물은 피난경로 설정 시 피난안전구역을 활용할 수 있다. 피난안전구역으로 1차 대피유도하고 피난 및 구조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피난을 유도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옥상피난 : 옥상 피난 전 옥상문 개방여부, 자동개폐장치 및 헬리포트 설치와 운영방법을 결정한다.

5. 대상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난경로를 설정하여야 하며, 특히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 평면형식을 고려하여야 한다.
- 계단식 아파트는 우리나라 전체 아파트 중 약 8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많다. 엘리베이터와 계단이 공용공간에 같이 존재하는 형태로써 계단은 직통계단 또는 피난계단으로 되어있다. 직통계단의 경우 연기가 화재실로부터 누출 시 계단실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 될 위험이 있으며, 방화문이 설치된 피난계단도 방화문을 개방상태로 관리할 경우 직통계단과 마찬가지로 연기 및 유독가스가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어 반드시 방화문을 폐쇄상태로 유지관리해야 한다.
- 복도식 아파트는 갓(편)복도형, 중복도형, 집중형으로 구분된다. 갓(편)복도형 아파트는 복도가 외기가 통할 수 있게 개방되어있어 피난 시 연기 흡입에 대한 위험이 낮고, 중복도형 및 집중형은 외기가 통할 수 없는 폐쇄형으로 화재방생에 따른 연기가 계단을 통해 상부 층으로 확산되면서 피난 시 연기 흡입으로 호흡이 곤란할 수 있다.

홀형(계단실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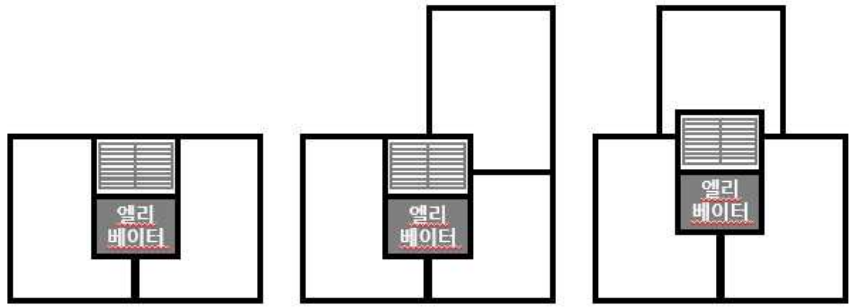		
I 형	L 형	T 형

갓(편)복도형

중복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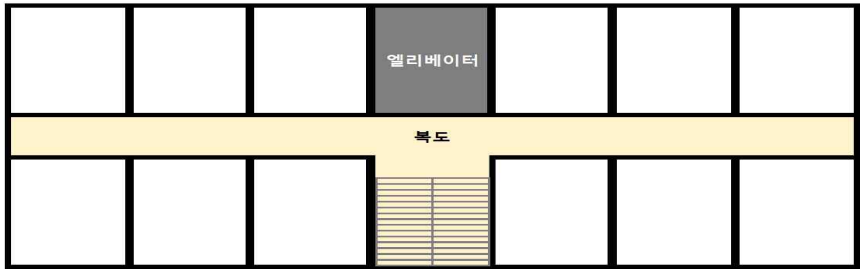

집중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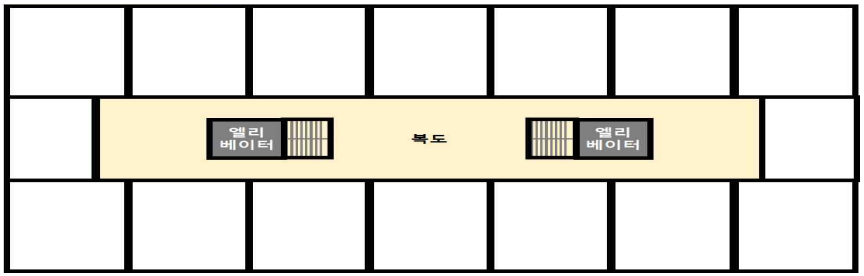

6. 1992년~2005년 사이에 승인받은 아파트의 발코니에는 경략 칸막이가 설치되어있어 현관으로 대피가 불가능 할 경우 발코니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를 통해 옆 세대로 대피가 가능하며, 2005년 12월 건축법 재개정에 따라 발코니를 침실, 거실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규제가 완화되면서 경량칸막이 대신 화재대피 공간이 설치가 되어있는 경우가 많아 화재 시 현관문으로 피난이 불가능

할 때에 화재대피공간에서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만약 발코니를 확장한 세대는 발코니 끝단에 스팬드럴 기능이 없어 화재 시 아래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상부로 연소 확대가 용이하기 때문에 세대 내에서 대피 시 위험할 수 있다.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하향식 피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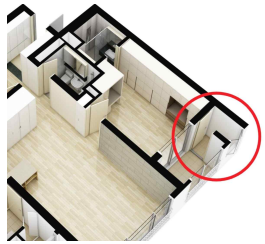	
옆세대와 맞닿은 발코니 벽을 두드렸을 때 '통통'하는 가벼운 소리가 나는 곳이 경량칸막이이며 이곳을 발로 차서 파괴하여 옆세대로 피난할 수 있다.	대피공간은 아파트 세대 내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방화구획 되어 있어 열·연기를 일정 시간 막을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 이곳에서 소방대의 구조 시 까지 피난한다.	하향식 피난구에 설치된 내림식 사다리를 이용하여 아래층으로 피난한다.

7. 공연장, 집회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장소는 피난경로 설정 시 각 실별, 위치별로 병목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난경로를 설정해야 한다.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건물 내부의 특성을 모르기 때문에 피난경로 설정 시 효율적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대체경로를 포함하여 설정해야 한다.

8. 집결지를 설정하여 피난중인 사람들을 집결장소로 최종 유도해야한다. 대상물의 특성상 집결지가 멀리 떨어져 있다면 제1집결지(건물 앞 공터 등)에서 피난중인 사람들을 제2집결지(최종 집결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한다.
   - 피난을 완료한 재실자 등이 다시 대상물로 재진입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집결지에 집결한 인원에 대해 부상자 및 실종자 현황을 파악하며, 습득한 화재 및 피해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3.4 피난유도

1. 화재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피난유도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방법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 일제피난 : 화재 발생 시 화재경보에 따라 계단을 이용하여 피난실시
- 재배치 : 일제피난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수평적, 수직적 재배치를 통해 화재발생구역으로부터 부분적으로 피난실시

상황별 피난전략	
일제피난 (Total Evacuation)	▪화재경보 → 계단 → 집결지(피난층) 피난
재배치 (Relocation)	▪수평적 재배치(층↔층) or 수직적 재배치(화재발생구역하층)를 통한 부분적 피난 실시 * 피난안전구역/대피지역 등으로 이동 후 구조대기

2. 화재발생 시 인간의 피난 특성 및 본능
- 귀소본능 : 친숙한 피난 경로를 선택하려는 행동 및 무의식중에 평상시 사용하는 출입구나 통로를 사용하려는 행동
- 지광본능 : 밝은(빛) 쪽을 지향하는 행동 및 화재의 공포감으로 인하여 빛을 따라 가려는 행동
- 퇴피본능 : 화염, 연기에 대한 공포감으로 화원 및 연기가 발생한 반대방향으로 이동하려는 행동
- 추종본능 : 많은 사람이 이동하는 방향으로 따라가려는 행동 및 화재 시 최초로 행동을 개시한 사람을 따라 전체가 움직이려는 행동
- 좌회본능 : 왼쪽으로 통행하고 시계반대방향으로 회전하려는 행동

3. 화재 시 일반적 피난행동
-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않도록 하며 계단을 이용해 옥외로 대피한다.
-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한다.
- 아파트의 경우 세대 밖으로 나가기 어려울 경우 세대 사이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를 통해 옆세대로 대피하거나 세대 내 대피공간으로 대피한다.
- 유도등, 유도표지를 따라 대피한다.
- 연기 발생 시 최대한 낮은 자세로 이동하고, 코와 입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아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한다.

- 옷에 불이 붙었을 대에는 눈과 입을 가리고 바닥에서 뒹군다.
- 탈출한 경우에는 절대로 다시 화재 건물로 들어가지 않는다.

4. 안전한 피난을 위해 화재 시 즉각적인 피난 개시 및 피난계획에 따른 양방향 피난(Two-way out)과 피난 시 주요 금지행위 공지, 피난약자에 대한 피난보조, 안전한 집결 장소로 집결 및 피해현황 파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피난유도 계획을 세워야 한다.

5. 구부러진 모퉁이, 양방향길 등 피난경로의 주요 부분에서 혼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내하기 위해 피난유도자 배치를 고려해야 한다. 피난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정된 피난보조자를 배치치하여야 하며, 피난보조자 부재 시 현장에서 피난보조자를 지정하여 원활한 피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교대근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물은 피난유도계획 수립 시 특정인을 지칭하여 피난유도자를 지정하면 화재 시 원활한 피난유도 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해당 조, 팀, 과 별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구분	유도자 지정 예시			
피난유도자	A조	1층 심0보	2층 김0혁	3층 김0현
	B조	1층 임0우	2층 김0영	3층 구0모
	C조	1층 김0찬	2층 문0희	3층 홍0훈

7. 피난약자의 경우 혼자서 피난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피난약자 유형별 지원계획을 별도로 세워야 한다.

피난약자 유형별 지원계획					
대상 \ 지원		화재인식	피난준비	피난개시	피난종료
노인·임산부		비상방송(경종)	· 피난안내도 확인 · 피난보조자 배치 (대상별 1인 이상 배치)	· 자력대피(가능자) · 피난보조자 동반 이동 (피난층/옥상/피난안전구역)	집결지 이동
영유아·어린이		비상방송(경종)	· 피난유도원 배치 · 피난보조자 배치 (영유아 2인 별 1인 이상 배치)	· 자력대피(피난유도원 안내) · 피난보조자 동반 이동 (피난층/옥상/피난안전구역)	
장애인	이동·시각	비상방송(경종)	· 피난보조자 배치 (대상별 2인 이상 배치) · 피난보조기구 준비	· 피난보조자 동반 이동 (피난층/옥상/피난안전구역)	집결지 이동
	청각	피난보조자 배치	· 피난안내도 확인 · 피난보조자 배치 (대상별 1인 이상 배치)	· 자력대피(가능자) · 피난보조자 동반 이동 (피난층/옥상/피난안전구역)	
	언어·인지	비상방송(경보)			

8. 화재발생 시 현장은 아비규환사태로 피난중인 사람이 피난유도자를 구분하여 안내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피난유도 시 효과적인 안내를 위해 피난유도장비 등을 구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구비된 피난유도장비 등이 보관되고 있는 장소와 수량, 장비의 사진, 사용방법 등을 작성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번호	동별	층별	기구 및 장비 명칭	보관장소	수량
1	A동	지하1층	경광봉	지하1층 방재실 1번 캐비닛	24개
사용방법					
피난유도 시 경광봉을 사용하여 재실자 및 거주자가 피난경로를 알기 쉽도록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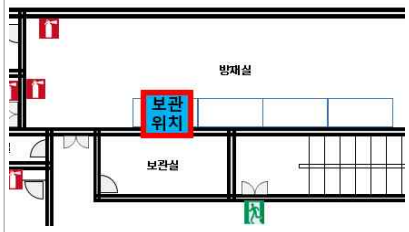	

번호	동별	층별	기구 및 장비 명칭	보관장소	수량
2	A동	지하1층	호루라기	지하1층 방재실 1번 캐비닛	40개
사용방법					
피난유도 시 호루라기를 사용하여 재실자 및 거주자에게 피난유도를 용이하게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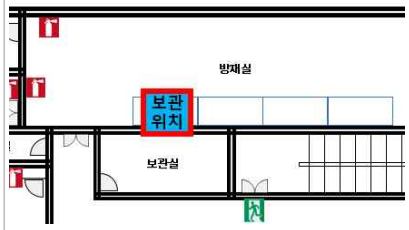	

번호	동별	층별	기구 및 장비 명칭	보관장소	수량
3	A동	각 층	공기호흡기	각 층 서쪽	층별 2개
사용방법					
화재 시 연기로 인해 호흡이 곤란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할 때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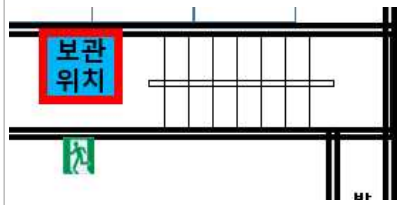	

번호	동별	층별	기구 및 장비 명칭	보관장소	수량
4	A동	각 층	들것	D구역앞 및 사무실 앞	층별 2개
사용방법					
피난 시 거동불능 환자를 들것에 눕혀 2인 1조로 피난약자 대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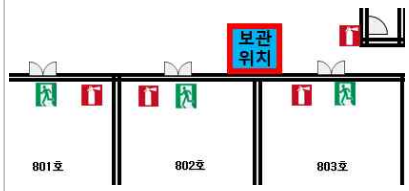	

9.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2.1.2 에 의거하여 일반적인 건물의 경우 3층 ~ 10층에는 피난기구가 설치되어 있고, 위락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운동시설·판매시설로 사용되는 층 또는 복합용도의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800㎡마다 1개 이상 설치되어있다.

10.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2.1.1.1 에 의거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되어있다.

특정소방대상물	인명구조기구	설치수량
1.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및 5층 이상인 병원	방열복 또는 방화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각 2개 이상 비치할 것. 다만, 병원의 경우에는 인공소생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3.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4.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5. 지하가 중 지하상가	공기호흡기	층마다 2개 이상 비치할 것. 다만, 각 층마다 갖추어두어야 할 공기호흡기 중 일부를 직원이 상주하는 인근 사무실에 갖추어 둘 수 있다.
6.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출입구 외부 인근에 1개 이상 비치할 것

11.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2.1.2.3 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중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공기안전매트가 대부분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피난경로가 화재로인해 다 막혔을 경우 하나의 경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피난교육·훈련 시 사용방법 숙지와 평상시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3.5 피난약자

1. 피난계획 수립 시 피난약자의 유형별 현황 및 근무·거주 및 방문자의 위치 등을 파악해야 한다. 피난약자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를 말하며 피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반드시 피난약자에 대한 현황을 사전에 조사하고 피난 시 사전에 지정된 피난약자가 피난보조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2. 피난약자는 자력피난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난을 보조하는 피난보조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화재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평피난 후 수직피난을 실시하거나 화염 및 연기로부터 안전한 장소에서 긴급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3. 피난약자 중 장애인의 경우에 장애유형에 따라 피난보조방법을 숙지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장애인주거시설 안전 및 피난 매뉴얼」을 참고하여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 장애유형별 피난보조방법은 아래와 같다.

① 지체장애인 :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피난을 보조하고 장애 정도에 따라 보조기구를 적극 활용하며 계단 및 경사로에서의 균형에 주의를 요한다.

- 소아 및 장애인의 몸무게가 보조자에 비해 가벼울 때 : 장애 정도에 따라 업거나 한 손은 다리를 다른 한 손은 등을 받치고 안아 이동한다.
- 장애인의 몸무게가 보조자에 비해 비슷하거나 무거울 때 앉은 자세에서 장애인 옆에 위치하여 팔을 어깨에 걸쳐 부축하거나, 2인이 장애인 등 뒤로 팔목을 맞잡고 다른 한 손은 무릎 뒤쪽으로 하여 손을 잡은 후 서로 기대어 장애인을 고정시키고 셋을 센 후 일어나 들어서 대피한다. 여건에 따라 들것이나 담요의 활용도 효과적이다.
- 휠체어사용자 : 평지보다 계단에서 주의가 필요하며, 많은 사람들이 보조할수록 상대적으로 쉬운 대피가 가능하다. 일반 휠체어의 경우 뒤쪽으로 기울여 손잡이를 잡고 뒷바퀴보다 한 계단 아래에서 무게중심을 잡고 이동한다. 2인이 보조 시 다른 1인은 장애인을 마주보며 손잡이를 잡고 동일한 방법으로 이동한다. 전동 휠체어사용자의 경우 전동휠체어에 탑승한 상태에서 계단 이동 시는 일반 휠체어와 동일한 요령으로 보조할 수도 있으나 무거

워 많은 인원과 공간이 필요하므로 전원을 끈 후 업거나 안아서 피난을 보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② 청각장애인 : 시각적인 전달을 위해 표정이나 제스처를 사용하고 조명(손전등 및 전등)을 적극 활용하며 메모를 이용한 대화도 효과적이다.

③ 시각장애인 : 평상시와 같이 지팡이를 이용하여 피난토록 한다. 피난보조자는 팔과 어깨에 살며시 기대도록 하여 안내하며 계단, 장애물 등을 미리 알려준다. 피난유도 시 여기, 저기 등 애매한 표현보다는 좌측 1m, 왼쪽 2m 같이 명확하게 표현하고 여러 명의 시각장애인이 동시 대피하는 경우 서로 손을 잡고 질서 있게 피난토록 한다.

④ 지적장애인 : 공황상태에 빠질 수 있으므로 차분하고 느린 어조로 도움을 주러 왔음을 밝히고 피난을 보조한다. 특히, 인격을 고려한 친절한 말투 사용이 요구된다.

⑤ 노약자 : 장애인에 준하여 피난보조를 실시한다. 노인은 지병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조대가 알기 쉽게 지병을 표시하고, 인솔자나 보조자 외 어린이의 경우 성장이 빠른 1인, 기타는 장애정도가 적은 1인의 유도자를 지정하여 줄서서 피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환자 및 임산부는 상태를 쉽게 알 수 있는 표식을 부착하는 등 배려한다. 특히 병원의 경우 환자 상태에 따른 의료진의 피난보조 능력에 따라 인명피해의 규모가 좌우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소방교육 및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장애유형	피난보조방법
지체장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2인 1조로 피난유도 한다. (보조기구 적극 활용)
청각장애	시각적인 전달을 위해 표정이나 제스처 등을 적극 활용하여 피난유도 한다.
시각장애	팔과 어깨로 감싸 안고 계단, 장애물 등을 미리 알려주며 피난유도 한다.
지적장애	패닉방지를 위해 차분한 어조로 도움을 주러왔음을 알리고 피난유도 한다.

4.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의 경우 입원환자 및 노약자들이 많기 때문에 피난유도 시 구부러진 모퉁이, 양방향길 등 피난경로의 주요 부분에서 혼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환자유형에 따른 피난방법 및 피난보조 시 필요한 사

항에 대해 사전검토하고 피난 보조를 위한 임무를 부여해야한다. 또한 입원환자의 신속한 피난을 위해 병동 또는 환자별 피난보조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권장한다.

5. 특히 의료시설의 경우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과 같은 의식이 없거나 장비가 필요한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밀한 피난보조방법 및 피난보조자 지정이 중요하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배부한 화재 등 안전관리 매뉴얼과 인증평가 관련 기준인 자체 화재 안전관리 계획을 토대로 피난약자 피난계획을 세워야 한다.

6. 외국인 또한 언어소통이 불가능한 사람이 많으며, 화재발생에 따른 건물 내 피난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피난계획 시 피난약자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피난보조계획을 세워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 출입국 사무소에 등록 외국인은 (2022년 기준) 약 1,189,585명으로 전국 각 지역에 분산되어 있으며,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 제조업(약 187,266명)으로 공업시설에 많이 근무 중이다.

7. 초등학교는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등·하교 하는 시설로써 피난약자로 구분하여 피난보조 계획을 수립하되, 수립 시 저학년, 고학년을 구분하여 피난보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8. 2021년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전국에 특수학교는 182개소이며, 일반학교 중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8,729개소, 12,042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피난약자 현황 및 피난계획 작성 시 피난약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피난약자 피난계획 예시		
피난약자 구분	피난방법	유의사항
수술 중 환자	1. 의료진을 포함한 대피유도반이 함께 환자 대피 2. 수술 중 상처 봉합 또는 wrapping이 가능환자는 집도의 판단으로 수술정리 및 장비상태 확인하여 베드 및 장비 이동 3. 마취통증의학과는 ambu bag 등 장비 및 필요 약물 확인 후 준비 4. 수술실 간호사는 마취를 위한 infusion pump 등 장비 및 필요 약물 확인과 수술 종료에 필요한 물품 준비	집도의 판단에 따라 대피유도. 수술도구 등이 contamination 되지 않게 주의
중환자	1. 인공호흡기 등 장비가 없는 환자는 전공의 및 당직의료진이 동행하여 베드를 밀어 대피 2. 분리가 가능한 장비보유 환자(ventilator 등) 및 장비와 함께 대피가 필요한 환자(ECMO 등)는 전문인력(전공의, 당직의료진, 환자이송반 등)이 동행하여 환자의 상태 등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대피 3. 대피 시 2인1조 또는 3인1조로 대피	전공의 판단에 따라 환자 상태에 따른 필요장비를 준비
입원환자	1.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 및 어린이는 의료진을 포함 2인1조 또는 3인1조로 등에 업거나 병식 복도에 설치된 들것을 이용하여 계단을 통해 대피(수액라인과 배액라인은 정리하여 손으로 들거나 들것 위에 올려놓고 이동) 2. 부축이 필요한 환자는 보호자가 있을 경우 보호자의 도움을 받고, 보호자가 없는 경우 피난보조자 및 거동이 가능한 환자, 방문객의 도움을 받아 대피 3. 거동가능 환자는 피난유도반의 안내에 따라 대피	피난보조자 부족 시 현장에서 보호자 등에게 요청하여 피난보조하여야 함
외래환자	1. 부축이 필요한 환자는 보호자가 있을 경우 보호자의 도움을 받고, 보호자가 없는 경우 피난보조자 및 거동이 가능한 환자, 방문객의 도움을 받아 대피 2. 거동가능 환자는 피난유도반의 안내에 따라 대피	피난보조자 부족 시 현장에서 보호자 등에게 요청하여 피난보조하여야 함

피난약자 피난계획 예시		
피난약자 구분	피난방법	유의사항
노인	1. 1인 1조 또는 2인 1조로 피난약자 옆에서 보행을 도와주며 피난보조 2. 보호자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함께 보조 3. 긴급하게 피난이 필요할 때는 2인 1조로 안아서 이동 4. 특별피단계단으로 대피가 불가능할 경우 서쪽 복도 끝에 있는 완강기 또는 각 객실에 있는 간이완강기를 이용하여 피난 5. 지병이 있는 경우 피난완료 후 쉽게 알 수 있도록 지병을 표시(손등 등)	계단 등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어린이	1.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함께 보조하며 피난보조 2. 행사 등 여러명의 아이들이 있는 경우 한줄 서기로 맨 앞에 가장 나이가 많은 어린이를 두고 앞사람을 따라 대피유도하며, 피난보조자는 맨 뒤에서 뒤처지는 어린이가 없는지 유의하며 대피 3. 거동이 어려운 어린이의 경우 안거나 업어서 이동	한줄 서기로 대피유도 시 특별피난계단으로 첫 번째 어린이를 안내 후 맨 뒤로 이동
영유아	1. 보호자가 안아서 피난하는 것을 보조 2. 다자녀 가족인 경우 피난보조자가 영유아를 안아서 피난보조 3. 이동 중 연기를 흡입할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되었다면 피난완료 후 신속하게 병원 후송	안아서 이동할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연기흡입 우려가 있음
임산부	1.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함께 보조하며 피난보조 2. 만삭의 산모의 경우 2인 1조로 안아서 이동 3. 피난완료 후 산모의 상태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병원 후송	피난보조 시 산모의 호흡이 가빠질 수 있으므로 상태를 수시로 확인
장애인	1. 장애유형별 피난보조실시 - 지체장애인 : 2인 1조로 안거나 업어서 피난 - 청각장애인 : 표정, 제스처, 손전등을 통해 의사표현, 스마트폰의 문자 기능으로 메모를 통한 의사소통 - 시각장애인 : 지팡이를 이용해 피난하는 것을 옆에서 보조 - 지적장애인 : 보호자나 담당자가 도와주는 것을 옆에서 보조	보호자에게 장애유형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피난보조
외국인	1. 경광봉, 호루라기 등을 사용하여 피난방향을 안내 2. 언어소통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제스처 등을 사용하여 안내	번역 어플을 사용하여 언어소통 가능

3.6 피난훈련 및 교육

1. 피난계획에 따른 정상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피난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피난훈련 및 교육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른 근무자등에 대한 소방훈련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소방훈련과 교육(실습과 이론)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구분		정의
실습	기본훈련	자위소방대와 초기대응체계 또는 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
	부분(기능)훈련	자위소방대와 초기대응체계의 편성상태 및 편성된 팀별 기능에 기초한 임무수행 훈련
	종합훈련	자위소방대와 초기대응체계, 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기본훈련과 부분(기능)훈련을 결합하여 복합적으로 진행하는 훈련
이론	강의식	특정한 주제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설명하여 가르치는 방식
	세미나/워크샵	특정한 주제에 대하여 상호간 토론·연구하는 방식
비고. 소방훈련 및 교육에 대한 시간은 1시간 이상을 권장한다.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소방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소방훈련과 교육(실습과 이론)에 필요한 장비는 다음과 같다.

구분	교보재(장비)	비고
초기소화	소화기(분말, 이산화탄소), 파괴용구 등	
비상연락	무전기, 휴대용확성기 등	
피난유도	경광봉, 호루라기, 안전조끼, 휴대용확성기, 랜턴 등	
응급구조	애니(심폐소생술용 마네킹), AED, 응급처치 장비, 들것 등	
기타	교육자료(PPT, 영상 등), 훈련용 연막, 명찰 등	

이 외 건물에 설치된 각종 소방시설(소화기, 옥내소화전, 경보설비, 피난기구 등)을 사용하여 훈련과 교육을 진행한다.

4.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은 부서, 병동, 직종별로 필히 참석할 수 있도록 하며,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훈련에는 피난유도, 피난보조 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시킨다. 특히 피난약자에 대한 피난유도를 중점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인원에 대해서는 교육·훈련 자료를 제공하여 숙지시켜야 한다.

5. 미리 짜여진 각본에 의해 진행자가 주도하는 방식의 훈련으로는 실질적인 훈련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재난 상황에 따라 효과적인 대응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훈련이 아닌 상황에 따라 적절한 행동을 보여줄 수 있는 무각본 소방훈련 형태가 바람직하다. 이는 훈련일정 및 장소를 미리 공지함으로써 근무·거주원이 사전에 훈련에 관한 제반사항을 숙달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재상황을 부여했을 때 각본 없이 자위소방대가 해당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훈련형태이다. 훈련자에 대한 각본이 없는 형태이지만 훈련을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진행 상황을 미리 계획하고 숙지하여야 하므로 스토리보드 즉, 훈련 진행을 위한 시나리오는 반드시 필요하다. 의료시설 및 노유자시설의 경우 피난약자에 대한 피난유도 훈련을 중점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6. 피난약자 다수가 이용하는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의 특정소방대상물(화재 시 많은 인명피해의 발생이 예상되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의 근무자등에게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소방훈련 및 교육을 면제할 수 있고, 미흡한 경우에는 소방훈련 및 교육을 다시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7. 피난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 그 실시 결과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른 근무자등에 대한 소방훈련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면 결과를 작성하고, 이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날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장 소방안전관리자, 관계인의 업무 및 벌칙사항

4.1 소방안전관리자 및 관계인의 업무

1. 소방안전관리자 및 관계인은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예방 및 대응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 및 관계인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❶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❻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❷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❼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
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❽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❹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❾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❺ 소방훈련 및 교육	

관계인의 업무
❶ 소방안전관리자 지도 및 감독
❷ 소방안전관리자로부터 소방시설, 피난시설, 방화시설 등의 조치요구를 받았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함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5항에 따른 9가지 업무를 수행하며, 해당 건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4.2 벌칙사항

1. 소방안전관리자 및 관계인이 법령사항을 위반한 경우 벌칙사항은 다음과 같다.

벌칙	**소방기본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소방대가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 출동한 소방대원이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300만원 이하의 벌금
	-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 외의 소방대상물 및 토지에 대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소방자동차 통행 및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 등의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100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 피난 명령을 위반한 사람
	- 정당한 사유 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 위험물질의 공급을 차단하는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과태료	**소방기본법**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을 알리지 아니한 관계인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소방차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
	- 소방자동차 통행 및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 등의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시장지역, 공장·창고 밀집 지역, 목조건물 밀집 지역,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 밀집 지역, 석유화학제품 생산 공장이 있는 지역,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 시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

2.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벌칙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